

연구보고 10-R03

위기이동 · 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이춘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윤옥경(경기대학교 · 교수)

진혜전(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 팀장)

황의갑(경기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심지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한다.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 실태와 긴급구호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및 욕구를 파악한다.
-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아동·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안한다.

2. 주요 연구내용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해 위기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를 표집해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28명을 표집해 전문가 의견조사지를 e-mail로 발송했고, 26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2차 조사는 9명에 대해 집단면접으로 이루어졌다.
- 위기 아동·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기관들 대부분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문제가 있는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법적 권한이 일부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
- 위기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에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1388 청소년 전화인데 현재 무료전화가 아니고 회선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 위기상황의 조기발견은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보건교사, 보호자 등 아동·청소년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가능성이

높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방임, 학대 아동을 발견하므로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요하다.

-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하던 가출 아동·청소년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그룹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절차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산하에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상담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운영내용이 대동소이하다.
- 현재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기관은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진다.
- 집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입소 시 무조건 부모와의 연락을 강제하고 있어 무단퇴소 또는 귀가 후 재가출이 발생하고 있다.
-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들의 부모는 생계형맞벌이이거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대부분은 방과 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3. 정책제언

●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

• 1388 전화의 무료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회선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국규모의 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함께 아웃리치 사업에 대한 공통된 목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위기 아동·청소년을 긴급구호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인증제’를 실시하여 긴급구호 기관에서 친권에 우선하는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학대가정의 부모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친권상실제도의 법원선고 청구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요망된다.

- 실제적인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이 되려면 많은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을 안전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위기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귀가 및 쉼터연계를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야 한다. 현행 24시간 보호로는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상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집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입소 시 무조건 부모와의 연락을 강제하고 있어 무단퇴소 또는 귀가 후 재가출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청소년쉼터 지침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 또는 학교에 대한 중재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에서 보호하던 아동·청소년을 그룹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영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쉼터에서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관련기관간의 정보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기관인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 청소년을 발굴하러 다니는 것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 보통 위기아동·청소년은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가정 내 학대부터 가출, 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 기관에서 전문화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에 대한 통합은 어려워도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을 한 건물 또는 근거리에 상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전문화된 시스템 이용 및 홍보도 용이하고, 즉각적인 원스톱서비스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또한 한 기관의 원스톱보다는 우리 지역 원스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원스톱서비스와 전문화된 서비스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동반자의 경우는 3개월간 위기개입 후 종료가 되는 체제이지만 한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과정에서 주변의 위기아동·청소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모니터링체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지역사회의 컨소시엄이 있고 이들의 사명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컨소시엄을 안전모니터링체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상에서의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성매수 유인행위, 청소년의 조건 만남 광고, 동반자살 등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IP추적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정화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방안

- 가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가출청소년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해 치료 상담을 실시한 뒤 안정을 찾은 후에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신고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신고자의 실명이 밝혀져 신고를 꺼리고 있으므로 익명성을 용인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가정 내 친족 성폭력 및 지적장애 등으로 보호자가 보호능력이 떨어져서 차후의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가해 가족과 강제 분리해야 한다.

-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대 부모의 치료 및 상담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고, 친권상실제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학대는 이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보건교사, 보호자 등이 아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만의 특성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기에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에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담임교사가 미처 관리 하지 못하는 학교 뒤 건물, 옥상, 체육관 뒤, 담벼락 등 외진 곳을 수시로 순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 차

연구요약

I. 서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9
1. 위기아동·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9
1) 위기아동·청소년의 개념	9
2) 위기아동·청소년의 유형 및 단계	11
2.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의 개념과 필요성	14
1) 긴급구호의 개념	14
2) 안전모니터링의 개념	16
3)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의 필요성	17
3. 위기요인 및 대처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틀	19
1)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	21
2) 긴장에 대처하는 전략	23
III.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및 안전모니터링 현황	31
1. 통합지원체계	31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현황	31
2) 학생안전통합시스템 현황	61
2. 분야별 지원체계	70
1) 청소년쉼터 현황	70
2) 성범죄피해지원체계 현황	77
3) 아동보호전달체계 현황	85
3. 경찰의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현황	90

1) 개관	90
2) 긴급구호체계	92
3) 안전모니터링체계	114
4) 소결	116
IV. 주요국가의 관련정책과 입법례	121
1. 일본	121
1) 서론	121
2)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개요	123
3) 위기아동·청소년 유형별 대책	126
4) 위기아동·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체계	144
5) 시사점	158
2. 미국	160
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중심 지원체계	161
2) 아동·청소년 안전과 청소년범죄의 지역중심 접근사례	165
3)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지역중심 사례와 입법례	172
4) 시사점	178
3. 독일	182
1)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	183
2) 위기아동·청소년 지원형태	184
3) 시사점	187
V. 위기아동·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191
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91
1) 조사방법	191
2) 기관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현황과 개선방안	193
3) 현행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	210
4)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방안	214
5) 기타 의견	220
6) 소결	224
2. 위기아동·청소년 의견조사 결과분석	230
1) 조사방법	230

2) 위기실태	234
3) 부정적 감정의 생성 및 대응	245
4) 문제행동과 범죄	246
5) 보호기관 접촉경험 및 서비스 욕구	250
6) 소결	256
VI.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265
1. 통합지원체계의 개편방안	265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개편방안	265
2)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 개편방안	278
3) CYS-Net과 Wee Project의 협력방안	280
2. 분야별 지원체계 및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체계 개편방안	285
1) 분야별 지원체계 개편방안	285
2)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체계 개편방안	289
3.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300
1) 개관	300
2) 현행 경찰체계의 문제점	301
3) 중앙부처 안전망과 경찰의 협력방안	307
4) 종합적인 안전모니터링 구축방안	311
5) 소결	316
VII. 요약 및 결론	321
1. 주요결과	321
2. 정책제언	327
참고문헌	337
부록	343
1. 전문가 의견조사지	345
2. 아동·청소년 면접조사지	349

표 목차

<표 II-1> 위기아동·청소년 규모추정 현황	14
<표 III-1> 2010년 시군구 통합지원체계 구축현황	33
<표 III-2> CYS-Net 일시보호 서비스 절차	48
<표 III-3> Wee프로젝트 기관현황	64
<표 III-4> Wee센터 직원현황	65
<표 III-5> 청소년쉼터의 유형	72
<표 III-6> 청소년쉼터 지역별 현황	74
<표 III-7> 청소년쉼터 서비스 이용현황	75
<표 III-8> 원스톱지원센터 설치현황	79
<표 III-9> 원스톱지원센터 지원현황	80
<표 III-10> 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현황	81
<표 III-1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지원현황	82
<표 III-12> 해바라기여성·아동통합센터 설치현황	83
<표 III-13> 중앙 및 시도(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88
<표 III-14> 시·군·구(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89
<표 III-15> 서울지역 One-Stop지원센터 운영현황	95
<표 III-16> One-Stop지원센터 피해유형별 방문자수	98
<표 III-17> One-Stop지원센터 지원내용	98
<표 III-18> 장소별 아동안전 지킴이 집 운영현황	103
<표 III-19> 유형별 아동안전 지킴이 집 운영현황	104
<표 III-20> 범인검거 및 지원활동관련실적	104
<표 III-21> 범죄예방 및 보호 관련실적	105
<표 III-22> 아동안전 지킴이제도의 범죄예방 및 보호 관련실적	108
<표 III-23> 단속업체별 게시물 보유 현황	110
<표 III-24> 유통 중인 아동음란물 제작국가	111
<표 III-25> 아동음란물 제작 방법별 구분	111
<표 III-26> 음란물 단속 실적	112

<표 III-27> 음란물 유포 단속 및 수사 현황	112
<표 IV-1> 아동상담소 아동학대 상담 건수	127
<표 IV-2> 아동상담소 아동학대 상담 내용별 건수	128
<표 IV-3> 연도별 가출소년 추이	137
<표 IV-4> 우범소년 가정법원 중국처리 인원	137
<표 IV-5> 자살한 청소년의 학직별 현황	139
<표 V-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192
<표 V-2> 청소년쉼터의 위기 유형별 긴급구호 서비스 현황	200
<표 V-3> 위기아동·청소년 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231
<표 VI-1> Wee프로젝트와 CYS-Net의 차이점	283
<표 VI-2> 2010년 아동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	302

그림 목차

[그림 II-1] 일반긴장이론의 요소	21
[그림 II-2] 일반긴장이론의 요소별 개입방법	28
[그림 III-1] CYS-Net 체계도	32
[그림 III-2] CYS-Net 긴급구조 절차	37
[그림 III-3] 가출청소년 발견·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업무 흐름도	39
[그림 III-4] Wee프로젝트 체계도	63
[그림 III-5] Wee센터 인적 구성표	68
[그림 III-6] Wee센터 일반 흐름도	69
[그림 III-7] Wee센터 기관 연계 흐름도	70
[그림 III-8] 여성가족부의 성보호 체계	78
[그림 III-9]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조직도	83
[그림 III-10] 학대아동 보호건수	91
[그림 III-11] 여성 및 청소년 업무와 관련한 경찰청 조직도	93
[그림 IV-1]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의 개요	126
[그림 IV-2] 大阪府泉大津市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대응과정도	130
[그림 IV-3] 자살종합대책 추진모델	144
[그림 IV-4] 아동대기공간교류활동 추진사업도	148
[그림 IV-5] 生活熟 모델사업	149
[그림 IV-6] 동북지역 소년서포터팀의 대응형태	151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목적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침체 가속화와 이로 인한 실업증가 및 소득 하락으로 가정해체 및 가족기능이 저하되면서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위기아동·청소년은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유해환경에 놓여 있어 위기 경험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아동·청소년”으로 기존의 아동·청소년복지의 범주 주변에 있는 대상자이다(모상현 외 3인, 2009: 102). 여성가족부는 전체 인구 중에서 만9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중에 위기 대상은 936,626명으로 동 연령 아동·청소년 중 13.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216,408명, 중고등학생은 720,21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 중 고위험군은 169,463명으로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여성가족부 추정자료). 또한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의 하나인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2004년 3,891건, 2005년 4,633건, 2006년 5,202건, 2007년 5,581건, 2008년 5,578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03).

이러한 위기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다. CYS-Net은 지역별로 설치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내 연계협력체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여 위기아동·청소년에게 의식주, 학업지속, 정서적지지, 역할모델, 문화체험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성호·최해연·박성현, 2008: 42). 그러나 CYS-Net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만 통합지원체계가 갖추어져있을 뿐 실제적인 네트워킹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사회 내 필요한 연계기관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지방, 공공-민간 간의

네트워킹이 어렵고,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공공 전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며,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영지·방은령·박정선, 2006: 85).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은 이들의 인지·신체·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발견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긴급구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CYS-Net에 대한 비판들은 신속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CYS-Net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경찰과 학교, 아동·청소년시설, 개인사업자 등 관련기관들의 위기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긴급구호 체계 구축,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수신기관 확대, 전화·모바일·인터넷 등 신 유형 매체와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를 결합한 (가칭)청소년IT시스템 등의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맹영임 외 11인, 2007: 64-65). CYS-Net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위기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나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체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위기발생 현장에서 위기아동·청소년을 즉각적으로 조치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조발 위기상황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면서 아동보호 전달체계를 구축해왔다. 이후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하였으나 아동보호 전달체계와 CYS-Net의 담당부서는 별도로 운영되어 왔을 뿐 아니라 2010년 3월 19일자로 여성가족부가 출범하면서 청소년업무가 여성가족부로 통합되었다. 결국 아동과 청소년업무가 다시 이원화된 것이다. 아동학대는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연계방안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기반의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인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이 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CYS-Net과의 기능중복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위기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체계가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됨으로써 이들의 조기발견과 긴급구호를 위해서는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위기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긴급구호에 관한 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나 위기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모색 등에 치우쳐 이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위기아동·청소년이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지거나 건전한 성장·발달이 저해되기 전에 조기에 대처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국가적 필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이러한 연구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 실태와 긴급구호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아동·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위기아동·청소년 및 긴급구호, 안전모니터링의 개념,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청소년의 부적응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이론적 배경,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관련법률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구호 체계 및 안전관리 체계의 현황을 분석한다. 통합지원체계인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Project), 분

야별 지원체계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및 성범죄피해아동·청소년지원체계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보호전달체계, 경찰의 지원체계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구호 체계 및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선진 외국의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과 입법례를 수집·분석한다.

넷째,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긴급구호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적응 및 욕구 실태를 파악한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조기발견을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발견된 위기아동·청소년이 신속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위기유형별로 긴급구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로서 위기아동·청소년 및 긴급구호, 안전모니터링의 개념,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아동·청소년의 부적응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이론적 배경 등에 관한 선행연구와 공식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에 관한 현행법률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둘째, 전문가의견조사로서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현행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면접조사로서 긴급구호 서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적응 및 욕구 실태를 파악 한다¹⁾.

셋째, 이 외에 자문회의, 정책전문가 포럼, 정책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행 체계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1)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4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위기·아동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2.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의 개념과 필요성
3. 위기요인 및 대처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틀

II. 이론적 배경

1. 위기아동·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1) 위기아동·청소년²⁾의 개념

OECD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위기청소년(at-risk youth)이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직업이나 성인으로서 삶을 성취해내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을 말한다(윤철경 외 7인, 2005: 11). 보건복지부는 위기청소년을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유해환경에 놓여 있어 위기경험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존의 아동·청소년복지의 범주 주변에 있는 대상자이다(모상현 외 3인, 2009: 102). 이스라엘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가정생활과 환경, 행동 또는 적응장애가 그들의 복리와 건강한 발달에 위협을 주는 0-18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구본용 외 7인, 2005: 9, 재인용).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보고서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교육, 훈련 및 고용체계로부터 이탈된 청소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윤철경 외 4인, 2006: 26, 재인용).

구본용 외 7인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일련의 개인·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2) 선행연구에서는 위기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보다는 위기아동 또는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으나 2008년에 아동·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청소년정책 분야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다시 아동과 청소년은 분리되었다. 그렇지만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18세미만자이고, 청소년은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위기청소년의 경우 19세미만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기아동이든 위기청소년이든 그 정책대상에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기아동과 위기청소년을 위기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없이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지칭하고 있다. 개인·환경적 위험이란 흔히 위험요인이라 불리고 있으며, 청소년의 행동·심리적 문제는 위험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한다(구본용 외 7인, 2005: 10).

윤철경 외 4인의 연구에 의하면 위기청소년은 구체적인 위기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 뿐 아니라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들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이들을 방치할 경우 언제라도 위기행동에 개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기질 면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가정에서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크며, 부모로부터 효과적이지 못한 감독과 훈련기술을 제공받고, 학교의 무단결석과 기타 학교문제로 인한 실패,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 빈곤상태에서의 삶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윤철경 외 4인, 2006: 24).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훈령 제545호로 제정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란 위기상황에 처하여 상담·보호·의료·자립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또한 위기상황이란 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인 위험 요인이나 문제 있는 행동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위기 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지원청소년이 위기청소년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는 특별지원 청소년을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개인적, 환경적 위험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사회적·경제적 지원

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위기아동·청소년의 유형 및 단계

구분용 외 7인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유형을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성매매·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으로 나누고 있다(구분용 외 7인, 2005: 10).

Johnson은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4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개인 위험요인으로 이는 청소년의 개인적 행동으로 성적 행동, 약물사용과 남용, 학교에서의 잦은 지각과 중퇴, 범죄활동 및 비행행동을 포함한다. 둘째, 가족위험요인으로 부모나 형제의 약물남용, 부모감독의 결여, 부모의 교육적 지지와 개입의 결여, 부모가 연루된 범죄행동, 학교 중퇴한 형제, 무능한 부모, 방인,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 이혼, 사회복지 수혜자, 가계주가 고등학교 중퇴, 가족 경제수준의 빈곤선 이하, 가계주의 일정하지 못한 취업을 포함한다. 셋째, 지역사회 위험요인으로 가용한 일자리의 질과 양, 임금, 떨어져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용할 훈련을 포함한다. 넷째, 학교에 기초한 위험요인으로 교사의 무적절한 준비, 학생의 발달과정에 대한 교사의 낮은 기대치, 관련된 교과과정의 부족, 개별교습의 실패, 적절한 프로그램의 결여, 학교폭력, 적합하지 않은 지도와 지지를 포함한다(윤철경 외 4인, 2006: 24-25).

윤철경 외 7인은 위기청소년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가족적위기 상황에는 빈곤, 이혼 자녀, 요보호, 북한이탈, 외국인노동자자녀, 소년소녀가장, 학대피해가 해당한다. 교육적 위기상황에는 학업중단, 학습부진이 해당한다. 개인적 위기상황에는 흡연, 음주, 가출, 성관계경험, 자살(충동), 폭력가해, 범죄청소년, 장애인이 해당한다. 사회적 위기상황에는 폭력피해, 범죄피해, 성범죄피해, 실업, 인터넷음란사이트이용이 해당한다(윤철경 외 7인, 2005: 15-16).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위기의 수준을 2단계로 나누었

다. 고위기군은 청소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행동을 이미 드러내고 있으며 학업중단, 학대 등 교육·가족적 위기, 범죄피해·실업 등 사회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보다 집중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다. 범죄, 가출, 성경험, 폭력가해, 흡연, 폭력피해, 실업, 범죄피해, 학업중단, 학대아동 등이 포함된다. 중위기군은 복합적인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가족·교육적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상태로, 방치될 경우 복합적인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군이다. 빈곤, 이혼 자녀, 소년소녀가장, 요보호아동, 북한이탈청소년, 외국인노동자자녀, 학습부진 등이 포함된다(윤철경 외 7인, 2005: 31-32).

Burt와 Mathesone는 위기를 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의 4수준으로 분류했다. 위기전조는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어 미래의 문제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제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빈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웃환경 등이 포함된다. 위기표식은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적 및 맥락적 요인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불화가 심한 가정환경, 가정 폭력 및 학대, 부모의 이혼, 자연적 재해, 정체성 위기, 고용주의 착취 및 임금체불, 친구들과의 불화 등이 해당된다. 문제행동은 위기 전조 및 표식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나타내 보이기 쉬운 부정적 행동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이에선 성매매, 흡연 및 음주, 자살충동 및 시도, 비행친구들과의 어울림, 빈번한 무단결석, 폭력 및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 등이 해당된다. 위기결과는 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사회 안전망에서 이탈하여 성장에 명백히 부정적 결과를 낳을 조건으로 가출, 범죄, 학업중단, 정신적 장애 및 자살 등이 해당한다(구본용 외 7인, 2005: 15).

지승희 외 3인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위험성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평가하여 위기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위험성이라는 실제 현장에서 관찰 가능한 상황으로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평가하여 위기수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기 1수준은 자신과 타인에게 심각한 피

해를 주는 파괴적인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2수준은 파괴적이지는 않지만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3수준은 문제행동이 나타날 잠재적 조건을 갖춘 경우로 정의하였다. 이 중에서 고위험군인 1수준과 위험군인 2수준만을 위기군으로 정의하였다(지승희 외 3인, 2006: 8).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해 규정하면서 이들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1.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영 제7조 제1항)이 그것이다. 선도대상자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서 1.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영 제16조)이다.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연구(강석영·김동민·하창순, 2009: 100)에서는 위기수준을 1수준(보통), 2수준(잠재적 위험군), 3수준(고위험군)으로 나뉘는데, 고위험군이 2.4%, 잠재적 위험군이 1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위기단계를 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로 분류하고, 그 규모를 위기전조 1,094,000명, 위기표식, 900,000명, 문제행동 320,000명, 위기결과 166,000명으로 계산하여 전체 위기청소년은 연인원 2,480,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추산 원 자료는 구분용 외 7인, 2005: 16-17), 이 중에서 2009년 현재 273,000명을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모상현 외 3인, 2009: 103).

금년에 청소년정책을 이관 받은 여성가족부에서는 2006년에 실시한 경기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와 2009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토대로 우리나라 위기아동·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했다.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인구 중에서 만9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중 에 위기 대상은 936,626명으로 동 연령 아동·청소년 중 13.7%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216,408명, 중고등학생 은 720,218명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중고등학생 중 고위험군은 169,463 명으로 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II-1> 위기아동·청소년 규모추정 현황

합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전체	위기 청소년	전체	서비스 대상	전체	서비스대상		
만9~18세 (100%)	빈곤+ 위험 (13.7%)	만9~12세 (100%)	빈곤율 (8.4%)	만13~18세 (100%)	소계 (17.0%)	고위험군 (4.0%)	잠재 위험군 (13.0%)
6,812,861	936,626	2,576,282	216,408	4,236,579	720,218	169,463	550,755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수('09.11월말) 및 「경기도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2006)를 통해 추정

2.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의 개념과 필요성

1) 긴급구호의 개념

긴급구호는 위기아동·청소년을 빠르게 도와서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행법³⁾상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긴급구조가 사용되고 있다. 구호와 구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구호는 도와서 보호하는 것이고, 구조는 구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구호가 조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법을 적용하는 실무에 있어서는 긴급구조 역시 구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보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⁴⁾. 실무에서 긴급구

3) 청소년기본법 제46조 제1항

4) 긴급구조를 담당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긴급구조 차량과 함께 일시보호소를

조를 보호까지 포함해서 적용하고 있다면 긴급구호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긴급구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개념 정의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긴급구조의 개념을 살펴본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개념이 도입된 것은 2005년 말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이 국가 정책으로 수행되면서 부터이다. 구분용 외 7인의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면서 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 등의 개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중 위기결과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긴급구조의 주된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위기청소년은 상담기관 등에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국가에서 위기청소년을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발굴, 구조해 내는데 필요한 시스템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였다.

긴급구조란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약물중독, 자살 관련 행동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에서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긴급구조는 법에 의해 활동을 명령 받고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46조와 46조의 2에서 청소년 상담기관이 긴급구조를 수행해야 할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법 제46조 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지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긴급구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서 2006년 이후로 청소년 상담기관에서는 긴급구조를 실행하고 있는데, 2007년에 전국적으로 3,455명의 청소년이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구조되었고, 긴급구조 된 청소년 및 의뢰된 청소년 12,007명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부터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노성덕, 2008: 154-155).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그 현장을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현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조사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근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안전모니터링의 개념

안전모니터링 역시 긴급구호와 마찬가지로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이 위험에 빠진 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개입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 또한 필요하다. 안전모니터링이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모니터링한다는 개념이다. 사전적 의미로 안전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이고, 모니터링은 긴 시간을 두고 무언가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안전모니터링은 아동·청소년이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긴 시간을 두고 추적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모니터링에는 긴급구호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위기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로써 각 부처의 긴급구호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나 경찰청의 CCTV를 통한 감시 등이 있으나 안전모니터링의 사전적 의미와 엄밀하게 일치하는 제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제3장 현황에서는 긴급구호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안전모니터링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하고자 하며, 안전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해서는 주로 제6장에서 새로운 구축방안으로써 제안하고자 한다.

3)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의 필요성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는 이들의 위기상황에 조기개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Burt와 Mathesone의 위기분류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위험 위기단계인 문제행동의 단계로 발전한다면 성매매나 폭력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위기결과의 단계로 발전하게 되면 가출, 범죄, 학업중단, 자살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연구들은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결국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어린 시절의 성폭력 경험으로 인해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고 장기적으로 성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가출 이후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 학교폭력이나 범죄의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에게 조기에 개입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한다면 이들이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더 큰 위험상황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김경호의 연구(2006: 32)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이 가해자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의 경험을 통해 폭력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도 폭력을 사용하는 가해자가 되게 할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명진·조주연·최문경의 연구(2007: 34-35)에서는 소년원생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했는데, 소년원생의 경우 일반청소년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많고, 특히 신체적 학대가 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방임은 아버지의 신체적 학대가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광도의 연구(2005: 234-235)에서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폭력범죄 뿐 아니라 재산범죄에도 영향을 미쳐 가정폭력의 경험이 청소년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성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후유증의 심각성을 밝히고 있는 연구가 많은데 단기적 후유증에 대한 연구들은 급성적 공포, 불안, 우울, 정서조절의 어려움, 수면 및 섭식장애 등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는 단기적인 영향이 사라져도 장기적으로 남게 된다. 서울지역의 중·고·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장기후유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 집단은 낮은 성적 자존감, 남성불신, 자기비난, 정서적 불안정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면 낮은 자아존중감과 성역할의 혼란으로 재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미피해자에 비해 혼전 성관계에 대해 더 허용적이었고 실제 성적 접촉 빈도도 더 높았으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거절하는 비율은 더 낮았고 강제적인 성적요구를 애정행위로 오인하거나 관계단절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성이 더 높았다(권희경·박경, 2003: 25-28; 권희경·장재홍, 2003: 44; 이춘화, 2010: 631, 재인용).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입경로를 조사한 이춘화·조아미의 연구(2004: 13-14)에서는 성매매의 직접적인 계기로 가출을 들고 있다. 조사대상 여자청소년 모두 자신이 놀고 싶은 대로 놀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어린 나이에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한 후에 돈이 떨어지면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잠자리를 마련해줄 남자를 찾게 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다보면 어차피 하고 싶지 않은 성관계를 할 바에는 차라리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

학교주변 폭력실태를 조사한 김준호·박정선·김은경의 연구(1997: 194-201)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 중의 41%가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집단이 피해-가해 경험이 전혀 없거나 피해 또는 가해 경험만 있는 집단에 비해 폭력지향성과 비행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폭력 피해와 가해의 중층적 특성이 폭력에 대한 상승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영오의 연구(2008: 203-208)에서도 청소년의 폭력범죄 및 사기, 또래따돌림, 또래욕설 등 범죄피해 전반에서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5년간 조사결과를 분석한 박순진의 연구(2009: 88)에서는 폭력 가해자의 44%가 피해경험이 있고, 피해자의 54%는 가해경험을 가지고 있어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의 사이버범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성식의 연구(2008: 80)에서는 악성댓글의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피해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이상 이춘화, 2009: 271-272, 재인용), 이춘화의 연구(2009: 281)에서도 인터넷채팅에서의 사이버범죄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시간적 순서는 밝히고 있지 않고 가해행위가 피해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타인에게 동일한 보복을 가하는 가해자로 변해갈 가능성도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3. 위기요인 및 대처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틀

이 연구의 내용 중 하나인 위기 아동·청소년의 위기 실태 및 긴급구호 서

비스 이용 아동·청소년의 욕구 파악⁵⁾을 위한 이론 틀로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GST)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Merton의 아노미이론이 금전적 성공의 좌절을 범죄나 비행의 유일요인으로 본 것은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목표나 욕구를 간과하고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 사회 내 개인의 목표는 경제적 성공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의 지위 획득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을 때 느끼는 좌절과 스트레스(긴장으로 표현함)에 더해서 긴장을 유발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부정적 관계나 상황(negative relations or situations)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론이 포섭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고 그 이론의 이름을 일반긴장이론이라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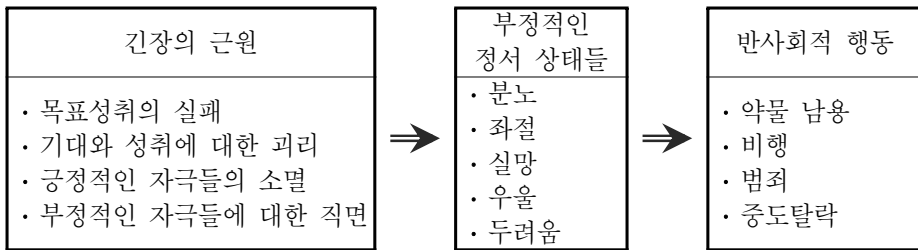
일반긴장이론의 강점은 다른 사회학적 비행이론들이 가지는 계층적 편견, 즉 경제적 하류층의 아동·청소년들이 비행의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다양한 원천을 찾아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찾아내고자 하는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로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위기요인을 찾아내고 그 대처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 긴장이론이 유용한 이론 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은 긴장이론이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개인을 둘러싼 관계와 환경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⁶⁾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다양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개인의 감정과

5) 이 보고서의 제5장 제2절에서 의견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6)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에서도 소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부체계(exosystem), 대체계(macro-system)에서 아동·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다수준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긴장이론에서는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긴장을 다양한 수준에서 분석해 내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접근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특히 아동·청소년의 '위기'에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기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반긴장이론과 같은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의 적실성이 크다고 본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것이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을 단계별로 도식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단계별 도식화는 개입(intervention)을 다양한 수준에서 모색할 수 있도록 분석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은 애그뉴의 긴장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긴장의 원천과 긴장이 야기하는 좌절과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상태,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도식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11-1] 일반긴장이론의 요소(General Strain Theory: GST)

1) 긴장을 유발하는 요인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중에서 그 개인에게 긴장(스트레스)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긴장상태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약물사용, 비행, 폭력, 학교중퇴 등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 이론화한다. 이 이론은 다양한 긴장의 유형을 제시하고 그러한 긴장이 비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하며, 그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잘 대처함으로써 반사회적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일반긴장이론의 개념화는 위기 아동·청소년의 위기원인과 위기결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일반긴장이론의 분석틀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의 위기원인과 그 다양한 결과를 진단해 보고 아동·청소년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일반긴장이론은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는 있으나 그것의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긴장이 발생한다 (failure to achieve positively valued goals). 이상적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아동·청소년들은 좌절하고 긴장을 느끼게 된다. 둘째, 기대와 성취사이의 괴리(discrepancies between expectations and achievements)도 긴장을 만들어 내는데, 이 경우 그러한 결과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긴장의 정도는 배가된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물건, 또는 상태를 제거하거나 제거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remove or threaten to remove positively valued stimuli that one possesses)도 긴장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새로운 학교로 전학, 이성친구와의 결별 등 아동·청소년이 좋아하고 유지하기를 원하는 관계나 상황의 지속이 어렵게 될 때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다. 넷째는 부정적 자극에 직면하는 경우(present or threaten to present one with noxious or negatively valued stimuli) 긴장이 발생한다. 예컨대 아동학대, 방임, 범죄피해, 체벌,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등등이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자극의 직면에 속한다. 이러한 긴장은 내적으로 분노, 실망, 우울, 두려움,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 내는데, 이 중 분노가 긴장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서로 다루어진다. 분노감정은 대응적 행동을 유발하고, 내적 억제력을 감소시키며, 교정욕구(corrective desire)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비행, 약물사용, 폭력, 학교중퇴 등의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인다.

긴장이론의 분석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의 긴장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요소들은 심리적 좌절과 분노의 수준을 높여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되며, 반사회적인 비행이나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장의 원인을 줄이고 긴장으로 인한 분노를

잘 관리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능해진다.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긴장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차원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긴장이 분노와 좌절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생산하고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방안에는 긴장요인을 제거하고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2) 긴장에 대처하는 전략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수준이 높을수록 여러 형태의 일탈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긴장이 비행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행/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이론적 완결성을 위해서는 긴장을 만들어내는 요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긴장을 가진 사람들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그 긴장에 반응하게 되는 요인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애그뉴는 주장한다. 그는 (1992: 66-74) 비행적 대처와 규범적 대처를 결정짓는 요인들 (constraints to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coping)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비행/범죄에 가담할 위험을 줄이는 요인들로는 예를 들어 차단된 목표를 대체할만한 대안적 목표의 가능성, 자아효능감이나 지능 등 개인적 자원, 타인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원, 처벌에 대한 두려움, 강한 사회적 유대, 비합법적 수단への 접근의 어려움 등이다. 이와 반대로 낮은 자아통제력, 범죄학습의 경험, 반사회적 신념의 내재화, 긴장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 등은 긴장에 대한 비행적 대처를 유도하는 요인들이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긴장을 비범죄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건

① 자신의 좌절된 목표를 대체할만한 목표가 가능하면 그 긴장은 비행으

로 갈 가능성이 낮아진다.

- ② 개인적 대처자원(coping resources)의 활용은 긴장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 ③ 부모나 가족, 친지, 지역사회로부터 정서적 지원, 재정적 지원,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지원 등을 받게 되면 비행/범죄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 ④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면 비행/범죄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 ⑤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게 되면 범죄가능성은 낮아진다.

(2) 긴장을 범죄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조건

- ① 낮은 자아통제력은 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
- ② 과거 비행 학습경험은 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
- ③ 반사회적 신념의 내면화 정도가 클수록 범죄의 가능성은 커진다.
- ④ 분노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릴수록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은 커진다.

(3) 긴장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많은 외국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긴장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시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두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두 연구 모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이다. 먼저 하나는 다양한 긴장유형의 정도와 분노 등 부정적 감정, 그리고 비행 등 반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이경상이순래 연구(2009)의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을 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Moon et al.(2010)의 연구이다.

이경상 등(2009)의 연구는 긴장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부모긴장 경험, 학업긴장 경험, 친구긴장 경험, 외모긴장 경험, 물질

긴장 경험이 그것이다. 부모긴장은 성적부담이나 의견충돌, 대화부족, 지나친 간섭에 의해 생겨나는 긴장이고, 학업긴장은 시험스트레스, 입시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친구긴장은 친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긴장이고, 외모긴장은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물질긴장은 용돈이 부족하거나 입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로 측정되었다.

긴장에 대한 적응양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아통제력, 사회적 자원의 지표로 가족의 월평균소득을, 그리고 목표불명확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부정적 감정으로는 분노, 걱정, 불안, 외로움, 우울, 자살충동을 측정하였고, 비행변수는 담배, 술,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패싸움, 뺑뺑기, 절도, 왕따, 성폭행 등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긴장이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높았으며 분노, 우울 등 부정적 감정이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높게 나타나 긴장이론의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부정적 감정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를 위한 일상적 대체 메뉴얼의 개발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분노 등의 감정을 비행적으로 표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부정적 감정이 심각하게 높은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CYS-net 체계 내에서 아동·청소년지원센터나 아동·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Moon et al.(2010)은 긴장을 7개 차원에서 측정하여 이러한 다양한 긴장이 아동·청소년들의 학교폭력(bullying) 가담정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7개 차원의 긴장은 ① 아르바이트 경험, ② 왕따나 다양한 피해경험, ③ 경제적 스트레스, ④ 공부, 시험 스트레스, ⑤ 부부갈등, ⑥ 부모와의 갈등, ⑦ 친구와의 갈등이다. 부정적 감정은 분노를 측정하였고, 낮은 자아통제력, 부모애착, 교사와의 관계, 비행친구와의 교제를 긴장과 비행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건변수로 추가하였다.

중속변수인 학교폭력은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타인을 공격한 경험여부를 통해 측정하고 있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한국아동·청소년의 경우도 일반긴장이론의 예상과 같이 긴장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과거의 피해경험과 부모와의 갈등이 학교폭력 가담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거의 폭력피해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폭력가해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에서는 분노감정이 긴장과 학교폭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반긴장이론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연구자들은 이것을 분노의 측정방식이나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변수의 누락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시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연구자들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들의 비행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또 피해경험이 가해경험을 이끌어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가해자로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피해자적 지위에 대한 인정과 심리치료와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4)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긴장이론의 시사점

긴장이론은 아동·청소년들이 가지는 다양한 좌절과, 부정적 경험, 목표상실 등이 그들의 감정 상태에 주는 부정적 영향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등, 또 학대피해, 폭력피해, 범죄피해, 학업부진 등의 요인, 친구들로 부터의 따돌림, 외모스트레스 등 현재 아동·청소년들이 가지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긴장, 그리고 좌절과 분노, 그리고 우울감정과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행동에의 가담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수단을 제공해 준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긴장이론 검증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긴장 경험 정도와 다양한 비행행동의 관계가 확인된

바 있다.

GST의 논리구조를 따르면 다양한 위기와 긴장에 빠진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초래하는 단계에서의 개입과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관리하는 단계에서의 개입, 그리고 문제행동단계에서의 개입이 가능하다. 긴장으로 유발된 비행행동과 폭력, 가출 등은 또다시 아동·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긴장 요인이 되며, 계속적인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생성-감정관리-긴장결과에 대한 종합적 대처가 필요하다.

물론 모든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유형의 긴장을 다양한 정도로 느끼고 있지만 그들을 다 위기아동·청소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우리가 ‘위기아동·청소년’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집단은 긴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긴장을 관리하고 부정적 감정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인적, 환경적,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이란 부모나 가족, 친구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환경적 자원이란 가정환경이나 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 등을 말한다. 사회적 자원이란 위기아동·청소년들의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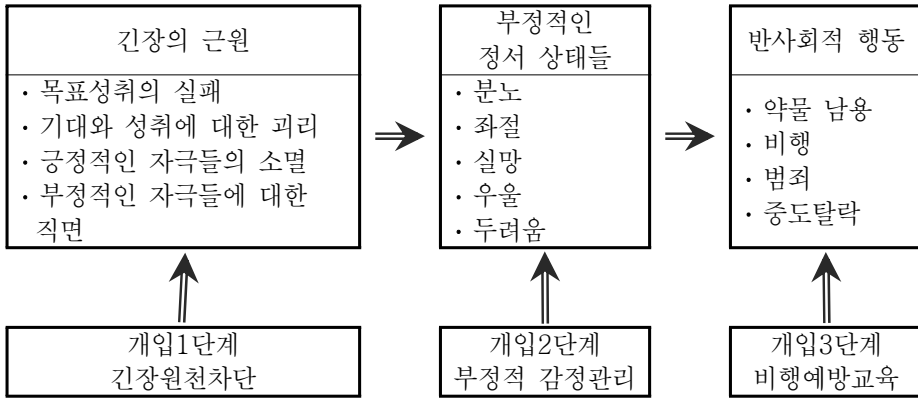
가. 긴장 원천을 감소하는 개입(1단계)

- ①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기술, 자기효용성 증대
- ② 사회적, 정서적, 재정적 지원
- ③ 구체적 목표의 수립/다양한 대안적 목표의 수립
- ④ 범죄피해와 학대에 대한 치료와 회복
- ⑤ 법과 규범에 대한 동조와 신념의 내면화
- ⑥ 개인책임성 강화

나. 감정관리 차원의 개입: 감정대처능력의 향상(2단계)

- ① 분노조절

- ② 인지행동치료
- ③ 스트레스 관리 전략



[그림 II-2] 일반긴장이론의 요소별 개입방법

다. 긴장결과 차원에서의 개입(3단계)

- ① 법교육
- ② 비행예방교육
- ③ 회복사법적 중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원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며,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확보, 신속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욕구를 파악하는 사후관리가 유기적인 연결로 제도화될 때,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구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및 안전모니터링 현황

1. 통합지원체계
2. 분야별 지원체계
3. 경찰의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현황

III.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및 안전모니터링 현황⁷⁾

1. 통합지원체계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현황⁸⁾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개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10)을 토대로 2005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⁹⁾에 대해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추진배경 및 정의

학교폭력, 가출 등의 위기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는 취약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서비스들은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맞춤형·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2005년 5월 4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 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시스템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

7)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현행 지원체계는 주로 긴급구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주로 긴급구호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안전모니터링과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하고자 하며, 안전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해서는 주로 제6장에서 새로운 구축방안으로써 제안하고자 한다.

8) 이 부분은 유순덕(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이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발행한 위기개입 매뉴얼(노성덕 외 3인, 2008)을 주로 참고하여 집필하였음.

9) 이후부터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CYS-Net이라 사용하기로 한다.

계(CYS-Net)를 구축하게 되었다. 2005년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며, 2009년11월27일에는 CYS-Net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에 불가결한 기관 간의 무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 공포하게 되었다.

CYS-Net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Network)”으로 정의할 수 있다.

CYS-Net 운영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맡게 되었고, 운영기관인 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발견·보호를 위해 필수적 구성기관이 되는 학교·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침이 세워졌다.

나. CYS-Net 체계도



[그림 III-1] CYS-Net 체계도

<표 III-1> 2010년 시군구 통합지원체계 구축현황(보건복지부, 2010)

시도명	시군구 센터수			10년 사업지역(예산지원)	예산미지원
	09년	10년			
		지원	소계		
서울	13	18	18	서대문·금천·노원·수서·목동·중랑·문래·성동·도봉·광진·강북·마포·서초·은평·동작·관악·송파·강동	
부산	4	4	5	영도·진구·금정·북구	(부산상담지원센터)
대구	1	1	1	달서구	
인천	2	6	6	연수구·계양구·동구·부평구·서구·남구	
대전	1	1	1	서구	
울산	2	2	2	동구·북구	
광주	-	-	-		
경기	16	19	31	성남·안양·안산·고양·화성·의정부·광주·구리·오산·평택·포천·남양주·부천·용인·광명·군포·시흥·양평·하남	가평·과천·김포·동두천·수원·안성·양주·여주·연천·의왕·이천·파주
강원	5	9	9	원주·강릉·영월·속초·철원·동해·태백·홍천·정선	
충북	3	4	4	제천·청주·충주·단양	
충남	5	8	16	천안·공주·아산·보령·홍성·서산·부여·예산	논산·계룡·금산·연기·서천·청양·태안·당진
전북	2	4	14	임실·정읍·군산·익산	전주·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고창·부안
전남	5	9	11	목포·여수·나주·해남·순천·광양·장흥·화순·영광	진도·완도
경북	9	9	11	영주·구미·영천·포항·경산·문경·경주·김천·울진	상주·청송·의성
경남	12	15	20	창원·마산·진주·김해·양산·사천·거제·통영·진해·밀양·거창·고성·함안·창녕·합천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
제주	1	1	1	서귀포	
총개소수	81개소	110개소	150개소	110개	40개소

※ ' 10년 사업지역 중 굵은 글씨는 개소 예정 지역(29개)

다. CYS-Net 운영센터 현황

2005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CYS-Net은 16개 시도센터와 40여개의 시군구센터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16개 시도센터와 그리고 110개 시군구센터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 2010년 운영지침 상에 나타나있다.

(2) 긴급구조 운영 현황

가. 긴급구조의 정의 및 대상

긴급구조란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약물중독, 자살관련행동 등으로 인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이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긴급구조 담당자가 직접 출동하거나, 혹은 1388 청소년지원단에 의해 청소년지원센터 및 연계기관으로 이동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등이 이에 포함된다.

긴급구조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하여 거리에서 배회하고 있으면서 귀가를 거부하거나 귀가할 곳이 없는 청소년이다. 둘째, 부모 또는 보호자의 폭력을 피해 밖으로 피신을 나왔거나 피신이 필요한 경우의 청소년이다. 셋째, 거리에서 성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당하기 직전의 불안한 상황이거나,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의 청소년이다. 넷째,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피해를 당했거나, 성매매업소에서 고용의 상황 및 조건으로 인해 자력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인신매매의 우려가 있거나, 성매매업소에서 탈출하였으나 은신처가 노출되어 협박, 폭력, 폭언 등과 같은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다. 다섯째, 약물(음주과다남용, 본드흡입, 마약 등)로 인해 사고, 인지능력이 상실된 청소년이다. 여섯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자해 등으로 인해 자살 위험이 높은 청소년이다.

일곱째,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이다. 여덟째, 은둔형 외톨이로 부모나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청소년이다. 그 외에도 긴급구조의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이 긴급구조 대상에 해당된다.

나. 긴급구조 조직 및 인력

긴급구조는 센터 내부적으로는 위기지원팀에서 담당하며, CYS-Net의 1388 청소년지원단 중 발견지원단이 긴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위기지원팀은 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팀장1명과 팀원2명, 생활지도원 4명 내외 및 공익요원으로 구성되며, 시군의 경우에는 보통 팀장1명, 팀원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인력이 긴급구조만을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의 경우에는 일시보호소 운영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시보호소 이용청소년이 많은 지역의 경우 직접출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시군의 경우에는 CYS-Net 운영 전반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력부족으로 인해 긴급구조에 어려움이 있다.

긴급구조 담당자들은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청소년(지도)학 등 상담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의 국가공인자격이나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등의 학회인준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에 따라, 전공별로 직무를 달리하기보다 대체적으로 2-3년 주기의 순환보직형태를 띠고 있어서 상담전공자도 CYS-Net 조직관리,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소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점차적으로 사회복지 전공자를 중심으로 위기지원팀을 구성해야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부 인력으로 1388 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PC방, 노래방, 민간기동순찰대, 택시조합, 아마추어무선연맹 등으로 구성되는 발견지원단이 긴급구조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원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공휴일이나 평일 야간 일부 시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지 않고, 택시지원단과 같이 평소 이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 택시 지원단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위기청소년이 발생한 인근 지구대 및 일반택시를 활용하기도 한다.

다. 긴급구조의 물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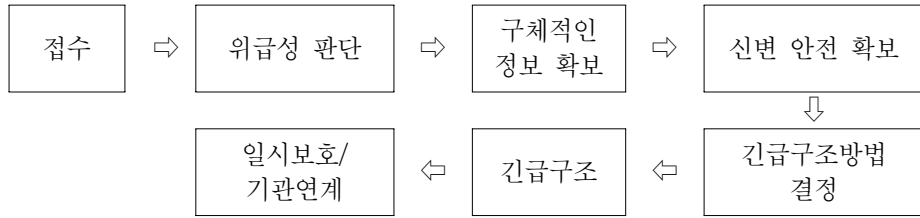
긴급구조의 경우, 필요에 의해 긴급구조차량, 핸드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스총 내지 전기충격기, 응급의료상자 등을 갖추고 있다.

시도의 경우에는 대부분 긴급구조차량과 핸드폰, 응급의료상자 등을 갖추고 있으나, 시군의 경우에는 차량이나 핸드폰을 갖추고 있지 않는 곳이 많다.

긴급구조차량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은 센터에서는 소형차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핸드폰(일명 위기폰)은 긴급출동 시 청소년과 지속적인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다.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는 위기청소년을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경우나 실무자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나 경찰서에서 사용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고 사용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실제로 이를 갖추고 있는 곳은 많지 않고 갖추고 있어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한다.

라. 긴급구조의 절차

긴급구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III-2] CYS-Net 긴급구조 절차

첫째, 접수단계이다. 청소년전화 1388, 센터 대표전화, 사이버상담, 문자상담, 아웃리치, 그리고 기타방법으로 긴급구조 상황이 접수되며, 주로 청소년전화 1388이 활용된다. 청소년전화 1388의 경우, 주간에는 위기지원 팀원들을 포함하여 상담원들이나 1388전화 전담 상담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접수를 담당하며, 야간이나 심야에는 당직자, 1388 전화 전담 상담원, 또는 생활지도원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긴급구조 상담만이 아니라 일반 상담전화를 함께 받게 되므로 요보호 청소년이 긴급하게 전화를 해도 통화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야간에는 담당인력이 소수이므로 전화상담량이 높은 지역에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전화요금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수신자부담 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해 오게 되는데, 기관전화번호가 아닌 '1388'로 수신자부담전화를 시도할 경우 전화연결이 안 되는 실정이다. 임시방편으로 상대방을 확인하려는 안내멘트 시 기관전화번호나 위기폰(휴대폰) 전화번호를 빠르게 불러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 112나 119와 같은 긴급전화로의 등록이 어렵고 전화국 시스템상의 이유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사이버상담의 경우, 대부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주로 일반적인 고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웃리치는 사전에 위기청소년 밀집지역을 선정하고 심야시간대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위기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에 거리나 기차역사 및 변화가 등을 헤매는 경우가 적어 노력에 비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둘째, 위급성을 판단하는 단계이다. 최초 접수자는 청소년이 자살¹⁰⁾, 성 폭력, 물리적 폭력, 성매매업소에서 감금 등의 긴급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아주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위기상황, 현 위치, 인상착의, 연락가능수단 등을 간단하게 파악, 곧바로 112 또는 119에 지원을 요청한 후, 위기지원팀에 상황을 알려 개입하고 있다. 이때 최초 접수자의 위급성 판단능력이 개입의 수준에 영향을 끼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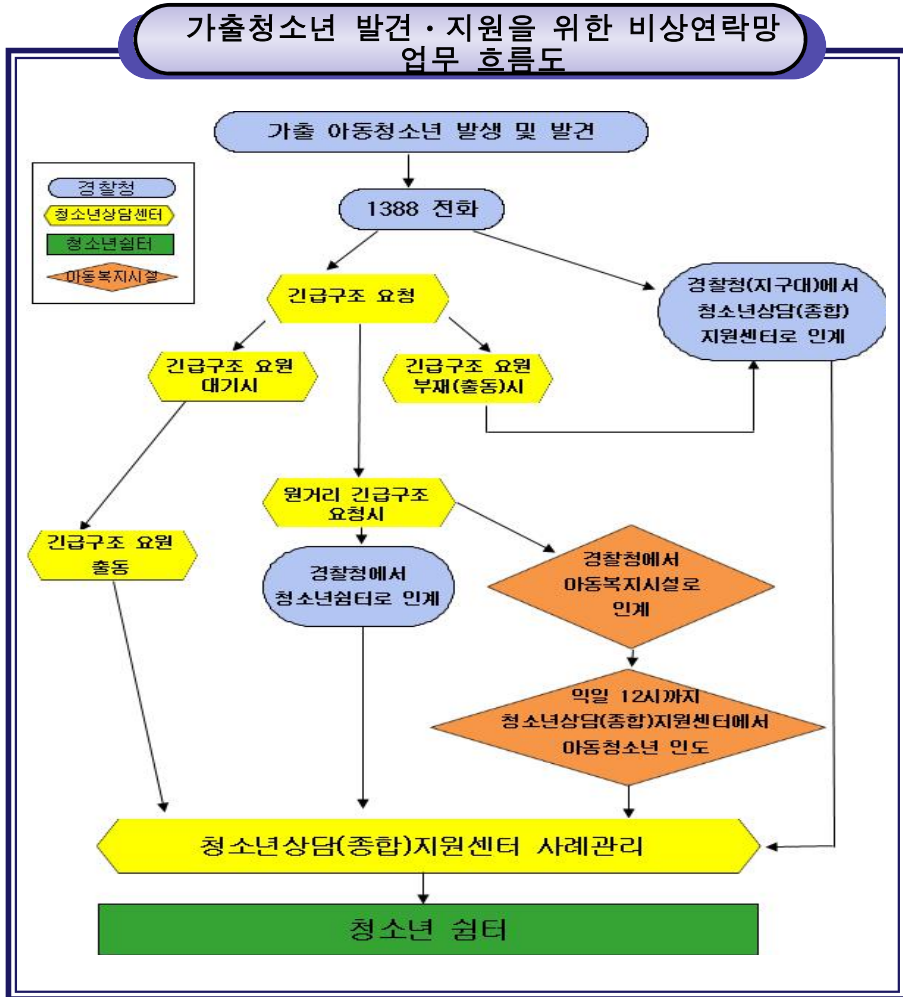
셋째, 위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호소문제 및 개입을 위한 기본정보¹¹⁾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넷째,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단계이다. 위급성 판단 및 구체적인 정보 확인 단계에서 현재 위치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지구대, 병원, 관공서, 1388청소년지원단(PC방, 노래방, 약국 등) 및 기타 영업장 안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구조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보호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섯째, 긴급구조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센터와의 거리, 현재 위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으로 긴급구조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청소년이 찾아올 수 있게 도와야 하는 상황인지 파악 후 대처하고 있다.

10) 위급한 상황에서 최초접수자는 가급적 통화상태를 유지(전화를 끊지 않고)하고 주변에 다른 상담자에게 요청하여 112, 119등에 연락을 취하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1) 인적사항(이름, 성별, 나이), 일행의(함께 있는 친구) 여부, 현재위치, 건강상태(성병, 전염성 질환, 기타 치료가 필요한 상처 및 질병 등), 연락 가능한 수단(휴대폰 등), 금전적 상황(공중전화요금, 교통비 등)



[그림 III-3] 가출청소년 발견·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업무 흐름도(보건복지부)

여섯째, 긴급구조 단계로서 구조가 필요한 경우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방법 모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긴급구조팀이 직접 출동, 1388 청소년지원단 중 발견지원단에게 요청 및 인근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심야시간대에 긴급하게 긴급구조가 어려울 경우나 센터와의 거리가 먼 경우, 청소년이 있는 인근 지역의 긴급구조가 가능한 청소년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지원을 요청하여 긴급구조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망이 구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0). 그렇지만, 청소년 쉼터 및 지구대를 제외하고는 활용도가 낮으며 때때로 상담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거절을 당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위급성의 정도가 낮고 보행이나 자비로 입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발입소(도보, 대중교통)를 요청하기도 하며, 차비가 없는 경우 일반 대중교통 이용 후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긴급구조는 시도센터의 경우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센터의 경우에는 CYS-Net을 실시하는 시군센터와 미실시 센터 간에 차이가 있다. 실시센터의 경우, 평일 주간(09:00-18:00)대에는 자체적인 긴급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적인 긴급구조가 어려울 경우나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시도센터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으며, CYS-Net 미실시 시군구 센터에서는 시도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평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경우 응급상황(병원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생활지도원이 1차 응급개입을 수행하고, 즉시 위기지원팀을 호출하여 개입하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1388 청소년지원단 소속 택시지원단을 1순위로 활용하고, 폭력상황 및 자살 등의 위기상황에서는 소방서 및 경찰과 우선 연계하여 개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 긴급구조 보고체계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사안에 따라 사전보고, 사후 보고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1388전화 및 연계기관 요청에 의한 긴급구조 사안이 발생하면 최초 접수자는 즉시 위기지원팀에 전달하고, 위기지원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구조 업무를 수행한 후 사후에 소장에게 사안 및 개입내용을 보고하는데, 성매매 피해 청소년 개입(업소 단속 등) 등과 같이 사안이 위중하고, 관련기

관 연계 및 직원 안전상의 위험이 동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기지원팀장은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폭력이나 자살 등 아주 신속하게 개입되어야 할 상황의 경우에는 위기지원팀장의 책임 아래 선 조치, 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구조에 관하여 최초 접수부터 개입까지 각 단계별로 ‘CYS-Net 종합정보망’ 및 관련 일지에 진행과정을 기록하고 있으며, 차후 진행과정에 대한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다.

바. 기관연계체계

긴급연계는 CYS-Net으로 연계된 기관, 자체적인 필요에 의한 발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구축 및 확장되고 있으며, 크게 발견체계-최초개입체계-연계지원체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발견체계

첫째, 위기청소년 본인이 직접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이외에도 지구대, 유관기관(여성의 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청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학교, 관공서(동사무소, 구청, 시청, 기차역 공안사무소 등), 문자 상담(#1388) 운영기관,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의해 발견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게 된다.

둘째, 청소년쉼터, 민간 구호단체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발견을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펼치거나, 1388청소년지원단 소속 업소(PC방, 노래방 등) 및 단원에 의해 발견된 위기청소년들이 의뢰되는 경우도 있다.

셋째, 1388 청소년지원단을 통하여 위기청소년들을 발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래방이나 PC방에 출입이 불가능한 오후10시 이후에도 이용하고 있

는 청소년들이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청소년, 가출청소년들을 발견하여 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민간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와 같이 평소 심야 순찰 중에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의뢰하기도 하고 있다.

② 최초개입체계

긴급구조 시 상담지원센터가 독자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연계기관으로는 경찰서(지구대), 소방서, 여성의 전화 1366, 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실이 설치된 병원 및 청소년쉼터 등이 대표적이다.

긴급한 상황을 가정하고, 자살관련 상황에서는 소방서(119)에서는 위치 추적 및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경찰서(112)에도 동시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하여서는 긴급한 정도에 따라 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 여성의 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가출과 관련하여 신속한 구조가 어려울 때는 인근 쉼터 및 가까운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1388청소년지원단과 연계하여 개입하게 된다.

③ 연계지원체계

긴급구조 후 일시보호와 더불어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와 관련된다.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24시간 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료, 법률 등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CYS-Net 연계 기관을 중심으로 병원진료 및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이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귀가지원 후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위기유형별 관련기관 연계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가출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쉼터와 연계를 하게 되는데, 해당 청소년의 욕구 및 상황에 따라 단기, 중장기, 그룹홈 및 아동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지원하게 된다.

학교폭력피해청소년은 원스톱지원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청소년의 경우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1366,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등과 연계하게 된다. 자해·자살관련 청소년은 자살예방센터, CYS-Net 소속 신경정신과 및 응급실 등의 연계기관을 이용하게 된다.

그 밖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센터 내 자원을 활용한 상담지원, 청소년동반자 연계, 해밀센터(학업중단청소년 관리지원), 복지 및 자립지원(검정고시, 직업교육 및 입원치료비 지원, 두드림존 연계 등)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끝으로 연계지원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자살위험 및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정신과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지체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폭력성향 및 전염성질환과 관련하여 청소년쉼터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 긴급구조 외부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1388 청소년지원단이 긴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중 민간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동기를 지속시키고 더 활성화시키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택시조합의 경우 대체적으로 실비를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 외 타 지원단원일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보상하거나 연말에 개인이나 단체

별로 각종 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3) 일시보호 운영 현황

일시보호소는 16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 각 1개소씩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총 17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가. 일시보호소 설치 목적

일시보호소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을 귀가시키거나 보호시설로 연계하기 전까지 보호를 하는 것이다.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잠자리, 식사제공, 초기상담 등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취하게 하여 1차 위험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며, 의료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일시보호소의 대상

위기개입 매뉴얼에서는 가출, 성매매, 가정 및 학교폭력,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가능) 청소년으로 만9세에서 만18세¹²⁾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지적장애인 등 요보호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만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20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위기수준에 따라 입소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소가 거부된다 할지라도 의료, 식사, 쉼터연계, 심리상담 등의 긴급서비스는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기개입 매뉴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시보호소 입소를 거

12)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다른 서비스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일시보호 서비스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19세(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를 제외함)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

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입소대상자가 만취상태이거나 소지품 확인을 거부하거나, 경찰 연계 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청소년을 강제로 입소시킨 후 청소년의 신변을 지켜주기를 원할 때,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 보균자에 대해 단독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입소 시 규칙을 위반하고 퇴소한 후 또는 무단퇴소를 한 후 일정기간(2개월 이내) 동안 입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는 남녀동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보호소도 있고, 이외에도 일시보호소 마다 입소거부 대상자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입소거부 대상자라 할지라도 긴급구조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외부 기관에서 보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 회의를 통해 입소를 허가하기도 한다.

이렇듯 시설마다 규정들이 통일되지 않아 일부 일시보호소 입소생들은 상담, 귀가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거부하고 일시보호소를 순회 이용하는 상습 이용자가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소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 최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위기 청소년의 특성 상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청소년뿐 아니라 실무자 또한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다. 일시보호소 조직 및 인력

일시보호소는 위기지원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위기지원팀은 일시보호소 운영만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긴급구조도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적으로 위기지원팀 내 팀장1명과 팀원2명, 비정규직인 생활지도원 4명 내외 및 공익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센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통 정규직 직원은 평일 주간을 담당하고, 생활지도원은 평일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지도원은 대체적으로 남자1명, 여자1명이 2인1조로 격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정규직 직원들이

숙직을 서는 곳도 있으며, 시간제를 활용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생활지도원이 일시보호소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긴급구조, 1388 청소년전화 수신을 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생활지도원과 1388 청소년전화 전담요원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다.

일시보호소를 담당하는 위기지원팀은 사회복지나 상담전공자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데, 상담전공자들의 경우 자신의 전문성 및 직업정체감에 혼란을 겪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라. 일시보호소의 물리적 환경

일시보호소는 대체적으로 남녀 구분하여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소 남녀 각각 1개의 방과 샤워실(세탁실), 화장실, 지도자실 등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숙소와 휴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다양하고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다.

또한 일시보호소는 상담지원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기도 하고, 센터 건물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경우도 있다. 센터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서비스동선이 짧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지만, 입소생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층을 달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남녀 숙소를 층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인력이 요구되는 바, 운영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시보호소의 위치는 전철역과 근접한 곳이 이용청소년들에게 접근이 용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고, 전철역 등 접근성이 편리한지의 여부가 청소년의 시설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시보호소 수용 정원은 남녀 각각 적게는 4명, 많게는 20명으로 범위가 넓다. 식사는 주로 매식을 하고 있으며, 식당 영업종료 후에는 컵라면, 핫반 등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 안에는 안전을 위해 소화기, 비상구 안내도, CCTV, 보완업체와 연결된 비상벨, 응급의료상자, 간식,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도서, 보드게임, 생활필수품 및 의복 등을 갖추어 놓

고 있다.

마. 일시보호소 예산

일시보호소 운영예산은 기본적으로 주식 및 부식비, 피복비, 교통비, 교육경비, 의료비 및 수용비 등으로 편성된다. 운영예산은 시도센터별로 평균 입소청소년 수, 일시보호소 프로그램 및 청소년의 주요 욕구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이 책정되어지고 있고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이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예컨대 가출청소년의 특성 상 거의 대부분의 입소청소년들이 갈아입을 속옷이나 겨울철 기본적인 방한을 위한 의복 등이 없고 제한된 예산으로는 충족되지 않아 관련 단체의 후원이나 센터직원들을 통한 의복 후원 등을 추가로 받기도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생활지도원 인건비가 센터 인건비로 따로 책정되어지거나 일시보호소 사업예산 안에 포함되기도 한다. 인건비 금액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며, 시급제 계약직 또는 월급제 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갖는다.

바. 일시보호소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제공되어진다(보건복지부, 2010 : 28). 또한 위기청소년이 입소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소년쉼터 등 마땅한 연계시설을 찾지 못하는 경우, 심리치료·의료지원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1주일까지 보호가 가능¹³⁾하도록 하고 있다.

13)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입소한 청소년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정방문, 보호자면담, 경위파악 및 격리보호를 위한 행정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일반적으로 1주일 이상 필요) 청소년쉼터에 연계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취약한 해당 청소년이 쉼터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일시보호소에서 1주일 이상 보호하기도 함.

사. 일시보호 서비스 절차

일시보호관련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공되어 지게 된다.

우선 의뢰단계에서는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의뢰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밖에 경찰서 등 관련기관 의뢰, 아웃리치, 센터 상담원 및 청소년동반자 등에 의해 진행되는 고위기 사례 등이 있다.

일시보호소에 입소하기까지의 과정은 긴급구조부분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며, 외부자원(지역주민, 관련기관 및 1388청소년지원단 등)에 의해 의뢰된 경우에는 추후에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알린다.

의뢰요청을 받게 되면 입소거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응급한 경우나 연계기관을 통하여 요청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 밖에 입소거부 사유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인 서비스(샤워, 식사, 의료, 보호시설 연계 등)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해당 일시보호소를 운영하는 센터에 따라 각기 다른 내규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가출청소년이면서 전국의 일시보호소 및 쉼터를 돌아다니는 청소년들 중에는 각 일시보호소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필요에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기도 한다.

<표 III-2> CYS-Net 일시보호 서비스 절차

순서	절차	내용	서식
1	의뢰	위기(가능)청소년 의뢰 및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스크리닝 척도 ●의뢰서 ●신병인수·인계확인서 ●요보호대상자 인수·인계 확인서

2	보호여부 판정	입소제외대상 -음주, 혼숙, 전염성 강한 질병 보균 자 -경찰에서 지명수배 및 보호관찰 중 인 자	
3	입소 및 보호	○ 일시보호 서비스 이용자 -시설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입소자 건강상태 점검 -기초 생활지원(숙식, 피복지급 등) -상담 및 기타 서비스 -입소청소년의 욕구(need)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테이크 슈트 ●입·퇴소자 카드 ●서약서 ●물품보관서
	대안모색	-시설연계 등 적절한 지원방향 설계	
	일과수행	-입소 청소년 일정표 및 일과표에 따 름 -프로그램이용 소감문(필요시)작성	일시보호 업무일지
4	퇴소	○일시보호 서비스 이용자 -귀가조치 및 시설인계 등의 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보호소 이용 평 가서 ●신병인수·인계확인서 ●요보호대상자 인수· 인계확인서
5	사후관리	○전화, 채팅,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퇴소 후 근황에 대한 관리 -필요시 상담 및 연계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기록지

일단 요보호 청소년이 입소하게 되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입소서류 작
성과 함께 일시보호소 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된다. 이후 위기
지원팀 담당자는 개별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위기상황분석 및 욕구를 파
악하고 팀 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연계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서비스와 숙식제
공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고, 개입방향에 따라 보호자와의 연락, 가
출신고 확인,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히 보호자와의
연락은 기본적으로 가정폭력 등의 위기상황을 충분히 탐색한 후에 시도하
게 된다.

일시보호소 입소기간(24시간)에는 무리한 프로그램 진행보다는 개인 상
담을 기본으로 충분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필에 따라 약물·성·

폭력 등에 관한 예방교육 및 간단한 상담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입소 청소년 퇴소 시 귀가지치 및 보호시설연계를 우선으로 하며, 보호자가 직접 내방할 경우 부모 상담을 하고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게 된다. 보호자가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나 보호시설에 연계하는 경우, 위기지원팀 담당자에 의한 직접 인계를 원칙으로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 경우 보호자 및 보호시설 담당자와 직접통화한 후 기차역이나 터미널에 가서 직접 티켓을 끊어주고, 청소년이 잘 도착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사후관리의 경우 지역별 일시보호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오전 팀회의를 통하여 사후관리 대상자 및 관리방법을 의논하고, 전화, 사이버, 직접방문 및 내방상담, 기관연계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4) 위기유형별 운영현황¹⁴⁾

가. 가출청소년 위기개입상담

가출청소년 위기개입상담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 혹은 타의에 의하여 집을 나와 24시간 이상 떨어져 생활하는 청소년에 대해 귀가지원, 보호시설연계,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시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개입상담을 의미한다. 위기개입 매뉴얼에 제시된 개입절차는 상담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 및 긴급구조, 상담, 일시보호, 의료지원, 귀가지원 및 입소의뢰, 사례종결과 사후관리로 구분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 자살위기청소년 위기개입상담을 제외한 위기유형별 운영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펴낸 위기개입 매뉴얼(노성덕 외 3인, 2008)을 주로 참고하였고, 특별히 심각하고 빈번한 가출, 성매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자살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최초 상담의뢰는 대부분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하여 가출청소년 및 가족, 경찰 등 관련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초 접수자는 대상자의 일반사항, 가족사항, 욕구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문제유형을 파악한다. 또한 가출 시도 직전에 가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인지, 처음 가출이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지, 일시보호소 및 쉼터입소를 희망하고 있는지, 귀가를 원하지만 교통비가 없거나 부모의 반응이 걱정되는 경우인지, 가출 후 근로권 침해, 폭력위협, 성매매 등의 2차적인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지, 가출 자녀를 둔 부모인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단순 가출 이외의 긴급을 요하는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인적사항, 현재 위치, 연락 가능한 수단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112 또는 119에 곧바로 지원을 요청한 후 위기지원팀장에게 상황을 알려 필요시 긴급구조를 지원하게 된다. 긴급을 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출시도 전이거나 첫 가출일 경우에는 가급적 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가까운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¹⁵⁾

일시보호소나 쉼터입소를 희망할 경우, 긴급구조절차에 따라 입소를 지원한다. 일시보호소 입소 후 일시보호 서비스 절차에 의거하여 사례개입을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 경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112 또는 182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를 통해 가출 또는 실종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청소년성매매 위기개입상담

청소년성매매 위기개입상담은 조건만남(인터넷 성매매)·티켓다방·보도방 등의 성매매 과정에서 심리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게 법률적·의료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와 성매매 재유입 예방을 통한 자

15) 가출 전 및 첫 가출자들의 경우에 일시보호소나 청소년쉼터에서 다른 가출청소년들과 만나게 되면 장기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의를 요한다.

립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발견되면 법률지원, 의료지원, 지지상담 등을 통하여 성매매로 인한 심리적·육체적 상처를 치유하고, 탈 성매매지원 및 성매매 재유입 예방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게 된다.

위기개입매뉴얼에 제시된 개입절차는 최초 상담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 및 긴급구조, 일시보호, 상담, 수사의뢰, 조사동행 및 법률지원, 의료지원, 귀가지원 및 보호시설입소,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의 순서로 구분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의뢰는 청소년전화1388,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 내담자 및 가족, 관련 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최초 상담접수자는 내담자의 피해 상황, 피해 기간, 현재 상황, 보호자 및 보호자 연락 유무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과거 성매매경험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담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 긴급 상담으로 분류접수하게 되고, 가급적 여성상담자에게 배정하여 심리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상담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있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기지원팀장을 통해 센터소장에게 보고되어지고, 최단 시간 내에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사례회의(솔루션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 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 및 소장이 참석하게 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기관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긴급하게 자문 및 연계협조를 구하거나 필요시 공문을 발송하여 솔루션회의를 실시하게 된다. 사례회의에서는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내담자의 위치 및 위험정도를 파악하는 동시에 긴급구조, 기관연계 등 개입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 경찰청 117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고, 연계기관에서 직접개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주호소문제 등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고, 내담자가 해당기관으로 방문 혹은 전화상담 등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심야시간 대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 후 일시보호 한 후에 기관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긴급구조 시 2명 이상이 동행하게 되며, 출발 전에 지역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또는 지역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며, 내담자가 위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급적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긴급구조 후 보호자 인계가 어렵고,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의 지원으로 인하여 장시간 보호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최대 1주일 이내에 일시보호소에서 보호하고,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입소청소년들로 인하여 안전한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안전하고 단/장기보호가 가능한 성폭력상담소 비밀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법적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위기지원팀 실무자, 센터 내 상담자 또는 청소년동반자를 지정하여 심리상담 이외의 조사동행,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지지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솔루션회의를 통해 외부기관과 공조하여 내담자를 지원하게 될 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심리 상담을 통한 치유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성폭력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의료, 법률, 심리치료 또는 보호 등의 지원을 하게 되나, 필요에 따라 직접 CYS-Net 으로 연계된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변호사 등을 활용하여 내담자를 지원하기도 한다.

기본적인 지원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내담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 및 개인상담, 가족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다. 성폭력피해청소년 위기개입상담

성폭력 위기개입상담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도우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발견되면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처

를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위기개입 매뉴얼에 제시된 개입절차는 상담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 및 긴급구조, 상담, 의료지원, 일시보호, 조사동행 및 법률지원, 사례종결과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최초 상담의뢰는 청소년전화 1388 및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 내담자 및 가족, 관련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최초 접수자는 긴급을 요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내담자의 일반사항, 가족사항(보호자 연락유무 포함), 욕구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과거 성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담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 긴급 상담으로 접수하고, 가급적 내담자와 동성인 상담자에게 사례를 배정하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례담당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있는 지를 면밀하게 탐색하게 된다.

지금 당장 성폭력피해 위험에 직면해 있거나 피해 직후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112 또는 119에 지원을 요청하고 위기지원팀장에게 보고하게 되며, 필요시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위기지원팀에서 긴급구조 한다.

그 밖의 위기개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기지원팀장을 통해 센터소장에게 보고되어지고,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사례를 개최하게 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 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 및 소장이 참석하게 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기관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긴급하게 자문 및 연계협조를 구하거나 필요시 공문을 발송하여 솔루션회의를 실시하게 된다. 사례회의에서는 내담자의 인적 사항, 지지체계, 피해 상황, 파악된 욕구 등을 토대로 개입 계획 및 방법 결정, 기관연계 등 개입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 112, 경찰청117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윈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전담센터) 등이 있고, 연계기관에서 직접개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주호소문제 등을 최대

한 자세히 알려주고, 내담자가 해당기관으로부터 방문 혹은 전화상담 등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긴급구조 후 보호자 인계가 어렵고,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의 지원으로 인하여 장시간 보호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최대 1주일 이내에 일시보호소에서 보호하고,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하거나 다른 입소청소년들로 인하여 안전한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 안전하고 단/장기보호가 가능한 성폭력상담소 비밀보호시설 등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는 폭력가해자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가급적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비밀보호시설에 연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의료, 법률,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게 되지만, 필요에 따라 직접 CYS-Net 으로 연계된 산부인과 또는 응급실, 신경정신과, 변호사, 경찰 등을 활용하거나 의료비지원 등을 통하여 내담자를 지원하기도 한다.

법적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위기지원팀 실무자, 센터 내 상담자 또는 청소년동반자를 지정하여 심리상담 이외의 조사동행,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지지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솔루션회의를 통해 외부기관과 공조하여 내담자를 지원하게 될 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통한 치유 및 2차 피해 방지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기본적인 지원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내담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 및 개인상담, 가족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라. 학교폭력피해청소년 위기개입상담

학교폭력피해청소년 위기개입상담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도우며,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이 발견되면 내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위기개입 매뉴얼에 제시된 개입절차는 상담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 및 긴급구조, 상담, 의료지원, 합의중재 및 법률지원, 사례종결과 사후관리로 구분되어 있다.

최초 상담의뢰는 청소년전화1388,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서 내담자 및 가족, 교사, 관련 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초 접수자는 내담자의 인적 사항, 욕구, 보호자(학교담임) 및 보호자(학교담임) 연락 유무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일반적인 학교폭력 관련 대처방안 및 법률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전화 상담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을 안내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방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지원팀장에게 보고하고 상담접수를 통하여 심리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심리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한다.

지금 당장 학교폭력 위험에 직면해 있거나 피해 직후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곧바로 112 또는 119에 지원을 요청하고 위기지원팀장에게 보고하게 되며, 필요시 긴급구조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의 위기개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기지원팀장을 통해 센터소장에게 보고되어지고,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사례를 개최하게 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 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 및 소장이 참석하게 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기관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긴급하게 자문 및 연계협조를 구하거나 필요시 공문을 발송하여 솔루션회의를 실시하게 된다. 사례회의에서는 내담자의 피해 상황, 욕구, 지지 자원 등을 파악하여 개입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 112, 경찰청117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윈스톱지원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이 있고, 연계기관에서 직접개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주호소문제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고, 내담자가 해당기관으로부터 방문 혹은 전

화상담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연계기관, 학교, 보호자 등에 의해 의료, 법률 및 심리 치료가 이루어지나, 필요 시 직접 CYS-Net 상의 병원(응급실), 변호사, 경찰서,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중재를 지원하기도 한다.

솔루션회의를 통해 외부기관과 공조하여 내담자를 지원하게 될 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심리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통한 치유 및 2차 피해 방지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기본적인 지원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내담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 및 개인상담, 부모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가해청소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마. 가정폭력(아동학대)피해청소년 위기개입상담

가정폭력피해청소년 위기개입상담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도우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가정폭력피해 청소년이 발견되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위기개입 매뉴얼에 제시된 개입절차는 상담접수, 사례판정, 기관연계 및 긴급구조, 상담, 일시보호, 의료지원, 합의중재 및 법률지원, 사례종결과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최초 상담의뢰는 청소년전화1388,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 내담자 및 가족, 관련 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초 접수자는 내담자의 일반사항, 가족사항, 욕구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피해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 문제가 위기적인 상황인지 혹은 지속적인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지금 가정폭력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지 폭력사건 발생 후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학교, 가족, 친구관계 등 피해자 주변의 지지기반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족의 개입, 역할)를 확인하게 된다.

지금 당장 가정폭력 위험에 직면해 있거나 피해 직후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곧바로 112 또는 119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른 가족 등 지원가능자에게로 피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 필요시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긴급구조를 시행하고 있다. 긴급구조를 통한 일시보호 입소 시 일시보호소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들이 머무는 곳을 감안하여 입소기간이 길어질 경우 청소년쉼터나 친척 등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마련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안전한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가정폭력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1차 전화상담을 진행하거나 전문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의전화 1366)을 안내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위기개입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기지원팀장을 통해 센터소장에게 보고되어지고,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사례를 개최하게 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 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 및 소장이 참석하게 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기관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긴급하게 자문 및 연계협조를 구하거나 필요시 공문을 발송하여 솔루션회의를 실시하게 된다. 사례회의에서는 내담자의 인적 사항, 지지체계, 피해 상황, 욕구 파악 등을 토대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의 상황이나 문제가 긴급을 요하여 위기개입, 응급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117 학교·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112, 여성의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있고, 연계기관에서 직접개입이 가능한 경우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주호소문제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고, 내담자가 해당기관으로부터 방문 혹은 전화상담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필요 시 CYS-Net 상의 연계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솔루션회의를 통해 외부기관과 공조하여 내담자를 지원하게 될 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 일시보호, 심리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통한 치유 및 2차 피해 방지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기본적인 지원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전화 및 개인상담, 부모상담, 방문상담, 사이버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바. 자살위기청소년 위기개입상담

자살위기청소년 위기개입상담은 자살위기청소년의 자살방지 및 구체적인 탐색과 대안마련을 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절차는 자살위기평가, 긴급개입, 신속한 라포 형성, 정서다루기, 욕구 확인하기, 구체적인 탐색과 대안마련, 종결 및 사후 관리로 이루어진다.

자살위기청소년 상담의 경우, 최초 상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으로 센터 내 모든 상담자들에게 평소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게 하고 다양한 자살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초 상담의뢰는 청소년전화 1388 및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 내담자 및 가족, 관련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초 접수자는 내담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자살위험성을 평가하고, 일반사항, 가족 등 지지자원 등을 파악한다.

자살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지금 당장 자살시도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도한 경우에는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현재위치를 최대한 파악하고 내담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동료상담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112, 119에 지원을 신속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위기지원팀장에게 보고하여 필요시 연계기관과 공조하여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최

초 접수자는 자살시도를 중단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살위기상황에서 긴급구조 된 내담자는 자살 위험도에 따라 긴급입원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경정신과 치료 및 입원이 필요함과 입원조치 전까지 24시간 근접 보호가 필요함을 설득한다. 또한 일시보호소에 입소할 경우, 되도록 같은 공간에 다른 입소자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실무자 또는 야간생활지도원이 근접해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긴급 상담으로 접수하고 상담지원팀장에게 보고 하여 지속적인 상담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필요시 상담지원팀장은 센터소장에게 보고하고, 내부사례회의 또는 외부사례를 개최하게 된다. 내부사례회의에는 최초접수자, 위기지원팀장, 상담지원팀장 및 소장이 참석하게 되고,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관련기관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으로 긴급하게 자문 및 연계협조를 구하거나 필요시 공문을 발송하여 솔루션회의를 실시하게 된다. 사례회의에서는 내담자의 인적 사항, 지지체계, 자살위험도, 욕구 파악 등을 토대로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연계지원 및 정신과 입원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주요연계기관으로는 112, 119,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생명의 전화 및 한국자살예방협회 등이 있고, 연계기관에서 직접개입이 가능한 경우 내담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주호소문제 등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고, 내담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솔루션회의를 통하여 외부기관과 공조하여 내담자를 지원하게 될 경우, 상담지원센터에서는 내담자 및 보호자 상담, 긴급의료비 지원, 추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CYS-Net 연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한 지원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내담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 및 사이버를 활용하거나 내방을 요청하여 개인상담, 부모상담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2) 학생안전통합시스템 현황¹⁶⁾

(1) Wee프로젝트의 추진 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학업중단,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정서 불안 등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한 3단계 안전망으로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였다. 당시에는 이미 청소년정책의 주 추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CYS-net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제시되었던 상황이었으나 학교중심의 안전망이 요구되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가 Wee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들이다.

첫째, 학생들의 중복적 위기 증가: 학업중단이나 학교부적응과 같은 교육적 위기와 폭력, 가출 등의 개인적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중복 비행을 저지르는 위기 학생이 증가하였다.

둘째, 학교 내의 1 차 예방 및 개입 시스템의 한계: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중복 노출된 위기학생들에 대한 특별관리 시스템 부재로 학교 차원의 선도 및 지원에 한계가 노출되었다.

셋째,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2008년 3월)로서 ‘즐거운 학교 만들기’ 추진 방안 중 하나로, 학교부적응 등 돌봄 학생을 위한 인성책임제 실천 및 내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요구되었다.

넷째, 2008년 4월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 우려하던 일에 맞닥뜨려지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 대처가 시급하게 요구되었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이루어졌다.

다섯째, 일선학교에서 보고되는 사례들은 단지 담임교사가 인성개발이나 생활지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폭력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로서 가리어진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고, 폭력피해자는

16) 이 부분은 금명자(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음.

PTSD 수준의 증상을 보였다. ADHD를 초기에 다루지 못해 품행장애로 나타나는 폭력이나 따돌림 문제, 인터넷 중독 등은 일선의 전문상담교사나 상담담당교사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학교 밖의 시설이나 병원에 보내거나 개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저항이 있어 공교육 체계 내에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되었다.

여섯째,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해 출산율을 올리는 대처와는 다르게 Wee프로젝트는 이미 출산된 인력의 손실을 막고, 사회비용을 줄여 저출산에 대처하는 입장을 취한다.

(2) Wee프로젝트 명칭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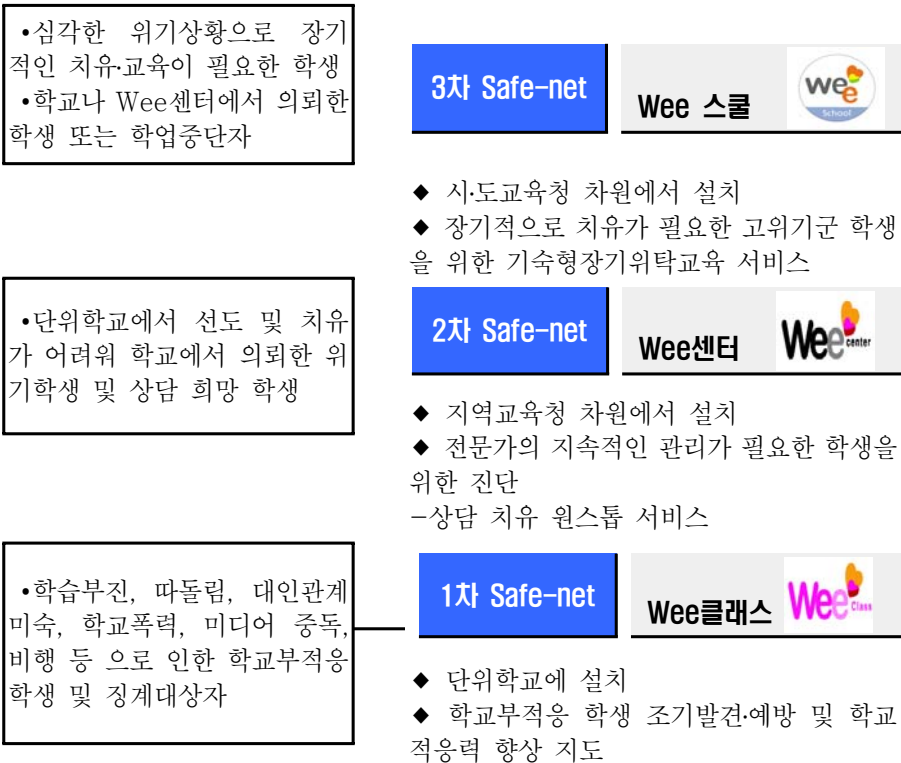
국정과제 ‘학교안전통합시스템’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브랜드화 하여 국제적으로 홍보, 수출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Wee'라는 명칭의 재정의가 이루어졌다.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로서, 어른들은 나(I)와 너(you)속에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학생은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Wee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를 내포한다. 주 대상은 위기학생, 보조대상은 일반학생으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새 시대의 학생생활지도 전략이다.

(3) Wee프로젝트 목적 및 내용

Wee프로젝트의 목적은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다중의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여 학교부적응 학생 해소 및 인적 자원의 유실을 방지하는데 있다.

Wee프로젝트는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으로 구축되어 Wee클래스 - Wee센터 - Wee스쿨의 3단계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차 단위학교 내에는 Wee클래스 운영하고, 2차 지역교육청에 Wee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마지막으로 3차 시도교육청에 Wee스쿨을 설치·운영함을 말한다. 이때 Wee스쿨은 학업과 상담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기숙형 Wee센터를 의미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위한 시스템이기보다는 학업 중단이나 가출 등으로 숙식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거나 학업 및 학적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심리적 평가와 상담 및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적 개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림 III-4] Wee프로젝트 체계도

(4) Wee프로젝트 설치 및 추진 현황

다음에는 전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Wee프로젝트 기관들의 현황과 직원 배치 현황이다. 16개 시도에 학생 수와 예산 및 지역교육청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다. 2011년까지 전국 180개 교육청에 모두 설치될 예정이다. 직원 현황을 통해, Wee센터의 개입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전문상담교사 외에 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임상심리사, 상담과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상담사 및 학생들의 다양한 지원을 연결하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 팀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 > Wee프로젝트 기관현황

(단위: 개)

	Wee클래스				Wee센터				Wee 스쿨			
	'08	'09	'10	합계	'08	'09	'10	합계	'08	'09	'10	합계
서울	31	80	100	211	2	4	5	11	·	·	·	·
부산	75	95	80	250	2	3	·	5	·	·	·	·
대구	80	84	45	209	2	2	·	4	·	·	·	·
인천	25	82	36	143	2	4	·	6	·	·	1	1
광주	30	32	30	92	2	1	·	3	·	1	·	1
대전	25	37	37	99	2	1	·	3	·	·	1	1
울산	25	31	34	90	2	1	·	3	·	·	·	·
경기	30	122	210	362	2	5	6	13	·	·	·	·
강원	25	48	28	101	2	3	1	6	·	·	·	·
충북	27	77	20	124	2	6	2	10	·	1	·	1
충남	25	61	31	117	2	5	2	9	·	1	·	1
전북	25	65	31	121	2	4	2	8	·	·	·	·
전남	25	81	50	156	2	5	2	9	·	·	·	·
경북	32	45	92	169	2	2	5	9	·	·	·	·
경남	25	51	160	236	2	2	5	9	·	·	·	·
제주	25	9	16	50	1	1	·	2	·	·	·	·
합계	530	1,000	1,000	2,530	31	49	30	110	·	3	2	5

<표 III-4> Wee센터 직원현황

시·도·교육청	전문 인력 현황										멘토	비고	
	지역 교육청	전문 상담 교사	전문 상담 사	사 회 복 지 사	임상 심리사		전문 상담 인턴 교사	의 료 인	행 정 인 원	기 타			총 인 원
	Wee센터 개수				상 근	비 상 근							
합 계	80	146	153	84	50	14	45	0	1	26	512	233	

(5) 학교 근거(school based) 개입으로서의 Wee프로젝트

청소년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청소년들의 위기는 학교부적응에서부터 시작된다. 교실에서 학교부적응 행동이 발견되거나 교실의 담임교사가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와 한계가 있다. 담임은 학교 내 Wee클래스의 전문상담교사에게 의뢰하여 1차 개입을, Wee클래스의 전문상담교사는 필요시 2차 개입을 위해 교육청 수준의 Wee센터에 의뢰한다. 교실과 학교는 발굴시스템으로서 혹은 1차 개입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후에 기술되는 학교근거개입의 특성, 조직, 흐름도 등은 이중한, 금명자·최윤경·장홍재(2008)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참고로 하였다.

가. 1차 발굴 시스템 : 학교-교실

1차 발굴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담임교사는 지각이나 결석 등 출결사항을 통해 위기 학생을 감지한다. 다음으로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는 수업태도나 성적의 변화를 통해 위기 학생을 감지한다. 급식하는 모습(혼자 먹거나 식사를 하지 않거나 등), 체육시간이나 이동수업시간의 참여 사항을 보고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 이해한다. 반에 또래상담자나 급장을 통

해 학생들의 교실에서의 생활을 탐색, 이해한다. 학교 교칙이나 규율을 어겨 처벌이나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발생한다. 교실에서 발달적 필요나 집단교육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담임교사는 발굴된 학생을 Wee Class의 전문상담교사나 담당교사에게 의뢰한다.

나. 2차 개입 시스템 : 학교 - Wee Class

2차 개입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우선 Wee클래스 교사는 학생을 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을 통해 이해한다. 필요에 따라 학생 부모를 학교로 초대해 면담하고 협조를 구한다. 평가결과에 따른 적절한 상담을 실시한다. 규칙적인 학생 발달 및 적응 평가를 실시하여 상담 수요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일부 교실이나 학년별 혹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Wee클래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Wee Center에 의뢰한다. 이때 Wee클래스의 담당교사(전문상담교사)는 Wee센터에 의뢰서와 함께 의뢰한다.

다. 3차 개입시스템 : 교육청 : Wee Center

3차 개입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먼저 Wee Center 전문상담교사는 일선 학교로부터 의뢰서와 함께 내담자를 면담하고, 내담자를 다양한 수준(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학업적, 사회지지적)에서 평가한다. 전문상담교사는 센터 내에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적절한 개입을 논의, 계획한다. 평가 후, 기숙형 개입이 필요할 때는 Wee스쿨로, 가정형 개입이 필요할 때는 가족형 Wee센터로 의뢰한다. 결과에 대하여 내담자와 부모, 학교에 평가, 개입 계획 등을 알리고 동의를 구한다. 상담 및 다양한 개입을 실시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학교와 부모에게 상담 진행과정을 알리고 필요한 협조를 구한다. 상담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내담자를 비롯해서 학교, 부모에게 알린다. 종결 시 종결 평가를 실시하고 내담자를 비롯해서 학교, 부모에게 알

린다. 모든 상담과정은 서식에 맞추어 기록한다.

라. Wee스쿨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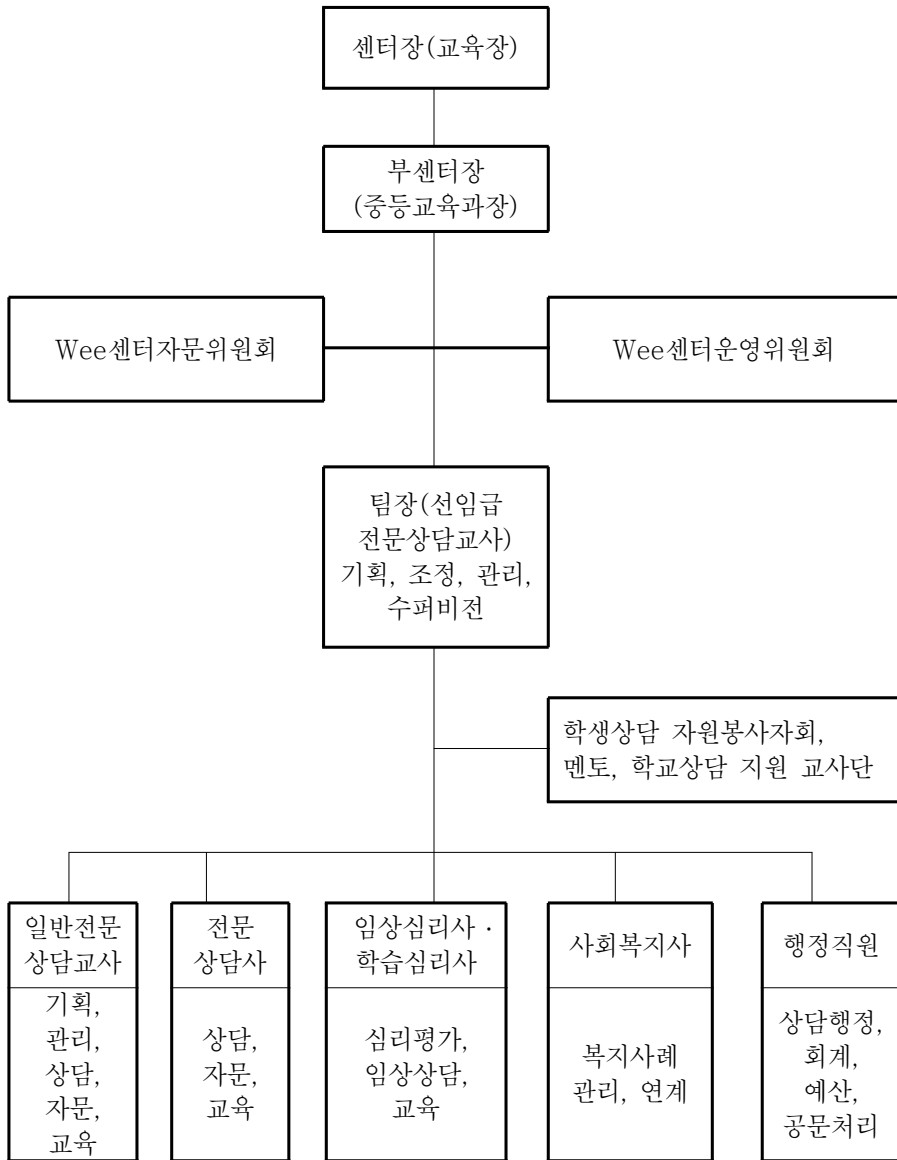
Wee스쿨의 특성은 일반과목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학년에 맞는 공교육이 이루어진다. Wee스쿨 내에는 ‘평가-상담-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학력이 인정되는 공교육과 전문적 치료·상담 및 생활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치료형 대안학교이다.

(6) Wee센터 차별적 특성 및 조직도

Wee센터는 일선학교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심각한 돌봄 학생을 광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평가, 상담, 치료, 지원하므로 지금까지 일선학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 부담을 해결할 수 있다. 교육감 및 교육장 그리고 장학관이 센터의 책임자로서, 예산이나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장학관이 책임을 맡고,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학교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한 사례에 대해 평가 → 상담, 지원 → 치료 등 단계적 개입을 실시하므로 다룰 수 있는 사례가 광범위하며, 해결 완성도가 높다. 센터 내에 임상, 상담, 복지 등의 전문가들이 있어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하고 통합적 역할이 수행될 수 있다. 전문상담교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학교, 교육, 상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Wee센터에서는 등교거부 및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학교복귀지원프로그램,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교생활 곤란자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학업 및 진로지원을 위한 집중프로그램,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조손가정 프로그램 등 집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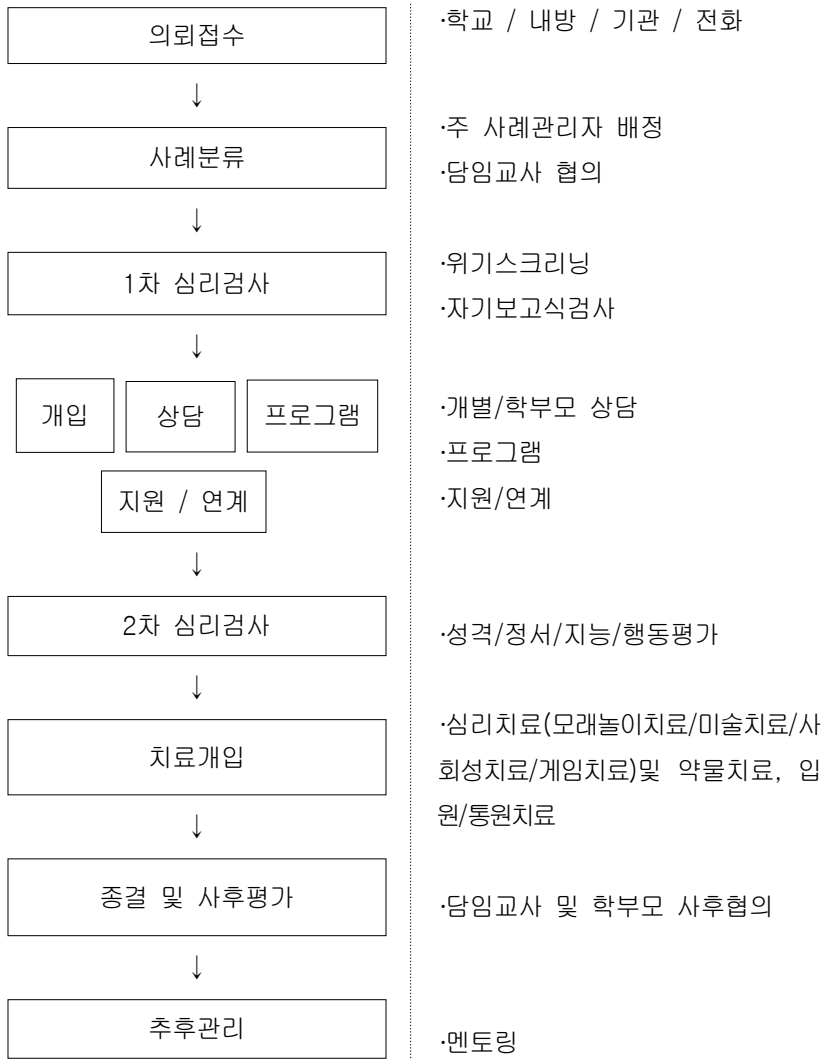


[그림 III-5] Wee센터 인적 구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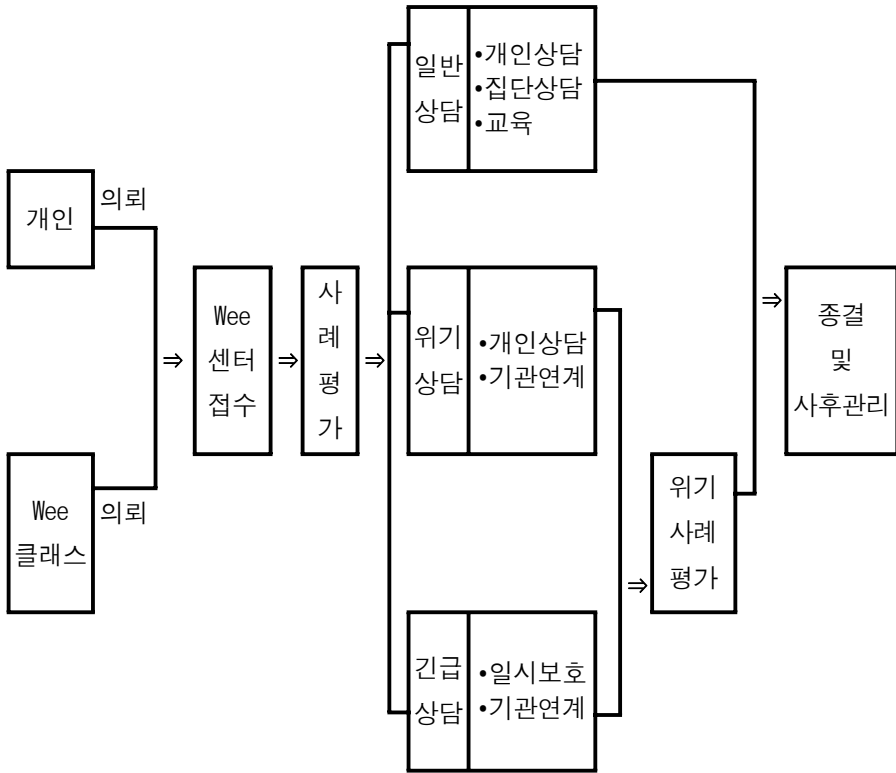
(7) Wee센터의 사례관리 흐름도

다음에 두개의 흐름도를 소개한다. 일반 흐름도는 Wee센터에 사례가 접

수된 후에 이루어지는 관리 흐름도이다. Wee센터의 일반흐름도의 특징은 심리검사가 2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 후 개입이라는 전문성을 강조한다. 기관연계 흐름도는 Wee클래스, 센터 및 스쿨로 연결되는 흐름도이다.



[그림 III-6] Wee센터 일반 흐름도



[그림 III-7] Wee센터 기관 연계 흐름도

2. 분야별 지원체계¹⁷⁾

1) 청소년쉼터 현황

(1) 개관

청소년쉼터는 긴급구호에 있어서 구조 후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 특

17) 이 부분은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현황 및 도표자료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았음.

히 일시·단기쉼터의 경우 즉각적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핵심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49조¹⁸⁾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¹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및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일시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운영현황

가. 쉼터의 유형

청소년쉼터는 가출기간·보호 등을 고려하여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로 각각 특화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를 위해 일차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은 일시쉼터라고 할 수 있다. 일시 쉼터는 24시간 이내의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청소년과 거리생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 검사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출청소년을 구조하고 발견하여 다른 유형의 청소년쉼터와 연결하는 기능도 한다. 물론 먹거리와 음료수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도 포함한다. 종류에는 차량을 통해 운영하는 이동형과 청소년유동 지역에 상설해있는 고정형이 있으며, 전국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8)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표 III-5> 청소년쉼터의 유형

구 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기 간	24시간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 단기보호	2년 내외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기 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제공 -가정 및 사회복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지	자립지원
개소수	10	47	24

단기 쉼터는 3개월 내외의 단기 보호를 하며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다.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을 주로하며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및 사회복지를 위해 가출청소년을 분류하고 다른 기관과 연계·의뢰하기도 한다.

중장기 쉼터는 2년 내외의 중장기보호를 하며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의 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이다. 단기쉼터와는 달리 자립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이 이용대상이다.

나. 컴퓨터의 이용현황

2009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정원(822명) 대비 입소인원(653명)으로 집계되어 이용비율은 79.4%로 보고되었다. 이용인원은 16,519명인데 남자청소년(7,903명)에 비해 여자청소년(8,616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여성가족부의 운영현황자료에는 81개소의 컴퓨터만이 보고되었으나 이외에도 국고의 지원을 받지 않는 컴퓨터가 다수 존재한다. 주로 종교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컴퓨터도 국가 수준의 최소한의 요건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컴퓨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체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청소년 컴퓨터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중 2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게 되어있다.²¹⁾ 또한 시설 면에서는 숙식시설(침실·식당실 및 욕실을 포함), 단체활동실 1개소, 상담실 1개소, 사무실 1개소가 구비되도록 되어있다.

① 인력

집계된 컴퓨터의 종사자는 356명으로 정규직이 286명, 계약직이 70명으로 개소 당 평균 4.3명으로 파악되었다. 인력의 계약형태는 지역별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컴퓨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운영되며 인건비와 사업운영비가 지급된다. 청소년컴퓨터 운영 국고 지원 예산은 매년 늘었지만²²⁾ 지역에 따라 다른 고용양상과 인건비 지급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달라서 지역별 서비스 수준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컴퓨터의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 및 개선이 필요

20) 여성가족부의 운영현황자료.

2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

22) ※ '06년 3,530백만원→' 07년 4,260백만원→ '08년 4,439백만원→' 09년 4,551백만원

한 실정이다.

② 지역별 현황

청소년 쉼터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81개소 중 30개소가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넓은 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4개소가 있는데 강원도청소년지원센터가 위치한 춘천에서 강원도 전역을 맡고 있다. 3, 4시간이 걸리는 지역에서 야간에 연락이 오더라도 춘천으로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²³⁾ 가출청소년의 쉼터 활용 빈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긴급구호를 위한 보호시설은 필요하며 이동거리를 짧게 할 필요가 있다.

<표 III-6> 청소년쉼터 지역별 현황

구분	쉼터현황					비고
	일시	단기		중장기		
		남	여	남	여	
전국	10	22	25	9	15	81
서울	2	3	2	1	4	12
부산	1	1	1	-	1	4
대구	-	1	1	-	1	3
인천	2	2	2	1	1	8
광주	1	1	1	-	1	4
대전	2	1	1	-	1	5
울산	-	1	1	1	-	3
경기	2	6	7	1	2	18
강원	-	1	1	1	1	4
충북	-	1	1	-	-	2
충남	-	2	1	1	-	4
전북	-	-	1	1	-	2
전남	-	1	1	-	1	3
경북	-	-	2	-	1	3

23) 춘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쉼터가 지역적 특성상 부족함을 토로하였다. 문제가 원거리에도 있지만 연계된 긴급구호 쉼터 자체가 강원도 전체에서 춘천에 밖에 없기 때문에 지구대에서도 강원도 전체에서 춘천에 연락을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경남	-	1	1	1		3
제주	-	-	1	1	1	3

③ 서비스 내용

쉼터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서비스 이용률이 54.0%로 가장 높다.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의식주이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지원이다. '08년도 CYS-Net(지역사회위기청소년종합지원망)을 통해 지원한 75,893건 중 주호소문제 유형이 가출인 경우가 7,814명이고 이들에게 총 67,655건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서 위기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가출청소년 지원 서비스와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7> 청소년쉼터 서비스 이용현황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사회적 보호서비스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서비스	교육 및 학업지원서비스	자활 서비스	의료지원서비스	법률 자문·권리구제지원서비스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합계
건수	14,590	14,442	36,509	151	72	877	144	870	67,655
%	21.6	21.3	54.0	0.2	0.1	1.3	0.2	1.3	100

다. 긴급구호 운영현황

위기아동 청소년 긴급구호에서 청소년 쉼터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야간의 경우 모든 지역의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하여 전화연결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점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²⁴⁾

24) 오후9시경 진주의 청소년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술에 취한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논의 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창원외의 경남청소년지원센터였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청

때문에 저녁 9시 이후의 위기 청소년의 S.O.S.에 의한 쉼터와의 연계는 거점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몇 번의 전화통화 이후 지역쉼터와 연계가 되거나 거점 청소년지원센터가 장거리의 이동을 통해서 입소시키고 있다.

긴급구호의 경우에는 각 지구대²⁵⁾와 연계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 지구대의 경우 가출청소년은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가출청소년은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또한 가출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정복 입은 경찰과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게 됨에 따르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가출청소년이 가출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원가정과의 연계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지원센터나 가까운 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가출청소년 처리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타 기관에 의해 쉼터에 긴급보호요청이 이루어지는 것 이외에 쉼터에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모든 쉼터가 일정수준의 긴급구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 차원의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지원을 하지 않는 민간쉼터라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 조기발견체계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 상담활동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등

소년의 경우 지역지구대에 연락하고 창원에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상담원이 함께 진주로 가서 창원으로 데리고 온다고 한다.

오후 9시경 강원도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청소년의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를 질문하였다. 전화를 받은 곳은 거점 강원도청소년지원센터인 춘천이었고 3,4시간 걸리는 거리라도 청소년지원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청소년을 춘천의 일시쉼터로 데려와서 보호를 한다고 한다. 강원도의 경우 연계쉼터가 춘천에밖에 없다고 한다.

25) 만취한 가출청소년이 일반시민에 의해서 112에 신고 접수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되는가에 대해서 오후9시경 대구 수성경찰서에 문의해보았다.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경로를 파악하여 술을 판 곳을 행정처분하고 청소년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 조치한다고 했다. 잠든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인계 조치한다고 한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설에 인계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쉼터로 보낸다고 한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자식간의 문제' 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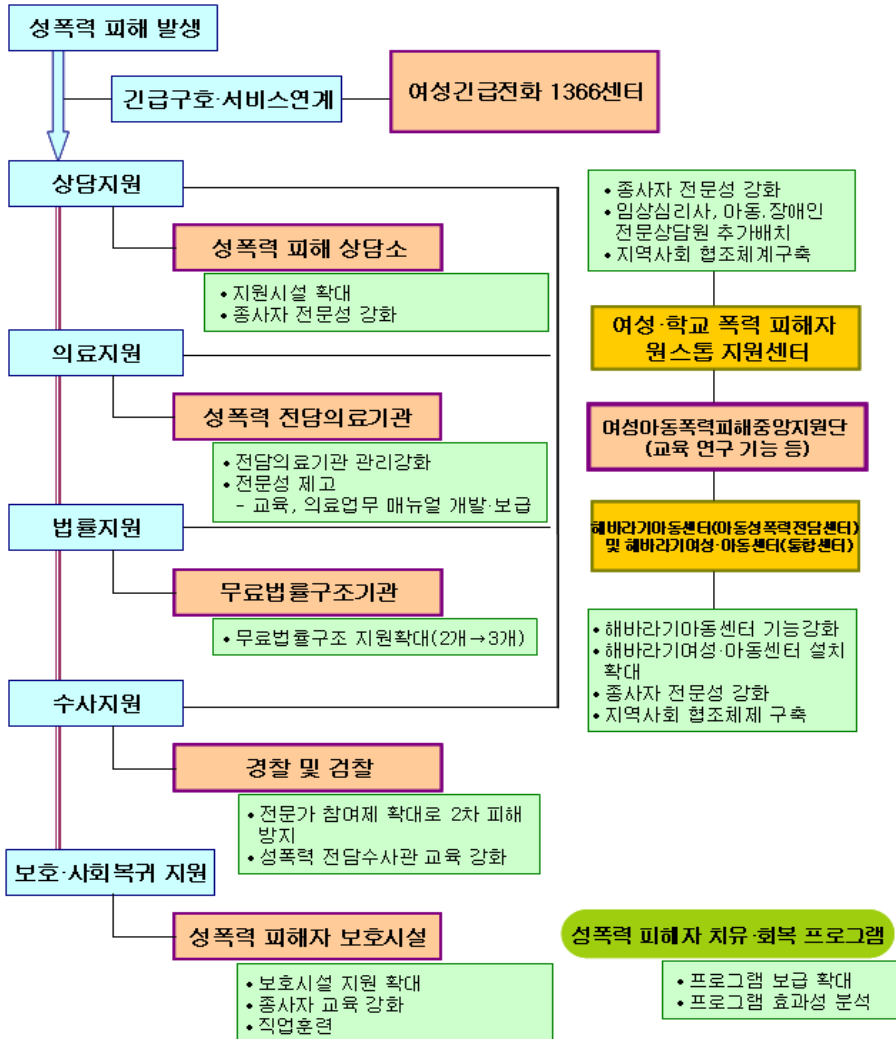
위기 청소년의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역사회별 자체활동이 현재에는 일시센터와 단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별 정례 활동으로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확대, 구축 운영에 힘입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각 센터와 위기청소년을 1388이라는 전화 및 모바일을 통해 각 지역별 청소년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연결해주고 있다.

2) 성범죄피해지원체계 현황

(1) 개관

여성가족부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운영하여 피해여성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국 17개소의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기능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강화의 일환으로 통합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 센터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며 24시간 여성·아동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1월에는 부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음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서 위기·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 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자료출처 : 2010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그림 III-8] 여성가족부의 성보호 체계

(2) 운영현황

가. 원스톱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 및 법

를지원을 하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는 2005년 8월 서울 경찰 병원에 있던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를 ‘학교·여성폭력 서울 원스톱지원센터’로 전환하여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전국 11개의 센터가 개소되어 현재 전국 17개소에 이르고 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을 하고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응급키트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응급치료를 하며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 등의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돕고 진술녹화 실시 등의 수사과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개소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 원스톱지원센터 설치현황

구 분	소 재 지	위탁기관	개소일	설치면적(평)
서울센터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경찰병원	'05.8.31	37
보라매센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08.12.3	26
인천센터	인천 동구 송림4동	인천의료원	'06.3.31	32
울산센터	울산 중구 태화동	동강병원	'06.1.25	24
강원센터	강원 춘천시 효자3동	강원대병원	'06.2.2	24
충북센터	청주시 흥덕구사직1동	청주의료원	'06.2.8	24
전북센터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대병원	'06.2.28	27
경북센터	경북 안동시 북문동	안동의료원	'06.1.12	28
대구센터	대구시 서구 중리동	대구의료원	'06.5.9	48
광주센터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병원	'06.9.4	40
대전센터	대전시 중구 대사동	충남대병원	'06.9.7	42
경기센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병원	'06.11.10	25
경기북부센터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의정부의료원	'07.9.18.	45
경남센터	마산시 중앙동3가	마산의료원	'06.12.1	36
제주센터	제주시 연동	한라병원	'06.12.8	26
충남센터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병원	'10.1.13	36
전남센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	성가롤로병원	'10.1.28	40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이와 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도 학교폭력의 피해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만을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들이 노출될 수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다.

또한 각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그 당사자가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일 것이고, 피해자가 부모라면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를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그들의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난처인 쉼터에서도 피해여성과 자녀와의 동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그들의 자녀에 대한 위기관리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I-9> 원스톱지원센터 지원현황

구분	피해유형(명)						지원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06년	4,764	2,868	1,284	226	48	338	14,699	7,386	3,592	1,123	542	2,056
'07년	9,352	5,701	2,463	336	105	747	28,236	14,546	6,229	2,117	1,198	4,146
'08년	10,074	6,818	2,312	209	70	665	35,643	18,258	7,335	2,571	1,977	5,502
'09년	10,471	7,140	2,348	116	177	690	37,474	20,643	7,736	2,771	2,068	4,256

나.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 강

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근거로 2004년 6월 연세대학교 병원에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2005년 6월에 영남권·호남권 센터가 문을 열고 2008년 12월에 경기 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2009년에 전북 센터 등 5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었다.

<표 III-10> 해바라기아동센터 설치현황(9개소)

구분	소재지	위탁기관
서울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연세의료원
대구·경북센터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경북대병원
광주·전남센터	광주시 동구 남동	전남대병원
경기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가천의대길병원
강원센터	강원 춘천시 효자3동	강원대병원
충청센터	충북 충주시 교현2동	건국대충주병원
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전북대병원
경남센터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대병원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치료,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지원의 측면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신과적 치료,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의료 지원의 측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외상 치료(피해정도 진단 및 증거 채취 포함)등을 지원한다. 수사·법률지원의 측면에서는 수사 관련 진술내용 등 영상물 녹화,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업무의 진행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III-11>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지원현황

구 분	피해자 (명)	조치내역(서비스지원 건수)				
		소계(건)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지원	
'09년	계	1,292(91)	13,371 (1,071)	3,093 (292)	8,338 (576)	1,940 (203)
	서울센터	528(21)	3,267(132)	737(43)	1,870(51)	660(38)
	대구·경북 센터	166(18)	2,196(313)	563(87)	1,281 (168)	352(58)
	광주·전남 센터	149(15)	2,298(111)	387(24)	1,667(57)	244(30)
	경기센터	205(5)	3,026(149)	555(27)	2,061 (110)	410(12)
	전북센터	47(1)	287(23)	75(0)	202(23)	10(0)
	인천센터	60(5)	962(56)	419(21)	498(27)	45(8)
	강원센터	24(3)	396(30)	75(10)	293(18)	28(2)
	충청센터	36(5)	167(24)	50(10)	61(3)	56(11)
	경남센터	38(13)	297(115)	132(52)	107(43)	58(20)
	부산센터	39(5)	475(116)	100(18)	298(76)	77(24)

※ ()은 장애인/ 전북, 인천, 강원, 충청, 경남, 부산은 2009년 7~8월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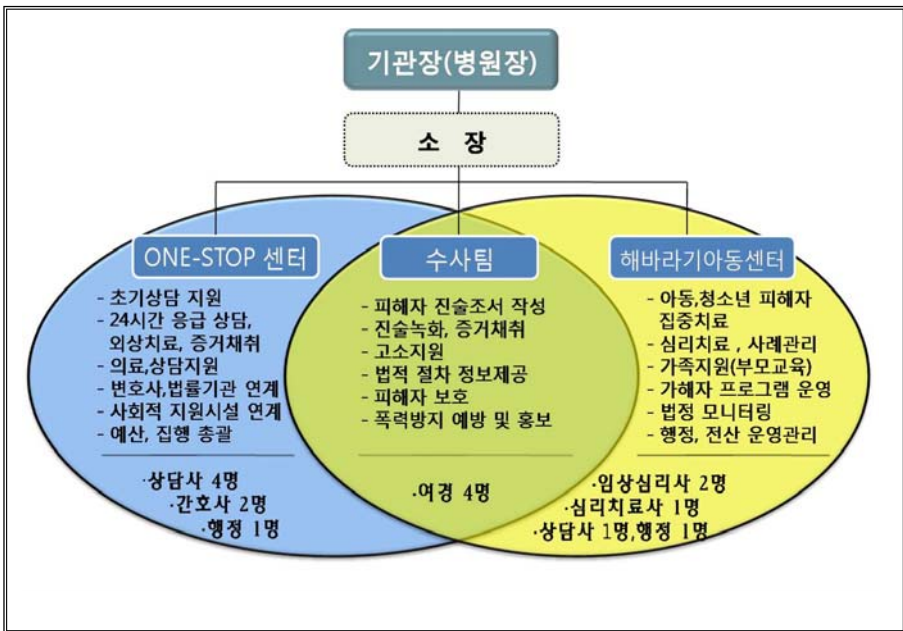
다. 해바라기 여성·아동 통합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 통합센터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서비스개편추진단」 논의로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기능강화 방안」 연구('09년)의 결과로 탄생하였다. 양 센터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센터인 해바라기 여성·아동 통합센터는 부산지역(2010년 1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3개소를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양 센터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여 365일 24시간 여성·아동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아동·지적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심리치료(임상심리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수사지원을 위해 여성 경찰이 상주한다. 통합센터를 운영하지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과 성인피해자지원 공간은 분리하여 배치된다.

<표 III-12> 해바라기여성·아동통합센터 설치현황

센터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도메인 주소	비고	
부산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동아대학교 병원	해바라기	(051) 244-1375	051-244 -1377	www.child4u. or.kr	'09. 8.11
		원스톱	(051) 805-0117 507-1170	051-607 -2665	www.bsonest op.or.kr	'05.12 .22



[그림 III-9]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조직도

라.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성인여성과 함께 보호되고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전용쉼터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²⁶⁾

26) 2010년 상반기 중 설치하여 하반기에 운영예정이며 수도권 1개소와 지방1개소로

현재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만을 위해 설립된 보호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친족 간 미성년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성년이 되어 자립 시까지 집을 떠나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 쉽터는 19세미만의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중 친족 간 성폭력의 경우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여 입소한 아동·청소년이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가정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 긴급구호를 위한 모니터링 현황

① 아동범죄예방 및 단속강화

아동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가 위기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를 위한 직간접적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 2009년 12월 전국 238개 지자체에서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구축되었다. 또한 기존의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과 함께 지역 공동안전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아동복지법의 개정²⁷⁾으로 아동보호구역 내 CCTV의 설치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전국 6,911개교 42,627대의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전국 3,555개의 CCTV가 설치되었다.

② 아동안전교육 등 예방교육의 강화

아동안전교육 등 예방교육의 강화와 아동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아동이 자신의 상황이 안전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생활시설 2개소로 하여 설립추진중이다. 입소정원 15명, 종사자 6명으로 상담과 치료, 진학 및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7) 2009년 6월 시행

③ 성교육의 강화

아동·청소년에게 성교육을 강화하여 성적 위기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시 자율적으로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상시적인 참여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급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인권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기본계획의 추진과제로 포함되어있다.

3) 아동보호전달체계 현황

(1) 개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예방체계는 가출청소년 지원체계나 피해여성지원 체계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 구축된 편이며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의 연구 인력이 풍부하여 많은 통계자료와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아동학대예방체계의 구축 이후 10년이 지났다. 각 아동보호기관의 노하우가 집적된 상태이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타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를 위한 내용을 간추리기로 한다.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체계에서 긴급구호의 경우는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²⁸⁾ 1577-1391, 129, 112, 119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담 및 신고접수를 통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하게 되면, 전문기관은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여 잠재 위험사례인지, 아동학대 사례인지, 일반사례인지를 파악한다. 잠재 위험사례로 판단되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아동학대사례인 경우 긴급격리

28) 아동학대사례업무진행도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긴급격리보호를 할 수 있다. 이때는 3일 이내의 격리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일반아동보호시설에 일시보호하게 된다. 일반사례의 경우 교육을 하고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2) 운영현황

가. 신고

통계청에서 제시한 2008년 0세에서 17세까지의 지역별 총 인구수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천 명 당 아동학대 발생률을 산출한 결과, 아동인구 천 명 당 전체 아동학대 발생률은 0.53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충북지역이 1.1%로 가장 높고, 대구지역이 0.23%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발생률의 지역별 차이는 실제 아동학대 발생률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역별 아동학대 신고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9) 이와 같이 아동학대의 인지는 신고에 달려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와 비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을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33.1%,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66.9%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본인의 신고는 1.0%에 불과하여 아동본인이 자신의 문제와 위기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8)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아동 스스로가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결과보고서:271) 월별로 살펴보면 11월부터 2월의 기간에 신고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는 아동들의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학대가 주변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다른 기간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절기에는 방과 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52)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상담신고를 접수하는 경로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동상담전용전화 1577-1891, 인터넷, 내방으로 구분되는데, 1577-1391을 통한 상담신고 접수율이 89.7%로 가장 높으며, 129와 내방, 인터넷의 순으로 나타난다.(2008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18) 129의 홍보가 요구된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아동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의 인력 및 자격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법경찰과 연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 아동보호업무를 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19개소, 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25개소)설치·운영은 국고 보조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이다. 지역별 복지예산은 지역의 예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비스의 수준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각 기관은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별 특색을 각각 나타냈다.

하지만 긴급구호를 위한 응급아동학대사태에 대한 업무지침에 따르기에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상황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12시간이내에 현장조사를 통해 사례판정을 해야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 가장 먼 지역으로의 이동시간을 고려한다면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쉼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각 아동보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에 따라서 지원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 및 면적에 따른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²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고충은 아래와 같이 일반사례의 위기 개입과 문제해결만으로도 상당하다. 긴급구호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거의 저녁 9-10시에 퇴근하고 매일같이 신고현장을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신고전화나 문의전화, 협박전화에 시달릴 정도로 격무에 고생하고 있다. 상담원 수가 적어서 만삭의 임산부가 신고현장을 나가고 가해자에게 위협당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 내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근무하기 싫어하는 기피 기관이 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에 보직변경을 요청하는 직원들도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해자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여 본인 스스로 사직을 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74))

<표 III-13> 중앙 및 시·도(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명		설치 년월일	설치기관
중앙	중앙	2001.09.24	굿네이버스
서울	서울	2000.10.05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서울동부	2000.10.14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재단법인 천주교 쉼썬 수도원 유지재단)
부산	부산	2000.10.15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대구	대구	2000.10.05	어린이재단
인천	인천	2000.10.21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광주	광주	2000.09.29	어린이재단
대전	대전	2000.10.24	굿네이버스
울산	울산	2000.11.13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경기	경기	2000.09.30	굿네이버스

29)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보고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중앙정부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아동보호전달체계 구축 및 국가의 책임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북부	2003.04.09	굿네이버스
강원	강원	2000.09.22	어린이재단
	강원동부	2003.04.13	어린이재단
충북	충북	2000.09.25	굿네이버스
충남	충남	2000.10.17	굿네이버스
전북	전북	2000.09.27	굿네이버스
전남	전남	2000.10.17	어린이재단
경북	경북	2000.10.16	사회복지법인 우봉복지재단
경남	경남	2000.10.26	인애복지재단
제주	제주	2000.09.25	어린이재단

<표 III-14> 시·군·구(소규모)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명		설치 년월일	설치기관
서울	서울강서	2004.06.10	굿네이버스
	서울은평	2004.06.10	굿네이버스
	서울영등포	2004.06.10	굿네이버스
	서울성북	2004.06.10	굿네이버스
	서울마포	2004.06.10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부산	부산동부	2004.05.01	어린이재단
인천	인천북부	2004.05.04	굿네이버스
경기	경기성남	2004.05.25	굿네이버스
	경기고양	2004.05.25	굿네이버스
	경기화성	2006.11.07	굿네이버스
	경기부천	2004.05.25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경기남양주	2007.06.22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원	강원원주	2004.07.15	굿네이버스
충북	충북북부	2004.07.01	화이트아동복지회
	충북남부	2006.12.08	사회복지법인 명지원
충남	충남남부	2004.07.01	굿네이버스
전북	전북서부	2004.05.18	굿네이버스
	전북동부	2006.06.13	굿네이버스
전남	전남목포	2004.05.01	굿네이버스
경북	경북안동	2004.05.01	(재)그리스도의 교육 수녀원
	경북포항	2004.10.21	굿네이버스
	경북구미	2005.01.10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남	경남서부	2004.06.25	어린이재단
제주	서귀포	2006.08.02	사회복지법인 제남

다.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피해아동에게 취한 초기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을 원가정 보호한 경우가 70.6%로 가장 많고, 격리보호가 28.4%,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초기에 타 기관으로 의뢰한 경우가 0.9%, 초기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가 0.1%로 파악되었다.

격리 보호의 경우 일시보호 조치된 경우가 58.3%, 친인척 보호가 17.9%, 입원조치 등 기타가 12.2%, 장기보호 10.6%, 가정위탁 1.0%로 파악되었으며, 피해아동초기 조치 시 보호자로부터 격리 보호 된 학대사례 가운데 사례개입이후 2008년 당 해에 다시 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20.5%로 파악되었다.

3. 경찰의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현황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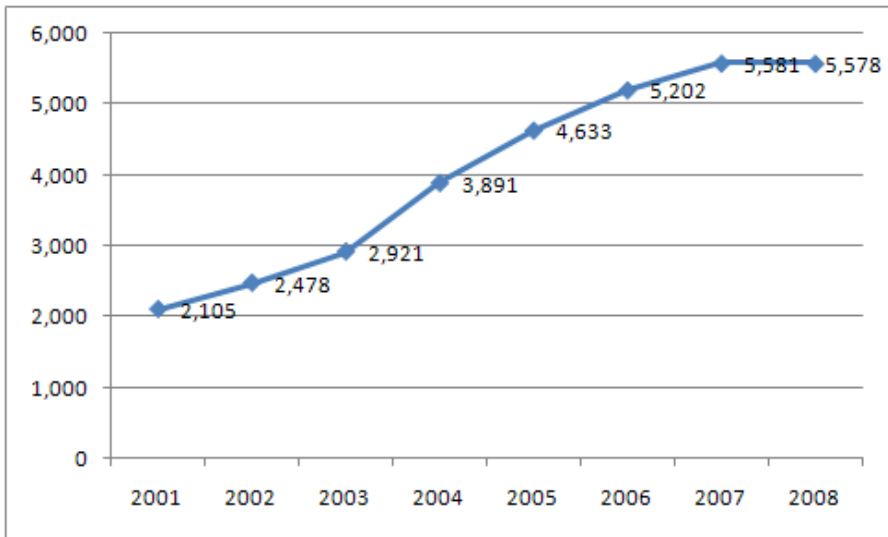
1) 개관

지난 수년간 가속화되어 온 경기침체, 사회 양극화의 심화, 출산율저하와 초고령사회 진입,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와 변화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들은 우리가 지역적 범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및 아동관련 범죄의 문제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인 공동체의 안전(security)을 심대하게 훼손시키며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위기아동 및 청소년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유해환경에 놓여 있어 위기 경험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아동 및 청소년”을 의미한다(이춘화, 2009). 이러한 위기아동 및 청소년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지표들 중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예를 들면, 이경상, 2009). 하지만, 단순 신고건수보다 공

30) 현황 및 도표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았음,

권력의 시스템을 통해 학대위험으로부터 보호된 아동 및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아래 [그림 III-10]은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밝힌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학대아동보호건수에 대한 내용이다. 그림에서 보듯 2001년에 학대아동 보호 건수가 2,105건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후 2003년에 2,921건, 2005년에 4,633건, 그리고 2008년에는 무려 5,57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다양한 범죄 유해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공권력의 노력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의 핵심이며 경찰조직은 이러한 정책의 주요 행위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림 III-10] 학대아동 보호건수 (2001년~2008년)³¹⁾

따라서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및 아동 대상의 범죄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긴급 구호 및 사전예방 차원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분석과 검토는 면밀히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31) 나라지표: 학대아동보호건수,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

하여 일부 소관 정부 부처들의 노력들은 계속되어 왔지만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문제점 확인, 또한 이에 수반된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분석적 연구들은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의 활동들 중에서 특히 경찰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성은 기본적으로 경찰조직이 연루되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긴급구호관련 제도들을 기초로 각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방식임을 밝힌다.

2) 긴급구호체계

(1) 117지원센터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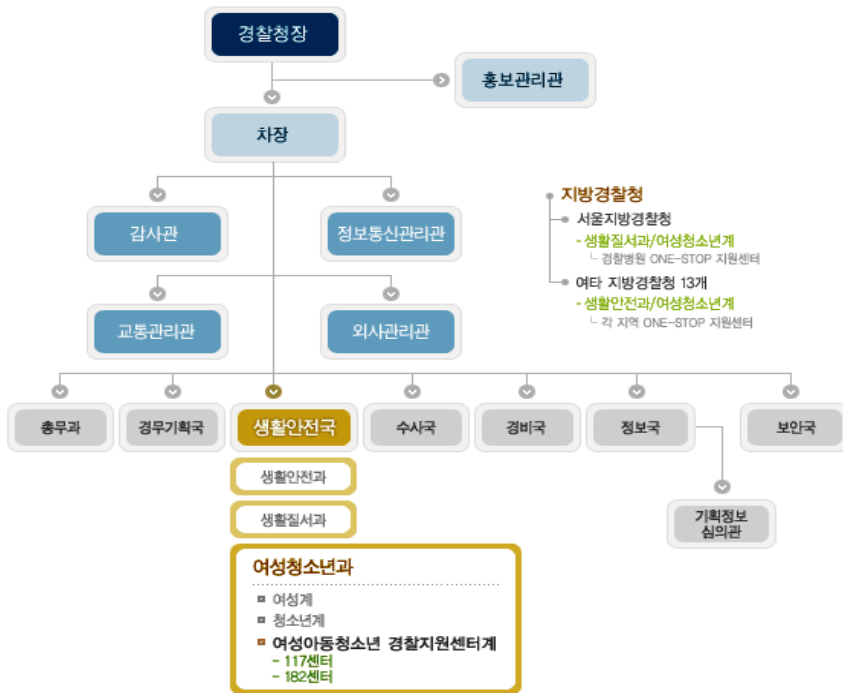
가. 현황

117지원센터로 불리는 경찰의 청소년 긴급구호시스템은 공식명칭이 ‘117 학교·여성폭력긴급지원센터’이며 2004년 9월 2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신속구조 등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117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8월 31일 개소한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 학교폭력과 여성폭력의 피해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상담 신고창구를 통하여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제도의 목적이 있다.

나. 조직

32) 117지원센터 관련 일부 내용들은 홈페이지 <http://www.117.go.kr/index.do> 에서 정보를 얻었다.

아래 [그림 III-11]의 경찰청 조직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경찰에서 여성 및 청소년관련 업무는 생활안전국 산하 여성청소년과내의 여성계, 청소년계,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계 등 세 가지 세부조직들이 담당하고 있다. 여성계의 담당 소관업무들로는 여성정책,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 대한 수사지도, 성매매 단속 지도 및 One-Stop센터 운영 등이 있다. 청소년계의 업무들로는 소년범에 대한 수사의 기획 및 지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그리고 청소년 선도활동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찰지원센터계는 실종아동찾기 및 가출수사 기획과 117·182센터 등의 운영 등이 주요 업무이다. 따라서 117지원센터는 물론, 아래에서 소개할 182실종아동찾기센터 모두 경찰지원센터계에서 담당한다.



[그림 III-11] 여성 및 청소년 업무와 관련한 경찰청 조직도³³⁾

33) 117지원센터 조직도: http://www.117.go.kr/sub01/s01_org.jsp

(2) 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가. 현황

2001년 10월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해오던 서울 경찰병원내의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2005년 8월 31일 본 센터를 최초로 개설하였다.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및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 게 무료로 24시간 의료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 및 증거채취는 물론 법률지원과 NGO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간담회와 관련부처 협의회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One-Stop지원센터의 전국 확대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2005년 12월 부산의료원에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역에 걸쳐 15개 센터들이 개설되었으며 2008년 12월 서울 서남부권역의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센터를 새로 추가 설치되었으며 2010년 현재 서울과 경기에는 각 2개소 그리고 각 지방경찰청 산하에 1개소씩 도합 18개의 원스톱센터가 개설되어 있다.

나. 조직과 시설

One-Stop지원센터의 조직의 경우 지방경찰청 수준에서 조직되어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생활질서과내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는 경찰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여타 지방경찰청들은 생활안전과내 여성청소년계에서 각 지역의 One-Stop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One-Stop 지원센터의 경우 전국 광역시도들에 걸쳐 고르게 18개 장소들이 운영 중이고 대부분 경찰병원이나 해당 지역의료원들에 설치되어 있다.

전술한대로 전체 광역시도들 중에서 서울과 경기에는 두개의 One-Stop 지원센터를 갖고 있다. 서울의 경우 경찰병원과 보라매병원에 입지한 두

지원센터들을 중심으로 시설, 조직, 예산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 III-15>과 같다. 두 센터의 근무인원수는 동일하게 9명이었으며 그 세부인력배분도 경찰 4명, 상담사 4명, 행정직원 1명으로 역시 동일하였다. 센터의 물리적 규모는 경찰병원내의 센터가 새로 오픈한 보라매병원 센터보다 다소 컸다. 하지만, 예산은 예산부담을 서울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여성부가 반씩 부담하는데 비해서 보라매지원센터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여 차이가 날 뿐 양 센터 공히 연간 1억 5천여만의 예산으로 같았고 세부적인 예산 운용항목들의 비중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III-15> 서울지역 One-Stop지원센터 운영현황

구분	서울지원센터	보라매지원센터
위치	송과구 경찰병원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개소일	2005년 8월	2008년 12월
근무인원	9명(경찰4,상담사4,행정1)	9명(경찰4,상담사4,행정1)
관할	중부, 종로, 혜화 등 19개서	서부, 서대문, 마포 등 12개서
시설	122㎡ (37평)	85.8㎡ (26평)
예산	총액: 약 1억 5천만원 서울시·여성부 각 50% -인건비: 74.4% -관리운영비: 14.9% -기타사업비: 10.7%	총액: 약 1억 5천만원 서울시 부담 100% -인건비: 74.4% -관리운영비: 15.0% -기타사업비: 10.6%

다. 주요업무

① 의료지원

센터 전담 산부인과 전문의와 응급의학과와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며 첨단 산부인과 의료장비 구비로 영상진료 및 이를 통한 폭력 입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② 상담지원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있고 피해자 안정실에서 조기 안정을 도모하고 117센터 홈페이지와 실시간 연계되어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NGO나 컴퓨터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③ 수사지원

진술녹화 및 상담전문 여성 경찰관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의료진료차 내방 시에 진술녹화 후 경찰서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 조사와 동시에 112나 117은 물론 각 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와 연계하여 신속한 수사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0년 7월 “아동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후 원스톱 기동수사대를 발족시켜 아동성폭력의 경우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원스톱 기동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도록 여성청소년 진술녹화실을 재정비함과 더불어 18개 원스톱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96명의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였다³⁴⁾.

④ 법률지원

학교 및 여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 50명으로 구성된 무료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하며 민·형사소송 절차 등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다.

34) 2010년 7월 5일 경찰청에서 작성한 “아동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근거한 내용이며 경찰청에서는 2010년 진술녹화실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50개 경찰서에 시설을 구축하고 52개서에 장비를 보급하였다.

라. 각종 관련 통계

2008년 한 해 동안 One-Stop 지원센터는 10,074명의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해 상담 18,258건, 진료 7,335건, 증거채취 2,571건, 진술녹화 1,977건, 피해자조서 작성 5,502건 등 총 35,643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특히 일반 성폭력상담소의 고소 및 고발율이 여성부의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10% 전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비해서 2008년 One-Stop 지원센터 방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무려 80%가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여러 기관들을 전전하며 반복진술과 신분노출의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던 피해자들이 One-Stop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³⁵⁾.

아래 <표 III-16>과 <표 III-17>는 2008년 한 해 동안 One-Stop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 집단에 대하여 피해유형과 지원내용에 대한 자료이다. 먼저 One-Stop지원센터를 이용한 방문자들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10,074명의 방문자들 중에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지원센터의 도움을 청한 경우가 무려 67.7%에 이르러 전체의 3분의 2가량에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도 23%에 이르러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두 피해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피해유형이었다. 이는 본 센터의 기초가 2001년의 성폭력 지원센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One-Stop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총 35,643건의 센터의 총 서비스건수들 중에서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51.2%에 이르러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진료 서비스와 피해조서 서비스가 각 각 20.6%와 15.4%로 뒤를 따랐다. 결국 One-Stop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지원내용은 상담과 진료였으며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의 긴급구호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One-Stop지원센터가 위기청소년의 구조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35) 경찰백서(2009)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센터의 도움이 전체의 피해유형에서 겨우 2.1%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센터가 위기청소년 구호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16> One-Stop지원센터 피해유형별 방문자수

피해유형별 방문자(명)					
계/백분율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기타
10,074	6,818	2,312	209	70	665
100%	67.7%	23.0%	2.1%	0.7%	6.6%

<표 III-17> One-Stop지원센터 지원내용

지원 내용(건)					
계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조서
35,643	18,258	7,335	2,571	1,977	5,502
100%	51.2%	20.6%	7.2%	5.5%	15.4%

(3)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가. 개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아동의 신고의 접수, 조회 및 전산입력 등 실종아동에 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에 설치한 센터이다. 일단 본 센터에 실종사고 신고 접수가 되면 곧바로 관할 경찰서에 보고되어 상황을 전파하고 민원인과 함께 실종아동 발생장소 주변을 탐문하고 정밀수색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탐문 및 수색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만약 실종아동을 보호한 사람이 182에 신고할 시에는 곧바로 센터는 상황을 전파하고 실종아동

을 사진 촬영하여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사진을 입력한 후 시·군·구 자치단체에 실종아동을 인계한다.

나. 조직과 현황³⁶⁾

2010년 현재 182 실종아동찾기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21명의 여경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5명씩 4교대로 24시간을 내내 전화기를 지키며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실종신고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3월의 경우 경찰에 총 2천1백8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실종건수 1천6백38건보다 무려 33퍼센트나 증가한 것을 나타냈다. 182센터의 업무량은 실종신고가 많았던 3월의 경우 1인당 평균 매일 15.9건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월간 가족 품으로 돌아간 실종자의 수도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긴급구호의 핵심적 요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실종자신고 및 수배에 있어 182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된다.

(4) 아동안전지킴이집

가. 정책 현황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 보호와 동시에 경찰에 연계하는 제도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호하는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이다. 특히,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아동들에 대한 보호체계가 약화되어감에 따라 아동들이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해지는 등 아동 보호에 대한

36) 2010년 4월 14일 『“사라진 가족을 찾아라” 쉴틈없는 182』 한국일보의 보도를 참고했음.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주목 받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정된 경찰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중심의 민·경 협력 범죄예방의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참여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국정 과제 및 총리실 주관으로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 점검단’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었다(2008, 경찰청). 이에 따라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늘이터, 통학로 주변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 사점 2만 5천여개소를 ‘지킴이 집’으로 위촉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고 위험에 처한 아동의 임시보호 및 경찰 연계서비스로 확대시켜냈다. 이와 함께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도 안양, 일산 등 수도권 11개 경찰서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갖춘 퇴직 경찰관 110명을 선발하여 학교 주변 놀이터와 통학로 등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나. 정책 내용

아동안전지킴이집에서는 지구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 또는 길을 잃는 등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시 아동을 안정시키고 임시보호를 하며 112 신고 등 경찰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정책 인센티브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민간의 업주들의 참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참여 업주들의 사기 고양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참여 업주 및 종업원들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보호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우수사례들을 선발하여 표창과 신고보상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 정책 관리

경찰청과 총리실 주관의 ‘아동지킴이 및 지킴이집’ 활동현장에 대하여 부처합동으로 실태 점검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전담 경찰관 약 6,600여명을 지정하여 지킴이 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주들의 특성상 처음부터 소집교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구대 팀별 1~2명씩의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순찰 중에 자연스럽게 업소에 들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무관심업소 및 아동출입이 쉽지 않은 업소나 휴·폐업 업소에 대하여 해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힘을 쓰고 있다.

마. 지킴이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건

이러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소 협력치안활동에 관심이 많고 아동안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개인이어야만 한다. 또한 초등학교, 공원, 주택가 부근의 아동출입이 많거나 용이한 지역의 업소라는 자격도 충족시켜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업주나 종업원은 물론 고정적으로 업소를 출입하는 가족 중 대아동범죄 경력이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장하는 풍속업소 및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의 경우는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

바. 지킴이집 지도검색 콘텐츠 구축

2008년 9월 경찰서 별 홈페이지 내에 아동안전지킴이집 지도검색 콘텐츠를 구축하여 서울은 마포, 서대문 등 11개 경찰서들과 경기도는 안양, 일산 등 6개 경찰서, 그 외 지역은 전남 장성, 대구 수성, 충남 천안, 광주 광산 등 4개 경찰서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전국 239개 경찰서로 확대 설치되어 있다. 지킴이집 로고 및 포돌이 등을 활용

하여 아동 친화적으로 구성하였고 관내 초등학교 주변 지킴이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게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지킴이집 배너를 클릭하면 관내 지킴이집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홈페이지에도 링크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 예산

2008년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에 대한 예산으로 8억 4천만 원이 배정되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은 아동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용품들을 개발하고 업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기고양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2009년에도 제도 정착 및 지속 추진을 위해서 지킴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6억 5천만 원의 예산이 복지부의 2009년 아동보호 활동사업 예산으로 확보되었다. 이와 함께 경찰 내부적으로도 1억 5000만원을 들여 아동들이 비상시에 지킴이집에 도움을 청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³⁷⁾.

아. 우리나라의 현황과 외국의 유사사례들

우리나라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현재 24,412개소를 선정하여 2008년 4월 14일 전국에 일제히 로고 부착 행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 아동 및 청소년 긴급구호 시스템 수립과 관련하여 외국에도 우리의 ‘아동안전지킴이집’ 과 유사한 제도들이 있다. 호주는 위험한 사람이 접근하거나 다치는 등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피신할 수 있는 ‘Safety House’가 197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임시보호하고 범죄의심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프로그램인

37) 세계일보, 2009년 10월 15일자 보도

McGruff House를 1982년 유타주에서 시작했고 현재는 무려 44개주에 걸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1986년부터 블록별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자신의 집에 임시 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Block Parent’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현재 약 30만이 넘는 자원봉사 가정들이 지정되어 청소년 안전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다.

자. 성과와 미래

총리실과 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 점검 결과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방식 개발 등을 통한 효과성 증대 및 민·경 협력 치안시스템의 주축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래 <표 III-18>과 <표 III-19>는 각 각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운영 현황을 주변 장소 및 유형별로 살펴본 것이다. 2008년 11월 현재 2만 4천 7백여 개의 지킴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변 장소별로 나누어 보면 초등학교 주변이 12,117개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유치원주변이 20.5%, 아파트단지 주변이 15.0%를 차지했다. 지킴이집을 운영하는 민간주체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가가 10,499개로 무려 42.3%에 이르렀고 문구점도 20.6%나 되었다. 그 외 24시간 편의점이 8.7%, 약국이 5.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장소들이 22.4%로 나타났다.

<표 III-18> 장소별 아동안전 지킴이 집 운영현황

총계/ 백분율	장소별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단지	놀이터	공원	통학로
24,795	5,093	12,117	3,717	1,682	1,150	676
100%	20.5%	48.9%	15.0%	6.8%	4.6%	2.7%

<표 III-19> 유형별 아동안전 지킴이 집 운영현황

총계/ 백분율	유형별				
	24시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24,795	2,145	1,472	5,116	10,499	5,563
100%	8.7%	5.9%	20.6%	42.3%	22.4%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총 209건에 283명에 이르는 아동들을 긴급 구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III-20>와 <표 III-21>은 지킴이집을 통해 얻은 범죄검거 및 예방과 관련된 실적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범인검거 및 지원활동에 관련된 실적에 따르면 총 21건에 37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형별로 나누면 강도갈취범이 10건 18명으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여 지킴이집 제도에 의해서 가장 억제되는 범죄유형인 것을 나타났다.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과 관련하여 지킴이집 제도는 총 188건에 246명에 대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실조예방이 63건에 6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비행선도가 36건에 48명, 폭력 예방이 22건에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반적으로 두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킴이집은 실제 위기아동 및 청소년들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시키는 성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20> 범인검거 및 지원활동관련실적

범인검거 및 지원활동 실적											
계		납치유인		성추행		강도갈취		폭력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21	37	2	2	2	2	10	18	4	9	3	6

<표 III-21> 범죄예방 및 보호 관련실적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									
계		폭력 예방		실종 예방		비행 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188	246	22	36	63	67	36	48	67	95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종과 단체들을 발굴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활동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정책의 대상 집단인 아동들의 본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약국, 편의점, 문구점 등 학교 주변의 고정된 장소에 국한된 지킴이 집 운영에서 탈피하여 야쿠르트 아줌마, 모범택시기사 등 이동성이 용이한 주체들을 활용하여 소위 ‘움직이는 지킴이집’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구상이 요구된다.

(5) 아동안전지킴이 제도

가. 현황

지난 2008년 11개서에서 110명의 범죄예방 순찰 등 전문성을 갖춘 퇴직경찰들을 선발하고 경기 안양, 일산 등 수도권에서 하교 후 아동들의 외부활동이 집중되는 시간에 놀이터나 공원 등 아동운집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2009년에는 복지부의 ‘학교·놀이터 주변 아동보호 활동사업’의 예산이 32억 확보되면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경찰청과 공동으로 총 101개서에 인원 1,010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실시되었다. 경찰청의 2010년 7월 5일 “아동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의하면, 현재 174개 경찰서에 10명씩 1,740명이 활동 중인 아동안전지킴이를 전국 244개서로 대폭확대

실시하기 위해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근무관리를 담당하는 경찰, 예산지원을 하는 복지부,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회와 대한노인회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되어왔고 협약주체간 효율적 역할분담을 위한 사업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킴이 인력풀의 구성과 범죄대응역량 강화 교육 등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발표한 정책에 따르자면, 내년에는 성범죄자 등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지킴이는 현재 1,740명에서 내년에 2,270명으로 확대되며, 부족한 아동안전지킴이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인 자원 봉사대를 현행 30개에서 100개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교주변 순찰 및 등하교 길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 예산

2008년 아동지킴이제도는 상반기에는 경우회 예산 9천만 원, 하반기에는 복지부 청소년 육성기금 1억 6천만 원 및 경우회 예산 1천5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 예산은 2009년에 이르러 지킴이제도 확대 운영 예산으로 무려 32억 원이 복지부의 2009년 아동보호 활동사업 예산으로 확보되면서 제도의 양적 팽창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7월 경찰청의 종합대책으로 양적팽창이 절실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72억 원을 들여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역을 1·2급지 경찰서 관내에서 3급지까지 확대하는데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경찰의 안전지킴이 확대실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 성과

아동안전지킴이집과 병행해서 운영 중인 지킴이제도 역시 여러 가지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되고 있다. 위협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요청과 범인검거의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장소는 초등학교 부근이 57%, 이면도로 및 통학로가 23%, 아파트단지 주변이 10%, 놀이터나 공원이 1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서비스의 제공업체들의 위치들의 패턴과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범죄발생 장소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지킴이집제도의 공간상의 공백을 이동성의 장점이 있는 지킴이제도가 보완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지킴이집 및 지킴이제도에 의해서 긴급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초중학교 비율을 살펴보면 거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은 주로 납치 및 성추행 등의 범죄들과 관련된 구조가 중학생은 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III-22>은 아동안전 지킴이 제도의 운영 실적을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지킴이제도의 운영을 통해 총 732건의 1,494명에 대한 범죄예방 및 긴급구호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비행 선도가 402건에 705명에 이르러 가장 비중이 컸는데 이 결과는 지킴이집이 실종 예방 부분에 가장 효과가 컸다는 점을 상기할 때 지킴이제도가 갖는 특수성이 십분 발휘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적인 공간에서 비행 선도의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때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움직이는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로서 그 장점이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길 잃은 아이를 찾아주는 등 안전모니터링 역할이 큰 점을 감안하면 활동 지역이 전국의 모든 취약지역으로 확대되었을 때 아동·청소년 안전모니터링의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22> 아동안전 지킴이제도의 범죤예방 및 보호 관련실적

총계		폭력 예방		실종 예방		비행 선도		기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732	1,494	57	123	15	22	402	705	258	644

(6) CCTV 등을 활용한 안전모니터링체계 구축

가. 정책현황

경찰청에서는 2010년 6월 14일부터 30일에 걸쳐 “초등학교 일제 방범 진단” 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5,858개 및 학교로부터 500m에 해당하는 통학로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였다. 학교내부에서는 옥상 등 취약지역 관리 실태는 물론 CCTV와 경비원 운용실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학교주변으로는 CCTV, 가로등, 폐가 등을 중심으로 안전진단을 하였다. 금번 안전진단을 통한 경찰청의 조치 중 주목할 만한 점은 학교 내·외의 CCTV 설치 확대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나. CCTV 설치현황

교내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2010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5,858개 중 3,231개에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³⁸⁾. 수원시를 예로 들자면, 2011년까지 관내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 CCTV설치를 설치하여 학교주변 폭력과 아동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0년 상반기 중에 매탄초교, 신성초교, 신영초

38) 2010년 7월 5일 경찰청 “아동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참조.

교, 외국인학교 등 20개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 35대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울전초교 등 32개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62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초등학교에는 2011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며 이로써 관내 87개 초등학교에 148대의 방범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주출입문 중심반경 300m인 도로교통법상의 어린이보호구역 거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모니터링을 해왔으나 금번 아동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보호구역 기준인 주출입문 반경 500m로 확대 적용하여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더불어, 놀이터와 공원 등 통학로 주변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 성과 및 문제점

방범용 CCTV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2004년 서울 강남에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왔으며 2010년 현재 학교 내의 CCTV 숫자만 전국에 걸쳐 42,483대에 이른다. 전국의 초등학교 모든 취약지역에 CCTV가 확대 설치될 경우 범죄예방과 억제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문제점은 경찰에서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학교주변 취약지에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교권침해 등을 이유로 학교자체 상시 모니터링을 선호하며 합동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학교가 다수라는 것이다. 최근의 김수철사건에서 보았듯이 학교관계자와 주민들의 감시와 감시 후 조치에 대한 의지, 그리고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이 없다면 CCTV설치만으로 범죄가 예방되기 어렵다. CCTV를 매개로 경찰과 학교관계자는 물론 전국민이 참여하는 “공동감시망”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하는 민경협력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7) 사이버상의 아동포르노 단속과 감시체계

가. 현황

IT 보급의 대중화로 인터넷상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이 범람하며 아동성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아동포르노는 주로 사용자간 파일 공유가 용이한 P2P(Peer to Peer)와 웹하드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으며 유포중인 아동포르노는 대부분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고 국내물의 경우 일명 몰카 내지는 셀카로써 청소년들이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등을 통해 촬영한 것이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다.³⁹⁾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최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음란 사이트 홍보 및 유포 행위도 일부 발견되고 있다.

경찰청에서 2010년 9월 국내 3개 대형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카테고리 게시물 중 아동음란물 등 음란물이 다운로드 건수의 97.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표 III-23> 참조).

<표 III-23> 단속업체별 게시물 보유 현황(2010년 9월 경찰청 자료)

구분	전체 게시물	성인 카테고리			
		소계	성인물	제휴 음란물	아동 음란물
K 사이트	692,768	73,755(10.6%)	14,649	58,567	539
S 사이트	435,796	98,997(22.7%)	21,032	77,948	17
Q 사이트	396,571	59,600(15.0%)	16,568	42,931	101
게시물 계	1,525,135	232,352 (15.2%)	52,249	179,446	657
다운로드	71,340,321	13,083,889	322,509	12,719,709	41,671

39) 2010년 9월 1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발표 “아동포르노 단속 및 향후 대책” 참조.

또한, 국내 아동음란물 383건 중 158건(41.3%)은 청소년의 얼굴이 노출되고 9건은 학교, 이름까지 특정하여 유포됨에 따라 심각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유통 중인 아동음란물 제작국가 현황은 <표 III-24>와 같다.

<표 III-24> 유통 중인 아동음란물 제작국가(2010년 9월 경찰청자료)

총계	국 내	해 외			
		일본	미국·유럽	러시아	중국, 태국 등
657	383 (58.3%)	79 (12.0%)	147 (22.4%)	38 (5.8%)	10 (1.5%)

제작방법은 국내의 경우 자작이 88.5퍼센트에 달했으며, 해외의 경우는 제작의 경우가 대부분(94.2%) 이었다. 국내 아동음란물 383건이 촬영된 수단을 파악해본 것에 의하면 대부분이 캠코더(75.7%)를 활용하였으며, 휴대폰을 활용한 촬영이 14.4퍼센트, 그리고 화상채팅을 이용한 촬영이 9.9퍼센트에 이르렀다.

<표 III-25> 아동음란물 제작 방법별 구분 (2010년 9월 경찰청자료)

	총 계	자 작	제 작	몰 카
국 내	383	339(88.5%)	41(10.7%)	3(0.8%)
해 외	274	14(5.1%)	258(94.2%)	2(0.7%)
총 계	657	353(53.7%)	299(45.5%)	5(0.8%)

나. 경찰청 단속현황

경찰청에서는 2010년 9월 2일 전국 941개 사이버 수사팀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경찰청 사

이버센터장과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장이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9 월에만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을 유포한 총385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였다. 이번 조치로 한 달여 사이에 전북지역에서 아동 음란 동영상 파일 2천 개가 있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3명이 검거된 것을 비롯하여 부산에서는 웹하드를 통해 국내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100여 편을 게시하여 유포한 피의자 10명이 검거되었다. 이기간 동안의 전국 수사현황은 <표 III-25>와 같다.

<표 III-26> 음란물 단속 실적('10. 9. 1 ~ 9. 24 경찰청 단속)

계	아동·청소년물 유포				일반음란물			
	소계	사업자	운영자	유포자	소계	사업자	운영자	유포자
341건/ 360명	11명	5명 (8개 사이트)	1명 (구속1)	5명	349명	0명	2명	347명

또한, 2010년 10월초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P2P 사이트 상위 3개 사이트의 음란물, 아동포르노 유통 자료를 확보하고, P2P가 국내 음란물 확산의 주범인 점에 착안하여 S 사이트 등 국내 상위 사이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표 III-27> 음란물 유포 단속 및 수사 현황 (경찰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85	4	137	7	10	-	124	3	8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1	1	10		-	1	1

더불어,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9월 전국 26개의 청소년 유해사이트를 파악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유흥업소 알선에 관한 정보는 물론, 음란물 게재하고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은 운영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센터에서는 또한 웹호스팅 업체8개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사이트 26개에 대한 저장내용 및 접속기록 등을 파악하여 실제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 상시감시체계구축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아동포르노물을 접할 수 있을 경우 아동성범죄가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포르노의 유포를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각종 성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동 포르노가 파일공유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의 사후단속만으로는 확산차단에 한계가 있다. 단속과 수사 외에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에 2010년 10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일제정비와 상시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명예경찰인 전국 884명의 누리캡스를 대상으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음란물 신고대회를 추진하는 등의 추세는 정책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경찰청에서는 누리캡스 대상 신고대회를 통해 사이버상의 범죄를 차단하는데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2007년 7월 12,205건의 악성댓글 신고, 2009년 8,341건의 자살 유해정보 집중 모니터링, 2010년 7월 5,493건의 인터넷상 자살 유해정보파악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되며 이번 음란물 신고대회를 계기로 누리캡스는 물론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을 철저히 감시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음란물의 경우 단순 소지로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도 불법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하는 일도 시급해 보인다.⁴⁰⁾ 무엇보다

도, 대부분의 국내 아동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얼굴이나 인적사항의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240여개 P2P사이트가 개설 및 폐쇄를 반복하며 운영 중이므로 이런 사이트에 대한 민관합동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음란물 유통과정의 원천을 차단하여 아동음란물 유포를 사전 차단하는 것만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는 물론 아동 성범죄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일 것이다.

3) 안전모니터링체계

(1) 현황

가출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체계의 일환으로 조기발견시스템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와 관련해서 경찰이 독자적인 시스템이나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여성·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을 조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가출청소년 구호활동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거리배회 청소년의 비행과 이탈가능성이 높은 심야 시간대에 아웃리치 활동 방식으로 직접 현장으로 위기청소년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가출청소년에게는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의 전체적인 정보와 자원을 모두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도움을 현장에서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광역단위의 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경찰, 청소년쉼터, 1388 청소년지원단, 수련시설 등 관련 기관들이 연계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치료, 자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이며 2010년 현재 전국에 16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경찰서는 가출 청소년 발견 및 긴급구조 시 출동

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을 협조하여 본 시스템이 실효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경찰의 활동

경찰관서들의 구체적인 활동들은 첫째, 관내 순찰 시 심야시간 등에 가출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가정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가정 복귀를 거부하고 거주가 불분명한 청소년은 지역별로 구성된 ‘가출청소년 긴급구조단 비상연락망’을 참조하여 인근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일시보호소 또는 청소년쉼터로 대상자를 인계한다. 셋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긴급구조를 실시하다가 긴급구조요원이 폭력 등 위기상황노출이 우려되어 관내 경찰관서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출동에 협조한다.

특히 경찰은 실종아동 예방 및 신속발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괴·실종 경보시스템’의 발령대상 및 참여매체를 총 46개로 확대하기 위하여 IPTV 3사와 협약을 체결했고 OBS와 파이낸셜 뉴스 등 6개사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의 자료를 해양경찰청과 공유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복지부간 실종 아동 등에 관한 자료 연계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미신고 보호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등을 정기적으로 연 4회 일제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봉사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아동 안전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안전 보호협의회를 구축하였다. 이 협의체는 각종 봉사단체, NGO 대표급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전국 244개관할 경찰서에 총 6,157명이 활동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 합동 순찰, 주민요구 수렴, 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

(3) 유괴·실종 경보시스템 활성화

연이은 아동유괴피살사건으로 아동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급속도

로 확산됨에 따라서 그 대책으로 경찰청은 미국의 긴급 공개수배제도인 ‘앰버경보시스템(Amber Alert System)’을 2007년 4월에 아시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경보시스템은 아동 실종 및 유괴사건 등 발생시 TV, 라디오방송, 도로·지하철 전광판,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조기 발견으로 아동 구조 및 범인 신속 검거 등 아동범죄 예방체제를 구축하고 전 국민적 관심 확산 및 조기신고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2007년 4월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와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방송사, 이동통신사, 인터넷기업 및 금융기관 등 총 37개 기관들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 2007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63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해서 이 중 96명을 발견하는 등 국민적 관심 및 체포 유도로 아동 무사귀가에 기여 하는 등 범죄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찰청, 2009).

(4)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활용

기존의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의 전산망은 오래전에 개발되어 단순 입력 및 검색 기능의 미비로 실종아동 찾기 업무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실종아동 등 가출인과 신원불상 변사자 자료 및 보건복지가족부 무연고자 자료 등을 연계하여 비교분석 및 추적이 가능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경찰청, 2009). 이러한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시간 자료 비교를 통해 실종 아동의 발견시간의 단축은 물론이고 관련 자료들 간 연계로 실종 아동 불발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소결

위기아동 및 청소년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범죄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다. 이들이 지닌 열악한 환경은 지역사회와 범범죄의 순환 고리를 이어주는 요소이기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

로 시의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경찰조직의 위기아동 및 청소년 긴급구호에 대한 활동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비록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긴급구호체계는 없지만 5가지 프로그램들에서 경찰조직은 다른 소관 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위기아동과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117지원센터와 One-Stop지원센터는 주로 여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피해자들의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중 3분 2가 넘는 상당수는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긴급구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182실종아동센터, 아동안전지킴이집,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 제도 등은 모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체계 및 안전모니터링과 관련이 있었다.

단순히 상기 제도들이 커버하고자 하는 대상 집단들이 여성과 아동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특성은 이들 활동들이 독자적으로 각 각 하나의 체계로 분리되어 운영되기 보다는 복수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고 이동하는 동선에 걸쳐서 고정된 장소들을 선정하여 위기아동 및 청소년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직접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갖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성의 문제는 실제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체계의 확립이라는 목표가 무색할 만큼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이동성의 장점을 통해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서 그 가치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117지원센터와 One-Stop지원센터도 역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들을 긴급 구호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상담 및 사고접수의 활동과 피해자 구호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일괄서비스의 제공 활동이 서로 유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면밀하게 살펴본 경찰의 위기아동 및 청소년의 긴급구호 체계의 현황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는 문제

점들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 바람직한 구호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제언들을 소개할 것이다.

IV. 주요국가의 관련정책과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IV. 주요국가의 관련정책과 입법례

1. 일본⁴¹⁾

1) 서론

2008년 12월에 책정된 일본의 「청소년육성시책대강(青少年育成施策大綱)」에서는 현재 일본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의 등교거부, 집단 괴롭힘(いじめ), 아동학대, 유해환경의 범람, NEET⁴²⁾족 문제 및 운둔형 외톨이 등 자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관민의 관계기관에 의한 지원체제의 정비 등 새로운 법적조치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명기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9년 3월에 종합적인 청소년육성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종합대책추진법안(青少年綜合對策推進法案)」을 제171회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종합대책추진대강을 작성하고 그 실시를 추진하는 특별한 기관으로서 내각부에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청소년종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할 것과, 다음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 지원기관이 연계하여 청소년이 자립하기 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⁴³⁾.

41) 이 부분은 강경래(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음.

42) NEET란 교육을 기피하며 또한 노동 및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 층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43) 본 법률안의 제출이유로는 다음과 같다. 즉, 청소년은 차세대의 일본사회를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그들의 건전한 성장이 사회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그리고 시책의 기본 사항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자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및 그 외의 시책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종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는 것 등에 의해 다

한편, 법률안 제15조에서는 소위 「위기아동·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곤란함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써 관계기관 등의 시설, 청소년의 거주, 그 외의 적절한 장소에 있어서의 필요한 상담과 조언 또는 지도를 할 것, 의료 및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 학업내지 취업을 조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⁴⁴⁾.

이와 같이 전술의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기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日本青少年白書, 2009 : 117).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유형으로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 비행청소년, 피학대아동,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 집단 괴롭힘(いじめ), 아동매춘, 아동자살, 가출 등으로 보고 있다(日本青少年白書, 2009 : 117-145).

이러한 개념에서 위기아동·청소년을 보다 함축적인 의미로 집약한다면 아동학대, 아동매춘, 아동자살, 가출 청소년 등이 위기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위기아동·청소년의 유형 중 아동학대와 자살을 제외한 성매매, 가출청소년 등은 일본의 소년법상의 우범소년에 해당한다. 즉, 일본 소년법 제2조에서는 우범소년으로서 첫째, 보호자의 적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것,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셋째, 범죄성이 있는 자 혹은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또는 유해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 넷째,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을 우범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우범사유와 관련하여 일본가정재판소 조사관연수소에서는 우범의 일반적 유형으로써 가출, 불순

른 관계 법률에 의한 시책과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시책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내각법제국

http://www.clb.go.jp/contents/diet_171/reason/171_law_048.html (2010.7.15)

44) 이후 본 법률안은 2009년 7월 1일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중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되어 동년 7월 8일 공포되었다.

이성교제와 매춘(성매매), 불량교우 및 약물남용을 그 예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에 따르게 된다(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編, 1989 : 23-42).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소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사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세부적인 문제까지 그 대응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먼저 일본의 위기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시책의 법적근거인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개관하고, 또한 각각의 위기아동·청소년의 발생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체제·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체제, 위기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체제, 위기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개관하고자 한다.

2)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개요

본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 복지, 고용 등 각 관계분야에 걸친 시책의 종합적시책의 추진과 아동학대, 이지메(いじめ), 유해환경의 범람 등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악화와 또한 NEET족, 운둔형 외톨이, 등교거부,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위기청소년) 등의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의 설립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즉, 헌법 및 아동의 권리조약의 이념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한 지원과 그 외의 시책에 대해서 이본이념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시책과 더불어 종합적인 아동 및 청소년육성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이념(제2조~제6조)

본 법률의 기본이념은 자립된 개인으로서의 자기 확립의 실현과 개인으

로서의 존엄증시 및 최선의 이익의 고려, 성장과정에 있어서 양호한 가정적 환경에서의 생활의 중요성,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에 의한 역할 발휘와 상호협력, 양호한 사회 환경의 정비, 관련분야의 연구를 종합한 시책의 추진, 원활한 사회생활의 영위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한 지원의 시책 등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육성지원시책의 책정과 실시의 책무를 갖으며, 또한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 및 다른 지방공공단체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역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상황에 따른 시책의 책정 및 실시의 책무를 갖게 된다.

(2) 아동·청소년육성지원시책(제7조~제14조)

아동·청소년육성지원시책은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관계기관상호의 긴밀한 연계와 민간의 단체 및 일반국민의 이해와 협력 하에 관련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는 지원시책의 기본적인 방침과 시책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의 방지와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호한 사회 환경의 정비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청소년지원추진대강을 감안하여 지역 내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육성시책에 관한 상담 및 관계기관의 소개, 그 외의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조언을 하는 거점(아동·청소년종합상담센터(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체제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아동과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제15조~제2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공익법인, 학식경험자 등으로 아동·청소년육성지원에 관련하는 분야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학업 또는 취업 등을 하지 않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으로써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현황과약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해당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 등에 대해서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곤란에 처해 있는 원인의 규명,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재의 양성과 자질의 향상 및 지원 실시의 체제정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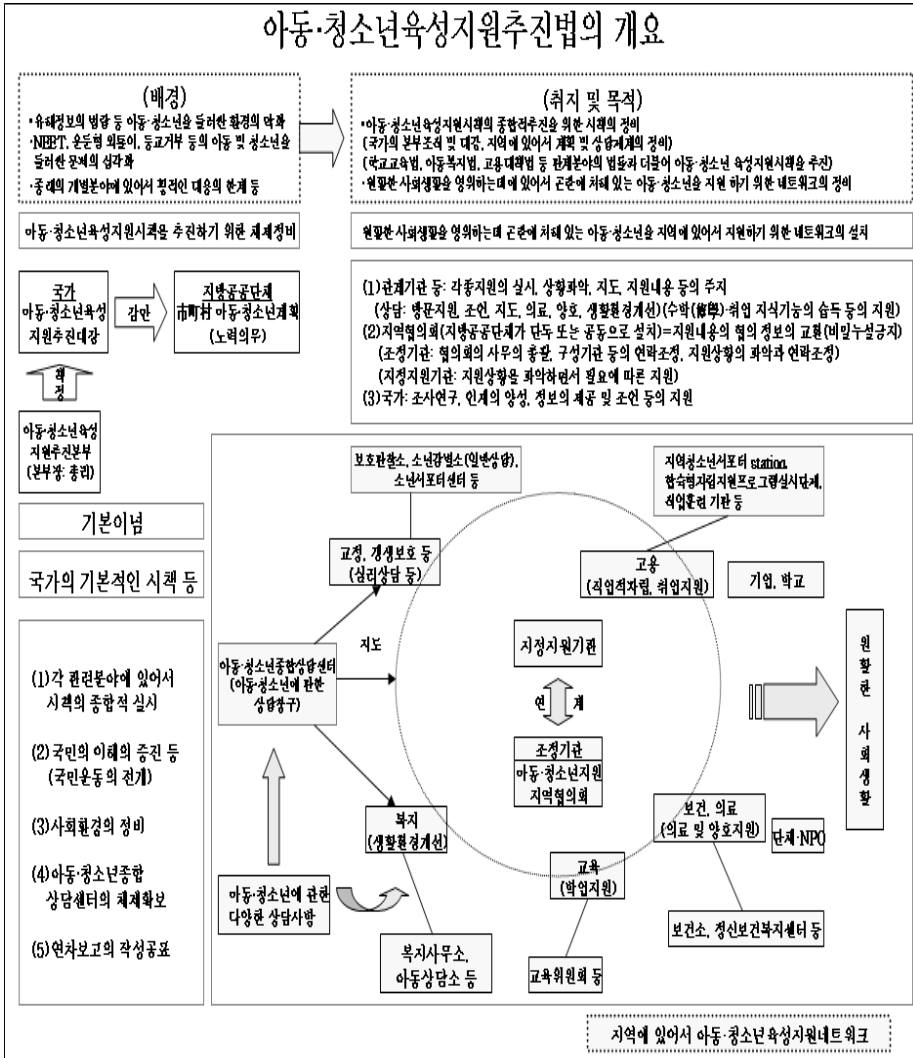
한편, 지방공공단체는 관계기관 등의 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효과적이고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지원내용에 관한 협의 등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를 두도록 노력하며, 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 등은 협의의 결과에 따라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제26조~제32조)

내각부에 특별한 기관으로써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의 작성 및 실시의 추진 등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본부」를 설치하며,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방공공단체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설명, 그 외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위기아동·청소년 유형별 대책

(1) 아동학대대책



[그림 IV-1]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의 개요

일본전국의 아동상담소 및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⁴⁵⁾에 관한 상담을 수

치로 살펴보면 2007년 40,639건으로 2000년의 17,725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학대의 내용별 상담대응을 보면 2007년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4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방임이 38.0% 순이다. 학대의 피해아동의 연령비를 보면 0세부터 취학 전의 유아가 전체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학대가 유아기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 아동상담소 아동학대 상담 건수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건수	1,101	1,171	1,372	1,611	1,961	2,722	4,102	5,352	6,932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11,631	17,725	23,274	23,738	26,569	33,408	34,472	37,323	40,639

자료: 厚生労働省 『福祉行政報告例』 日本青少年白書(2009年) 43면

45)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아동학대의 정의) 이 법률에 있어서 아동학대란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후견인 그 외의 자로 아동을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감호하는 아동(18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 하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아동의 신체에 외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 2.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외설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 3. 아동의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현저한 감식 또는 장시간의 방치, 보호자 이외의 동거인에 의한 전 2호 또는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의 방치 그 외의 보호자로서의 감호를 현저히 태만하는 것, 4. 아동에 대하여 현저한 폭언 또는 현저한 거절적인 대응, 아동이 동거하는 가정에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폭력(배우자(혼인의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마찬가지로의 사정이 있는 자를 포함)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것 및 이에 준하는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말한다.) 그 외의 아동에게 현저히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하는 것.

<표 IV-2> 아동상담소 아동학대 상담 내용별 건수

구분	총 수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
2007년	40,639 (100%)	16,296 (40.1%)	15,429 (38.0%)	1,293 (3.2%)	7,621 (18.8)

자료: 厚生労働省 『福祉行政報告例』 日本青少年白書(2009年) 43면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2008년 중에 경찰이 검거한 아동학대사건은 307건으로, 검거인원은 319명이었다. 피해아동은 319명으로 그 가운데 45명(14.1%)이 사망하는 등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까지 일본에서는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양호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상담소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됨에 따라 2005년 4월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에서는 각 지역기관(市町村)을 아동가정복지상담의 중심기관으로써 위치하도록 하고 종래의 아동상담소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아동가정복지상담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지역(市町村)에 있어서 아동가정복지상담대응을 실시하는 대응기관으로써 「요보호아동상담대책지역협의회」를 법정화 하였다(아동복지법 제25조의 2).

일본 후생노동성의 「아동·가족의 상담 원조를 하기 위하여-市町村 아동가정상담원조지침/아동상담소운영지침-」에 따르면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대상아동은 요보호아동(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감독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학대아동만이 아니라 비행아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종래의 「아동학대 Case Management Model사업」과 「아동학대방지市町村네트워크사업」의 실적을 근거로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및 대상가족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⁴⁶⁾.

46) 2009년 4월의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대상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보호자의 감독을 받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요보호아동, 보호자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 출산 후의 양육과 관련하여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임부까지 그 대상이 확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대응의 최대의 과제는 아동의 심신의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가 의심되면 먼저 관할 아동상담소⁴⁷⁾ 또는 발생지의 아동학대담당과(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에 통고하게 된다(加藤曜子, 2008 : 72). 통고를 받은 아동상담소는 48시간 이내에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긴급성인 높은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의 일시보호소 또는 병원에 위탁일시보호를 한다(坪井裕子, 2005 : 53). 학대아동의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도 일시보호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 일시보호 후 가정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양호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혹은 위탁부모⁴⁸⁾(里親:さとおや)에게 위탁된다.⁴⁹⁾ 한편, 가정에서의 생활의 지속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아동상담소로부터의 정기적인 지도를 받게 된다. 또한 지역보건센터의 보건사, 복지사무소의 가정상담원, 지역의 주임아동위원, 민생아동위원⁵⁰⁾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방

대되었다.

47) 아동상담소는 도도부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동학대문제만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기관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동의 조치 등에 대한 법적권한도 함께 갖고 있다. 최근의 아동학대의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아동상담소가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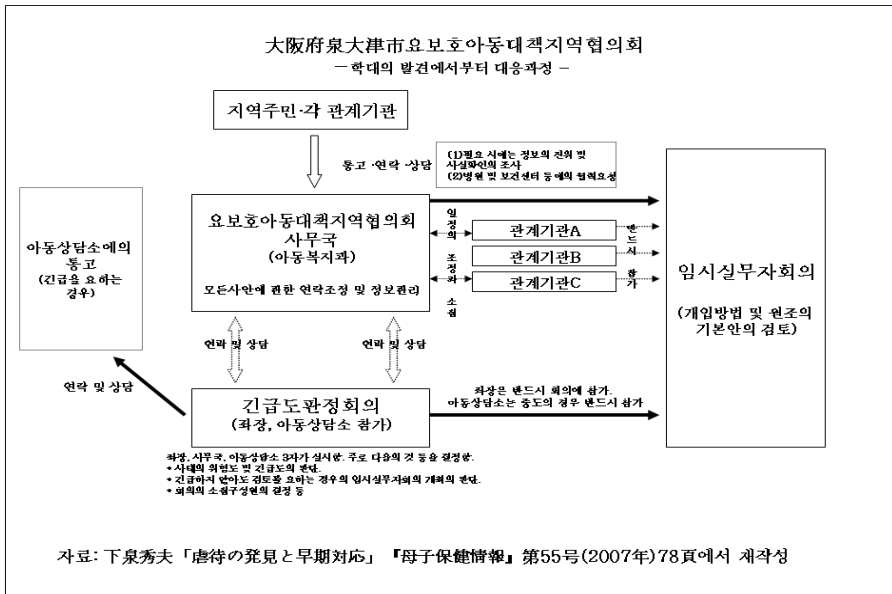
48) 2007년도의 위탁부모의 수는 2,582명으로 위탁아동의 수는 3,633명이다.

49) 아동학대방지법 제8조(통고 또는 송치를 받은 경우의 조치) 市町村 또는 도도부현에 설치된 복지사무소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고를 받은 때에는 市町村 또는 복지사무소의 장은 필요에 따라 근린주민,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그 외의 자의 협력을 얻으면서 당해 아동과의 면회 그 외의 당해아동의 안전의 확인을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아동복지법 제25조의 7 제1항 제1호 혹은 제2항 제1호 또는 제25조의 8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아동을 아동상담소에 송치하는 것, 2. 당해 아동 가운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의 요구 및 조사 혹은 질문,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검 및 조사 혹은 질문 또는 아동복지법 제33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일시보호의 실시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도부현지사 또는 아동상담소장에 통지하는 것.

2. 아동상담소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 또는 아동복지법 제25조의 7 제1항 제1호 혹은 제2항 제1호 또는 제25조의 8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송치를 받은 때에는 아동상담소장은 필요에 따라 근린주민,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그 외의 자의 협력을 얻어 당해 아동과의 면회 그 외의 당해아동의 안전의 확인을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동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시보호를 한다.

문을 하게 된다(日本青少年白書, 2009 : 137)⁵¹⁾.

의료기관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에 통고한다. 외래의 경과관찰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상담소에 통고하며 또한 지역보건센터 등에 연락하여 가정방문을 의뢰한다(下泉英雄, 2007 : 77).



[그림 IV-2] 大阪府泉大津市よ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 대응과정도

50)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민간자원봉사자로서 가정방문 및 지역의 정보수집 등을 담당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가정의 지원 등을 하고 있다.

51)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대의 조기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술과 같이 아동학대의 피해자의 대부분은 취학 전의 유아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2007년부터 생후 4개월까지의 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양육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양육환경 등을 파악하는 한편,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유아가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유아가정의 고립화를 방지하여 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후 4개월까지의 전호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양육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보건사, 조산사, 아동양육경험자 등이 방문하여 양육과 관련된 원조와 지도 및 조안 등을 하는 「양육지원가정방문사업」 및 양육부모들이 모여 상담 및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양육지원거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아동학대의 방지는 관계기관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아동학대방지조직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민간의 아동학대방지조직으로서 대표적인 조직으로서는 일본아동학대방지민간네트워크와 NPO법인 아동학대방지전국네트워크가 있는데 각각의 조직에 대해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본아동학대방지민간네트워크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인 「일본아동학대방지민간네트워크」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일본의 NPO단체이다. 이 단체는 부적절한 양육을 받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가정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만이 아니라 민간이 함께 지원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보다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1990년에 大阪(오오사카)에 아동학대방지협회를 설립한 것이 그 기원이다. 이후 일본 각지에서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민간단체가 설립되는 촉매의 역할을 하였다. 2004년 4월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아동학대방지네트워크 시가(CAPNeS)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아동학대방지 아이치(CAPNA)가 발기인이 되어, 첫 번째는 민간단체의 단계에서의 경험의 공유, 두 번째는 민간단체 간의 교류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전국학대방지 민간단체연락회」가 개최되어 일본아동학대방지민간네트워크가 설립되었다. 현재 일본전국의 41개의 민간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주로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⁵²⁾.

나. NPO법인 아동학대방지전국네트워크

아동학대방지전국네트워크는 2001년 아동학대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네트워크로서 설립된 단체이다. 2000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시행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본격적인 시책이 추진되었으나 각각의 법률의 내용 및 제

52) 일본아동학대방지민간네트워크 <http://www.jcapnet.jp/> (2010.7.25)

도가 충분하지 않아 아동복지에 관계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의 방지, 아동복지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법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운동단체로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아동학대방지전국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방지에 관계되는 다양한 단체와의 연계에 따른 아동학대방지법 및 아동복지법의 개정, 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의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며, 둘째로는 오렌지 리본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 학대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활동이다.

오렌지 리본운동은 2004년에 토치기(栃木)현에서 발생한 3세, 4세 아동이 부친의 친구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나 경찰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및 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운동이다. 매년 11월의 아동학대방지추진월간에 전국적으로 오렌지 리본을 붙이는 활동을 하여 아동 학대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⁵³⁾.

(2) 성매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성매매에 대해서 원조교제(援助交際)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교제란 여성이 금전목적으로 교제상대를 이성만남사이트 등에서 모집한 다음 성행위 등을 하는 매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조교제는 주로 18세 미만의 소년(아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넓게는 일시적인 교제의 대가로써 금전의 원조를 받는 행위를 지칭하고 또한 반드시 성행위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아동이 성교의 대상이 되어 상대를 유인(혹은 성인이 아동에 대해서 성교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거나 아동이 금전의 수수를 목적으로 성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동매춘·아동포르노처벌법에 의해 성인에 의한 아동매춘으로 간주된다. 아동과의 성행위 및 외설적인 행위는 금

53) NPO법인아동학대방지전국네트워크 <http://www.orangeribbon.jp/> (2010.7.25)

전의 수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고 또한 성인이 13세 미만의 성적 동의연령에 달하지 않은 소년 및 소녀를 상대방으로 한 성행위는 합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적용된다.

이러한 원조교제는 그 과정에서 아동이 착용하였던 속옷(ブルセラ)의 판매와 구입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시적인 교제를 조건으로 합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성적행위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음행조례 등에는 위반되지 않으며 또한 매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본의 청소년의 성매매행위는 근래에 있어서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변형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즉, 1985년에 소위 테레크라(テレクラ)가 등장하여 원조교제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또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휴대전화의 보급에 따라 음성적으로 정보교환 등이 가능하게 되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4년에는 다이얼Q2를 이용하여 이를 원조교제를 토크라고 지칭하여 아동을 이용한 매춘(조직매춘)을 한 영업자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⁵⁴⁾.

이러한 아동성매매의 대상이 된 소년은 피해아동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즉, 아동매춘, 아동포르노법 제15조(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은 아동매춘의 상대방이 된 것, 아동포르노에 묘사된 것 등에 의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입은 아동에 대해서 상호 연계를 도모하며 그 심신의 상황 처해있는 환경 등에 따라 당해아동이 입은 영향으로부터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회복하여 개인의 존엄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일시보호, 시설에의 입소 그 외의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법률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54) <http://www.dismas.jp/dic/%E6%8F%B4%E5%8A%A9%E4%BA%A4%E9%9A%9B> (2010.7.25)

관한 법률로 이러한 행위 등에 의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입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동법률에서는 성적학대를 받은 아동의 관계기관에의 통보 또는 사후조치 등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아동학대 일반에 관한 보호제도를 규정하는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여 입법의 불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⁵⁵⁾ 및 제6조⁵⁶⁾, 아동복지법 제25조⁵⁷⁾ 등이 유추 적용된다. 따라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게 된다. 즉, 아동매춘의 상대방이 된 것, 아동포르노에 묘사된 것 등에 의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입은 아동에 대해서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보건사, 변호사 그 외의 아동의 복지에 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것을 자각하여 아동학대의 방지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매춘의 상대방이 된 자는 신속하게 이것을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통고하여야 하며, 아동매춘의 상대방이 된 것 등으로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입은 아동을 발견한 자는 이것을 복지사무소 혹은 아동

55) 제5조(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등) 학교, 아동복지시설, 병원 그 외 아동의 복지의 업무상 관계가 있는 단체 및 학교의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의사, 보건사, 변호사 그 외 아동의 복지에 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여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자는 아동학대의 예방 그 외의 아동학대의 방지 및 아동학대를 입은 아동의 보호 및 자립의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실시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6) 제6조(아동학대에 관계되는 통고)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아동을 발견한 자는 신속하게 이것을 市町村,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혹은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위원을 개입시켜, 市町村,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혹은 아동상담소에 통고하여야 한다.

57) 제25조 요보호아동을 발견한 자는 이것을 市町村,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혹은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위원을 개입시켜 市町村, 도도부현이 설치하는 복지사무소 혹은 아동상담소에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죄를 범한 만14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정재판소에 통고하여야 한다.

상담소 또는 아동위원을 개입시켜 복지사무소 혹은 아동상담소에 통고하여야 한다.

2007년도에 아동상담소에 접수된 아동매춘 등 피해상담은 40건으로 일반적으로 아동, 가정 및 관계기관들로부터 아동매춘 등의 피해에 의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담 및 통고가 아동상담소에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의 심신의 상태, 가정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와 판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첫 번째로 아동상담소에의 통고 등에 의해 지속적인 카운슬링 등의 실시하고 둘째,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아동상담소의 일시보호소에서 일시보호의 실시한다. 세 번째, 종합적인 판정의 결과 아동의 생활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양호시설, 정서장애아 단기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에 입소조치를 하여 보호 및 지도 등을 실시하고 네 번째, 심신의 상태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알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日本青少年白書, 2009 : 141)(각 지원과 관련해서는 후술).

(3) 가출

2008년 일본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보호된 가출소년은 16,906명으로 대부분이 중학생으로(43.0%) 여자소년이 남자소년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日本青少年白書, 2009 : 56).

가정병리의 관점에서 가출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정서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자신이 이상으로 하는 생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일상생활의 장으로부터 이탈하여 익명의 장소를 구하고자 하는 일탈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邪須宗一, 1996 : 65).

이와 같은 가출소년은 경찰 등에 의해 발견되어 소년법상의 우범사건으로 처리되는데, 가출의 상태가 소년의 성격 및 환경에 비추어 범죄에 이를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범소년으로 처리 된다⁵⁸⁾.

58) 일본소년법 제2조의 우범소년의 유형으로서는 ①보호자의 적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일반적으로 남자소년의 가출의 경우, 불량교우와 함께 야간배회, 무단외박의 지속이 결과적으로 가출로 이어지는 형태가 많다. 가출의 초기에는 친구 등의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불량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여기에는 이미 비행화가 진행된 자가 출입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접촉과정에서 유기화학물의 흡입, 불순이성교제, 혹은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등의 절도 등을 학습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가출 후 범죄에 이르는 것은 압도적으로 남자소년의 경우가 많다. 또한 불량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부모 또는 교사 등으로부터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년들은 더욱더 그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장래에 대한 목표 및 향상의욕이 감퇴됨과 동시에 규범의식도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비행성을 강화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여자소년의 가출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친구 또는 이성친구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하지만 남자소년과 같이 적극적으로 비행에 이르지 않는다. 오히려 성적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출한 여자소년은 새로운 남성을 만나 식사 또는 유흥을 같이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가출을 동정받기를 원하기도 한다.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식사 또는 유흥 등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응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과 헤어져도 다른 남성을 찾아 다시 배회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자소년은 성에 대해 관대하게 됨과 동시에 성을 가출생활의 지속을 위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사회는 이러한 여자소년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성산업으로 흡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행소년집단이 개입하여 동거, 각성제의 남용, 매춘 등으로 연결되게 된다((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編, 1989 : 25-26).

이와 같이 가출소년의 경우에는 단순히 가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않는 성벽이 있는 것, ②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③범죄성이 있는 자 혹은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또는 유해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 ④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으로 이러한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비행 또는 성적일탈 등으로 연결되므로 경찰의 보도대상(소년보도센터)이 되며,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주거지로의 복귀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동양호시설 또는 아동자립지원시설 등에 입소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 등을 받게 된다.

<표 IV-3> 연도별 가출소년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원	27,159	26,232	23,815	22,615	18,704	16,630	16,989	17,549	16,906

자료: 日本青少年白書, 2009년, 56면.

<표 IV-4> 우범소년 가정법원 종국처리 인원

년도	총수		가출	불량 교우	불순 이성 교제	퇴학	불 건전 오락	야간 배회	그 외
	총수	여자							
1973	2,426	1,296	848	257	680	54	46	15	526
1974	2,172	1,117	785	278	544	59	51	28	427
1975	2,513	1,207	957	326	524	87	100	23	496
1976	2,560	1,310	984	298	543	84	71	58	522
1977	2,625	1,564	1,119	334	548	73	83	31	437
1978	2,973	1,780	1,253	341	665	62	86	39	527
1979	2,928	1,809	1,337	343	553	109	65	48	473
1980	3,275	1,879	1,466	420	554	105	95	53	582
1981	3,018	1,769	1,434	414	424	115	68	27	536
1982	3,131	1,731	1,493	365	393	163	82	74	604
1983	3,418	1,825	1,450	449	405	188	87	85	711
1984	3,137	1,747	1,497	371	341	166	79	59	624
1985	2,818	1,671	1,476	371	278	121	60	74	438
1986	2,438	1,457	1,202	330	279	129	29	48	421
1987	2,475	1,497	1,240	347	300	104	27	64	393
1988	2,169	1,334	1,074	263	226	136	44	80	346
1989	1,936	1,189	912	250	216	113	42	101	302
1990	1,876	1,088	821	289	198	98	38	92	340
1991	1,550	921	690	213	164	90	22	79	292
1992	1,310	791	533	235	163	65	37	46	231

1993	1,008	570	425	186	117	58	8	36	178
1994	857	522	359	167	118	45	13	17	138
1995	770	468	337	126	109	45	9	25	119
1996	863	525	337	163	128	46	10	21	158
1997	808	452	334	145	92	55	9	23	150
1998	856	488	354	117	126	35	10	38	176
1999	839	434	338	139	108	50	5	34	165
2000	968	490	369	152	154	37	8	36	212
2001	1,026	559	419	165	162	47	5	21	207
2002	1,025	583	416	177	136	48	7	37	204
2003	884	535	361	118	123	47	8	18	209
2004	924	514	280	76	73	35	9	26	425
2005	832	515	192	33	54	25	9	10	509

자료: 日本犯罪白書, 2006년, 349면.

(4) 청소년자살

1998년 이후 일본의 자살자 수는 연간 3만 명을 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도 관계되고 있으며 자살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은 자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넓게는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사망률은 성인과 비교하여 낮은 비율이지만 사인에서 접하는 자살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또한 정신적인 안정이 손상되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자살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의 자살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그다지 높지는 않으나 연령층에 따른 사인 순에서는 항상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의 경우에는 10~14세가 3위, 15~19세가 2위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V-5> 자살한 청소년의 학직별 현황(2008년)

학력 구분	총수	미취학 아동	학생						무직자	유직자	불상
			계	소학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그 외			
총수	4,049	0	943	9	74	224	520	116	1,594	1,460	52
여자	1,296	0	284	5	21	92	129	37	653	347	11
여자 비율	32.0	0.0	30.1	55.6	28.4	41.1	24.8	31.9	41.0	23.8	21.2

자료: 日本青少年白書, 2009년, 56면.

이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문제는 종래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일본에서는 넓게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2006년 6월 「자살대책기본법」이 성립되어, 일본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자살대책의 지침으로서 2007년 6월 「자살종합대책대강」을 책정하였다. 이 대강에서는 사회적인 시책의 추진에 의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개인적인 문제인 우울증 대책과 함께 사회전체가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는 대강에 근거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종합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내각관방장관을 주축으로 관계행정기관 상호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시책상호간의 충분한 조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에 관한 시책 등과 관련되는 분야와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자살대책은 가정 및 학교, 직장, 지역 등 사회전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종합적인 자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와 협력을 확보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해 구성되는 자살대책연락협의회 등의 자살대책의 검토의 장을 설치하여 동 협의회 등에 의해 지역에 있어서 자살대책의 계획 수립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보의 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⁵⁹⁾.

이러한 자살대책기본법의 성립에는 크게 국가의 정책과 시민에 의한 활동이 많은 영향을 주었다. 먼저, 국가의 정책으로서는 2000년에 실시된 「21세기에 있어서 국민건강만들기 운동」은 본격적으로 자살예방이 국가의 프로그램으로서 인정된 최초의 것으로 그 가운데에 자살방지를 위한 수치 및 노력목표가 명확히 되었다(本橋豊, 2005 : 358-362). 또한 국민의 정신건강만들기로서 2002년 12월에 자살방지대책유식자환담회가 자살예방을 위한 제언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에는 지역에 있어서 우울증대책검토회에 있어서 채택된 지방자치단체직원 및 보건의료종사자를 위한 매뉴얼이 배포되었다.

한편, 2005년 7월 중의원구성노동위원회에 있어서 자살에 관한 종합대책의 긴급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고, 동년 9월에는 관계성청연락회의를 설치하여 동년 12월에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을 정리하여 2015년까지 자살자를 2만 5,000명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6년 3월 후생노동성은 도도부현에 자살대책연락협의회의 설치 및 상담체제의 충실 등의 시책을 요청하여 동년 6월에는 의원입법에 의한 자살대책기본법이 성립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포함하는 등의 시책이 시작되었다.

한편, 시민에 의한 활동으로서는 먼저 1998년 7월에 동경자살방지센터에서 상담활동이 개시되었다. 2003년에는 동경자살방지센터는 세계 각국의 자살방지시책을 담당하는 단체와 함께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2006년에 자살대책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본 법률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岡本洋子, 2007 : 14).

가. 자살대책기본법의 개요

59) 자살종합대책대강 <http://www.pref.miyazaki.lg.jp/parts/000122806.pdf> 참조. (2010.7.25)

① 기본이념

먼저 본 법률의 목적은 자살대책의 기본이념과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자살대책의 추진에 의해 국민이 건강한 삶의 의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즉, 자살기도자를 줄이고 또한 자살의 유족에 대한 자애의 지원으로 2차적 자살의 방지도 함께 명시하고 있으며, 자살에 의한 심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헌법 제25조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노력하는 등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본 법률의 기본이념은 먼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회적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 및 배경을 가진 것으로 단순히 정신보건의적 관점만이 아니라 자살의 실태에 따른 종합적인 자살대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살대책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의 위험에의 대응과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의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시책으로서 실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의료기관, 사업주, 학교, 자살방지 등에 관계되는 활동을 실시하는 민간의 단체 등과의 상호 밀접한 연계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제2조).

이러한 자살대책을 위하여 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 자살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지며,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른 시책을 책정하고 이에 따른 자살대책을 실시할 책무를 갖는 다고 하고 있다(제3조 및 제4조)(東京都, 2008)⁶⁰⁾.

60) 예를 들어 동경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자살방지를 위하여 「동경도청소년의 자살방지대책에 관한 검토회」가 구성되어 2008년 6월에 「청소년의 자살대책에 관한 긴급제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①청소년의 자살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상의 자살유인정보대책과 자살예방에 관한 정보제공의 적극적 추진, ②보도기관에 대한 자살사건의 보도에 관한 자주적 가이드라인의 책정, ③건강위기정보의 조기파악과 신속한 정보제공체계의 구축, ④자살기도자에 대한 지원체제의 정비, ⑤청소년자살에 관한 실태파악, ⑥중

이러한 자살대책의 실시에 있어서 자살자 및 자살미수자, 그리고 그 유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충분히 배려함과 동시에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제7조). 또한 정부는 자살대책의 지침으로써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자살대책의 대강을 규정함과 동시에(제8조),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또는 재정상의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제9조)

② 기본적 시책

자살대책의 종합적인 시책으로서 조사연구의 추진(제11조), 국민의 이해의 증진(제12조), 인재의 확보(제13조), 정신건강의 유지에 관계되는 체제의 정비(제14조), 의료제공체제의 정비(제15조), 자살발생회피를 위한 체제의 정비(제16조), 자살 미수자에 대한 지원(제17조),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제18조),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③ 자살종합대책회의

이러한 자살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부에 특별한 기관으로써 자살종합대책회의를 설치하여 첫 번째로 자살종합대책대강의 작성, 두 번째는 자살대책에 필요한 관계행정기관의 상호조정을 할 것, 세 번째는 자살대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살대책의 실시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자살종합대책회의의 회장은 내각관방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국무대신 중에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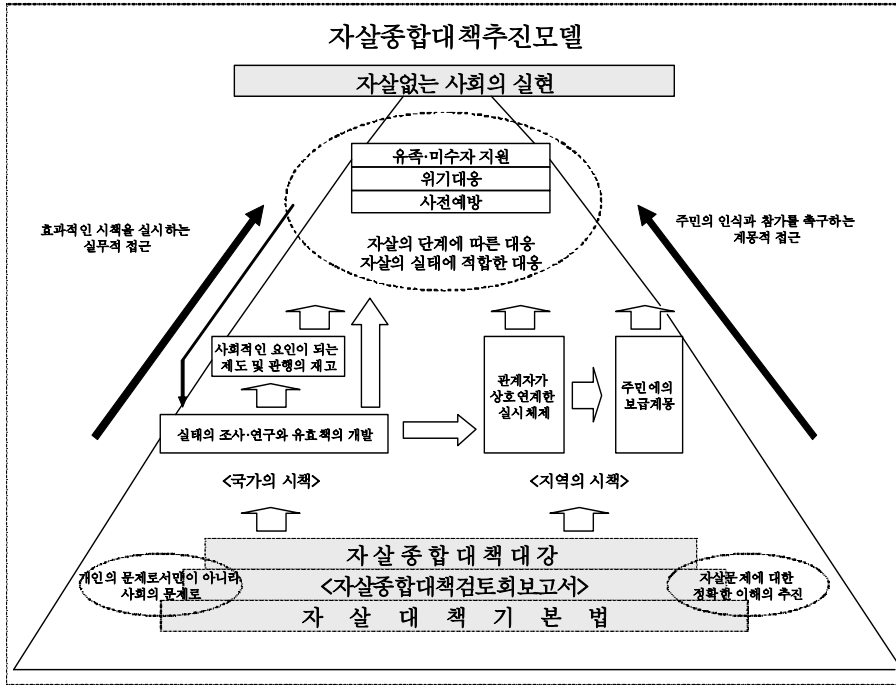
이와 같이 본 법률에 의해 국가 전체가 자살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과 이념, 그리고 시책의 방침 등이 책정되었고, 각 지원체제의 구체적인 시

장기적시점에서의 자살예방대책의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책에 대해서는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본 법률 제12조에서는 교육활동 및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방지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교육현장인 학교에 있어서의 자살대책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에 「자살예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自殺予防に向けての政府の総合的な対策について)」가 관계성청에 의해 구성된 자살대책관계성청연락협의회에 의해 책정되었다. 그 가운데 상담체제 등의 충실을 위하여 아동에 대해서는 「생명의 중요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추진」 및 「학교상담원 및 아동과 부모를 위한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阪中順子, 2004 : 19-23)⁶¹⁾. 그 외, 문부과학성에서는 아동의 특징 및 경향을 분석하면서 자살예방의 조사연구를 하며, 후생노동성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등의 양성의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는 생명의 중요성, 삶의 의의 등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집단 괴롭힘(いじめ) 등에 의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였다(岡本洋子, 2007: 25).

61) 하지만 이러한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상담원의 배치로 상담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고 있으나 촉탁제이기 때문에 상담원의 확보가 곤란하며, 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그림 IV-3] 자살종합대책 추진모델

4) 위기아동·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체계

(1) 위기아동·청소년의 발생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체제

가. SCHOOL SUPPORTER

2007년부터 실시된 SCHOOL SUPPORTER제도는 퇴직경찰관의 경험 등을 살려 범죄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의 안전과 비행방지, 범죄피해방지 등의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SCHOOL SUPPORTER의 중심적인 활동내용으로는 다음의 3가지이다.

① 아동 등의 안전 확보에 관한 학교 및 지역에 대한 지원

아동의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아동이 범죄피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와 통학로 외에, 공원 및 광장 등 아동의 생활구역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대책(등하교시의 위험발생 방지활동, 학교내외의 순찰 등) 및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② 지역안전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

지역안전정보 등의 수집 및 제공으로서는 학교방문을 실시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과의 접점을 갖는 것과 함께 지역주민의 요청 등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내지 수상한 자의 목격정보 및 범죄발생상황 외에 교통상의 위험요소 및 아동에 대한 범죄피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하고 있다.

③ 소년의 비행방지교육 및 범죄피해방지교육의 추진 등

소년의 비행방지교육 및 범죄피해방지교육의 추진으로서는 학교 등이 개최하는 소년의 비행방지교실 및 범죄피해방지교실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조언 등을 함과 동시에 경찰에의 협력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⁶²⁾⁶³⁾.

62) <http://www.police.pref.fukushima.jp/police/date/oshirase/seiann/sukusapo.htm>
참조. (2010.7.25)

63) 岩手県(아와테현)경찰SCHOOL SUPPORTER운영요강

제1(취지) 이 요강은 岩手県(아와테현)경찰SCHOOL SUPPORTER의 운용을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2(준거) SCHOOL SUPPORTER의 임용, 급여, 근무조건 및 신분의 처우에 대해서는 岩手県(아와테현)경찰비상근직원인사사무취급요령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이 요강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책무) SCHOOL SUPPORTER는 학교와 경찰과의 실질적인 연계의 담당자로서 비행·피해방지교실 등에 대한 지도조언 외에, 중학교의 생도지도담당자 등과 연계된 문제

행동에의 대응 및 아동에 대한 조연사안 등의 수상한 자의 정보의 파악과 학교 및 교육 위원회와의 정보의 공유화, 지역주민에의 정보제공 등을 하는 것에 의해 현민의 안전과 평온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책무로 한다.

2 SCHOOL SUPPORTER는 전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시 인격의 향상 및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임명) SCHOOL SUPPORTER는 소년경찰활동에 대해서 지식 및 경험이 있고 또한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경찰본부장이 임명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신망을 갖고 있을 것, (2)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열의를 갖고 있을 것, (3) 건강상에 활력이 있을 것.

제5(활동거점 등) SCHOOL SUPPORTER는 경찰본부장이 지정한 경찰서를 거점으로써 활동하는 것으로 한다.

2 활동범위는 지정경찰서에 소재하는 해당교육사무소관내로 한다.

제6(직무내용) SCHOOL SUPPORTER는 경찰본부소년과장 또는 지정경찰서의 서장의 지휘아래 다음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직무를 하는 것으로 하며, 직무의 상세는 SCHOOL SUPPORTER의 구체적인 임무로 한다. (1)소년의 비행방지 및 자립의 지원 등, (2)학교 등에 있어서 생도의 안전확보대책, (3)비행·범죄피해방지교육의 지원 등, (4)지역안전 정보 등의 파악 및 제공, (5)그 외 소년과장 또는 지정경찰서장이 명한 사항

제7(SCHOOL SUPPORTER의 학교에의 파견 등) SCHOOL SUPPORTER를 중학교에 파견하는 경우는 학교의 요청에 근거하여 지정경찰서장이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2 지정경찰서장은 학교로부터 SCHOOL SUPPORTER의 계속적파견요청에 관한 상담을 받은 때에는 학교의 의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다음 소년과장과 협의하여 당해 학교에 대한 SCHOOL SUPPORTER의 파견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SCHOOL SUPPORTER는 학교관계자와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SCHOOL SUPPORTER는 필요에 따라 소년과장 및 지정경찰서장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제8 SCHOOL SUPPORTER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2)관계자의 정당한 권리 및 자유를 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3)그 지위를 정당 또는 정치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

제9(신분증명서) SCHOOL SUPPORTER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1(지휘감독 등) SCHOOL SUPPORTER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년과장 및 지정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나. 맞벌이 가정 아동안전대책(아동대기공간교류활동추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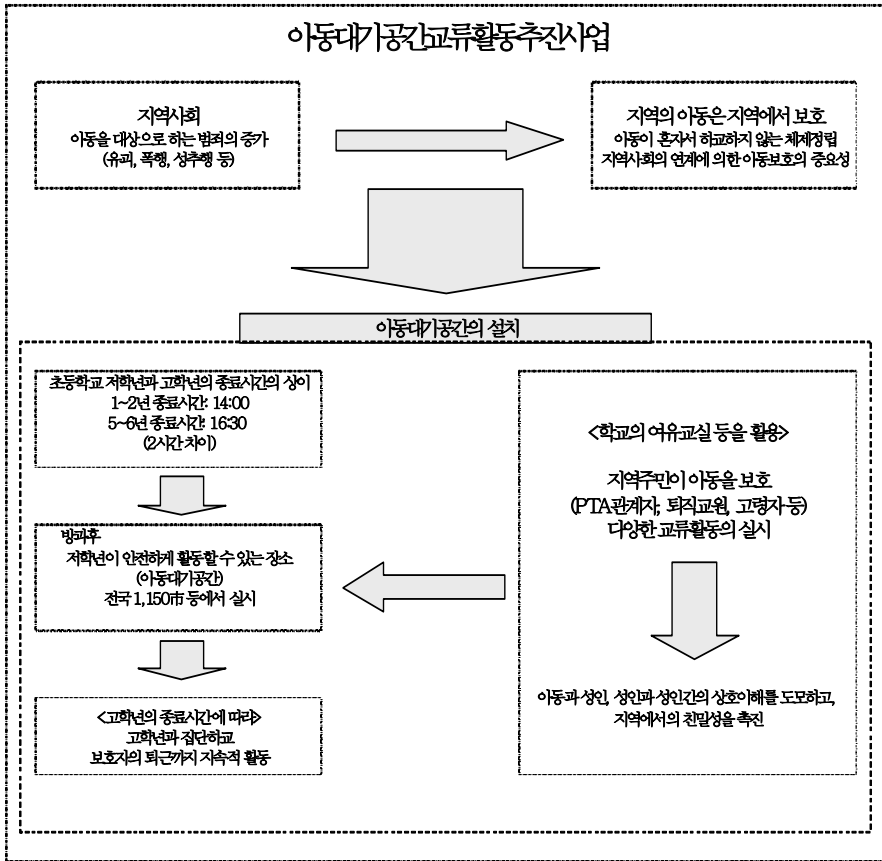
맞벌이 가정의 아동의 경우 부모가 귀탁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범죄피해의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책으로써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맞벌이 가정 아동안전대책(아동대기공간교류활동추진대책)이다. 이 제도는 특히 방과 후 보호자가 부재중인 가정의 아동이 안전하게 방과 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차원에서 보호하는 활동으로 후생노동성(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과 문부과학성(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먼저 후생노동성의 방과후아동건전육성사업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의 근로 등을 이유로 낮 시간 가정에 없는 초등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방과 후 아동)에 대해서 수업 종료 후에 지역의 아동관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놀이와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여 아동의 범죄피해 등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 일본 전국에 18,479개소(공영: 7,819개소, 민영: 10,66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아동 수는 807,857명이다. 활동내용으로는 방과 후의 아동의 안전 확보, 건강관리 및 아동의 건전육성 상 필요한 활동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⁶⁴⁾.

한편, 2005년도에 시작된 문부과학성의 지역아동교실추진사업도 방과 후의 학교의 교실 및 교정 등을 아동의 활동장소 등으로 개방하여 지역민, 퇴직교원, 대학생 등이 배치되어 다양한 활동을 함과 동시에 아동의 안전의 확보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⁶⁵⁾.

64) <http://www.mhlw.go.jp/bunya/kodomo/houkago-jidou.html> 참조. (2010.7.25)

65) <http://www.npo-suishin.net/jigyochikids.html> 참조. (201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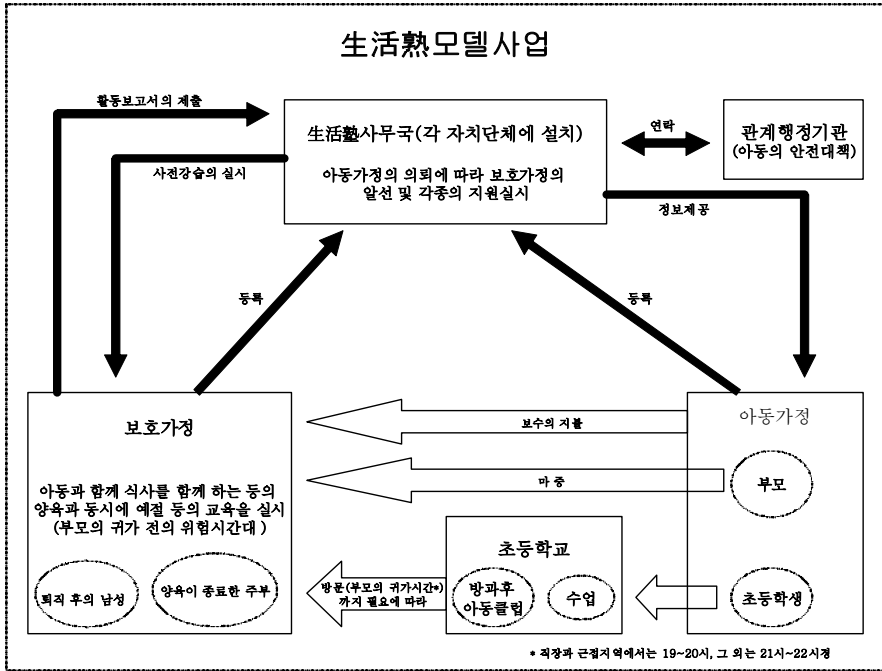
[그림 IV-4] 아동대기공간교류활동 추진사업도

(2) 위기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체제

가. 소년서포터 팀

소년서포터 팀은 소년의 문제행동의 다양화와 심각화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개개의 소년의 문제 상황(비행 및 위기아동·청소년)에 착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학교, 경찰, 아동상담소, 보호관찰소 등의 관계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여 연계된 대응을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矢作由実子, 2003 : 70).



[그림 IV-5] 生活熟 모델사업

문부과학성에서는 개개의 아동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위원회,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서포터 팀을 구성하여 「학교와 관계기관과의 행동연계에 관한 연구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종래까지의 시책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학교가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시점 및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문제행동 등의 미연방지,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 등 아동의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시책으로서 종래까지 강구되어 왔던 관계기관과 연계한 서포터체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 등의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문부과학성, 경찰청, 도도부현교육위원회 및 경찰국이 공통으로 「아동생도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계블록협의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지역에서의 관계 기관 상호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년서포터 팀의 활동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東北지역은 2000년도부터 「초·중학교에 있어서 생도지도 상의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서포터 팀이 구성되었다. 이 지역의 특징으로서는 아동생도의 건전육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시점과, 비행의 사전방지를 도모하는 단기적인 시점을 들 수 있다.

서포터 팀의 활동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내서포터 팀(교장, 교감, 생도지도담당, 학년주임, 학급담당, 양호교사, 교의, 학교 상담원, 그 외)을 편성하여 학생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지역 서포터 팀과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소년서포터 팀을 편성한다. 편성에는 시교육위원회, 학교, 경찰서, 보호사회, 아동상담소, 의사회, 복지사무소, 보건소, 소년센터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면서 개개의 소년의 문제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연계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그 중심이 된다. 즉 첫째, 문제행동의 정확한 실태 파악, 둘째 정보의 공유화, 셋째 역할분담과 행동연계 등이다. 즉, 정보교환만이 아니라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고 대상소년에의 적절한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나. 아동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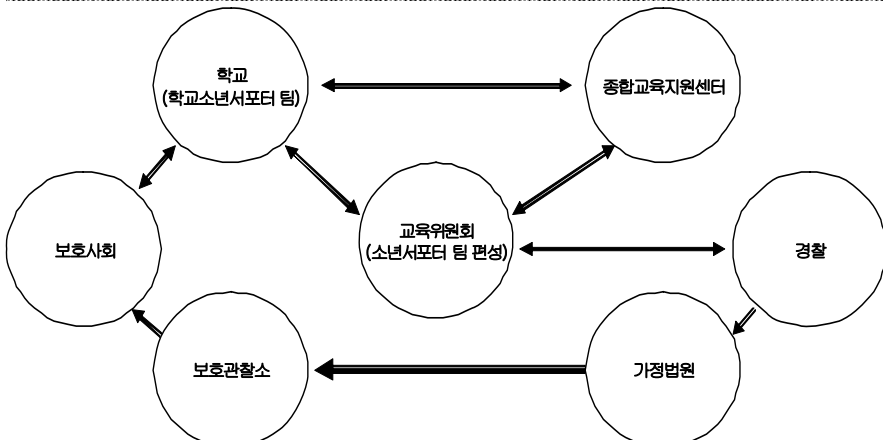
아동상담소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관계되는 다양한 상담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일본전국의 도도부현 및 지정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담 원조활동을 통한 아동복지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과 가족의 생활문제와 관련된 폭 넓은 대응과 또한 지역적 특성에 근거하는 기관으로서 「아동가정센터」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007년 4월 현재 일본전국에 19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東北지역의 소년서포터 팀의 구체적 대응형태

<사례:절도, 원조교제, 이간배회, 무단외박에 관계되는 사안>

서포터 팀의 편성까지의 경우: 학교장을 중심으로 교내 서포터 팀을 편성하여 대응하였으나 한계를 넘는 문제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의 보고에 따라 학교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담당할 시교육위원회는 소년서포터 팀으로 변환. 이유로는 대상학생(중학 2년의 여학생)의 문제행동이 학교 외에서 발생한 것, 그 외 다른 학교의 학생과 연결되어 있고, 성인남성과의 교제 등이 있었으며, 가정의 교육과 학교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소년서포터 팀을 편성하여 대응하도록 함.

소년서포터 팀의 구성: 시교육위원회(학교교육과, 종합교육지원센터), 재학중학교, 타교 중학교, 경찰, 보호사회
(경찰: 우범소년으로서 보도, 가정법원: 단기보호관찰처분, 보호사: 소년과 모친동반에 따른 지도, 학교: 적응지도교실 실시)



資料: 矢作由美子「少年サポートチームの現状と課題—非行—少年の心のサインが響けるチーム作りへ」『文教大学』(2004年)78頁。

[그림 IV-6] 동북지역 소년서포터팀의 대응형태

아동상담소의 운영은 「아동상담소운영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총무부문, 상담, 판정, 지도 및 일시보호부문⁶⁶⁾의 3가지로 구성되어 소장과 아동복지사, 상담원, 심리판정원, 의사(정신과, 소아과), 아동지도원, 보육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상담소의 업무로는 ① 아동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정 그 외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는 것, ②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고, 또한 의학적·심리학적·교육학적·사회학적 및 정신 위생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판정을 하는 것, ③ 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판정에

66) 2007년 4월 현재 일시보호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아동상담소는 116개소이다.

근거한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는 것, ④요보호아동의 일시보호를 하는 것 등이다(아동복지법 제15조의1).

①의 아동상담소에 있어서의 상담에는 아동의 보호·양육의 문제에 대한 양호상담, 장기결석, 미취학, 성격경향, 적성, 가정교육 등의 문제에 대한 양육 상담, 보건상담, 심신의 기능장애에 대한 상담, 비행아동의 보호에 대한 상담 등 매우 다양하다.

②의 필요한 조사란, 아동상담소에 상담의뢰가 있는 아동과 그 가정을 이해하여 현재 대상아동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어떠한 원조 및 지도가 필요한지를 면접 및 조회 등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판정은 정신과의사, 소아과의사, 심리판정원, 상담원, 아동복지사, 일시보호소의 아동상담원, 부모 등의 모든 직종에 의한 판정회의에서 결정된다(藤木昇, 1998 : 58).

③의 아동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지도란 양호시설·교호원 등의 아동복지 시설에의 입소, 수양부모(里親), 보호위탁자에의 위탁 등의 조치, 아동복지사, 아동위원회에 의한 지도 등이 있다. 또한 순회상담사업, 3세 아동 정신발달정밀진단 및 사후지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④의 일시보호란, 아동상담소장이 도도부현지사의 위탁을 받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긴급보호의 필요성, 행동관찰의 필요내지 경찰로부터의 요청 등)는 아동을 아동상담소 또는 적절한 자에게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關力編, 1998 : 159-160).

그 외에도 요보호아동의 통고를 받거나, 가정법원 또는 복지사무소로부터의 아동의 송치를 받는 것, 아동위원 또는 복지사무소에 필요한 조사를 위촉하는 것, 아동복지사 혹은 아동위원에게 아동 및 보호자의 지도를 위촉하거나 아동가정지원센터의 지도에 위탁하는 것, 가정법원에 친권의 상실, 후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청구하는 것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 소년지원센터

소년의 범죄피해 또는 중대한 비행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 문제행동의 초기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비행 또는 문제행동 등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대한 중점적인 보도활동과 중대한 비행의 징후라고 볼 수 있는 불량행위 등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인지하여 소년 및 그 가정에 대한 적절한 조언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이러한 소년지원센터의 활동은 단순히 경찰에 의한 활동만이 아니라 소년지도위원, 소년보도원 및 소년경찰협조원 등의 민간이 경찰과 함께 소년보도활동과 소년에게 유해한 사회환경의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소년상담센터」 등을 설치하여 전반적인 소년의 문제(비행, 학교문제, 건강, 범죄 피해, 폭력단 관계, 가출, 외박, 자살 등)에 대한 직접상담 및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소년비행방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998년 12월에 제정된 「소년경찰보도원활동요강(통달)」에 따라 소년경찰보도원을 신설하여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년경찰보도원이란 대학 등에서 심리학 또는 교육학 등을 이수한 자로 지방공공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선고시험에 합격한 자로 각 소년지원센터에 배치되어 경찰과 함께 소년상담, 소년범죄, 집단 괴롭힘 등의 피해소년에 대한 지원, 촉법, 우범소년 및 불량행위소년의 보도, 가출소년 및 요보호소년의 처리 및 지원 등 소년과 관계된 모든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소년경찰보도원의 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한 지역의 비행방지활동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경찰서에 소년경찰자원봉사자인 소년보도원⁶⁷⁾·소년경찰협조원·소년지도위원·피해소년지원인⁶⁸⁾ 등을 위촉하여 각각 세분화

67) 사단법인 전국소년보도원협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일본 전국의 47개 都道府縣에 59,877명의 소년경찰보도원이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다.

68) 소년보도원은 일선의 경찰서에 배치되어 종합적인 소년비행방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년경찰보조원은 지역의 비행그룹의 해체, 비행소년의 계속보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년지도위원은 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있어서의 소년보도, 풍속업 관계종사자에 대한 협조요청 등의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소년 지원인은 범죄 및 이치메 등의 피

된 비행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⁶⁹⁾.

라. 소년보호센터

경찰에서의 소년보호활동과는 다른 비권력적인 입장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소년보호활동을 담당하는 소년보호센터(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센터, 소년센터, 청소년지도센터, 청소년육성센터, 청소년보호의 집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소년비행의 증가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기초로 1952년에 京都와 大阪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또한 1964년에 총리부에서 「소년보호센터운영요령」이 제정됨에 따라 소년보호센터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즉 「소년보호센터는 소년보호관계 기관, 관계단체 및 민간 등이 합동으로 활동하여 문제소년 및 비행소년, 그리고 이러한 집단을 조기발견·보호 및 정보의 정비 등 소년의 비행방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지향한다.」고 함과 동시에 그때까지 각 지역에서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어 오던 방범협회 및 소년보호협회 등을 대신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각 지역에 소년보호센터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또한 소년보호센터의 설립의 주관부서도 都道府縣 또는 市の 교육위원회 및 민생부가 각 都道府縣의 청소년대책(추진)본부와 연계하여 소년의 비행방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重松一義, 1976: 983)

소년보호센터의 일반적인 활동으로서는 가두보호활동, 소년상담 활동, 환

해를 입은 소년의 정신적인 충격을 완화시키고 해당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지원이 필요한 피해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 등과 연락하며 각각의 해당소년에 따른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69) 일본 경찰청 소년비행방지법제에 관한 연구회에 의하면 2003년 4월 1일 현재 일본 전국에 180개소의 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1,300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경찰에 의한 소년경찰자원봉사자의 현황으로는 소년보호원이 약 51,000명, 소년경찰보조원이 약 1,000명, 소년지도위원이 약 6,000명 등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http://www.npa.go.jp/safetylife/syonen14/hikouken.htm>. (2010.7.25)

경정화활동이 그 중심이다. 가두보도활동은 2인 1조로 역 또는 대형점포 등 소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가두보도가 실시되며, 소년의 약물남용·흡연·가출·부등교 등에 대한 보도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 등이 이루어진다. 소년상담 활동은 출장상담과 보도 후의 계속상담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교사로부터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 환경정화활동 으로서는 유해도서자동판매기 등 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에 대한 감시 및 철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위기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가. 아동양호시설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41조에서는 「아동양호시설은 유아를 제외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 학대 받는 아동 그 외 환경 상 양호를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양호하며 또한 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 상 양호를 요하는 아동이란, 부모의 행방불명, 사망, 부상입원, 구금, 이혼, 경제적 이유 등, 그 외의 이유(학대아동, 가출, 비행)로 가정에서의 양육이 곤란한 아동을 말한다. (關力, 1998: 167)

아동양호시설은 2007년 10월 현재 564개의 시설이 있으며, 입소정원은 33,917명으로 재원아동 수는 30,846명(재원을 90.9%)이다.

아동양호시설은 종래의 고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1948년의 아동복지법의 제정에 의해 양호시설로서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일반적으로는 학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아동양호시설에의 입소여부와 관련해서는 아동상담소가 담당하고 있다. 즉, 아동상담소는 양호를 요하는 아동과 관련된 상담을 있으면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정보로부터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또는 아동양호시설에 입소하게 한다.

아동양호시설의 직원구성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제42조에 따른다. 즉, 아동양호시설에는 아동지도원(아동양호시설에 있어서 아동의 생활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촉탁의사, 보육사, 영양사 및 조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무원 및 간호사, 용무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아동학대의 증가에 따라 피학대아동의 입소가 증가됨에 따라 아동의 심신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담당직원을 배치하는 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의 생활전반에 관여하는 아동지도원 및 보육사를 직접처우직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시설의 직원은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 및 연수회 등에의 참가를 제외하면 일반가정의 부모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양호시설의 형태는 크게 大舍制, 小舍制, 그룹 홈, 中舍制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大舍制란, 병원 또는 학교와 같이 하나의 커다란 건물에 필요한 설비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아동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소이다.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거실에 5~8명 정도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남녀별, 연령별로 거실이 구분되어 있다. 공동의 설비 및 생활공간, 동일한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지만 사생활의 침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小舍制란, 하나의 시설에 독립된 가옥이 여러 개 있고, 각각의 가옥에는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8~12명 정도의 남녀혼합과 다양한 연령의 아동과 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이다. 생활단위가 소집단이기 때문에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룹 홈이란, 별도로 설립된 시설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택 등을 이용하여 3~8명 정도의 소수의 아동과 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형태이다. 일반주택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아동양호시설과 다르다.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체험 및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 등 다양한 생활체험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자립을 준비하는 소년의 자립생활훈련에 보다 효과적인 형태이다. 한편, 부부가 함께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Family Group Home이라고 지칭한다.

中舍制란 커다란 건물 내부를 구분하여 작은 생활 집단 장소를 만들어 각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아동자립지원시설(阿部洋子, 2005 : 23)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44조에서는 「아동자립지원시설(종래의 감화원)은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및 가정환경 그 외의 환경상의 이유(성매매 또는 가출 등)로 생활지도 등을 요하는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또는 보호자 하에서 다니게 하여 개개의 아동의 상황에 따른 필요한 지도를 하고 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으로 가정 및 학교 등의 적응에 문제가 있는 아동⁷⁰⁾을 입소하게 하여 생활, 교육 및 치료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의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현재 일본전국에 5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아동자립지원시설에의 입원 및 퇴원의 결정은 아동상담소의 결정 및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의 지도는 생활지도, 학습지도, 직업지도, 그 외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생활지도는 기본적 생활습관, 사회적 행동양식, 집단 내에서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원이 상시적으로 함께 기숙하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방식이다(森望, 2002 : 403).

다. 자립원조 홈

자립원조 홈이란 시설 등으로부터 퇴소하였으나 사회적인 자립이 충분하

70) 가정·학교 등의 적응에 문제가 있는 아동이란 흡연·음주·성매매 등의 불량행위를 한 소년, 이와 같은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①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아동, ②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기피하는 아동, ③불순한 교제를 하거나 불량한 장소에 출입하는 아동 등으로 우범소년 또는 불량행위소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 않은 아동 등에 대해서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즉, 15세부터 20세까지의 가정이 없는 아동 및 가정에 거주할 수 없는 아동 등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그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자립원조 홈은 아동복지법 제6조의(271)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 2005년 현재 일본전국에 41개소가 설치되어 184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자립원조 홈에 입소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 등의 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경도의 지적장애아동도 입소하고 있다. 주로 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또는 가정법원의 시험관찰에 의해 입소하고 있다(72).

5) 시사점

지금까지 일본의 위기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보호)의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술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위기아동 및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출·성폭력·성매매·아동학대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위기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등교거부, 운둔형 외톨이, 집단 괴롭힘(いじめ), 청소년 자살 등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대응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아동·청소년 육성지원 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기초로 하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네트워크의 설립은 단순히 위기아동·청소년의 발생 후의 대책에 한정되지 않고 위기의 원인규명과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71) 이 법률에서 아동자립생활원조사업이란 제27조 제9항의 조치에 관계되는 자에 대해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에 있어서 동항에서 규정하는 일상생활상의 원조 및 생활지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72) <http://ja.wikipedia.org/wiki/自立援助ホーム> 참조. (2010.7.25)

한편, 아동학대, 성매매, 가출, 자살 등의 개별적 위기 유형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방지법·아동복지법·아동매춘·포르노금지법·소년법·자살대책기본법 등에 따른 법적 대응과 함께 위기유형별 세부적인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관계기관 간의 연계와 민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실시되고 있다. 특히 위기아동·청소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SCHOOL SUPPORTER제도와 범죄 등의 피해에 항시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동대기공간교류활동추진대책(아동대기공간교류활동추진사업·生活熟모델사업) 등은 최근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위기아동·청소년의 보호체제의 다양성과 긴밀한 연계 등은 위기유형별에 따른 세밀한 대응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각각의 대응체제의 운용과 활동내용이 대부분 중첩되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서포터 팀과 소년지원센터, 그리고 소년보호센터는 그 운용의 주체가 경찰과 민간 등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서는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각 지원체제가 추구하는 목표가 모호해짐에 따라 활동의 형식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위기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체제의 확립은 그 목표달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각 지원체제의 명확한 활동목표의 설정이 선행되어야만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의 위기아동·청소년보호의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미국⁷³⁾

최근 위기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등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위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슈는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단일한 대응이나 정책 및 개별 프로그램을 통한 노력으로서는 문제해결의 한계가 지적되어 온 지 오래이다. 위기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은 이미 다양한 욕구와 상호관련된 문제행동 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YS-Net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수립되면서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아동·청소년에게 의식주, 학업지속, 정서적 지지, 역할모델, 문화체험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CYS-Net체제는 위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유기적 연결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여기서는 미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지역중심의 위기 청소년지원 체제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입법례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미국의 지역사회협력사업의 사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청소년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사례를 소개한다.

전자에는 트리플 피 사례(Triple P Initiative), 강한 지역사회(Strong Community) 사례, 아동보호 지역사회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 for Protecting Children) 사례 및 드르햄 종합보호체계(Durham Family Initiative) 등이 해당되며, 후자에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폭력개입 프로그램(VIP: Violence Intervention Project), 지역사회 주목전략(CTC: Community That Care), 종합 지역사회 이니셔티브(CCI: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그리고 온-트랙(On Track) 프

73) 이 부분은 천정웅(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집필하였음.

로그랩 사례 등이 간략히 소개될 것이다.

이어서 가출이나 노숙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사례로서 미시간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을 위한 드롭-인 센터(drop-in center)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텍사스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출 및 노숙청소년을 위한 입법사례로서 맥키니 법(McKinney Act) 적용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위기 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 또는 서비스 통합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에서의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기관, 자원, 제도를 보다 밀접히 연계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게 될 것이다.

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중심 지원체계

미국 전역에서 지역사회들이 아동과 청소년 및 그 가족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는 첫째, 아동 빈곤의 증대 둘째, 편부모가정, 학령기 아동양육, 및 사회복지 의존도의 증대 셋째, 학교 중도탈락 및 학교실패의 증대, 넷째, 미국 경제를 생산적이고 경쟁적으로 유지할 숙련되고 동기 부여된 노동력의 부족, 다섯째, 알코올, 약물오남용 및 가족 해체의 증대, 그리고 아동학대, 유기, 방임의 증가, 여섯째, 폭력의 증대, 감호조치와 폭력범죄 증가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 일곱째, 점차 양극화되는 사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격차, 그리고 여덟째로 세대를 이어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미국 주류사회 속하지 못하는 인구집단의 증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적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들이 가족과 사회제도 및 사회구조 등 많은 이슈들과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아동 학대 이슈는 아동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선진국 미국에서의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

사회중심의 노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아동학대 예방노력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부모들의 양육기술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점차 지역사회 내에서의 부정적 상황들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부모들의 옳은 양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개인-가족 행동과 근린, 지역사회 및 문화적 상황간의 호혜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1) 트리플 피 이니시어티브 (Triple P Initiative)

첫째, Triple P 이니시어티브이다. Positive Parenting Program에서의 세 개의 "P"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명된 접근이다. 이는 주로 발달지체나 행동문제를 갖고 있는 자녀들 가진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에서 개발된 것이지만 점차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좋은 전략으로 평가된 것이다. "트리플 P"는 자녀양육에서 각기 다른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들에게 정보와 양육실천기술의 공동된 틀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통합적 개입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학습이론, 아동과 가족의 행동치료, 그리고 일상 상황에서의 양육에 관한 발달적 연구 등에 근거하여, 모든 개입들은 건강한 양육기술을 가르치고 부정적 양육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부모들은 자기-모니터링, 목적에 대한 자기 결정성, 실행에 대한 자기 평가 및 변화 전략에 대한 자기 선택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러한 양육기술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두 개의 통로를 통해 전달된다. 첫째는 "일반 트리플 P(Universal Triple P)"로서 미디어 기반의 사회마케팅 전략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긍정적 부모의 원칙에 대해 교육하고 공통된 아동 돌봄 이슈들을 다루는 일련의 단순한 기법들을 제공한다. 예컨대 안전, 행동관리, 규율전략, 및 기본 건강보호의 보장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라디오나 지역신문, 학교별 소식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광고우편물,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된다. 이러한 정보는 모든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된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선택 트리플 P(Selected Triple P)"가 제공되는데, 이는 해당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자녀양육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유치원 등 다양한 시설들이 활용된다. 자녀양육 세미나의 형태로도 이루어지는데, 긍정적 양육의 힘, 자신감 있게 키우기, 유능한 아동, 탄력성 있는 아동으로 키우기 등의 주제가 주로 활용된다.

(2) 강한 지역사회(Strong Community) 전략

둘째, 강한 지역사회 전략(Strong community)이다. 아동과 상호호혜성에 대한 집단적 책임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와 기대를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전략사례이다. 2002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Greenville 카운티에 속한 6개의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들 지역에서의 서비스제공기관과 일반 대중들이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노력을 통해서 아동학대문제와 관련된 복잡하고 파괴적인 상호작용의 연결망들을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단 주민들이 자신들의 근린지역이 가족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곳이며 개인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느끼게 되면, 이러한 대중의 요구는 서비스의 확대와 체제의 개선을 촉진할 것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4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각성하도록 끌어올리고 가족 지지의 확장을 위한 기회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를 아동학대를 예방하도록 하는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동원한다. 셋째는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원들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넷째 단계는 이러한 자원에 대한 조치들을 제도화하여 이러한

지지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3) 아동보호 지역사회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 for Protecting Children)

셋째는 아동보호 지역사회 파트너십(Community Partnership for Protecting Children) 모델이다. 응집력 있는 아동학대방지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는 공식적인 아동복지노력과 지역중심의 예방 활동 간의 협력의 결여라는 점이었다. 아동보호 지역사회 파트너십(CPPC) 모델은 이러한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는 아동복지 이니시어티브이며 가족지지 원칙을 대중적인 아동복지제도로 통합하면서 가족지지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에 아동안전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4개의 지역사회에서만 실행되고 평가되었지만, 2009년 현재 이 모델은 미국 전역에 걸쳐 약 50개의 파트너십 관계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CPPC 이니시어티브의 변화의 이론(theory of change)에는 4개의 핵심요소가 있다. 첫째는 해당 아동이 아동학대와 방임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가족들에 대해 개별화된 실행계획(Individualized Course of Action: ICA)을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식적 서비스와 비 공식적 지지를 모두 포함하는 근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는 일반 아동보호 서비스 (child protective service) 기관에서의 정책과 실천 및 문화를 변화시켜서 아동복지사들이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지역과 주민들과 보다 잘 연결되도록 하고, 서비스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책무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지역의 기관대표자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의사결정기구를 수립하여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개발하고, 자신들의 전략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시민들과 다른 자원들을 동원하여 아동 안전성을 증대하는 것이다.

(4) 드르헵 가족 이니셔티브 (Durham Family Initiative)

넷째, Durham Family Initiative (DFI)로써 고위험 가족이나 예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찾아내고 그 후에는 이들을 적절한 지역중심 자원들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편적 사정도구의 일관성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총칭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나 전문적 자원을 확대시키고 지역사회 역량을 개선하여 가족들에게 증거중심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이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하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DFI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Durham 종합보호체계를 개발하여 지역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Durham 종합보호체계는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들을 심각하고 복잡한 행동적, 학업적, 사회적 안전적 욕구를 가진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가족들을 도와주도록 하는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이다. Durham 종합보호체계는 주요한 공공 및 민간 보건 서비스 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문제 있는 아동과 그 가족들의 욕구를 최고로 잘 규명하고, 관여하며 충족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공유해야한다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가 점차 발전되었는데 그 처음은 2002년에 있었던 주요 기관장과 중간관리자들 간의 회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들 모임에서 수립된 관계에 입각하여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지역 기관과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위해 제공되는 이론과 실천 연수과정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 아동·청소년 안전과 청소년범죄의 지역중심 접근사례

과거에는 비행에 빠지기 쉬운 개인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나이가 더 많은 가족구성원들과 연결하는 것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있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직접적인 예방과 개입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범죄에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는 것에 의해 촉진되어 오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중심 청소년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각종 이니셔티브(initiative) 중에서 일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아동폭력 개입프로젝트 (Violence Intervention Project)

첫째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폭력 개입 프로젝트(Violence Intervention Project: VIP)의 사례를 들 수 있다. 1992년도에 당시에 가장 높은 폭력 문제를 갖고 있었던 도시, New Orleans에 지역사회 단체와 학교 대표자들, 주민 위원회 지도자, 그리고 경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VIP 사례는 New Orleans 지역에서 아동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목격자가 되는 데 가장 많이 노출된 사실에 대한 대책으로 생겨난 것이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가장 먼저 보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개입들로부터 혜택을 입게 되는 아동들을 찾아내는데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다.

VIP는 경찰, 학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아동을 둘러싼 보호자, 부모, 경찰, 교사, 및 보건인력 들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둔다. 경찰관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들로부터 폭력이 아동과 그 가족에 끼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아동들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 연수를 받는다. "폭력반대 어머니단(Moms Against Violence)" 과 같은 지역사회 단체나 가족 구성원 중에 지역 내에서의 폭력으로 희생된 자녀를 가진 주민 집단들에게는 지지(support)가 제공된다. 이 VIP 접근법은 전체 지역사회가 지역사회내의 비행이나 폭력 등과 같은 위기요인에 맞서서 이러한 위기를 예방하거나 개입하는 일에 전 지역사회가 관련되도록 하는 것이다.

(2) 지역사회 주목전략 (Community that Care)

둘째는 지역사회 주목전략 (CTC: Community that Care)의 사례로서 청소년의 건강문제와 문제행동의 원인변수 등에 대한 연구에 입각한 지역사회 전반에 관련된 종합적인 청소년 예방 전략이다. 이론적으로는 사회발전 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 목적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측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보호요인을 증대시킴으로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를 동원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CTC는 청소년의 긍정적 사회발전을 증진하고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운영하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지역사회 고유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가장 적합한 예방정책, 행동조치 및 프로그램들을 선정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주목전략은 또한 일반 프로그램과 같이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운영체제와 같이 사용자 하여금 목적달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목 전략 (CTC)는 많은 지역사회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 범죄 및 관련 문제의 예방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그 운영체제는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 및 비행보호국 (OJJDP)에 의해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분석틀로서 채택되었으며, 지난 10여 년간 미국 전역의 500여 지역사회에서 실행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 주목 전략(CTC)는 영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등의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도 시범 적용을 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의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 주목 전략 (CTC)의 실행과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에서 위험과 보호의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자원의 전반적 관리를 개선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특정한 위험요인을 겨냥하는 접근법들을 계획하는 등 수많은 중요한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사회 주목 전략(CTC)의 과정은 크게 지역사회 준비, 지역사회 동원화 및 평가 그리

고 프로그램 실행 등의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 과정은 지역사회와 그 파트너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평가과정을 포함한다. 준비성 평가에는 기존에 이루어졌던 여러 사안에서 나타난 지역사회 참여정도, 협력조정 정도, 그리고 전문가들의 파트너십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된다. 영국의 경우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한 후 수 많은 지역을 사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지역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동원화의 단계이다. 일단 한 지역이나 지역사회가 선정되면, 수많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이 있다. 첫째는 지역사회를 동원하여 파트너십 관계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위험성과 자원을 평가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두개의 핵심 집단 즉, 핵심 지도자 집단과 그 집행부 그리고, 지역사회 이사회와 지역사회 계획 팀이 구성된다.

세 번째는 자원조사의 단계이다. 지역사회 이사회에서는 지역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자료에 근거한 개괄적 현황을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요인의 정도, 보호요인 및 범죄 그리고 기타 문제행동의 정도 등에 관한 지역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지역사회 주목 전략 (CTC)의 청소년 설문조사와 위험요인과 성과 등에 관한 지표들이 사용된다. 그 결과는 무엇이 건강한 행동을 촉진하며 또 어떤 요인들이 지역사회 범죄 위험에 기여하는지 등에 대한 하나의 전체적 그림을 갖게 해준다.

네 번째는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지역사회 이사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청소년발전 계획을 마련한다. 이 계획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진 위험 요인의 감소와 보호요인의 증대에 대한 바람직한 성과를 정의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앞서 말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기초평가결과를 사용하여,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정도변화가 구체적인 시간계획에 의해 변화하도록 되어 있는 명백하고 측정가능한 성과를 개발한다. 이

것은 나중에 그 계획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구체화된 성과지표들은 또한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정책, 행동조치 그리고 프로그램 들을 적용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있다. 여기에는 실행 계획을 위한 자원들을 정의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필요한 자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 지도자를 이사회를 참여시키는 것은 중요하다. 계획을 실행하는 일은 실행집단과 단체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분명히 정의하고 실행과정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정보체제를 개발함으로써 촉진된다. 계획의 실행은 또한 해당 계획의 실행에 기여하는 기회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빈번히 의사소통함으로써 그리고 바람직한 성과를 얻기 위해 그 진전 상황을 모니터하게 된다.

(3) 종합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청소년안전과 청소년범죄의 지역중심 사례의 또 다른 것은 "종합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즉, CCI(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를 들 수 있다. CCI 지역중심 청소년 대책은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근린지역 중심 노력이다. 종합 지역사회 이니셔티브(CCI)는 개인과 가족 중에서도 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 아동과 청소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개선하려고 한다.

종합 지역사회 이니셔티브(CCI)에 입각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로는 1930년대의 근린권 프로그램 및 1960년대의 빈곤과의 전쟁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종합 지역사회 이니셔티브(CCI)를 설명하는 분석틀을 개발한 코넬(Connell) 과 아버(Aber)에 의하면, 경제적 기회구조와 제도적 역량 같은 지역 사회적 차원의 상황은 사회적 매개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들)과 발달적 과정 (친사회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또한 지역사회가 목표로 하는 청소년문제행동 대책 등과 같은 전략의 바람직한 성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최근, 종합 지역사회 이니셔티브(CCI)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정리한 바 있는 쿠비쉬(Kubisch)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그 특징으로 지적했다. 첫째, 종합적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CCI) 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사회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점이다. 둘째, 종합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CCI) 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우선 지역사회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 등에서 “종합적” 이라는 원칙을 갖는다. 또한 지역사회 건설 (community building) 이라는 원칙을 갖는다. 이러한 점은 이 전략 (CCI)이 지역사회 주민을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의 능력을 증대시키고, 사람과 기관 등을 연결 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운영 전략과 활동을 갖게 된다. 여기에는 사회 서비스, 경제개발, 신체적 건강, 삶의 질을 위한 활동 등이 포함된다.

(4) 온 트랙 (On Track) 모델

청소년안전과 청소년범죄의 지역중심 사례의 네 번째는 On Track 모델이다. 앞서 언급한 CTC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유사하게 "온 트랙" 프로젝트의 사례 또한 지역사회 근린 지역 내의 여러 기관단체들이 조기 개입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슈에 대한 전 지역범위의 일체적 접근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온 트랙"은 CTC와 유사한 이론적 그리고 연구적 분석들에 입각하여 구상된 것이다. On Track은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체에 입각하였다.

첫째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동료 관계에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하면 장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위기 아동과 청소년은 조기에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개별 아동이나,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확대하는 데에는 특정유형의 개입이 효과적이란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들은 위험요인들은 반드시 인과적이진 않지만 장래 비행가능성이 많은 청소년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본다. 아동이 위험요인들을 다수 가지고 있으며 보호요인이 낮은 상태라면 이러한 예측성은 더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의 결과로 조기 발견과 개입은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와 비행을 해결하는 데에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온 트랙"이 특별히 전제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아동들이나 가족은 특성의 지역사회 상황에서 각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수의 개입으로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온 트랙"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즉, 가정방문(home visiting), 취학전 교육, 부모 지지와 교육, 가족 치료, 가족과 학교의 동반자관계 수립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특별한 욕구를 가진 대상을 위해 제공되는 "전문가 서비스(specialist services)"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지역중심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매우 위험도가 높거나 비행가능성이 있는 24개의 지역을 선정하였다. 지리적으로는 작은 범위로 한정되었으며 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거나 비행이 우려되는 4세-12세의 아동들을 목표대상으로 하였다. "온 트랙"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시점의 미국은 이른바 지역사회개입에 대한 증거기반이 확립된 때였다.

이렇게 선정된 각 지역에는 개입을 위한 다섯 가지의 서비스 범주에 대한 개념정의들이 이루어져 있었지만, 어떤 종류의 구체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융통성이 주어졌다. 또한 그 결론은 매우 광범위한 개입을 하는 것이었다. 각 범주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는 판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수의 서비스 활동들이 앞서 언급한 "전문가 서비스"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3)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지역중심 사례와 입법례

미국의 가출을 통한 노숙 청소년의 수는 적게는 50만 명에서 많게는 17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점에서 이러한 노숙청소년을 위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효과적 접근과 개입을 위한 노력 또한 증가되고 있다. 가출 또는 노숙 청소년들을 사회로 재통합하는 일은 이 시기의 노숙 상태가 성인시기로 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 응급상황발생 및 인적 자산을 상실하는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미국 미시간 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드롭-인 센터의 사례와 텍사스 주에서 실시중인 노숙 청소년을 위한 맥키니 법(McKinney Act)의 적용사례를 알아본다.

(1) 가출 청소년을 위한 드롭-인 센터 (drop-in center)

드롭-인 센터는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노숙 청소년들이 쉴 수 있으며 음식을 제공받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곳이며 종국적으로는 사회적 재통합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가까이는 보다 집중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발을 던져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되고 있다. 주로 14세에서 24세에 속하는 청소년 연령층의 가출 및 노숙자들이 머물게 되는 곳이다. 미국의 미시간(Michigan)주에서 시행된 각기 다른 두 개의 드롭-인 센터의 사례는 이러한 종류의 센터가 어떻게 개소되고 운영되며 유지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들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적으로 드롭-인 센터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접근성과 서비스 역량이란 두 가지는 각기 다른 단위 또는 수준에서의 드롭-인 센터 운영을 위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청소년들이 오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접근가능한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해야(즉,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올 수 있어야 한다)하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드롭-인 센터는 근린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거리의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받거나 이탈자로 취급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드롭-인 센터는 지역사회와의 통합된 일부분이 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그것을 흡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부가 시설로서 받아들여지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드롭-인 센터는 또한 노숙 청소년들이 안전한 곳을 찾을 때 이들을 정서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안전을 보장해야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할 것이다. 의사결정에서의 안전과 자유는 밤이나 이른 아침에 특히 중요하다. 이 시간대가 그들에게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가 실제로 노숙 청소년들이 가장 지지를 필요로 하고 긍정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환경이 요청되는 때인 것이다. 이러한 가장 취약한 시간대에 실제로 필요한 장소로 기능하도록 되어야한다.

드롭-인 센터는 청소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의식주와 건강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충족할 때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드롭-인 센터의 최 우선순위는 음식과 세탁기, 깨끗한 옷, 그리고 건강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한다. 서비스 제공시간과 범위는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건이 허락한다면 사례 관리 또는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롭-인 센터는 몇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한 두 개의 큰 공간으로 제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물을 몇 개의 활동공간으로 구분되고 하는 것은 방별로 붐비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청소년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구성은 또한 사회기관 같은 인상을 주기보다는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런 구조는 청소년들이 건물의 이용자로서가 아니라 건물의 운영자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의미도 있게 된다.

활동 공간에는 학습실, 튜터링, 취업정보실, 면접연습실 등이 있을 수 있고, 정서적 표현을 위한 예체능실, 도서실, 휴게실, 시청각실, 게임룸, 컴퓨터실 등이 포함된다. 물론 각 방에는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야하는데,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드롭-인 센터에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학교 교사나 청소년기관 종사자들의 주기적 방문과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보건 서비스, 건강서비스, 취업지도 서비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2) 가출청소년과 노숙 청소년을 위한 입법사례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중심 위기 청소년보호 입법 사례로 연방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 교육증진법 1987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1987)” 을 들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의 노숙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법안이다 (Title VII B-McKinney-Vento Act).

미국의 노숙자 문제는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 노숙자들의 경우는 정규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방, 주, 및 지역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노숙 청소년들의 교육적 경험과 그들의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 중의 한 프로그램이 바로 맥키니-벤토 노숙자 지원 교육증진법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Improvement Act)이며, 노숙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중요한 법제화 성과이기도 하다. 원래는 Stewart B. McKinney Act of 1987이 2000년에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로 다시 개정되었다.

이 법은 학교 등교가 불가능한 노숙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쉼터나 캠프장 등 생활하는 장소와 다른 타운이나 주 등에서의 거주여부와 기간, 부모나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등에 상관없이 공립학교를 다닐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원래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쉼터, 직업훈련, 보건, 교육 등과 관련한 조치들이 포함된다.

이 법은 각 주들이 청소년들을 학교에 등록하고, 출석문제가 없도록 하며, 학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정책, 규칙, 절차 및 실천방안들을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이 노숙자라는 이유로 분리되어 교육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노숙아동들도 다른 모든 아동들과 같은 학업적 도전과 성취를 얻도록 하는 교육적 특권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도 주정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 맥키니법(McKinney Act)은 연방정부 차원의 요건으로서 노숙아동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주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맥키니법의 실행과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과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의 의미나 노숙청소년들의 개념 등이 교육전문가,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교육구(School District)는 이 법 이행의 책임을 갖는다. 이 점에서 주정부 단위,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적 노력, 특히 입법사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미국의 텍사스(Texas) 주(state) 달라스 교육 구 (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는 이 법을 이행학 위해 세부적인 노숙자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맥키니법(McKinney Act)이 지역단위에서 실효성을 갖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달라스 시의 사례는 연방정부의 정책이 주정부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리고, 연방정부 정책의 한계와 주정부 정책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즉 달라스 시의 각 학교 구는 각 지역별로 책임자를 임명하고, 노숙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방과 주 정부의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의

회와 주의 정책에 따라 달라스 학교 구 (Dallas Independent School District)가 노숙아동에 관하여 반드시 수행할 책임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1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노숙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선택을 조언 받고, 학교에 즉시등록하며, 통학편의를 포함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정된 제도를 시행해야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서면통지서를 분리된 학교에 등록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내고, 지역학교들이 맡아야할 노숙아동과 청소년을 분리된 학교에 등록하거나 다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숙아동 청소년을 위해 받은 재정지원을 분리된 학교를 설치하거나 노숙아동청소년을 위한 분리된 학교를 위한 새로운 부지 등을 마련하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보냈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서 각 아동에 봉사하는 지역 교육기관들은 만일 가족이 학년이 올라가기 전이나 학기 중에 노숙자가 되는 경우 또는 해당 아동이 학기 중에 주거를 갖게 되면 그 학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노숙상태가 생긴 최초의 학교에서 아동교육을 지속한다. 그리고 해당 아동은 재학하는 지역에 있는 비노숙 일반아동들이 다닐 자격이 있는 공립학교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네 번째, 노숙학생의 최상의 이익을 결정한다. 지역 교육기관은 부모가 다른 결정을 원하지 않는 한, 원래학교에서 학생을 받도록 하고, LEA가 아동을 원래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노숙아동과 부모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한다. 당사자 없이 중간에 일을 돕는 사람으로 하여금 노숙청소년 당사자들의 등록에 따른 결정을 도와주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학생이 학업성적표, 건강진단서 및 거주증명서 등 필수서류들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즉각 등록시켜야 한다. 등록한 학교는 관련 학교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학생이 최근에 다닌 학교를 접촉해야한다. 만일 학생이 예방접종이나 예방접종 기록을 필요로 하면, LEA는 부모들이 해당 서류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여섯 번째, 예방접종, 출생증명서, 보호자 서류 및 특별프로그램 평가서

등과 같이 학교가 관련 노숙아동에 관하여 보유해야하는 기록들은 해당 아동이 새로운 학교에 등록을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한다.

이어서, 일곱 번째, 등록 시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해당 학생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등록관련 문제를 제기한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그리고 학교의 결정에 대해 부모들이 진정권이 있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서면으로 설명해 줌으로서, 해당학생과 부모를 그 문제해결을 위해 같이 일할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에게 이송함으로써 해결해야한다. 여덟 번째, 학생의 배치는 학생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홉 번째, 원래학교라는 의미는 해당학생이 주거가 있을 때 다니던 학교 또는 가장 최근에 등록했던 학교를 의미한다.

또한, 열 번째는 지역 학교는 부모나 노숙아동으로부터 연락처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다. 열한 번째, 노숙학생 등은 학교의 다른 일반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통학수단이나 장애아 교육프로그램, 영어교육프로그램, 직업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영재 프로그램, 및 학교영양 프로그램 등 타이틀 1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서비스들을 동일하게 제공받아야 한다. 열두 번째, 지역 교육기관은 노숙 아동과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 협력하여야 한다. 열세 번째, 담당자(liaison)를 지정하여 주 업무 담당자, 학교요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열네 번째, 지역교육기관 담당자(Liaison)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제시된다. 우선, 노숙아동을 확인하고, 노숙아동이 학교교육에 동등한 기회가 있음을 주지하고, 노숙가족이 헤드 스타트(Head Start) 및 취학전 교육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고, 보건, 치과, 의료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에 이송해야한다. 노숙아동의 부모들에게는 아동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하고 노숙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고지해야한다.

한편, 이와 같은 책임을 갖는 달라스 학교 구 노숙 프로그램은 9개의 쉼터를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학생들을 고용한다. 또한 노숙 아동을 위해 캠프활동을 학교가 쉬는 겨울방학, 봄방학, 및 여름방학 동안 쉼터에 살고 있

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한다. 달라스 시는 이러한 법적 보장과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의 위기에 처한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에서 학교로 옮겨가는 학생들을 지원하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이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는 노숙아동들의 각종 전화요청, 긴급 상황, 및 관심사와 욕구에 대응하며, 노숙 아동들이 경험하는 복수의 장애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4) 시사점

이상에서 세계 주요 국가의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정책 사례와 입법례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역중심 지원체계, 아동청소년안전과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접근 사례 그리고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지역 사회 내 드롭-인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례와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학업지원 입법사례 등의 몇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지원체계의 특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미국의 사례로서 트리플 피 사례 (Triple P Initiative), 강한 지역사회 (Strong Community) 사례, 아동보호 지역사회 파트너십 (Community Partnership for Protecting Children) 사례 및 드르햄 종합보호체계 (Durham Family Initiative) 등에 대해 간략히 고찰하였다.

아동을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복잡한 과업이고 부모들의 행동의 변화, 보다 더 안전하며 보다 더 지지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 그리고 대중 제도의 질과 신뢰성을 개선하는 일 등을 분명히 포함하는 과업임을 알 수 있다. 비록 개별 가족들을 주목표로 하는 일부 예방적 프로그램들이 그 가족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주고는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약해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지역 커뮤니티와 대

중 제도들이 양육실천기법과 이러한 프로그램이 증진하는 선택들을 재 강화 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이 위에서 언급된 한 몇 가지 개별적 사례들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추가적인 개념적, 경험적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청소년범죄를 예방하는 지역사회 중심적 접근 또는 지원전략으로 아동과 가족을 위한 폭력개입 프로그램 (VIP: Violence Intervention Project), 지역사회 주목전략 (CTC: Community That Care), 종합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CCI: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 그리고 온-트랙 (On Track) 프로그램 사례 등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들 사례들은 각기 다른 지역사회에서 적용된 것이지만, 주로 사회의 역량을 증대시키거나 관련 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통하여 사회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역량은 곧 청소년들이 위기상황 특히,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 또는 지원체계의 주 대상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점차 가족이 이러한 지원체계의 대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많거나 위기상황에 노출될 개연성이 많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통제하거나 그들을 재활하는 일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숙아동청소년을 위한 사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법이 주정부의 추가적인 법제를 통해 어떻게 지방정부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연방정부의 중요한 성공적인 법제화 성과의 하나로 평가되는 맥키니-벤토법이 달라스 시의 학교 구를 통해 시행되는 일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아동청소년정책은 주로 주 정부 차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고 있으며, 법제화를 비롯한 제도적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적 환경에서 일단 수립된 정책은 주로 지역 정부차원, 도시, 타운, 마을 등의 근린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실행되게 된다. 맥키니법

(McKinney Act)의 달라스 시에서의 적용사례는 노숙청소년을 위한 교육 보호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의 내용과, 제도 운영의 시스템과 관련 인력의 역할과 임무를 알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미국의 위기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에는 유의할 점과 함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점은 현재 한국에서 위기아동·청소년지원체제로 논의되고 있는 CYS-Net체제가 네트워크 이상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CYS-Net의 구상이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된 것인지, 정책적 구상의 연결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는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청소년단체, 학교, 기업, 종교기관 등의 연계협력은 매우 긴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례로 제시된 모든 프로젝트와 사업들이 이론적 틀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에 기반 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실행 후에는 평가를 통해 그 성공요인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문별 관계기관과 전문가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일반주민들의 참여는 지역중심 청소년 대책 프로그램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시사점의 다른 하나는 모든 사례에서 그 중요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이니셔티브의 목적과 중요성, 내용 등에 대해서 연수과정을 통해 관련 대상자들의 적극적 참가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이며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은 물론, 해당 사례의 성공적인 실행과 적용을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지

지역인 지역주민, 재정적·행정적 지원,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전담인력 등의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위기 청소년과 관련한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체계화하는 이상의 성공적 지역 밀착화를 위한 노력, 그 노력의 핵심으로서의 관련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연수의 중요성은 이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일은 지역별 특성, 특히 위기 청소년의 발생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상황, 즉, 위기 청소년 발생정도의 주요 유형 및 지원체계에 필요한 지역자원의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한 특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관된 하나의 지원 시스템으로서의 CYS-Net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형태로 응용될 필요가 있다.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위기청소년실태와 주요 현안이 같을 수 없으며,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자원의 종류와 수준 또한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지원체계에 대한 표준절차의 수립과 일관된 추진을 통해 CYS-Net 지원체계의 확산과 공고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체계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유사한 사례의 전진외국에서의 적용사례의 성공과 실패의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한국에서의 아동청소년정책의 하나로서 위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와 동일한 사례를 외국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주정부 별로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각 영역별 주요한 아동청소년정책 특히, 아동학대 예방, 아동과 청소년 비행 및 범죄예방, 그리고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을 위한 정책사례는 현행의 한국내의 CYS-Net 지원체계의 이론적 틀과 운영구조, 절차와 내용, 시행과정 및 각종 요건 등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데 충분히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미국 사례의 후속연구는 여기에서 제시된 각 사례 하나하나의 구체적 운영구조와 실태 및 성과에 대해 고찰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아동 청소년정책의 수준을 제고하는 일은 충분한 이론적 토

대에서 정책이 구상되고 실천되는 접근을 하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외국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고찰하는 것 보다는 각 개별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독일⁷⁴⁾

독일에서는 기본법인 후생법전 제8권(Sozialgesetzbuch (SGB) Aches Buch (VIII))(2009)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Kinder- und Jugendhilfe)”⁷⁵⁾을 모법으로 하여 각 주에서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법(Gesetz zur Ausführung des Kinder- und Jugendhilfegesetzes)”⁷⁶⁾(이하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이라 칭함)을 제정·실행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지원은 다음과 같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후생법전 제8권 제1장).

- (1) 모든 어린 인간은 자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동체적 능력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발달과 양육 요구에 대한 권리를 지닌다.
- (2) 아동의 돌봄과 양육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권리이며 최우선의 의무이다. 국가 공동체는 부모의 행위를 감시한다.
- (3) 청소년지원은 제 1조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특히
 1. 어린 인간은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발달을 장려해야 하며, 손상을 피하거나 제거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부모나 기타 양육권자의 양육에 있어서 조언을 해 주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3. 아동과 청소년을 그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74) 이 부분은 윤선영(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이 집필하였음.

75) <http://www.sozialgesetzbuch-sgb.de>(2010.10.6)

76) <http://www.berlin.de>(2010.10.6)

야 한다.

4. 어린 인간과 그의 가족을 위해 아동과 가족에 우호적인 환경과 긍정적인 삶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베를린의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Senatsverwaltung fue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in Berlin, 2005)을 예로 들어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복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법에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제도와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베를린의 모든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아동 및 청소년보호사업, 가족에서의 양육 장려 사업, 시설 및 기타 주거형태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사업 관련 등이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지원국은 아동 및 청소년 복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하면서 학교, 건강, 도시발전, 교통, 환경보호, 노동시장, 주택 및 주거지환경 조성 등을 담당하는 모든 행정부와 함께 협력하고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지원국은 공공 기관과 비영리 복지 기관이 상호 파트너십의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각 구의 청소년지원청은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진다.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은 모법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삶과 발달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아동과 가족에 우호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위기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의 방향

청소년지원을 위한 제반 시설들의 사업은 각기 다른 일을 위한 것이라 해도 상호 협력하여 아동 및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처한 지역적 조건, 생활상황, 일상경험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자와 남자가 지니는 서로 다른 문제를 고려하여 이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며, 동시에 성별 특성의 차이에 따른 능력 발달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

년들도 비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지원 사업에 동등한 참여가 가능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외국인 자녀들의 사회-문화적인 흥미와 욕구도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삶과 상호 열린 자세를 촉구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지원 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청소년지원국은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으며, 청소년 지원 시설은 대변인 역할을 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영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의 청소년지원청은 아동 및 청소년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그들의 참여를 위한 적절한 형태를 개발해야 하고, 조직적으로도 학생위원회의 참여 등을 포함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흥미를 스스로 반영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책임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적으로 결성된 청소년단이나 그룹들의 조직도 역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2) 위기아동·청소년 지원형태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 지원 제도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구의 청소년지원청은 청소년보호 사업으로 청소년여가시설을 설립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국제적인 만남, 방학 프로그램, 청소년 정치 교육 행사, 각종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음악적, 또는 놀이식이나 스포츠적인 행위를 촉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욕구에 맞는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욕구를 발산하고 상호 교류의 장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과 문화적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어려움 또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21세까지 사회교육학적 도움을 통해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또는 직업 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학교당국, 노동청, 지방자치단체, 직업교육 위원회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사회교육학적인 지원 제도에는 주거형태도 있다. 사회교육자들이 동반하여 특정한 장소에 기거하면서 통합을 위한 도움을 통해 자발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태를 극복하여 직업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약물중독 증세가 있거나 비만, 공격성, 우울증 등을 지닌 청소년들(12세~18세)이 함께 지내면서 음식 조절, 자신감 형성, 학업과 직업에 대한 전망, 자기 조절 및 자기 성찰, 문제해결 능력 등을 습득하는 거주그룹이 있다⁷⁷⁾.

학교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 사업은 학교, 청소년지원청, 비영리 자유 복지 시설 또는 공공 청소년 복지 시설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보완하고자 다양한 교육과 여가시간을 위한 교육학적으로 전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일제 학교 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보육교사와 전문가들의 돌봄에 의해 방과 후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등학교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효과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 열악한 학생들의 통합, 여가시간 운영, 직업과 가정의 양립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Senatsverwaltung fue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2010)⁷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협한 행위, 약물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도하는 제도로는 미디어교육학적 또는 중독예방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주로 각 구의 청소년지원청이 진다. 특히 폭력이나 방치 등에 의해 보호가 시급히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국은 전문가를 연결하여 공공 또는 비영리 청소년지원 시설, 학교, 경찰서 등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가 돌보는 시설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게 하되, 남녀의 성별에 따라 또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지원청은 아동 및 청소년 범죄나 약물중독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경찰청에

77) <http://www.evangelisches-johannesstift.de>(2010.10.08)

78) <http://www.ganztagsschulen.org>(2010.10.08)

조언을 하거나 지원을 하며 정기적인 협력 작업을 한다. 경찰도 청소년지원청에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는 양육 및 가족상담, 가족여가시간 및 가족휴양 지원이 있다. 이들은 예비 부모 및 부모의 자녀와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가족양육서비스는 양육권자를 대상으로 비영리 청소년복지기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담당하며, 보육시설 또는 학교와 협력 작업을 하고 있다. 주로 가족 상담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이 다루어진다. 양육 상담과 가족 상담은 심리-치료와 사회교육학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지원청과 비영리 청소년지원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가족구성원의 개별적인 또는 가족 전체의 위기에서 오는 양육의 어려움에 대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통해 감소시키거나 해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파트너 관계, 이혼이나 별거, 일반적인 양육 문제 등도 아울러 다루고 있다. 청소년지원청은 의무적으로 누구든 원하면 양육 및 가족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담당부서를 갖추어야 한다. 가족 여가시간과 가족 휴양 지원은 가족이 함께 모여 여가를 보내며 양육이 가능하도록 지지해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는 저소득층 가족의 욕구가 가장 우선시되며,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일반 가족의 개별적인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21세 미만의 어린 부모들에게는 그들의 연령에 적절한 특별한 청소년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파트너 관계, 별거, 그들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법, 직업교육 또는 학업,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대한 문제를 돕기 위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집을 주선해 주기도 한다. 청소년지원청과 학교는 서로 협력하여 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린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며 상담, 교육, 휴양에 대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청과 교육청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양육지원, 어린 성년을 위한 지원, 사회적응지원 모두는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급한 형태의 지원, 동반

이나 개별 또는 집단적인 지원의 형태는 일상생활에 편입되도록 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가족에게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되, 가족이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이 머무는 주야간 시설은 위기 때문이든 무거운 증상에 놓여 있던 시설을 바꿀 필요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및 욕구를 지향하는 적절한 거주 또는 돌봄의 형태를 하나의 시설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베를린에서는 “사회공간집중(Sozialraumorientierung)”⁷⁹⁾이라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동네 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낯이 개별화되고 익명화되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대도시의 삶에서 보다 가깝게 당사자들의 욕구와 요구들을 수용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지원의 대상 및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범주를 초월하여 사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은 반드시 정해진 인원을 그리고 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지원 시설이 늘 열려 있어 불특정한 아동과 청소년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놀이터나 공원 등의 열린 장소로 전문가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찾아다니며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열린”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사업이라 부른다. 이에 대한 지원은 구청에서 관할한다.

3) 시사점

베를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아동 및 청소년지원은

79) Senatsverwaltung fuer Bildung, Jugend und Spots(2003). Sozialraumorientierung in der Berliner Jugendhilfe([hppt://www.Berlin.de](http://www.Berlin.de)) (2010.10.08).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제도와 조직이 서로 그물망 형태를 취하며 학교나 경찰청 등 필요한 모든 기관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 둘째, 다양한 시스템으로 늘 가까운 곳에서 접근이 가능하여 예방적인 기능이 강하다는 점, 셋째, 개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수혜자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지원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각 부처가 분리되어 자칫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서로 떠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한 것은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사후 대책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 성폭력 대처 상황은 독일과 같은 다양한 보호 제도와 네트워크에 의한 협력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일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범주가 항상 가족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또한 양육의 책임을 가족에 최우선시 하는 보수적인 측면이 엿보이긴 하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가족을 보완하고 있어 소년 소녀 가장과 같이 열악한 가족 형태의 발생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문제를 제거하거나 해결해 주는 구호적인 성격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점과 특히 어린 성년과 미혼부모들을 돕는 제도는, 낮은 출산과 이혼율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V. 위기아동·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2. 위기아동·청소년 의견조사 결과분석

V. 위기아동·청소년 및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현장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해 위기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를 표집 해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28명을 표집 해 전문가 의견조사지를 e-mail로 발송했고, 26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한 달간 진행했다. 표집대상자⁸⁰⁾의 소속기관 유형은 광역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센터,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등 7개 유형으로 구성했고, 각 기관유형별로 지역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1개 기관씩 표집 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이들 전문가의 평균 재직기간은 6.9년이고, 평균연령은 40.7세이며, 성별 구성은 남성 6명, 여성 20명이다.

조사문항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소속기관, 재직기간, 담당업무 및 직책, 성별, 연령 등을 알아보아 응답자의 전문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⁸¹⁾.

두 번째 영역은 소속기관의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을 위한 소속기관의 조직·인력·시설·예산, 위기유형에 따른

80) 표집대상자는 각 단체별 협의회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추천기준은 의견수렴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갖춘 현장전문가이다. 협의회나 담당공무원은 그간의 실적을 토대로 이를 판단하여 책임자를 추천해주었다.

81)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조합하면 응답자가 누구인지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밀보장을 위해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하는 표에서는 담당업무 및 직책을 표기하지 않았다.

긴급구호 서비스,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사후관리 및 중장기적인 지원, 위기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모니터링 등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질문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현행 긴급구호 체계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소속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추천사례, 현행 긴급구호체계나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기유형에 따른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방안, 기타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1차 조사가 서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의문사항의 보완을 위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집단면접(FGI)의 형식으로 10월 20일에 이루어졌다. 집단면접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 경찰에서 각 2명씩, 위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각 1명씩, 총 9명⁸²⁾이 참가했다.

<표 V-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사례번호	성별	연령	소속기관	재직기간	지역
1	여	44세	광역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년	수도권
2	여	40세	광역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9년8월	충청권
3	여	43세	광역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년 7개월	영남권
4	남	47세	광역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14년 6개월	호남권
5	여	48세	시군구청청소년상담지원센터	2년	수도권
6	남	41세	시군구청청소년상담지원센터	3년 5개월	충청권
7	여	45세	시군구청청소년상담지원센터	11년 1개월	영남권
8	여	40세	시군구청청소년상담지원센터	4년 8개월	호남권
9	여	46세	위센터	3년	수도권
10	여	45세	위센터	2년	충청권
11	여	45세	위센터	4년7개월	영남권
12	남	36세	청소년쉼터(일시쉼터)	1년	수도권

82) 9명 중에서 5명은 1차 조사의 대상자와 일치한다.

13	여	37세	청소년쉼터(이동쉼터)	2년 5개월	충청권
14	여	46세	청소년쉼터(단기쉼터)	6년 11개월	영남권
15	여	53세	청소년쉼터(단기쉼터)	6년	호남권
16	여	30세	해바라기아동센터	4년	수도권
17	여	35세	해바라기아동센터	1년 1개월	충청권
18	여	37세	해바라기아동센터	4년 3개월	영남권
19	여	37세	해바라기아동센터	1년	호남권
20	여	33세	아동보호전문기관	3년 9개월	수도권
21	여	36세	아동보호전문기관	4년 5개월	충청권
22	여	37세	아동보호전문기관	10년 6개월	영남권
23	여	33세	아동보호전문기관	9년 9개월	호남권
24	남	39세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9년 7개월	수도권
25	남	40세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11년	충청권
26	남	47세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20년	영남권

2) 기관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현황과 개선방안

조사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의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을 위한 조직, 인력, 시설,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기관의 전체업무 중에서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관련 업무가 구분될 수 있으면 전체업무에 관한 현황과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업무의 현황을 나누어 제시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업무의 현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1) 인력의 현황과 개선방안

광역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조직은 위기지원팀, 상담지원팀, 자활연수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업무는 위기지원팀이 담당하고 있다. 전체 인력은 11명부터 20명까지의 분포를 보였고, 위기지원팀의 인력은 3-4명 정도이다.광역시도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에서는 CYS-Net 운영을 위해 채용한 인력을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하거나 기존의 사업 외에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자활재활사업, 특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인원 보충 없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해결책으로는 CYS-Net 운영지침상의 조직 및 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청소년전문가인 기관장을 영입하여 적합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인력은 실장, 팀장, 상담원, 행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 4명과 시간제 청소년동반자가 있다.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업무는 팀장과 상담원의 구분 없이 청소년동반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신규개인상담 인원의 목표치가 높아 실적 올리기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위기 청소년 사례는 주로 청소년동반자가 관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센터의 인력이 적어 위기 청소년 긴급구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센터의 인력은 센터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되어 있고, 7명에서 9명까지 분포하고 있다. 위센터의 경우 의뢰되는 위기학생의 수에 대비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청소년쉼터의 인력은 소장, 상담원, 행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명에서 6명까지 분포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에서는 2010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에서 일시쉼터 종사자 배치기준은 소장 1명, 보호·상담원 2명, 행정원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배치는 내부 사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거리 상담과 가출예방캠페인 등 외부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구성이라고 한다. 적어도 내부 사업에는 2인의 상담가, 외부사업에는 2인의 상담가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쉼터는 야간과 주말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이직율도 높다. 또한 야간 당직자 1명이 고위험군 청소년들 5명 이상을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신변에 위협을 느끼

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쉼터의 인력 배치를 3교대로 나누거나 주중 근무와 주말근로를 구분지어 주간, 야간에 대한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쉼터직원의 자격을 완화시켜 대학에서 청소년관련 학과에 재학 중을 학생을 유료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인력은 소장, 부소장,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7명에서 10명까지 분포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경우 담당하는 사례 수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소진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충원이 필요하고, 심리치료 분야의 경우 일반상담과 다른 치료 전문가가 충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은 관장, 팀장, 상담원 및 임상심리치료사로 구성되어 있고, 6명에서 8명까지 분포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상담원 1인당 연평균 신고처리 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이들 사례는 누적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량의 부담이 많다고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인력을 보강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인력은 대도시의 경우 4-5명, 농어촌지역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의 경우는 경찰서별 청소년 업무 담당직원이 1명이고 일반적인 경찰작용 외에는 전문지식이 적어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긴급구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조직의 청소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2) 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광역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긴급구호 시설로써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는 긴급구호를 위한 특별한 시설은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시보호소는 16개 광역시도에만 1개소씩 설

치되어 있어 1개의 시설도 광역시도에서 발생하는 위기아동·청소년을 모두 관할하기에는 거리상으로나 규모면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분소의 설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위센터는 긴급구호를 위한 특별한 시설은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청의 사무 공간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동쉼터와 일시쉼터의 경우는 그 자체가 가출청소년을 위한 긴급구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동쉼터는 3.5톤 트럭을 개조하여 거리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일시쉼터는 간이수면실과 간이식당, 세탁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청소년활동시설이나 상담시설과 달리 청소년쉼터는 국가가 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위탁법인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실과 치료실에 녹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향문내시경이나 임신여부 등의 파악을 위해 병원과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인근 건물을 임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비용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까운 곳에 보호시설이 없어 학대를 피해야 하는 응급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그룹홈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폭력성향의 학대자에 대처하기 위해 녹화시설도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있다. 경찰에는 지방청 단위의 원스톱지원센터와 여성청소년계에 진술녹화실이 있지만 위기아동·청소년 발생 시에는 타 기관에 연계하는 것 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청소년쉼터나 원스톱지원센터가 더욱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3) 예산의 현황과 개선방안

광역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CYS-Net 예산은 대체로 국비 50%, 도비 또는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고, 대략 3억 5천만 원 내외이다.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CYS-Net 예산은 대체로 도비 50%,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고, 대략 1억 원 내외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건비의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동결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결국 해마다 사업비 비중이 줄어들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활동비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기아동·청소년 중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방임하거나 가출한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위센터의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대략 2억 원 정도이다. 인건비와 위탁치료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쉼터의 예산은 대체로 2억 원 내외로 이중 정부보조금은 1억 5천 내외로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쉼터의 경우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체제임에도 전체 예산이 너무 적고, 인건비 기준도 낮으며, 야간근무나 초과근무 수당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한다. 또한 예산편성의 항목이 너무 상세하여 사업비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목의 통합이 요구되고, 일시쉼터의 경우 입소시설인 단기쉼터나 중장기쉼터와는 달리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예산편성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대략 4억 5천만 원 내외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인건비가 적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피해자의 부모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생업을 포기하고 치료에 오기가 힘들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센터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생계지원과 이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이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관규모에 따라 예산에 차이가 많지만 대략 3억 원 내외이다. 예산의 차이가 많은 이유는 시군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비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경찰에는 위기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고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1억 5천만 원 정도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발견해도 사비로 밥을 사줘야 하는 실정이므로 위기아동·청소년 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4) 긴급구호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가출, 학교폭력, 학업중단, 성폭력,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자살, 소년범죄 등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위기유형을 담당하고 있다. 광역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위기 유형별 긴급구호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출 : 일시보호, 숙식제공, 의료, 학습(검정고시 지원), 가족상담(개인상담-심리검사 포함), 타 기관 연계, 법률서비스
- 성폭력 : 긴급출동 및 긴급 상담, 의료, 법률, 타 기관 연계, 부모상담, 청소년동반자 연계.
- 아동학대 : 긴급출동 및 긴급 상담, 부모상담, 타 기관 연계, 일시보호(숙식제공), 의료서비스.
- 학교폭력 : 긴급출동 및 긴급 상담, 개인(집단) 및 부모상담, 법률, 의료
- 은둔형외톨이 : 긴급출동 및 긴급 상담, 청소년동반자 연계하여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부모상담, 학습, 의료 서비스.
- 인터넷 중독 : 개인상담 및 부모상담, 의료, 학습 서비스.
- 자살 : 긴급출동 및 긴급 상담, 개인 및 부모상담, 의료, 학습, 타 기관 연계
- 소년범죄 : 개인 및 부모상담, 의료, 학습(검정고시, 멘토 지원)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긴급구호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통비, 식비를 제공하고, 센터에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요구 및 문제

평가를 한 후, 가정 복귀, 청소년동반자 연결, 쉼터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기유형별 연계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가출 : 청소년동반자, 광역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일시보호소 연결
- 성폭력 : 원스톱서비스 연결
- 아동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결, 청소년동반자 연결
- 학교폭력 : 동반자 연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긴급구호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위기유형은 가출청소년 긴급구호라고 한다. 1388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해 신속하게 구조하고 일시보호소 운영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고위험군 청소년의 경우 단기간에 문제해결이 어렵고, 수업료나 주택문제와 같이 경제적 지원이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상담원에게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대가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거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 등이 문제라고 한다. 또한 청소년쉼터보다는 센터의 일시보호소가 이용이 수월하다는 이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가출청소년이 있으므로 청소년밀집지역에 자유롭게 세탁과 샤워, 1식 1박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일시보호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Wee센터 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모든 유형의 위기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위센터의 위기 유형별 긴급구호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출, 성폭력, 아동학대 :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각 기관담당자에게 신속한 처리진행
- 학교폭력 :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교육·상담활동 진행, 해당 학교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교육실시
- 자살 : 심리검사를 통한 초기진단을 통하여 전문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도록 진행하며, 기초생활권자에게 자체지원 및 지역사회연계망 확보지원
- 비행 : 학교 요청 시 전문 인력이 투입하여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으로 서비스지원 후 학교적응을 도움

- 약물, 흡연 : 전문기관연계교육·체험진행, 상담·심리치료지원
- 게임 과몰입 : 방과 후 보호·지원기관 협력구축, 심리치료·상담활동지원

위센터에서 긴급구호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위기유형은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상담, 치료, 전문적 심리상담 연계, 아동보호기관 및 복지서비스 연계, 학습 멘토 연결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기관이 부족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된 위기유형은 가출이지만 가출청소년들은 복합적인 위기사태를 안고 입소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위기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쉼터의 위기 유형별 긴급구호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V-2> 청소년쉼터의 위기 유형별 긴급구호 서비스 현황

위기유형	서비스 내용	비고
가출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 아웃리치 상담, 긴급구조(가출청소년발견 신고시 출동 등), 일시보호, 가족상담, 학교조사, 등 초기 사례사정. 상담지원, 의료지원, 급식 및 주거생활지원,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자립지원, 직업교육 및 알선, 사후관리	
성폭력	쉼터 병설로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미혼모보호, 성폭력 피해청소년 심리지원 상담, 가족상담, 법률지원상담, 가해자 위탁교육 및 상담, 성폭력전문 타기관 연계	
아동학대	피해아동 긴급보호, 피해조사, 사례사정, 가족개입, 학대가족 상담, 솔루션, 피해아동 심리지원 상담, 타기관연계 등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 피해 청소년 대상 위탁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실시-외래등원. 집단상담, 개인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재발방지 심리상담, 가해자로부터의 긴급 위기보호 등	
비행	긴급구조, 일시보호, 보호관찰보호, 재발방지심리상담,	

	생활교육, 사회교육, 공동체 교육, 인성교육, 인권교육, 직업교육 등	
범죄	긴급구조, 일시보호, 재판지원, 소년원퇴원생 보호, 범죄육구탈출 심리상담, 사회교육, 인권교육, 자수 설득 상담, 경찰 협동지원 등.	

일시쉼터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위기유형은 흡연청소년에 대한 개입이라고 한다. 쉼터 내에 흡연실을 설치함으로써 흡연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 이들에 대한 금연교육이 용이해졌다. 또한 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 상담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해 힘쓰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야간에 운영되는 곳이 쉼터와 1388 긴급전화 뿐이기 때문에 야간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고, 쉼터를 몰라서 찾아오지 못하는 가출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13세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의료·심리지원 : 산부인과, 정신과 및 심리학적 평가와 치료에 대한 개입, 심리평가서 및 의견서 제출
- 상담·법률지원 : 녹화진술, 탄원서 및 고소장 대서 등 법률과 관련된 지원, 재판모니터링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 특화기관으로 신체적 및 심리적 응급으로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종합병원 응급실로 연계해 365일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의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 채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한다. 문제점으로는 성폭력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친족 성폭력인 경우 개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친권박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험성 뿐 아니라 증명 가능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하는 시스템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아동의 경우 조사 반복됨으로써 아동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진술행동 조사자 동석제도'로 인해 아동이 다시 경찰서나 원스톱서비스라는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한다. 그리고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성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를 담당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동학대의 유형과 긴급성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연계된 자원을 통한 모니터를 실시하는 원가정보호서비스, 일시보호, 병원치료, 장기시설입소절차를 수행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피해아동, 보호자에게 법률지원서비스를 수행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특화기관으로 긴급현장조사와 일시보호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자를 찾아가는 서비스가 없고 아동이라는 특성상 스스로 찾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야만 신고를 통해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또한 남자직원이 없을 경우 긴급구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응급상황에서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학대가정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대아동에 대한 면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법적 권한이 일부 보장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정받으려면 경찰에서 증언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기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조사와 시일 소요로 아동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자료에 대한 신뢰성 인정과 학대자인 부모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학대아동을 조사한 후에 일시보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경찰에서는 모든 유형의 위기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위기 유형별 긴급구호 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가출 : 가출인 신고를 통해 전국 182 전산 입력으로 긴급 수배 조치, 각 일선 지구대, 파출소 등 순찰 활동 시 간단한 조회로 가출 등 신원

여부 파악 후 보호자 인계 조치

- 성폭력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최우선적 신속한 수사로 조기 해결 체제 구축.
- 아동학대 : 신고 등 인지 즉시 피해아동과 학대자간 철저히 분리. 피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치료와 안정을 위해 지역 관계기관(병원, 아동보호시설 등)과 사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중.(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지원센터와 동일한 서비스 지원)
- 학교폭력 :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직접 현지(지역 교육청)에 배치, 사안 발생 시 학교 측과 신속한 초기 개입으로 피해학생 보호 및 지역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 가해학생 선도 교육 실시로 재비행 방지에 주력. 피해학생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최초 실시 중.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기존의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기관뿐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학교 내 청소년 문제를 사회 공론화하여 학교폭력 관련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다른 나라 청소년 관리 부분에도 찾을 수 없는 우수한 청소년 정책이라 평가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제점으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의 공감대와 인식이 부족하여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가출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인계 거부와 쉼터 등의 수용인원 초과로 적절한 보호시설 연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5) 연계협력 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연계협력기관에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필수연계기관, 1388청소년지원단이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협약을 맺고 있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 1388발견 및 보호지원단 : PC방, 노래방, 쉼터, 경찰서, 지구대 등
- 1388의료지원단 : 의료원 및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 1388법률지원단 : 변호사 등

- 1388상담 및 복지지원단 : 상담관련 기관 및 복지시설 등
- 1388자원봉사지원단 : 전문직, 자원봉사자, 대학생 등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연계협력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는 필수연계기관과 1388청소년지원단을 들고 있다. 필수연계기관은 국무총리 훈령에 규정됨으로써 그 지침이 관계기관에 시달되어 강력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책임감이 강하고 경찰서 및 지구대와도 상호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연계협력기관들이 월1회 정기 사례회의를 통해 지역 내 현안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계기관과 상호간에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협력에 수동적이고, 연계기관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위센터의 연계협력기관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병원 등이 있다. 특히 심리치료기관 및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한다. 위센터 역시 연계기관에 대기자가 많아 서비스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지역별 중앙관리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쉼터의 연계협력기관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대안교육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위기교육센터, 지구대 및 경찰서, 타 쉼터, 학교 및 상담기관, 지역사회 병원, 관공서 등이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가출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경제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진료 및 대안학교 연계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에 더 활발하게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연계협력기관에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이 있다. 아

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사례 중에서 성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바라기아동센터로 의뢰를 해온다고 한다. 또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관할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폭넓은 연계망이 필요한데 사례처리만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연계협력을 위한 교류를 가지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한 성폭력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받기도 한다. 한편 피해자를 위한 시설의 입소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병원진료를 협조 받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협력기관에는 정신보건센터, 위탁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동사무소, 치과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협회, 보육정보센터, 경찰서 여청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자활관, 복지관, 쉼터, 동사무소, 병원 등이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의 실무자 네트워크가 있어 연계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과의 협력이 잘 되어 치료개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른 청소년기관에서 약간이라도 학대문제가 발견되면 무조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다른 기관들도 함께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경찰의 연계협력기관에는 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쉼터 등이 있다. 특히 경기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여 학교지원경찰 'SRO(School Resource Officer)'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는 현직 경찰관을 시교육청에 파견, 상주근무를 하면서 지역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로 공동 개입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통합지원(수사, 의료, 상담)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재비행 방지는 물론 나아가 원활한 학교운영과 선량한 다수 학생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SRO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통합지원, 가해학생 선도 교육(각종 분쟁조정과 사건 수사 등 전담)
 - 범죄예방교실 운영
 - 학교폭력대책자치회의 전담 위원으로 활동
 - 위기아동·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학부모, 교사 순회 특강
 -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
 - 위기 아동 심리적 안정 및 치유를 위한 상담(상담심리사 자격 취득자)
- 경찰이 학교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아동·청소년의 문제는 모두가 협력하여 선 조치, 후행정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6) 사후관리 및 중장기적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광역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청소년의 경우 상담원이 월1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지지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동반자나 특별지원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3개월 내에 전화나 문자서비스 정도만 하고 있고 중장기적 지원은 어렵다고 한다.

사후관리 및 중장기적 지원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대학생멘토를 1:1로 연결하여 정서, 학습 영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과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1388청소년지원단의 경제적 지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사후관리 사례가 누적되어 한명의 상담원이 담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대학생멘토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와 식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위센터는 지속적인 추후관리와 장기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담

임교사와의 직접 통화 및 학교 방문을 통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 멘토링을 진행하여 학교적응을 돕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방학 중에 개입할 수 없는 점이 문제이고, 멘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다.

청소년쉼터는 조사대상 기관이 일시 또는 단기 쉼터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중장기적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퇴소청소년 모여라’와 같은 1박2일 수련활동을 개최하고 있는 곳도 있다. 문제점으로는 중장기쉼터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일 년에 1-2회 사후관리를 위한 전화연락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후관리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는 지역사회 멘토를 연결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례가 누적되어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부모의 양육기술에 문제가 있어 적절하기 돌보지 못하면서도 사후관리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센터가 후견인을 맡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심각한 학대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시설보호를 진행하고, 원가정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의 복지관과 학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지침 상 6개월 동안 월1회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지원의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침이므로 개정이 요망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아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변화가 절실하므로 보호자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경찰의 사후관리나 중장기적 지원은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이나 경기경찰청의 경우 SRO를 통해 위기아동·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므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요망된다는 의견이다.

(7) 안전모니터링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현행 제도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안전모니터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연중 24시간 1388 청소년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 및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388 청소년지원단 및 경찰서와 연계하여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센터에서는 심야 아웃리치 월 2회 및 학교 앞에서 주간 아웃리치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기발견에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1388 청소년 전화와 1388청소년지원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1388 청소년전화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신고 전화와 같이 무료 긴급전화로 전환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홍보강화 방안으로는 청소년의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에서 내용을 방영하거나 청소년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활용해 TV광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1388 학부모지원단에서는 청소년의 집으로 찾아가 청소년 해주거나 반찬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위기청소년 발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관리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 경찰서, 보호관찰소 등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1388 전화는 일반전화를 기계적으로 연결하여 전국망을 형성하고 있어 회선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광역센터와 시군구센터간의 지역 간 경계지역의 혼재로 출동지역의 한계가 발생되고 있다. 1388은 전화서비스기 때문에 청소년의 물리적 접근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담당지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저녁 6시 이후가 되면 시군구센터의 전화를 광역센터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당직자가 전화를 받기 때문에 전화가 폭주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따라서 전국규모의 콜센터

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위센터에서는 연중 24시간 1588-7179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방학기간을 활용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 정서행동 선별검사를 통해 위기를 가진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의 경우 위기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용이하고 친구에게 위센터를 소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쉼터에서는 월 1회 이상 심야 아웃리치 거리 상담을 하고 있고 오전 시간대에는 PC방 업소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아웃리치는 2-3명이 팀을 구성해 걸어 다니거나 소형차를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부산에 위치한 쉼터에서는 7-8월에 해변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아웃리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야간활동을 위한 거리상담가 양성 및 적절한 보상, 안전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고, 사이버상담이 이루어진 청소년을 오프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동형 일시쉼터(아웃리치)와 고정형 일시쉼터(드롭인센터)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웃리치는 원래 청소년쉼터의 고유사업으로 고위기군을 만날 수 있는 최일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경우 1%정도를 고위기군으로 볼 수 있다. 가출이나 비행의 조기개입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며 아웃리치 사업이 긴급구호의 최일선이라 한다면 쉼터의 아웃리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신뢰와 고유 업무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연중 24시간 전화 상담과 24시간 응급대기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 24시간 응급대기를 하기 때문에 새벽에 전화를 받고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이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의 교사, 보건교사, 보호자 등이 아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연중 24시간 1577-1391 아동학대 상담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기관 종사자 교육 및 경찰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조기발견과 신고율을 높이고 있다. 이 중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이 위기아동 조기발견에 매우 효과적이고, 24시간 신고전화 운영으로 야간에 긴급 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학습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안전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아동권리놀이터사업을 통해 교육 중에 방임,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도 하며, 아동폭력예방교육 CAP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경험이 보고되어 신고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 수호천사, 아동안전 보호관, 자율방범대 등이 활동하고 있고, 1경 1소년 결연활동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명예소년경찰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명만 하고 실제적인 활동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명예소년경찰로 임명된 아동·청소년이 학교 내에서 youth police로써 안전모니터링 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3) 현행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의 개선방안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의 개선방안으로써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CYS-Net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담지원센터는 찾아오는 청소년과

부모 중심의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으로 인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현장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활동이 요청되는 CYS-Net에 강한 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사실상의 CYS-Net은 예방적 기능에 집중되고 있다. 위기단계에 노출되어 있거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청소년에게 제시되는 문제와 예방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의 문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지원’이라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포괄적인 대상에 대한 접근은 표적 집단이 군집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운영 시스템의 일관성이 결여되게 하는 측면을 가진다. 위기청소년의 보호시스템은 표적 집단을 명확히 하여야만 그들의 지원적 네트워크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함께 아웃리치 사업에 대한 공통된 목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웃리치를 할 때, 우범지역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지도를 바탕으로 경찰, 민간, 청소년기관 등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가출 및 학대 청소년의 경우 긴급구조 시 응급상황이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위기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담당자에게 사법권이 주어져야 한다.

친권에 우선하는 보호권의 개념이 필요하다. 자녀를 돌볼 능력이 없는 부모가 무조건 아이를 쉼터에서 내보내라고 강요받을 때가 많은데, 대책 없이 내보냈다가 아이가 잘못되면 오히려 쉼터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먼저 퇴소를 요구하는 팩스를 받은 후에 퇴소를 시키는 어이 없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권에 준하는 ‘긴급구조 인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체적인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이 되려면 많은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을 안전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위

기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 특성에 따른 융통성 있는 사업비 분배가 필요하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시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정말 도움이 필요하지만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 지원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상담자의 소견이나 사례판정회의 등에서 나온 결과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귀가 및 쉼터연계를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야 한다. 현행 24시간 보호로는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상담하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집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입소 시 무조건 부모와의 연락을 강제하고 있어 무단퇴소 또는 귀가 후 재가출이 발생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이 긴급구호체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연락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위기청소년이 보호체계에 접근하지 않고, 위험요소를 안고 사각지대에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연락 기준이 마련되고, 가족 또는 학교에 대한 중재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긴급구조 전화번호가 1388, 1366, 129, 1391 등으로 난무하고, 비체계적이므로 긴급구조전화의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장애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두려워하는 부모로 인해 장애청소년이 방치되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성인기까지 이어지게 되므로 이런 부모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장애 아동은 성추행이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성적욕구의 통제가 안돼서 성추행 가해자가 되거나, ADHD인 아동·청소년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권해도 무보가 동의하지 않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다양한 상담지원활동을 펼

치고 있으나, 운영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하나의 상담지원센터로 통합한 원스톱 기능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발굴하러 다니는 것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들의 은신처(짬질방·PC방·만화방 등)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들의 상호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허브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다지만 유명무실하므로 위기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대표 기구가 필요하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경찰, 학교 보건교사, 여성단체,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여러 곳에서 각기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 팀으로 이루어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에서 아동 성폭력은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대한 순찰 강화나 CCTV 확대 설치, 심야까지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이 필요하다.

성폭력 가해자가 같은 지역에 살거나 친족인데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될 경우 어려움이 많고 특히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심사례인 경우에는 신고가 날 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관련기관간의 정보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기관은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경찰 및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기타 사회복지기관이 지원요청이라든지 정보공유 요청을 하게 되면 일이 많다는 이유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모든 피

해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앙정부내의 관계부처 간 협의를 기초로 지방정부로 명령이 하달될 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기아동·청소년들이 발생했을 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조사, 보호 도움을 받는 번거로움이 없이 한 곳에서 신속한 업무절차와 서비스 개입, 안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별로 한 장소(건물)에 보호시설, 치료, 조사를 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을 운집해 둔다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같은 위험 부담이 있는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1명 정도의 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시립아동병원과 같이 소아정신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어야 하며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에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긴급입원, 시군구청장을 통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4)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방안

모든 위기상황은 개인에 따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유형별 대처방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각개 사안별로 전문가가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출의 경우 가출원인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가정개입이 필요하고, 부모와의 갈등이라면 가족 상담을 통한 부모와 갈등해소와 의사소통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가출이 학교나 또래갈등에 인한 회피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방안이 제안되었다.

(1) 가출

상습 가출청소년에 대한 자립자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험활동 참가 시 쿠폰을 발급하여 그 쿠폰만큼 자유롭게 식사, 세탁, 샤워, 잠자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안업체 및 PC방, 찜질방 등 가출청소년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긴급구조 전화(1388) 홍보 및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가출학생을 발견하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경찰서 등 관공서 및 지역사회에 전국센터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가출청소년발견 시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리상담가의 수송, 물품 운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가출청소년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해 치료 상담을 실시한 뒤 안정을 찾은 후에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본적인 가출원인 해결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해체를 유발하는 각종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출의 위험성, 가출이후의 청소년의 어려움 등 가출이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가출에 앞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쉼터에서 보호하던 아동·청소년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그룹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쉼터에서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성폭력

성폭력을 가하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노출을 꺼려해서 문제발생시 어떤 사후조치를 받지 않아 추후에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므로 피해자에게도 의무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예방차원에서 신고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신고자의 실명이 밝혀져 신고를 꺼리고 있으므로 익명성을 용인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문제가 세상에 노출 되지 않는다는 홍보가 많이 되었을 때 성폭력 관련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각 급 학교에 도입하여 또래상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피해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일깨울만한 적극적인 성폭력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

성폭력사건 발생 후 내담자와 부모 지지체계를 학교별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담교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사건에 대한 상담-조사-진료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에 성폭력 예방 경보기 설치 또는 위기 알림 버튼을 누르면 주변 위기지원센터 또는 경찰지구대로 송신되는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정 내 친족 성폭력의 경우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가해 가족과 강제 분리해야 한다. 또한 지적장애 등으로 보호자가 보호능력이 떨어져서 차후의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발생 시 지역사회차원의 즉각적인 대응 SOS, 지역 내 아동·청소년·여성 보호단체 연계추진, 예방교육,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시설의 증설 및 지원 확대가 요망된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통해 성폭력피해아동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13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치료나 상담이 매우 적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성학대 피해 아동들의 전용 쉼터 및 그룹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 아동들과 다른 성격의 학대를 받은 아동들과 함께 있으면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전용쉼터와 성학대와 관련한 치료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는 쉼터 및 그룹홈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고 아동을 위한 진술녹화실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의 여성청소년계에서 성폭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운영하던 여경기동수사대(원스톱수사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다가 김수철사건을 계기로 금년 7월부터 형사과로 담당이 바뀌고 명칭도 성폭력수사대로 바뀌었다. 그런데 성폭력수사대는 원스톱수사대와 달리 수사만 담당하고 긴급구호의 기능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과에서도 과거의 여경기동수사대와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3) 아동학대

아동학대시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길 원해도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가겠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물론, 가족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사례를 다루는 상담원들에 대해서도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사례검토위원회가 조직되어 가정이 안전한지 타 기관이 안전한지 그 아동을 위해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외국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 대한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과 학대행위자가 조사나 상담을 거부, 방해할 시에 따르는 강력한 법

를조항 마련이 시급하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에 대한 친권상실제도와 관련해서는 친권이 박탈된 가정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인프라부터 구축하려면 친권박탈은 요원하다. 우선 친권박탈을 활성화하면 인프라가 따라올 것이라는 의견이다.

학대 부모의 치료 및 상담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특히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들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하지만 적절히 개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사항(강제 입원 및 치료 등)이 마련이 되어 아동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 급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따른 긴급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에 관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교사가 아동의 상황을 파악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근절캠페인을 상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학교장, 담임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므로 학교 내 분위기 쇄신, 담임의 강력한 의지 등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각 급 학교에 도입하여 또래상담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교육,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사회성 함양 및 대인관계 능력함양 교육 등 학교폭력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와 연계하여 가해자학생에게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며, 피해자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내에 상담교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상담·지원이 필요하다. 가해 및 피해학생 상담, 가해

및 피해학생 가족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만의 특성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의 직무교육 확대 실시 및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한 사안 처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다니던 환경을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기명으로 학교 폭력을 신고하더라도 상담 도중에 피해자이면서 신고자인 당사자가 밝혀져 보복을 당했고 이후부터는 신고를 꺼리게 된다는 보고가 많으므로 먼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상담실의 전문 인력 투입 및 사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내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담임교사가 미처 관리 하지 못하는 학교 뒤 건물, 옥상, 체육관 뒤, 담벼락 등 외진 곳을 수시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위기 청소년 중 가장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며 이는 경찰청만의 노력으로 안 되고, 학교폭력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등 피해학생들 구하고,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첫째, 학교가 변해야 한다. 우리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언론에 나오면 학교 위상이 하락하므로 덮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 및 문제학교로 낙인 하는 정책을 버리고 학교평가 중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사안에 따른 경찰서 연계 처리 등의 활동 실적을 생활지도 우수학교로 선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부서 신설 및 예산 확보, 청소년 관련 기관 지원이 필요하다.

5) 기타 의견

(1) 전문서비스 및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의견

위기유형별 전문화된 서비스와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원스톱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재 전문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강조하고, 현재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원스톱서비스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위기유형별 전문화된 서비스 체계가 먼저 갖추어 져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원스톱서비스도 가능하다.

보통 위기아동·청소년은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가정 내 학대부터 가출, 폭력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 기관에서 전문화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업무상 통합적인 원스톱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유형별 전문화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위기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이 더 효율적이다.

기존 인프라가 위기유형별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및 원스톱서비스로의 접근이 내담자입장에서 더 유용한 모형이 될 것이다.

문제유형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원스톱서비스 기관이 잘 연계되어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유형별 전문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며 전문화된 각 기관들이 시스템적 장애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한 기

관에서 사례를 지속적으로 담당했을 때 그 기관과 아동과의 신뢰로 사례를 지원하는데 장점 많을 것으로는 생각은 되지만, 위기개입의 일차적 목표는 당면한 위기상황에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위기유형별 전문화된 서비스를 주되게 제공하고, 부차적인 부분은 그 밖에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청소년 위기지원팀(긴급전화 1388) 및 지역사회 내 지구대, 청소년 이용 가능 업소(노래방, 찜질방, PC방) 등에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기관으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전국의 몇 개소는 위기 유형별 전문화된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기관은 허브기능을 하고, 시 단위에서는 통합적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각 위기유형에 따라서 해당 전문화된 기관에 자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긴급구호는 위기상황에서 대한 대처이므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여 현장에 출두하고 대처한 후 초기평가를 통해 적절한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시기에는 원스톱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재경험하지 않고 최소한의 변화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두려움을 줄여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인력 구성을 통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체계가 구축된 원스톱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원스톱서비스 역시 한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별 기관이 각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동사례개입하는 시스템이 현실적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는 외부로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찾아와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기관에서 모든 것을 맡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며, 지속

성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화된 유형별 서비스와 원스톱서비스를 통합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적극 지지하고 추천한다. 학교지원경찰인 SRO를 통해 해결한 사안을 소개하자면 학교 측의 신속한 연락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즉각 구조, 피해회복을 도와 스스로 해결 능력을 향상하였고 가해 청소년에게는 학교와 해당 학부모와 상호 협력하여 각 유형별 전문가(SRO, 행동치료전문가, 인지치료전문가 등)와 T/F팀을 구성, 일정기간 선도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재비행 방지는 물론 올바른 인성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각 기관에 대한 통합은 어려워도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을 한 건물 또는 근거리에 상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전문화된 시스템 이용 및 홍보도 용이하고, 즉각적인 원스톱서비스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또한 한 기관의 원스톱보다는 우리 지역 원스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원스톱서비스와 전문화된 서비스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타 기관에 연계할 경우 매번 새롭게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반복되는 조사로 인한 2차, 3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하다.

원스톱서비스를 한다고 하여 대규모기관을 몇 개 설치하는 것보다는 작은 단위의 긴급구호 기관에 가까운 곳에 많이 있어 접근성이 높은 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더 도움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긴급구호용 차량이 필수적이다.

(2) 1:1 서비스 및 상시모니터링에 대한 의견

1:1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는 당면한 어느 정도의 위기문제가 해결된 이후 일상생활 내지는 지역사회 내에서 1:1 멘토 서비스를 통해서 고위험 아동·청소년들이 관리되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위기청소년에게 1:1 찾아가는 상담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의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멘토지원단이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원하는 학교 또는 기관, 가정 등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충동적·공격적 성향과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한 고위험군의 청소년인 경우, 요청하는 늦은 시간·가정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해야 하는 근무특성을 감안할 때 상담자를 보호할 수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해보험 가입이나 상담자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한 1:1서비스가 가능하나 1가구당 70만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취약가정에서는 현실성이 낮다.

취약지역 상시모니터에 관한 의견으로는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들의 부모는 생계형맞벌이이거나 조부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대부분은 방과 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 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단위 주민들 중심으로 자치대(멘토, 감시단)를 만들어 조직적인 보호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우범지대에 지역주민 패트롤을 활성화 하여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자치주민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이나 드림스타트 사업의 확대 시행도 필요하다.

청소년동반자의 경우는 3개월간 위기개입 후 종료가 되는 체제이지만 한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과정에서 주변의 위기아동·청소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모니터링체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매우 높은 것이 문제이다.

전국의 통반장이 안전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는 매우 낮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지역사회의 컨소시엄이 있고 이들의 사명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컨소시엄을 안전모니터링체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온라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분야는 성매수 유인행위, 청소년의 조건만남 광고, 동반자살 등이다. 성매매의 경우 성인의 성매수 유인행위보다는 청소년이 조건만남을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IP추적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자살사건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가 관여할 수 없으나 동반자살은 방조죄가 적용되므로 인적사항을 파악해 지구대에 연락하여 현장으로 출동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정화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연2회 방학기간에 성매매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온라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때 사이버수사대에 기술지원을 요청한다. 예를 들면, 사이버포주를 발견했을 때 저장된 고객의 전화번호를 찾는다면, 성매매사이트의 ID조회, 통신사에 최근 통화기록 요청 등이다.

6) 소결

이 연구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의 정확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면과 면접의 방법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각 기관별로 긴급구호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위기유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해 가출청소년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일시보호소 운용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원에게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위센터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기관이 부족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 상담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쉼터를 몰라서 찾아오지 못하는 가출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 특화기관으로 신체적 및 심리적 응급으로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종합병원 응급실로 연계해 365일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의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 채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친족 성폭력인 경우 개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친권박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험성 뿐 아니라 증명 가능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문제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특화기관으로 긴급현장조사와 일시보호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가정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대아동에 대한 면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법적 권한이 일부 보장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위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의 공감대와 인식이 부족하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각 기관별 연계협력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필수연계기관과 1388청소년지원단의 연계협력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연계기관과 상호간에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협력에 수동적이고, 연계기관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위센터는 심리치료기관 및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위센터 역시 연계기관에 대기자가 많아 서비스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청소년쉼터는 병원진료 및 대안학교 연계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쉼터에서 보호하던 아동·청소년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그룹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절차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쉼터에서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호 아동을 의뢰하고 있고,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지역이 넓기 때문에 연계협력을 위한 교류를 가지기가 어렵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의 실무자 네트워크 및 병원과의 협력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 약간이라도 학대문제가 발견되면 무조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쉼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학교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기관별 안전모니터링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조기발견에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1388 청소년 전화와 1388청소년지원단이다. 그러나 1388전화는 무료전화가 아니고 회선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규모의 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위센터의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의 경우 위기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용이하고 친구에게 위센터를 소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쉼터의 아웃리치는 2-3명이 팀을 구성해 걸어 다니거나 소형차를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아웃리치는 원래 청소년쉼터의 고유사업으로 고위기군을 만날 수 있는 최일선의 방법이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이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보건교사, 보호자 등이 아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 교육은 위기아동 조기발견에 매우 효과적이고, 24시간 신고전화 운영으로 야간에 긴급 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아동권리

놀이터사업을 통해 교육 중에 방임,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도 하므로 신고 의무자 교육과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명예소년경찰단이 안전모니터링 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안되었다.

(1)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

CYS-Net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담지원센터는 찾아오는 청소년과 부모 중심의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으로 인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현장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활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웃리치 업무에 대한 고유성과 독자성이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함께 아웃리치 사업에 대한 공통된 목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출 및 학대 청소년의 경우 긴급구조 시 응급상황이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친권에 우선하는 보호권의 개념이 필요하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행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권에 준하는 ‘긴급구호 인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인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이 되려면 많은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을 안전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위기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귀가 및 쉼터연계를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야 한다. 현행 24시간 보호로는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상담하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집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입소 시 무조건

부모와의 연락을 강제하고 있어 무단퇴소 또는 귀가 후 재가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연락 기준이 마련되고, 가족 또는 학교에 대한 중재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관련기관간의 정보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기관은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다양한 상담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운영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하나의 상담지원센터로 통합한 원스톱 기능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을 발굴하러 다니는 것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보통 위기아동·청소년은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가정 내 학대부터 가출, 폭력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 기관에서 전문화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에 대한 통합은 어려워도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을 한 건물 또는 근거리에 상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전문화된 시스템 이용 및 홍보도 용이하고, 즉각적인 원스톱서비스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또한 한 기관의 원스톱보다는 우리 지역 원스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원스톱서비스와 전문화된 서비스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지역 상시모니터에 관해서는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들의 부모는 생계형맞벌이이거나 조부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대부분은 방과 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내 지역아동센

터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동반자의 경우는 3개월간 위기개입 후 종료가 되는 체제이지만 한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과정에서 주변의 위기아동·청소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모니터링체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지역사회의 컨소시엄이 있고 이들의 사명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컨소시엄을 안전모니터링체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성매수 유인행위, 청소년의 조건만남 광고, 동반자살 등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IP추적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정화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방안

가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가출청소년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해 치료 상담을 실시한 뒤 안정을 찾은 후에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쉼터에서 보호하던 아동·청소년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그룹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절차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쉼터에서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신고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신고자의 실명이 밝혀져 신고를 꺼리고 있으므로 익명성을 용인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가정 내 친족 성폭력 및 지적장애 등으로 보호자가 보호능력이 떨어져서 차후의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가해 가족과 강제 분리해야 한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대 부모의 치료 및 상담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고, 친권상실제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만의 특성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에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담임교사가 미처 관리 하지 못하는 학교 뒤 건물, 옥상, 체육관 뒤, 담벼락 등 외진 곳을 수시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위기아동·청소년 의견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청소년보호기관이나 시설이 위기아동·청소년의 위기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기대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본 연구는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및 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위기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알아보았다.

이 작업을 위해서 청소년의 위기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일반긴장이론의 분석틀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였다.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위기와 긴장 생성단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위기와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의 생성에 대한 이해와 위기결과로서의 비행행동에 대한 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위기경험과 그 결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보호기관들이 청소년들의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위기 아동·청소년 정책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위기아동·청소년 의견조사를 위해 위기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이용자를 표집 해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서는 24명을 표집 했고, 이 중에서 2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할 수 있

었다. 조사기간은 2010년 8월 한 달간 진행했다. 표집대상자의 이용기관⁸³⁾ 유형은 광역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군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위센터,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유형으로 구성했고, 각 기관유형별로 지역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나누어 권역별 1개 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별로 1명을 표집 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이들의 연령은 12세에서 19세까지 분포해 있고, 평균연령은 16.4세이며, 성별 구성은 남성 8명, 여성 13명이다.

<표 V-3> 위기아동·청소년 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사례	기관명	성별	연령	지역
1	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남	17세	수도권
2	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여	18세	충청권
3	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남	19세	영남권
4	광역시청소년지원센터	남	17세	호남권
5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여	18세	수도권
6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남	12세	충청권
7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남	19세	영남권
8	시군구청소년지원센터	여	18세	호남권
9	위센터	남	15세	수도권
10	위센터	여	17세	충청권
11	위센터	여	16세	호남권
12	청소년쉼터	여	16세	수도권
13	청소년쉼터(드롭인센터)	남	17세	충청권
14	청소년쉼터	여	19세	영남권
15	청소년쉼터	여	16세	호남권
16	해바라기아동센터	여	13세	영남권
17	해바라기아동센터	여	15세	호남권

83) 위기아동·청소년의 이용기관은 전문가 의견조사의 표집기관 중에서 경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과 일치한다.

18	아동보호전문기관	여	17세	수도권
19	아동보호전문기관	남	13세	충청권
20	아동보호전문기관	여	16세	영남권
21	아동보호전문기관	여	16세	호남권

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었다. 장래희망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군으로 간주되고 있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많았고, 헤어디자이너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웨딩플래너와 같은 신종 전문 직종에 대한 관심도 보여 주었다. 이처럼 특정 직업을 장래희망으로 거론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훌륭한 사람”, “남에게 베푸는 사람” 등으로 좀 더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학업과 진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경제적 자립을 장래희망으로 꼽는 경우도 있었다. “힘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무서워할 사람” 이 되고 싶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는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단을 한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또 장래희망의 달성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면접청소년의 70%가 50-70%의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하여 장래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⁸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오게 된 경로에 대해 물어 본 결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되어 오는 경우(사례 1, 15), 법원처분에 의해 오는 경우(사례 2, 20), 학교나 교사의 추천으로 오는 경우(사례 6,7,10,14,17) 와 어머니 아버지, 누나, 선배 등의 아는 사람의 권고나 소개(사례 4,5,8,9,11,18) 등으로 나타나 학교추천과 교사의 권고로 오는 경우와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 등으로 오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청소년들의 현재 상태와 과거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이 준비되었는데 그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84) 이러한 미래목표에 대한 달성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희망적인 현상이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자포자기나 좌절과는 달리 위기요인에 대한 극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데, 하나는 청소년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보호기관과의 접촉과 서비스 욕구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대상청소년의 위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기 아동·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위기의 근원들, 부정적 감성의 생성 및 대응, 그리고 비행 및 일탈행동 경험정도를 조사하였다. 위기의 근원-부정적 감성의 생성-비행과 일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일반긴장이론의 분석틀을 넓게 적용하였다. 대상청소년의 보호시설 이용경험 및 서비스 욕구에서는 이들 청소년의 과거 보호시설 이용경험과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문항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위기아동·청소년의 성별, 연령, 성격, 장래희망, 이용기관에 오게 된 이유 및 도움 받은 내용, 현재 가장 큰 문제 등을 질문하였다.

두 번째 영역은 위기아동·청소년의 긴장(스트레스) 상태와 긴장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 및 반사회적인 행동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부모, 학교생활, 친구관계, 외모,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방임·유기된 경험을 질문하였고,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의 기분상태와 일탈적인 행동 경험을 질문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위기아동·청소년의 관련 보호기관 이용경험과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을 받은 경험, 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욕구 등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여기에서는 보호기관 이용경험, 경찰서에 갔던 경험, 보호기관이나 경찰로부터의 사전보호 경험,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에 대한 욕구, 기타 전반적인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1차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에 의문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해 2차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집단면접(FGI)의 형식으로 10월 27일에 이루어졌다. 집단면접은 연구진이 청소년쉼터를 방문하여 이루어졌고, 5명의 아동·청소년이 참가했다.

2) 위기실태

(1) 위기 아동·청소년의 당면문제

현재 본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다양한 문제들이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크게 학업과 진학에 관련한 문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부모의 갈등, 학교부적응과 왕따로 요약된다.

아무래도 청소년이라는 지위 상 **학업과 진학에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합격) 현재 특별지원으로 학업지원 받고 있음. 친구들을 많이 의지하게 되고 친구들이 격려해준다. 먼저 검정본 애들이 가이드역할을 해 준다. 학원선생님도 검정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신다(사례3)

실업고를 다니는데 엄마가 대학을 가라고 합니다. 대학을 가야 이혼한 엄마는 동생들의 학비 등 여러 가지를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담임은 경북대학에 갈수 있다고 하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사례5)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공부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성적이 잘 나와야 하는데, 1,2학년 때보다 조금 낮다(사례7)

9월부터 학원을 다니기로 엄마와 약속을 했는데 평소 공부를 하지 않아 따라갈 수 있을지, 시험에 통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사례12)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하고 싶은데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고민이

다(사례 13)

지금은 아빠랑 떨어져 살고 있으니 무엇보다도 진로가 가장 고민이다. 나는 대학에 가고 싶지만 엄마나 주변에서는 이 형편에 대학을 가는 건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한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갈등이 되는 것 같다(사례 18)

두 번째는 가정의 궁핍함, 용돈의 부족과 각종 물건을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다.

잘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숙식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가장 필요하다. (사례 1)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심리적으로 어렵다(사례 3)

아무도 나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아빠는 나에게 대한 신뢰가 없어서 돈을 주지 않고, 필요한 물건, 써야할 곳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사례 13).

세 번째로 위기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약된다.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아빠와 아주 사이가 안 좋다(사례 8)

아빠와의 관계 : 서로 대화가 없고 무뚝뚝해서 불편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싶은 데 잘 되지 않는다(사례 13)

가장 먼저 아버지와 관계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사례 14)

네 번째 어려움은 **학교부적응, 왕따, 그리고 학업부진**이다.

공부도 못하고 나이도 많은데다가(1년) 담임이 자꾸 본인만 예의주시하다보니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다(사례2).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 시키고 툭툭 치고 다니고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선생님도 전혀 이해못해주고 학교에 있으면 친구들이 모여서 내목을 조이는 것 같아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해봤는데 조금만 참아라, 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다라고만 해서 말하는 것도 지쳤어요. 친구가 있긴 한데 다른 애들이 그 친구한테도 나랑 놀지 말라고 하면서 못살게 굴까봐 속상해요..그래도 친구가 한명 있어서 좋고, 학원 다니면서 만난 다른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 재미도 있고 좋아요(사례11).

학교문제다 학교에 가면 수업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위클래스에서 9시~6시까지 이상한 것 쓰거나. 교육을 가서 답답해서 결석중이다(사례15).

이 외에도 참지 못하고 친구들을 때리는 자신의 성격이 고민이라고 응답한 경우(사례 6),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힘들다(사례 9)는 경우도 있었다.

(2) 위기의 근원

면접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각종 위기를 지속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들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고 이 경험으로 인해 가출이나 방황, 음주 흡연 등에 가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설과 기관에 연계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 경험은 크게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 친구관계, 경제적 궁핍, 그리고 방임과 유기경험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경험들은 부모의 이혼과 재혼, 부모의 사망, 부모와의 갈등, 부부불화, 부모의 무관심과 차별, 그리고 가족폭력이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갖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① 부모의 부재

부모의 부재는 한 쪽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과 재혼 등으로 발생하는 데 이로 인한 경제적 궁핍의 심화, 방임과 폭력의 경험 등을 수반하게 되는 일차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사례 2)

엄마 돌아가신 게 제일 힘들었고.(사례3)

엄마의 죽음.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빼그덕 거렸으므로(사례21)

어려서 오빠와 고모 집에 살아서,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고, 엄마는 기억이 안남. (사례10)

엄마가 초등학교 때 아빠와 이혼하고 아빠와 두 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빠는 일도 안하고 용돈도 주지 않았고 술을 자주 들었고, 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싫었습니다.(사례 5)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사례12)

부모님의 이혼 문제 등 집안 문제로 가장 힘이 들었음. 특히 부모님의 이혼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친척들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그 뒤로 가출이 잦아지게 됨(사례1)

아빠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내 알바 아니다. 아빠는 밤일을 나가서서 밤에 출근하시면 나는 밖에 나가서 놀았다. 마음대로(사례1)

② 형제차별

형제자매간의 경쟁심(rivalry)도 청소년들에게 긴장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다.

가족 안에서 누나와 비교 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누나와는 1살 차이인데 초등학교·중학교 9년 동안 누나 그늘에 가려져 특출하지도 못한 나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 이였다. 늘 내 이름 앞에 누가 동생으로만 기억 되어지는 게 정말 인지 싫었어요. 이젠 괜찮아요. 그런 누나가 이곳 동양대학교 다니잖아요. 별 수 없이. (사례7)

③ 부모와의 갈등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아빠가 꼭 막혔다. 옛날사고방식이다. 여자는 늦게 다니면 안 되고 여자는 어찌서 안 되고 하는 점이 많다. (사례8)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담자는
아빠와 살고 싶었는데 엄마와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싫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엄마가 자신에게 미안한지 잘 해주어서 잘 지냈지만 엄마
가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소원해져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다(사
례12)

④ 부모의 폭행

부모의 폭행, 특히 아버지의 폭행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긴장의 근원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면접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상 아동폭력의 피
해자로 복지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면접대상
청소년들이 부모, 특히 아버지로 부터의 폭행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아빠는 술만 드시면 몸풀이 하듯 엄마와 우리 남매를 개
패듯이 때렸다. 그런 시간이 많아지자 엄마는 집을 나가 혼자살고,
나와 누나도 가출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아빠가 우리와 엄마를 술 먹
고 심하게 때릴 때 한 번 때리면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로
때리고 우리는 무서워서 집을 나왔다 (사례4)

어릴 때 엄청나게 엄마가 때렸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화풀이’였
다고 말씀하시더라. 제가 어릴 적 외갓집에서 자라서 외삼촌을 닮고,
성격이 똑 같아서 아버지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 잘은 모르지만 외
삼촌이랑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는지 그랬다. 아버지와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년에 1시간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고, 술 먹고 이
야기 걸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아버지는 말이 원장이지, 무책임
하지만 믿지는 않고 이제는 이해가 간다.(사례 7)

아빠가 진짜 싫어요. 같은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 술 마시
고 엄마 때리고 욕하고...엄마는 살지 말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
해가 되지 않아요. (사례11)

아빠가 술을 마시고 엄마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평범함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게 되었다. 어릴 때는 제발 싸우지 말라고 울면서 매달리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빠의 술주정은 더 난폭해지고 엄마뿐 아니라 나와 동생을 마구잡이로 때리기도 했다. 집 안의 살림살이를 부수고, 던지고, 때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심지어는 우리를 향해 칼도 던지기까지 했다.(사례18)

나. 학교생활과 관련한 위기

학교생활 또는 학업과 관련한 위기는 주로 공부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학습부진에 대한 염려이며 학교나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친구들과의 갈등이 포함된다.

① 공부에 대한 부담

학업과 관련되어 성적부진이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도 청소년들에게 어려움을 만든다.

공부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려워요 성적도 나쁩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았는데 잘 모르겠고 떨어졌습니다.(사례5)

놀다가 학교가려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먼 거리, 아침 6시 30분차를 타고 나와야 지각하지 않음), 보충야자까지 하는 것이 넘 힘들(땡땡이 자주 침)(사례 2)

공부를 잘 했었는데 학교를 안 나가면서부터 성적이 떨어져서 다시 복학할 때 공부에 대한 부담감 역시 컸어요.(사례 9)

학교는 다니고 있지 않아 편안하다. 하지만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대

학교를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는 가장 최악이었고, 고등학교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다. 그냥 스스로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빨리 대입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가고 싶다. 3년 후에는 대학교에 입학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례 12)

② 학교와 교사와의 갈등

청소년들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교칙이나 교사의 지나친 체벌 등도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는 긴장의 원천이다.

선생님과의 갈등 규정규칙을 지키는 게 힘들었다. 지각, 두발, 복장 등으로 교사들과 갈등이 심했다. 특히 담임. 담임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해서 잘 맞지 않았다. - 일관성없는 태도 때문에 힘들었다.(사례3)

현재 담임선생님이 아무 일 아닌 것에 간섭하고 내가 잘 못한 일에 친구를 같이 체벌하고(맨 주먹으로 때림) “내가 네 장난감인지 알아 이 새끼야” 욕설을 하고, 잘 못한 일을 학우들 앞에서 이야기 해 보라고 하고, 컴퓨터에 내가 잘 못한 일을 적어 놓았고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을 한다. 이제부터 빨갱이라고 부를 거예요.(사례 6)

학교와 맞지 않는다. 공부에 흥미도 없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라서 공부를 해야 하고, 선생님이 학생 다루는 방식도 힘들다. 교칙이 너무 강하다. 예를 들면 치마도 무릎위로 올라오면 안 되고 머리도 길면 안 되고 단정해야 한다. 가장 힘든 부분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다. (사례8)

③ 학교 급우 관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게 되며 학교

생활의 적응이 안 되고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긴장과 스트레스가 생기게 된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세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명에 대해서 제가 나쁘게 이야기했다고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야기도 걸지 않고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들어주지 않아서 1년 내내 힘들게 다녔어요. 2학년 때는 다른 반이 돼서 그래도 좀 편했는데 3학년 때 같은 반이 돼서 또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이 따돌려서 학년 초에 전학을 갔는데 나만 못가고 여기서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혼자서 있었음 좋겠어요. 살기 싫어요.(사례11)

학교 친구들이 부모님 이혼이나 아버지 폭력,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는 사실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음.(사례14)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신경이 많이 쓰였고 친구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어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서 힘들었어요.(사례9)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다. 아이들이 잘 안 놀아주고, 말도 잘 안 함 (사례10)

다. 경제적인 어려움

면접대상 청소년 거의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가정경제의 어려움과 용돈부족 등 경제적인 어려움은 위기 아동·청소년의 중요한 스트레스 원천이다.

지금 인생자체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 돈만 있으면 잘 곳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 없다. (어디) 돈만 있으면 찜질방, 모텔 등에서 잘 수 있다. 돈 없는 게 켈 힘들다. 누군가 날 도와준다면 돈으로 줬음 좋겠다 (사례1)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함. 엄마가 돈 벌려고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옴(아침 5시에 나가 10시쯤 들어온다고 함). 용돈도 많이 주지 않음.(사례 2)

용돈이 부족하다. 월 15만원정도 받는데 논다고 쓰면 부족하다. 학교 다닐 때는 주 4만원정도. 옷도 사고 밥도 사 먹고 놀기도 한다. 알바할 때는 돈 안 받는다. 학비를 못 내지는 않지만 가난하고 힘들다. 가난해서 불편하긴 하다.(사례 3)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용돈을 구하기 위해 호텔웨딩이 있거나 하면 음식을 서빙 하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일이 많고, 전화가 오면 알바를 합니다.(사례 5)

부모님이 보일러를 하는데 요즘 일이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학원가는 것도 좀 그렇고, 돈이 많이 있음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례 11)

용돈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모가 혼자 일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식당에서 일하는 모의 월급은 80만원이 좀 넘는데 이것저것 내다보면 자신은 한 달에 약 4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는다. 어떤 달에는 전혀 받지 못하는 달이 있다. 용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는 친구들에게 얻어먹고 다니거나 금품갈취를 해 용돈으로 사용한다. 가정형편이 어렵기는 하나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내담자 주변에는 돈이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사례 12)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는 늘 용돈이 부족하였음. 시설에 있었을 당시 한 달에 25,000원 씩 용돈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생활 하면서 한 달에 3,000원 정도밖에 용돈을 받지 못해서 생활하기 힘들.(사례 14)

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치열한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용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여유가 없었다. 다만 우리 집이 부자였다면 이 치열한 현장 속에 있지 않고 일찍이 유학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가끔 하곤 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대학을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한다.(사례 18)

라. 방임, 유기 경험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늘 혼자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오빠는 기숙사에 있고, 엄마는 새벽에 나갔다고 밤늦게 오거나 술 마시고 들어오신다고 함(엄마도 힘들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한다고 함).(사례 2)

2년6개월 정도 혼자 집에서 지내다 시피 하였다. 진짜 집은 아빠가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니까 집을 나와 지냈다.(사례 4)

엄마 아빠가 이혼한 후 제가 동생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사례 5)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 며칠 동안 아빠의 술주정에 더 이상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엄마도 왕래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었기에 그 만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사례 8)

3) 부정적 감정의 생성 및 대응

청소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 일반긴장이론의 이론화에 따르면 앞서 살펴 본 긍정자극의 소멸과 부정자극의 개입은 청소년들에게 초조 불안, 우울과 짜증, 자포자기의 심정, 더 나아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자살충동을 자아내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감정이 분출하여 가출이나 폭력 등을 비행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부정적 감정의 생성은 이러한 점에서 관리되고 치료되어야 하는 것이다.

초조하고 불안하다. 꼭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죽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자살시도 1회). / 가만히 있다가 도저히 안 되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노래방 가고...(술, 담배 함) / 갑자기 말투가 변한다. 우울할 때는 “아~ 몰라, 기운 없어”, 화날 때는 “짜증나, 말 걸지마~” 라고 화낸다고 함(사례 2)

왠지 모르지만 화가 많이 났다. 무표정하게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화가 났을 때 수업시간에 나가서 담배 피거나 학교 갔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거나 친구 때리기도 하고.(사례 3)

집에 있게 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친구들이랑 거리감이 느껴져서 초조했어요.심리상태가 불안하니까 신경질적이 되어 인간관계가 나빠지긴 해요. 불안하면 친구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같이 어울릴 여유가 없어져요.(사례 9)

항상 우울해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죽으면 좋겠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편하잖아요. 천으로 목을 감고 의자에 묶어서 죽어 불려고도 했고, 타이레놀 30알을 먹기도 하고, 떨어져 죽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죽고 싶어요..(사례 11)

4) 문제행동과 범죄

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과 스트레스(위기)를 겪은 청소년들은 부정적 감정 상태를 갖게 되고 분노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negative feeling)은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다. 면접결과 자살충동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비행행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충동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많지 않았으나 음주 흡연에서부터 가출, 무단결석, 집단따돌림, 성매매, 절도 등 다양한 비행과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자살충동 및 시도

따돌림 받을 때 엄마가 전학시켜주지 않아서 학교에 가는 것도 싫었고 항상 우울해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죽으면 좋겠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편하잖아요. 천으로 목을 감고 의자에 묶어서 죽어 불려고도 했고, 타이레놀 30알을 먹기도 하고, 떨어져 죽어 볼까하는 생각도 하고...죽고 싶어요..(사례 1)

초조하고 불안하다. 꼭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죽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한다(자살시도 1회)(사례 2)

(2) 비행과 범죄

위기 아동·청소년의 공통점은 가정적, 경제적 배경 뿐 아니라 각종 비행

행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면접대상자 거의 대부분이 음주, 흡연, 가출, 폭행 등의 비행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음주, 흡연, 가출, 성경험, 무단결석, 폭행, 따돌림. 다 해보았다. (한 이유) 살기 힘들고 답답하니까. (힘든 일과 관련 있나) 힘들면 술 마시고 싶고, 울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은 것이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사례 1)

학업중단 시에는 주 3회 이상 음주, 흡연을 하였고 뺑뺑이, 때리기, 오토바이 훔쳐 타기 등을 한적 있음. 중학교 시기에는 가출 및 음주, 흡연, 폭력행동(친구나 마음에 안들 때)을 했다(사례 2)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학교폭력.... 등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습관적으로 한 것 같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껴안치고 나온다. 예를 들어 선생님과 갈등이 있으면 학교 내에서 담배 피거나 선생님을 때리지 못하니까 동기들(불특정 다수) 때렸던 것 같다. 화날 때 억누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했던 것 같다.(사례3)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폭행, 따돌림.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화풀이, 반항이다. 가출은 거의 아빠 때문에 했고, 무단결석은 학교 가지 싫어서이다 (사례 8)

흡연, 가출, 성경험, 원조교제, 성폭행, 폭행, 따돌림 등 다 해보았다. 초5때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보상금을 고모와 아빠가 노름과 도박으로 모두 쓰고, 성병치료를 해주지 않음. 현재 매독보균자가 되었음. 용돈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이 경위가 되기도 함. 학교에 오니, 모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대하는 것 같아 학교 다니기 싫었음.(사례10)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폭행을 해본 적이 있고 따돌림은 당해

본적이 있다. 음주와 흡연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이고 가출은 모와의 갈등, 무단결석은 따돌림과 폭행을 당하면서 하게 되었다. 내담자가 폭행을 가한 것은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고 다녔기 때문이었다.(사례12)

음주, 흡연, 폭행, 무면허 운전, 가출, 원조교제, 돈 훔치기, 특수절도 ...학교를 다니고, 착한 친구들과 계속 관계를 가졌다면 일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사례13)

음주, 흡연, 가출, 성폭행, 무단결석을 해본 적이 있음. 술과 흡연은 친구와 함께 하게 되었고 가출은 아버지의 폭행과 부모님 이혼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난 뒤에 찾아지게 됨. 처음으로 가출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폭력 때문임. 무단결석은 가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음. 성폭행은 집근처에서 동네사람에게 당했으며 아버지도 알고 있음.(사례14)

음주, 가출, 흡연. 무단결석, 폭행/가출은 아빠 때문에 음주 흡연은 억압된 감정에 대한 마음이 답답해서 .폭력은 비꼬거나 무시하는 참았다가 엄청 짜증이 나는 경우(사례15)

술은 조금 마셔봤다.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 담배는 해본 적 없다. 가출 경험은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적 있고, 이후 엄마가 찾으러 와서 다시 집에 들어왔다. 원조교제는 해본 적 없고, 무단 조퇴는 해본 적 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그냥 공부하기도 싫고 애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가지고 집에 간 건데,, 그리고 방관자 역할을 하면서 따돌린 적은 있다. 나도 따돌림 당한 친구처럼 될까봐. 그리고 따돌림 당한 적이 있어요.. 같이 다니는 무리 중에서도 몇 명만 친하고 나머지 애들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다 보니까/친구관계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을라고 하니까 따돌림 하는 것 정도 불안하니까..(사례17)

중학교 때 진한 화장을 하고 명동 거리를 다니기도 했다. 물론 조금의 음주를 하고... 내 생각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일탈행동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나와 같이 어울린 친구들도 그러했고, 나도 그 속에 어울렸을 뿐이다.(사례18)

음주, 흡연, 가출, 폭행을 했고 화가 나서 분풀이를 했다(사례20)

면접에 의해 도출된 위기경험의 근원과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기 아동·청소년의 현재 당면한 문제와 위기의 근원은 상당히 다양하면서 중첩적이다. 학업과 진학,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갈등, 그리고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부모갈등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결과이기도 하고, 학교부적응과 부모와의 갈등을 낳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학업과 진학에 좌절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층적인 어려움은 청소년들의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과거 경험에 기인한다. 위기의 근원은 가정에서의 방임이나 유기, 폭력, 이혼, 사별의 경험, 학교교사와의 갈등, 엄격한 학교교칙에 대한 반감, 학업에 대한 부담감, 친구로 부터의 집단따돌림과 놀림, 그리고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결핍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당면 문제와 위기경험은 분노, 짜증,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상당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은 자살이나 음주 흡연, 가출, 무단결석 나아가 폭력, 기물과 괴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비행과 범죄를 야기 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일반긴장이론의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위기경험과 부정적 감정, 비행 및 범죄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청소년들의 필요와 잘 조화가 되고 있는 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서비스 욕구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5) 보호기관 접촉경험 및 서비스 욕구

(1) 청소년보호기관 이용경험과 효과

가. 청소년보호기관 이용경험

면접대상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보호기관 및 시설에 대한 과거경험을 물어 본 결과 50%정도가 이전에 기관 접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시설이나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파악을 시도하였다. 1388전화,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청소년보호시설 및 기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은 도움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함께 하고 있다.

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울산에서 고1학년 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집단상담 받을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정도.(사례7)

청소년 지원 센터에서 하루만 숙식하였고 상담하고 본 쉼터로 연계 되었음. 하지만 컴퓨터를 못하게 하여 아쉬웠음.(사례 14)

② 1388 전화

1388전화를 해본 적이 있다. 그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싫었으며, 방문을 권유 당했는데 가기 뻔중하여 가지 않았다.(사례 12)

③ 청소년동반자

청소년동반자, 몰라요, 동반자 선생님한테 아빠가 때린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말 잘 들으라고 해서 짜증났어요.
(사례19)

④ 청소년쉼터

00쉼터에 있었다. 거기서 공부하게 해준 것이 제일 만족스럽다. 밥과 재워준 것도. 쉼터 소장이 검정고시 붙으면 상품권4만원 준다고 했는데 안줬다. 내가 퇴소해서 나와서 이제 안 된다고 했다. 미리 받았어야 하는 건데.. (아쉬운 부분은) 용돈이 적었다. 쉼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데는 일주일에 만원씩 준다. 거기만 5천원이다. 너무 적다. 이건 사실 담배 값이나 마찬가지다. 금방 담배 떨어진다. 그리고 옥상 가서 담배피고 그래서 흡연실을 건의했더니 흡연실 만들어 주었다. 내가 건의 한 거다. 그리고 컴퓨터 하루에 1시간 밖에 못한다. 속도도 너무 느리고.(사례1)

신나는 디딤터 (장기쉼터)를 이용한 적이 있음. 친구, 언니, 동생들과 친해져서 좋았다.(사례 20)

⑤ 아동복지시설

종덕원(아동복지시설) : 동생과 함께 있어서 좋았고, 학원이나 병원이 지원되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음. 또 개인으로 후원원이 있어서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음. 하지만 상담이 딱딱했고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아서 상담마다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 아쉬웠음.(사례4)

나. 도움의 내용 및 효과

청소년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면서 도움을 받은 것은 검정고시 준비나 공부 관리, 전학처리지원 등의 학업지원, 용돈지급이나 아르바이트 알선 등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나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정목적의 지원으로 도움을 받은 것 이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도움을 받은 내용으로 언급한 것이 본인들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제자리에 갖다놓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가게 됐고(특수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에서 시험관찰 명령으로 장기상담 의뢰) 거기서 상담실에 가서 상담 받으라고 해서 /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못하는 말을 여기서는 할 수 있어서 좋았다.(사례2)

학교 안에 있으니 공부도 안 되고, 스트레스 쌓였는데, 밖으로 나오니까 그나마 좋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들어낸다는 것, 믿어준다는 것이 힘이 됨.(사례7)

친한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많이 풀고 있다.(사례8)

학교를 가지 않고 제가 우울해 하고 인터넷을 많이 해서 아버지가 센터에 저를 데리고 왔어요. 속마음을 털어 놓아서 답답한 마음이 사라졌고 말하는 것을 통해 길을 스스로 찾았어요.(사례9)

엄마가 죽고 싶다고 하니까 병원에 예약했는데 Wee센터를 누가 알

려줘서 오게 되었어요..학교에 가는 것이 매일 매일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학교를 설 수 있어서 좋고,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말 못했던 것들 이야기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사례11)

쉼터를 오게 된 것은 학교 앞에서 선생님들이 사탕을 나누어 주는 것을 받고 오게 되었다. 쉼터는 편하게 설 수 있는 장소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도록 들어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좋은 곳이라 생각해요(사례 12)

② 학업지원, 경제적 지원

00쉼터 갔었을 때, 소장님이 청소년증 만들어주고 공부하게 해준 거. 청소년증이 있는지도 몰랐다. 검정고시 보게 되는 것도 몰랐었다. (어떤 어려운 상황) 먹고 잘 데도 없고, 청소년증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때에 도움이 되었다. (어떤 도움이 되었나) 공부하면서 깊어지게 되었다. 생각도 그렇고. 내가 별로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애들도 있구나. 그래서 공부하게 되었다. (지금은 왜 나왔나) 여자 친구 때문이다. 거기서 너무 좋았는데 여자 친구랑 나와서 같이 살려고 해서 나온 건데 그 애는 다른 애랑 사귄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두드림도 3단계까지 하고 40만원인가 지원금도 받았었다.(사례 1)

③ 상담지원

작년에 학교 그만 둔다고 했을 때 담임선생님이 찾아오는 상담 연결 해주신 것. 내키지 않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차차로 내가 변화하게 되었다. 이제는 폭력을 하지 않으려 한다. 예전에는 부딪치면 욕하거나 싸웠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간다. 옆에서 도와줄려고 하지만 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사례3)

(2)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서비스 욕구

면접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유형과, 도움의 주체, 그리고 현재 시설이나 기관에 있으면서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경제적 지원과 상담지원이 많이 언급되었다.

가. 경제적 지원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주어서 사고 싶은 걸 사게 해주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사례7)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쉼터에 와서 밥을 먹고 쉬다 가는 것도 좋지만 귀가하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에도 차비를 줬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멀리 있을 때 쉼터를 찾아오고 싶지만 차비가 없고, 와도 돌아갈 차비를 받지 못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사례 2)

그 당시에는 엄마가 돈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나갈 수 없었다. 정말로 필요했던 건 엄마와 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경제적 지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랬다면 아마 ‘아빠가 병원을 드나드는 것과 엄마가 가출을 반복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때 상담원들을 통해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동생도 심리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큰 도움이었다.(사례18)

나. 상담지원

상담실에서 함께 해결해 주는 것, 친구들에게도 고민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상담실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함.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있어줘

서 좋았다고 함.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을 잡아주고 해결책도 찾아준 것.(사례2)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상담이나 심리치료도 필요한 것 같다. 건강하게 화를 내고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사례3)

상담 받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사례11)

다. 시설에 대한 개선점

청소년보호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거나 고쳐주었으면 하는 점이라고 제기한 점들을 정리해 보면 드롭인센터 등 일시쉼터의 성격을 가진 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쉼터가 너무 일찍 문을 닫는다거나 비가 오면 나오지 않는다던가 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은 흡연이나 외박 등에 대한 쉼터규칙의 완화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 노래방, 당구장 등의 놀이공간의 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모든 쉼터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바꾸어라. 그 대신 외출 자유하고 용돈도 많이 주라. 단기에서 오래 버티야 중장기로 가는데 단기에서 썸 애들이 있어서 한 달 버티기 어렵다. 모두 중장기로 해서 일하면서 잘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례 1)

지역별로 1개씩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누구나 가고 싶을 때 와서 잠 자고 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잠자리 왔을 때 자세히 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와서 자고 나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사례2)

모든 쉼터가 잠을 잘 수 있고, 외출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 이동쉼터처럼 밤과 새벽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많이 생겼

으면 좋겠다.

- 일시쉼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 운영시간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사례3)

6) 소결

이 연구는 위기아동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하였다. 체계적인 면접을 위해 채용한 이론적 분석틀은 청소년 비행원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의 관점이다. 이 이론에서는 아동·청소년들을 위기로 몰아가는(극단적으로 비행과 범죄청소년이 되는) 위기의 근원과 그 위기로 인한 부정적 감정의 생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관리와 대처가 미흡하게 되면 위기결과단계, 즉 자살이나 폭행, 가출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1) 위기의 근원, 2) 부정적 정서 상태, 3) 반사회적 행동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과 경험을 가진 위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서비스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로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먼저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면 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존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자극의 소멸이라 함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별거 등을 포함하는 데, 다수의 면접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이러한 긍정적 자극의 소멸로 인한 긴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부정적 자극은 학대, 방임, 폭행, 부모와의 갈등, 교사, 친구와의 갈등 등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 자극 중에서 특히 대상 아동·청소년들에게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 것이 아버지의 폭행과 아버지와의 갈등이다. 심지어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공부부담이나 교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경제적 궁핍함, 유키와 방임의

경험 등 긴장을 발생시키는 위기요인의 경험들을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긴장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만들어지며 분노와 우울, 두려움 등의 감정은 내적으로 자살충동을 외적으로는 폭력과 가출, 절도 등의 비행과 범죄를 불러온다. 기대한 바와 같이 대상 아동·청소년들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많이 보이고 있었으며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예를 들면 가출, 폭력, 절도, 자살시도, 성매매, 성폭력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이들이 경험한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자. 시설 및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1388,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은 것으로 꼽는 부분은 자신들의 얘기를 털어놓고 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학업지원, 상담지원 등을 언급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 아동·청소년들도 있었다. 자고 먹을 곳이 있어서 비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도움 받은 점으로 언급한 아동·청소년도 있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알아본 결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와 상담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시설이나 기관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일시쉼터의 운영시간 연장이나 규칙완화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외출외박에 대한 규제, 음주흡연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쉼터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언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위기의 근원과 부정적 감정, 그리고 비행예방에 대한 정책제언

부모의 폭력과 알코올 남용문제는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야기하는 중요 요인이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자녀들의 피해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유기와 방임의 경험도 간과할 수 없다. 범죄피해와 방임 등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시설 특성화에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모의 폭력,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곤란, 학교부적응 등의 긴장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감정-분노와 우울, 자포자기-을 초래한다. 분노와 같은 심리적 긴장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고, 우울과 같은 심리상태는 자살충동과 자살시도와 같은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면접대상자들을 통해 그들의 분노와 짜증, 우울 등을 확인 한 바 부정적 감정을 이성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면접대상자가 “만일 내가 화를 정당하게 푸는 방법을 알았다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걸...” 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부정적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러한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 파괴적인 행동으로 분출될 수도 있고, 승화를 통해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사회적 행동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도 부정적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위기 아동·청소년들이 위기를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립지원에는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 취업을 위한 지원, 당장 생계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거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생계곤란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예를 들어 다양한 바우처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은 장차 사회의 최하위계층

으로 편입되고 범죄세계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위기 아동·청소년기관의 서비스 제공차원에서의 정책제언

서비스 이용경로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나 교사,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등에 의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청소년보호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설 및 기관 간 연계에 의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2건). (과잉일반화의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시사 하는 바는 학교를 제외한 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간에 정보공유와 연계활용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학교나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접근,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 간 정보공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유사시설간 정보 공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시설이나 기관에서 도움 받은 것의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속마음을 보여 주고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소년들의 이 같은 의견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인식을 이해받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적인 신뢰의 획득은 위기 아동·청소년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보호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울분이나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용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은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이 청소년들의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들 간에 편이 나뉘거나, 위계체계가 생기게 되면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진다. 시설운영자나 봉사자들은 이러한 무리(clique)가 발생하여 갈등관계에 놓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일상화된 갈등은 위기 아동·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더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더 위축되도록 부추기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애정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 의존을 하게 되고, 그 의존이 지나쳐 갈등으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일상이 편안하지 않으면 자립에 대한 생각, 진학에 대한 생각 등을 긍정적으로 해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위기 아동·청소년이 갈등관계에 놓였을 때 그것을 헤쳐 나올 수 있도록 갈등의 조정과 관리(conflict management program)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드롭인센터나 일시쉼터 등의 운영시간과 이용 장소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 증대와 운영시간 연장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밤이나 새벽시간에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요구도가 높은 장소부터 점차 그 시간과 시설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밤이나 새벽시간에 숙식해결 할 곳을 찾지 못하면 노숙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면 범죄피해나 건강상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24시간 문을 연 시설의 증설이 필요 하다.

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집단생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기는 하지만 따라서 물리적으로 사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신상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며, 사생활과 비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쉼터 등을 이용하는 위기 아동·청소년은 내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가출을 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친구들과리 어울려 놀러 다니기 위해 집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집이 힘들어서” 나온 경우와 “밖이 재밌어서” 나온 경우는 그 접근이 달라야 한다. 따라서 쉼터의 성격을 보다 다양화하여 서로 어울리기 힘든 청소년들끼리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욕구다양화에 따라 규율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청소년과 규율이 완화된 상태에서 숙식을 해결하고픈 청소년들이 각자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쉼터의 수도 증가되어야 하고 그 쉼터의 특성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총체적인 접근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을 위기의 상태로 몰고 가는 원천요인 중 중요한 것은 가정의 기능적 문제이다. 가정의 문제는 배제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조성한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위기의 원천을 차단하고 위기요인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위원회의 가동 등 청소년이 속한 가정 전체에 대한 진단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위기 아동·청소년의 발견시점에서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위기 청소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상담서비스 등의 욕구를 파악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I.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1. 통합지원체계의 개편방안
2. 분야별 지원체계 및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체계 개편방안
3.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VI.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 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1. 통합지원체계의 개편방안

1)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개편방안

(1) 전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가. 시도 청소년 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업무

① 대외협력 업무의 분리 및 구체적인 업무 명시

대외협력팀의 업무특성이 센터 전반의 예산 인사 전산 등의 관리와 CYS-Net 연계 지원체계를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각종 위원회와 지원단(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 지원단 관리 등)의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2010년 보건복지 가족부의 운영지침에 의하면(21-22쪽), 시, 도 운영지침의 CYS-Net 운영에 따른 대외 협력사업 내용은 예산 인사회계관리전산 등 지원업무,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조정 발굴 및 총괄, 업무 협약체결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지원단 운영관리, 상담통계 및 유형분석·관리, 사례집 발간, 센터 리플렛 책자, 리플렛 등 발간 홍보에 관한사항 등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CYS-Net 전반에 관한 홍보와 대외업무를 맡아 관리하는 것과 센터 관리와 행정 업무까지 포함되어 단기계약직원까지 포함한 상담지원센터 인력이 50여명에 이르는 대구센터의 경우, 도저히 내실 있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업무가 센터관리와 실적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위기 청소년을 위한 대외적인 활동을 하거나 수많은 1388지원단 소속 기관의 방문 등, 내실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일이다. 실제로 센터에서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을 위한 회의와 실행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벅차는 일이어서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연계하도록 지역사회기관들이 협력하고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1388지원단에 소속된 기관단체 장들의 참여의식을 유도하려면 지원단에 소속된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388 청소년지원단, 실행위원회 등의 일을 맡은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가능한 일인데, 년 1, 2회의 지원단 회의 참석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참여의식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여긴다. 상담원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은 잡다한 업무가 산재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 시간까지 합하면 (1인 당 월 신규사례 32건, 전화상담 150건 이상, 지원서비스 70여건 등을 실시함), 지원단이나 대외 협력을 위한 일은 자연스럽게 소홀 할 수밖에 없으며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게 된다. 또한 평가의 내용도 회의 몇 번으로 한정 시킨다면 애써서 일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노력해야 할 명분이 없으며 박봉에 힘들게 일하는 상담원으로서는 더 이상 노력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광역시와 시도 센터에서는 대외협력의 업무는 행정과 CYS-Net 업무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전담직원 2명을 두어 센터 운영 및 각종 사업의 예산과 센터 관리를 맡아야 하며, 대외 협력은 CYS-Net의 각종 회의와 홍보를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② 구 종합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4개의 광역시에 (대구의 경우, 2009년에 1개 구만 설치되었음) 구 센터 절대 부족으로 CYS-Net 운영은 물론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역시 센터만 있을 경우, 내담자들이 광역 지원센터로 몰리면서 상담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위기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즉시 개입을 요구하는 청소년 사례들을 적절하게 도와주지 못하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은 물론 위기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한 CYS-Net를 설치 운영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시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 업무 부담과 함께 상담실적 등 업무가 가중되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과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담과 전문 인력양성 등의 상담고유 업무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상담을 위한 시간 할애가 날로 줄어드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적은 수의 상담 인력과 부족한 센터 수에 비해 내담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 추세로 볼 때, CYS-Net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상담·보호와 복지지원의 허브 기능을 갖추려면 기존의 직원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업무의 비중 또한 높아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청소년 상담 및 전담 전문 인력 양성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지역사회에 청소년들과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이는 바로 CYS-Net의 불신과 연결될 것이다.

개인의 상담시간 부족, 전문능력저하→ 단기적이고 단회적 상담, 실적중심 → 상담의 질적 저하 → CYS-Net에 대한 불신 및 평가 절하, 따라서 광역시 와 도 센터에서는 상담고유의 기능인 상담의 질적 향상과 지역 센터의 인력 양성 허브 기능을 유지하려면 광역시와 도내 모든 시, 군, 구에 상담센터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고과점수 반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③ 광역시와 도 센터의 상담사 전문 인력 양성 기능 활성화로 상담전문기관의 인식 제고 및 상담전문성 강화

지역사회의 청소년 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시·도 지원센터에서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전담인력을 구성해야 하나, 광역이나 도 자체 내의 사업수행과 상담실적에 따른 슈퍼비전을 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상담전문 인력 양성과 부족한 상담인력 수급을 위해 상담인력을 2명 정도 더 늘여야 한다.

대구의 경우, 재단법인 건물 내에 활동진흥센터, 상담지원센터, 컴퓨터가 함께 상주하며 4개의 팀으로 나누어 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담을 전공하지 않은 센터장의 입장에서 보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제각기 맡은 업무량도 과히 많아 보이지 않는다. 상담의 특성상 1인의 상담원이 1사람의 내담자와 마주하는 시간이 상담예약과 준비를 하고 상담을 한 후 보내고 나서 실적 입력하는 시간 까지 포함한다면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일주일 내지 열흘을 준비해서 한꺼번에 수십 명의 인원을 모아 행사를 치르는 활동사업과 번번이 비교되며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상담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적게 일한다고 생각되기 쉽다.

상담과 활동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중요성의 관점이 다른 만큼 제각기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구와 같은 통합체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충남, 전남, 경북, 경남의 센터에서는 시·도 공무원들이 통합의 과정에서 업무의 성격을 무시하여 상담지원센터의 직원들을 이리 저리 분산 시키고 상담원과 활동지도원을 한데 묶어 새로운 업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일시보호의 기능을 활동에 묶어 기획팀으로 만드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생겼던 바 있다. 대구는 다행히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나 일을 하면서 늘 비교되어 행사 중심의 활동 팀에 비해 일이 없다고 여기는 장의 생각을 바꾸기에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특히 다른 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담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적당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전문기관으로 보내면 되지, 한사람을 오래 붙잡고 시간을 보내면 실적에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전문가는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발언까지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정책으로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가에서 자격증까지 발급하며 전문 인력을 보급하라고 지침을 주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어 허브기능을 다 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못하며 전문영역까지 침범당하고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각각 영역의 전문성에 맞는 일을 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되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을 통합하거나 기구를 재편성하더라도, 각 각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거나, 일의 양과 실적으로 상대적인 위축감을 주면서 기능을 약화 시키고 지자체에서 임의 대로 상담원들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지 않도록 운영지침이 마련되어야 지방의 시·도 자치 단체의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해석하여 무리한 운영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담이나 활동 영역을 뭉뚱그려 직원을 뒤바꾸거나 섞어가며 근무지를 배치하는 이유는 상담과 활동이 서로 다른 접근에 의한 전문 영역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들이 보직을 받게 되면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연수를 반드시 실시해서 현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상담사 양성과 같은 중요한 업무가 지역에 배분 되면 첫째, 상담과 활동의 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해당 공무원들이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셋째, 교육의 기능과 슈퍼비전의 기능을 모두 갖춘 전문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므로 아무나 배치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전문상담사 자격시험과 자격관리를 위한 공통 교육과 면접은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하고 연수내용 중에 실제에 해당하는 부분과 슈퍼비전 등은 지역의 전문가가 실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2) CYS-Net 운영 개선

가. 1388청소년지원단 및 실행 위원회의 내실 운영

2006년 CYS-Net이 출범된 이후 2010년은 CYS-Net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강화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정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을 보면 운영 방식은 더욱더 간소화 되었고 특별히 강화된 부분이 미약하다.

1388청소년지원단의 경우 매월 지원단 방문과 소속 기관 업체의 교육, 지원단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증서 수여와 홍보물 배부, 아웃리치 등 대외적인 행사 참여와 교육 참여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 실행위원회의 경우 외부사례 평가 년 2회 이상 참석, 대외 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활동과 역할 분배, 기관별 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대외 활동과 지원 사업 연결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활동과 사업운영에 대한 예시가 있고 이에 따른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운영지침은 지역 공무원들과 행정책임자의 역할 축소와 예산 감액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생기도록 행정적 조치가 뒤 따라야 된다.

나. 시도와 시·군·구의 실행위원회 일원화

대구광역시의 경우, 달서구가 구 센터를 개소하면서 CYS-Net 상에서 업무 영역을 나누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다고 여겼으나 실제로 일을 해 보니 예상과 달리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총리훈련에 의거하여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 교육청, 지역 노동청, 법원, 보호관찰소 등은 양 기관에 중복되어 시 실행위원회, 구 실행위원회는 물론 운영위원회 까지 위촉되어 있어 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 회

의를 중복 참석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복 되는 업무로 생각하기 쉽고 자기 업무시간을 할애 하는데 그에 비해 별 소득이 없다는 생각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회의를 불참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역시의 경우는 CYS-Net의 실행위원회를 광역시 단위의 기구로 설치하여 광역시에서 운영을 하고 군, 구 센터는 운영협의회와 1388지원단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군, 구 담당자가 광역시 실행위원회에 참석을 하여 해당 기관에 의뢰를 하고 연계하는 일을 하되 실적만 보고하면 CYS-Net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고 중복된 회의 참석에 대한 문제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3) 일시보호 및 위기 지원 체계문제 개선안

가. 가출청소년 보호기간 24시간 이내 및 지원내용 변경

여가부가 제시한 2010년 위기 지원팀의 업무내용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보호시설 연계·의료 법률서비스 지원활동, 청소년 피해사례신고 접수, 유해환경 신고 접수·인계,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무요원 근무 지원,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운영, 폭력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등으로 되어있다.

201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별표7. 일시보호시설 입소 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 기준 다.항 - 보호기간 : 입소일로부터 2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24시간 이상 보호 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국한 하여 사유별 기록 유지- 마땅한 연계 시설을 찾지 못한 경우, 심리치료, 의료지원 등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의하면, 이들이 데리고 온 아이들 대부분이 다음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쉼터에 보내야 한다. 이는 센터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

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지침 상에 못 박혀 있는 내용을 여기면서 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가출청소년들이 새벽에 들어와 자고 나면 오후 2시가 넘고 면담을 해서 심리적인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치려면 상담원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상담원이라 할지라도 단 한 두 시간 이내에 심리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최소한 2일 즉 48시간 정도의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지침 상 24시간 이내라고 못 박아 두고 있어서 업무 담당자를 곤란스럽게 한다.

일시보호소를 관리하는 상담원은 아이들을 좀 더 데리고 있으면서 주민번호와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정 내의 문제와 함께 치료적 개입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걸리고,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리적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4층에는 여자 단기 쉼터가 있는데 2009년에는 매월 4-5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연계 하였고 입소 인원제한이 월 8명인데 월 평균 12명의 청소년들이 상주 하였다. 2010년 상반기에 24시간이내 연계의 원칙을 준수하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을 쉼터로 보낼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2010년 9월 까지 연계 결과를 보면 월 평균 3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일시 보호소에서 쉼터로 연계하는 중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음을 말한다. 가출청소년들을 쉼터를 연계해줄 때 비록 단시간이지만 3, 4회의 상담을 통해 자기 자신과 주변에 대한 돌아봄과 자기 미래에 대한 조망감을 함께 각성 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준비를 도와 주어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적응력을 갖게 도와 주었다. 그러나 24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부득이 갈 곳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곳을 찾는 가출청소년들에게 24시간 이내에 일시보호소에서 나가야 함을 고지하고 바로 쉼터에 연계해야 함을 설명 하는 순간 아이들은 상담원이나 부모나 쉼터나, 모두 자기들을 귀찮아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구나 하는 부정적인 선입견이 들고 그냥

소속되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만 갖기 십상이다.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처음 가출을 시도하고 일시보호소에 연결 된 첫 가출 청소년의 경우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습관적 가출 청소년들은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지 등을 밝히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 이는 자신들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고 상담원과의 대화를 거의 거부하거나 해도 별 기대감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습관적인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쉼터로의 연계나 상담원과의 심리적 유대감에 관심이 없고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숙소 정도로 인식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시보호소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쉼터로 연계하는 실적과 바로 연결되어 쉼터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줄고 있다.

나. 일시보호시설 확대운영

일시보호소의 경우, 사실상 가출을 하는 위기 청소년들의 입소시간은 대부분 오후 2시 이후에서 저녁 무렵에 이루어지며 40% 이상이 저녁 9시 이후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입소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야간에는 인근의 성주, 고령, 달성, 옥포, 현풍, 구지 멀리 경산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이 인근에 쉼터가 없어서 경찰 지구대의 도움을 받아 긴급구조가 이루어진다. 일시보호시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소도시와 시군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없거나 타 지역으로 가서 결국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CYS-Net이 운영 되고 있는 시, 군, 구에서는 반드시 일시보호 시설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증가 되어야 한다. 위기 청소년의 일시보호가 위기 청소년의 문제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가출 청소년 뿐 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므로 일시보호시설의 확대 설치가 제일 시급한 문제로 보여 진다.

다. 야간 긴급구조 지원을 위한 경찰 지구대 교육 협조

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 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 1명의 생활지도사가 야간에 1388 긴급전화를 받으며 일시보호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야간에 근무하는 자체를 꺼려하여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둘째는 상담원들도 전화상담 운영을 위해 월 2-3회 밤 9시까지 돌아가며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야간에 긴급구조를 나가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복무요원의 배치를 권고 하였으나, 군복무요원의 관리상 어려움의 이유를 들어 배치 자체를 거부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따라서 야간에는 지역의 경찰 지구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경찰 지구대에서 청소년들의 긴급구조를 위해 협조해 주는 경우는 신고가 들어 왔거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 간 경우일 때에 가능하다. 상담지원 센터에서는 지역 지구대와 긴밀한 협조를 위해 지역 지구대에 1388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스티커를 보내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 지구대의 업무에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지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경찰청과 지역 시도 관계 기관과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위기 청소년의 긴급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경찰 지구대 소속 경관이나 경찰의 직무교육에 CYS-Net 체계 운영을 포함 시키고 지역의 상담지원센터 소장이나 대외협력 담당자 또는 일시보호소 담당팀장이 년 2회 정도 경찰 지구대를 방문하여 교육하고 도움을 요청 하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라. 아웃리치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CYS-Net 의 1388 청소년지원단 활동과 실행위원회의 역할이 위기 청소년 사전 발굴과 지원 서비스 연계에 있으나 실제적으로 협조하여 위기 청소년을 긴급 구조하는 것은 경찰지구대의 연계를 제외하면 연간 10여건

의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PC 방 또는 친구의 자취방이나 맞벌이 부모가 있는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한꺼번에 몰려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의 경우, 2009년 야간 아웃리치 활동 실적을 통해 살펴보면 비행 청소년들이 주로 가는 거리나 지역 등이 안내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지역에 가 보면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배회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정보를 수집하고 탐문해서 장소를 알아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주간에 이루어 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웃리치 사업을 주로 야간에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근시안적인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이 일시보호소를 찾거나 야간에 경찰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인계되어 오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로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과 더 나쁜 문제로 발전하는 비행진행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청소년 사전 발굴과 야간 긴급구조를 위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현행 일시보호소의 생활지도사는 일시보호소의 24시간 관리만 하고 있어 청소년 위기 예방 및 긴급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주야간을 통틀어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 예방 및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찾아가는 아웃리치 전담요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웃리치 전담요원들이 활동할 때 1388청소년지원단이나 경찰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야 각 지원단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배치 할 경우, 쉽터보다 상담지원센터가 적절한 이유는 일시보호기능이 있고 긴급구조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CYS-Net 상에서 복지지원서비스를 One-stop 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CYS-Net 내에서 위기 청소년의 발굴과 자원연계 서비스를 이어주는 전담인력인 아웃리치 전문가의 양성과 배치를 위해 도 단위에서는 최소한 10명, 구 군 단위에서는 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마. 동반자, 상설 두드림존 운영 사업 종사자 무기 계약직 전환

2010 현재 광역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 전일제와 시간제

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일제 1명 당 시간제 동반자가 6내지 10명 정도 팀으로 운영된다.

동반자의 경우 처음부터 단기 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을 하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이직률이 매우 높다. 동반자의 업무는 일의 특성 상 상담과 복지의 사례관리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고 비교적 전문가의 기술이 요구되는 일임에도 매년 신규직원이 들어오다 보니 자연 내담자들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상설 두드림 존의 경우도 4명의 직원을 뽑아 상설로 센터를 운영하려면 안정된 신분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두드림이나 동반자의 일은 CYS-Net에서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자활, 치료를 돕는 일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동반자와 두드림 종사자의 역량에 따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기 청소년의 문제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두드림과 동반자 업무 종사자 신분을 무기 계약직으로 운영지침에 명시 하였으면 한다.

(4) 지역기관과의 연계 협력

가. Wee센터와 Cys-Net 연계 및 운영

현행 Wee센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내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과 경험 미숙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비행 청소년의 상담은 문제가 다양해서 단기 상담직무연수를 받거나 1년 과정의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 하였다고 해도 이들이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갈등과 함께 성격의 문제, 부적응의 문제를 상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실토한다. 당장 행동의 변화를 원하는 학교의 요구대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인데 Wee센터를 설치하면서 지역교육청이 학교 청소년들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사고 아래 부적응 청소년 징계청소년, 문제가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가피해자 청소년들을 모두 Wee센터로 보내도록 하여 겨우 3, 4명의

직원으로 일하는 Wee센터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1인당 10회 이하로 상담의 회수를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때문에 많은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Wee센터에 학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형편이다. 대구시교육청에서 위탁하여 대구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에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징계 대상 청소년들을 보내오는 교사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 잠재된 문제가 많거나 이미 여러 번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가 많은 청소년들로서 1:1의 면담과 매우 심도 깊은 상담을 하며 오랜 동안 연계를 하거나 청소년동반자와 같은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추수관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인데 Wee센터에 보낼 경우 Wee센터의 인력 부족과 상담 미숙,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Wee센터에 보낸 학생이 상담을 하다가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중간에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더 이상 학생을 돌보지 않는다. 이에 시 교육청에서 대안 학교인 Wee School을 운영하여 중도 탈락 청소년들을 도울 방침을 갖고 있으나 한해에 무려 2,000여명 (2006년 대구시교육청자료)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Wee센터와 지역 청소년관련 기관은 실행위원회에서 서로 지역 청소년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자주 접촉하여 위기 청소년문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현행대로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CYS-Net을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 등과 Wee센터가 공조할 수 있도록 협약 등을 체결하여 부적응,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정보 등을 공유하며 지원서비스에 대한 사례 판정과 슈퍼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교내에서 처리하거나 교육청에서 외부에 공개 하지 않는 관행을 버리고 공동으로 대처하고 함께 협력하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전문직 장학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셋째, 사례 회의와 보수 교육의 협조를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야 한다. Wee센터에 배치된 상담사와 각 급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사가 맡고 있는 학교 청소년 상담사례를 슈퍼비전 받으려면 학회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상급자와 함께 사례 회의를 진행 하여야 하지만 많은 지역에 수련 감독 전문가 급의 상급자가 없으며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례 회의를 통한 슈퍼비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전문상담 기관과 CYS-Net을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여 슈퍼비전을 하면 사례도 공유하고 예산의 문제도 해소되며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돕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중앙단위의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관련 부서의 정책 협의와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보가부 등 많은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정책은 예산 낭비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을 흐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뉴스타트와 두드림의 경우, 뉴스타트에 참가 하는 청소년들은 교육을 이수 할 경우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반면에 두드림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문제나 문화관광부와 여가부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의 중복 등의 문제가 있다.

2) 학생안전통합시스템의 개편방안⁸⁵⁾

2009년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학계, 현장 전문가 및 언론인 45명에 의해 전국 80개 Wee센터와 48개 Wee클래스를 대상으로 자문이 이루어졌다. 자문 결과 제출된 자문보고서(Wee프로젝트 중앙자문단, 2009)가 지적한 개선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및 예산의 안정성 확보이다. 국정과제로 논의의 시발은 되었으나 발생하는 위기 학생의 문제로 조속하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성

85) 이 부분은 금명자(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음.

이 있었다. 확대는 긍정적 측면이기는 하나 예산과 정책의 안정성에 미흡함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Wee프로젝트 및 학교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Wee클래스의 확대 및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다. Wee프로젝트의 1차 기관인 Wee클래스는 2009년 전국 1,500여개 수준이다. 2010년에 1,000여개가 확대 설치될 예정이나 전국 11,000여개가 넘는 일선학교의 수준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1차 개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Wee클래스가 더 많이 확대 설치되어야 하며, 이곳을 담당할 인적 자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관련 조직과 인사들의 Wee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교실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담임이 발견하여 1차 클래스에 의뢰하여 개입하게 하고, 다시 2차, 3차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하나 일선 학교 담임, 교실의 담임교사, 일선학교의 상담 및 진로와 생활지도 교사, 교육청의 행정주체 등의 관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연계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 연수와 교육이 요구된다. Wee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직무만족도 조사(금명자·이종한, 2009)의 연구에서도 상사의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 정도가 직원들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기관과 직원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기관의 전문성 및 전문적 개입이 Wee프로젝트의 차별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직원들의 처우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전문성을 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Wee프로젝트 연구지원단의 필요성이다. Wee프로젝트는 교육과 학기술의 학생능력강화팀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확대 발전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팀이 필요하다. CYS-Net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이 매뉴얼개발, 직원연수, 평가연구 등으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Wee프로젝트도 이러한 조직이 요

구된다.

여섯째, 지역의 타 기관과의 협조 문제이다. Wee프로젝트는 청소년안전망의 후발 체계이지만 공교육체계 안에서 학교 근거 개입을 주 내용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지역의 CYS-Net은 선발 체계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두 체계가 특성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나 주체 기관과 특성들의 차이점으로 초기 협력의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3) CYS-Net과 Wee Project의 협력방안⁸⁶⁾

(1) CYS-Net과 Wee Project의 차별성

두 시스템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처관리시스템으로, 접근방법 등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장점과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냄으로써 보다 완성도 있게 위기 아동·청소년을 도울 수 있다.

가.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Wee프로젝트는 학교 근거 개입(school based intervention), 즉 학생들의 위기 문제에 대한 전문적 접근의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 개입을 주요 방법으로 채택한다. CYS-Net의 경우 지역사회 근거 개입(community based intervention), 즉 가난의 대물림에 의한 위기 청소년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적 지원에 근거하고 있다. YC(청소년동반자)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찾아 받게 하고, 지원해줄 지역사회 연계망 구성에 관심을 갖는다.

86) 이 부분은 금명자(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집필하였음.

나. 주 대상자

Wee프로젝트의 주 대상자는 학교 및 교실에서 발굴된 위기 학생으로서, 교실 차원에서 발굴하여 학교 Wee클래스에서 1차 다루며,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될 때 교육청 수준의 Wee센터에 의뢰한다. CYS-Net은 대상자가 학교 밖에서 발굴 및 의뢰되는 청소년들로,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가출, 근로 청소년들이 포함된다. Wee프로젝트가 개발되기 전에는 학교에서 CYS-Net에 의뢰하기도 하였다.

다. 접근모형

Wee프로젝트는 대상자에 대한 접근모형으로 심리평가(assessment) 및 진단 - 상담 - 치료의 전문적 심리상담 모형이다. CYS-Net은 심리 상담을 기저에 두고 있으나 다중 복지 지원 모형이다.

라. 전달조직시스템

Wee프로젝트의 전달조직시스템은 일선 학교에 Wee클래스를, 단위 교육청 수준에 Wee센터를, 광역교육청 수준에 Wee스쿨을 설치하여 공교육 시스템 안의 학교-지역교육청-광역교육청의 연계조직을 구성한다. 또한 CYS-Net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연계체계를 확보한다. CYS-Net의 경우 모든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일부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역 센터가 맡겨진 지역을 관장한다. 지역 내의 지원연계망을 조직해놓는다.

마. 조직 및 인력

Wee프로젝트의 조직과 인력은 내부 수준(클래스, 센터, 스쿨)에 따라

인력구성이 다르다. 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인턴전문상담교사를 주축하고 있으며, 이들이 없을 때에는 생활지도 및 진로상담교사가 담당한다. Wee클래스 수준에서는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자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센터 안에서 전문적 팀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스쿨은 이들 전문가를 비롯하여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과목교사가 배치된다. CYS-Net은 전문상담자(혹은 임상심리를 전공한 상담자, 사회복지를 전공한 상담자)와 YC(청소년동반자)로 조직되어 있다. YC는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준상담전문가들이다.

바. 지역사회 연계 방식

두 시스템 모두 지역사회 연계를 활용하나 Wee프로젝트는 기관 안으로 전문가가 방문하여 학생내담자를 만나 개입하도록 하나, CYS-Net에서는 YC가 청소년내담자를 데리고 연계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Wee센터에서는 필요한 전문가 연계를 활용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두고, 필요시 Wee클래스나 센터를 방문하여 개입하도록 한다. Wee프로젝트는 공교육 내에서 모든 개입을 한다는 것을 모토로 했기 때문에 학생을 지역사회로 나가지 않고, 지역사회가 학교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CYS-Net의 경우 YC를 배치하여 청소년이 있는 곳에서 상담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전문적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표 VI-1> Wee프로젝트와 CYS-Net의 차이점

구분	Wee프로젝트	CYS-Net
개입 근거	학교-근거 개입	지역사회-근거 개입
주 대상자	학생과 그와 관련된 자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자
접근모형	전문적 심리상담모형	다중지원모형
전달조직체계	클래스(학교)-센터(교육청) -스쿨(교육청)	시군구청청소년지원센터-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4인 필수 조직	기존의 청소년지원센터조직, YC(전일제, 시간제)
지역사회 연계방식	지역전문가가 in reach: 지역전문가와 자원이 센터 내 내담자 방문	내담자가 out-reach: 내담자가 지역전문가와 자원 방문

(2) CYS-Net과 Wee Project의 협력 및 시너지 효과

CYS-Net 과 Wee프로젝트의 협력방안은 이미 CYS-Net 문제점의 개선안에 언급하였으나 몇 가지를 보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Wee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교육청의 거점으로 되어있는 Wee Center의 포화 상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 교육청내의 초등학교 대부분이 상담실이 없는 상태이고 중, 고등학교 역시 상담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 일선의 학교에 모든 상담대상자들을 위센터에 보내고 있어서 실제로 학교 내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 상담실이 없는 학교의 경우, 상담인력을 보충하여 상담실을 만들기보다 위센터로 학생을 보내는 것이 훨씬 편리하므로 모두 위센터에 보내버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구청의 거점을 위한 위 센터의 개소 보다 오히려 각 급 학

교에 설치 운영하는 Wee Class(학교단위 상담실)를 활성화 시켜서 1개교당 1개 상담실이 반드시 운영되도록 하여 1차 문제에 해당하는 상담 대상자들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소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현행 위센터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청소년 복지지원 시스템인 CYS-Net의 업무 수행 정도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CYS-Net의 상설 두드림 존, 교육적 회복적 선도 사업,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치료와 금연 교실운영, 해밀 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연계 해주면서 이와 병행하여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함께 병행함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CYS-Net과 Wee Center는 학생 청소년 내담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연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인적 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 구축 세미나 또는 워크숍 형식의 정기적인 만남을 우선하고, 예산 확보를 도와주어야 한다.

Wee프로젝트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 밖 혹은 공교육 밖에서 개입하는 시스템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학교는 부적응 학생을 학교 밖에서 개입함에 따라 체계적 피드백 시스템이 없어 책임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한편 CYS-Net은 지역사회 연계망과 지원망을 확보한 상태이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주 내담자를 대상으로 개입한다. 다만 학교에 적을 둔 학생이 가출이나 학업중단 하였을 때 서로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 협력한다. 논의, 협력은 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 개입 및 전문적 심리상담은 Wee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 개입은 CYS-Net에서 담당함을 의미한다. 가정 개입은 CYS-Net의 YC를 활용할 수 있다. Wee센터에서 전문적 혹은 진단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가 있으므로 CYS-Net에서는 이를 활용한다. 이러한 연계를 통하여 두 시스템은 시너지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2. 분야별 지원체계 및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체계 개편방안

1) 분야별 지원체계 개편방안⁸⁷⁾

(1) 인터넷상 긴급구호의 강화

가. 인터넷 상의 긴급구호의 홍보

현재 포털사이트에 ‘죽고 싶다’ 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당신 곁에 우리가 있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상담 사이트들이 함께 뜬다. 하지만 ‘죽고 싶어요.’ 를 치면 나오는 사이트가 있고 나오지 않는 사이트가 있다. 아동·청소년이 잘 사용하는 용어인 ‘-요’ 체를 필수키워드로 해서 인터넷 긴급구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등의 키워드를 치면 긴급구호사이트와 연결하기 쉽도록 각 사이트의 설명과 주소가 검색결과 제일 위에 나타나야 한다.

나. 인터넷 전담기관의 필요성

위기 아동·청소년과 긴급구호기관과의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다면 인터넷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다. 각종 게임사이트 상의 채팅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카페, 블로그 상에서의 모니터링과 상담을 상시로 하는 인터넷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각종 포털사이트와 게임 업체와의 위기 아동·청소년 모니터링 및 지원에 관한 협약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담기관을 통해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과의 접근의 용이성을 높이고 사이버세계를 통한 긴급구호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87) 이 부분은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집필하였음.

(2) 국가 수준에서의 쉼터의 정비

가. 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하한의 표준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쉼터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업무지침서가 필요하다. 쉼터별 서비스의 수준 차는 청소년지원에 대한 차이로 이어진다. 쉼터별 정비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고 긴급보호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일정수준 이상의 균일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별로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된 쉼터는 우선 정비될 필요가 있다.

나. 일시쉼터의 전국적 확대를 통한 긴급구호 위기 아동·청소년의 접근성 강화

접근의 용이성이 높은 일시쉼터를 늘려 위기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위기 아동·청소년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쉼터의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시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가출 청소년이 장기적으로 가출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위대한 환경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 가출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쉼터가 더 필요하다. 특히 이동형 일시쉼터를 통해 가출청소년이 밀집한 지역으로 위기아동·청소년을 찾아다녀야한다. 간단한 다과의 제공을 통해 서라도 가출의 욕구를 느끼는 아동청소년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꼭 전문상담원이 아니더라도 가출의 경험이 있는 멘토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 후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을 할 수도 있다.

(3) 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상태 파악

가출 충동, 스트레스 지수, 등의 위기상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매년 일제고사와 함께 설문조사하여 아동·청소년의 속내를 들어야한다. 예를 들어 위기의식 파악을 통해 지역청소년센터에서 지역청소년이 가출 후 자주 가는 곳에 일시쉼터를 설치하는 곳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역별로 일시쉼터가 필요한 장소가 다르며 필요성도 다를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도 남녀연령별로 위기 시 취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아동·청소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한다.

(4)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판단을 하는 것도 모니터링의 한 방법이다. 단순결석인지, 병결인지 등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우선 알 수 있지만 가출, 가정폭력 등의 위기 상황 시 학교는 지역 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5) 부처별 예산항목의 마련을 통한 통합적 집중지원

특정 부처의 예산 마련이 힘들다면 부처별 예산을 조금씩 마련하여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도 예산확보의 한 방법이겠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가 청소년지원에 대한 예산을 각기 책정하여 청소년지원센터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6) 원스톱지원센터 이용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

원스톱지원센터 이용 피해자의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입건 된 가정폭력의 경우 그들의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난처인 쉼터에서는 피해여성과 자녀와의 동거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그들의 자녀에 대한 위기관리는 집중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어머니에 대한 지원이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되겠지만, 가정폭력 피해자로서의 자녀들을 초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도 해야 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해여성에게 자녀에 대한 상담의 필요성을 설시하고 이용가능한 자녀상담기관도 연계해 주어야 한다.

(7) 남자청소년의 성폭행피해지원센터의 이용

남자청소년의 경우 원스톱지원센터가 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경우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만 지원하기 때문에 남자청소년은 성폭력 피해의 지원을 받을 곳이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남녀의 구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⁸⁸⁾

(8)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

가. 자원봉사 어르신 모임의 구성

긴급구호가 아동·청소년본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니터링을 통한 개입밖에 없다. 이는 자원봉사 어르신 모임을 구성하여 상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겠다. 일종의 지역 순찰대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주요장소에 순찰을 돌고 긴급구호 상황발생시 각 기관에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나. 동네 통장을 통한 긴급구호 서비스 기관의 홍보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호 서비스를 성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경

88) 해바라기 여성·아동통합센터와의 전화통화 결과, 남자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 청소년지원센터를 소개하고 있었다.

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동네 앞집 옆집의 긴급구호가 필요한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노년층에 대해 집중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통장에 게 긴급구호 서비스 기관을 홍보하여 각 가정을 상황을 판단하여 기관에 연락하게 하거나 통장이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긴급구호 서비스기관을 안내 할 수 있도록 한다.

(9)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의 통합홍보

현재 위기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은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가출청소년 예방사업, 청소년쉼터, 1388전화의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학교 안전 통합시스템(Wee Project), 두드림존 사업, 드림스타트, 해밀 사업 등 일반 청소년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를 통합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하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한 페이지에 정리하여 도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사업일지라도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외래어나 영문이니셜을 사용하여 사업 명을 짓는 경우가 많다. 이를 듣고서는 그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다. 앞으로 시작하는 청소년지원사업의 이름은 그 내용을 포함하는 한글로 된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다.

2)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체계 개편방안

(1)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체계 개편방안

가. 가출 청소년 긴급구호와 안전 모니터링 개편 방안

① 일시보호소 드롭인(Drop-in) 센터의 역할 확장

현행 일시보호소는 위기 청소년 지원 및 구출을 위한 긴급구조와 연계지

원시스템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일시 보호소를 이용하는 가출 청소년 중에는 아예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셋방살이를 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이들은 일자리가 떨어지거나 생계가 막막해 지면 오갈 때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급기야 돈을 벌기 위해 비행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청소년들이 일시 보호소를 오면 대개 낮에는 아르바이트 장소를 구하러 다니다가 밤에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간다. 쉼터에 가도록 설득을 해 보지만 대부분 알바를 구한다며 쉼터를 거절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바로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다. 일시보호소의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딱히 당장 어떤 위험에 처한 것도 아닌데 먹여주고 재워주며 며칠씩 데리고 있기도 그렇고 또 개중에는 마치 여관처럼 들락거리는 청소년들도 있어서 종종 시비가 붙곤 한다. 이는 상담자들이 일시보호소가 긴급구조나 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를 위한 곳이지 나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악용하는 비행의 온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경계하거나 이들로 인해 일시보호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한 높은 경계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일시보호소의 기능이 드롭인 센터처럼 확대 되어 거리의 아이들이 춥고 배고프거나 힘들 때 언제라도 와서 이용을 하되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상담자들의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연결에 협력하도록 설득하는 장이 되도록 한다면 보다 길에서 배회하는 많은 무직 비진학 가출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와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긴급처치 시간 연장 및 아웃리치 전문가 연계에 의한 안전 모니터링 운영

청소년의 가출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나 충동적이고 자기 성취를 위해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사춘기 청소년의 특성상 미리 예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이 일단 가출을 하여 긴급구조가 된 이후에 일시보호소로 연계 되

있을 경우, 현행 CYS-Net 체계에서는 24시간 이내에 사례 평가를 위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다(구분용 외 2005).⁸⁹⁾

일례를 들어 살펴보면, 가출 청소년이 일시보호소에 들어오는 시간이 밤 10시일 경우 일단 입소절차를 밟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 날 최소한 10시가 지나야 상담원과 면담을 하게 된다. 늦은 밤에 들어 온 아이에게 위기 스크리닝을 시키기도 어렵고 우선은 기초 생활지원 서비스(먹고, 씻고, 의복지급, 질병여부 확인 및 입소카드 작성)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담은 어렵다. 이 또한 한명의 청소년일 경우는 차분히 진행이 가능하지만 현행의 1인 생활지도 전담 체제에서는 때에 따라 4,5명이 한꺼번에 들어 올 경우도 있으므로 24시간 이내에 모든 업무를 종결하는 것은 무리이다. 한꺼번에 무리지어 오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습관적인 가출 청소년들이며 일시보호소에서 제공하는 쉼터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위기 스크리닝 분석과 신원확인을 통한 사례 평가를 위해서 걸리는 시간도 24시간으로는 모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현행 24시간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사례 평가 및 연계지원 기간은 사례에 따라 24시간에서 48시간 이상 늘려 주어야 사례를 위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아웃리치 전문가를 연결하는 안전모니터링과 같은 문제 방지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다.

아웃리치 전문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역의 청소년 위험지역을 사정하며 문제를 예방하고 위기 청소년을 발굴 하는 것과 둘째, 긴급구조의 도움을 받은 청소년이 일시보호소에 연계 된 이후 쉼터로 가거나 정상적인 가정복귀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결하여 재발 된 문제의 정도가 더 이상 악화 되지 않도록 구호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 지속적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다. 지금 일시보호소에 들어 왔다가 퇴소하는 청소년의 70%는 가정으로 복귀하지만 이들 중 30%이상이 재 가출을 시도하며(2009.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실적보고서 참조), 나머지 30%의 청소년들은 퇴소한 후 다른 쉼터

89) 구분용·금명자·김동일·김동민·남상인·안현의·주영아·한동우(2005).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청소년 3005-43, 청소년위원회.

로 가거나 다시 거리로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쉼터에서 잘 생활하고 적응하는 청소년들은 신변이 보호되고 있으나 길거리로 나간 청소년들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아웃리치 전문가는 이런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만나 접촉하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써 보호체제와 체제 외부의 위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가출 청소년들이 신뢰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 ③ 1개 시 군 구 당 1개 이상 청소년 쉼터 또는 일시보호소 개소를 위한 예산 편성과 정부 부처의 협력 및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됨.

일시보호소에서 쉼터로 가출 청소년을 연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쉼터가 청소년들을 2명 이상 함께 받아 주지 않으며 비행경험이나 재입소 청소년들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이다. 이는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쉼터의 수가 절대 부족한 데에 비해 수용해야 하는 청소년수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이나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아직도 쉼터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으며 경상북도의 경우도 센터가 있는 안동에 단기와 중장기 쉼터를 겸하는 쉼터 1곳, 김천에 성폭력 피해청소년 쉼터, 구미 단기 쉼터, 포항에 중장기 쉼터 등 4곳에만 쉼터가 있고 그나마 모두 여자 청소년 시설이고 남자 청소년은 갈 곳이 없다. 이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출 청소년들이 대도시 주변으로 모이는 때문에 지역 내에서 가출 청소년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반드시 가출이 아니더라도 학대나, 방임, 폭력의 위협으로 부터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의 의미로도 일시보호소나 쉼터가 있어야 하며 최소한 한 개의 시, 군, 구에 한 개 정도의 남아 청소년 일시 보호소나 쉼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④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 대중문화와 요식업 관련 종사자의 가출 청소년 또는 학대 방임 청소년 신고 의무화

가출 청소년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은 이들이 쉽게 노출되지 않고 지역의 유흥가를 배회하거나, 친구들의 집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등 어른들의 눈을 피해 몰려다니며 생활하기 때문이다. 가출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접촉하는 성인들은 유흥업소 업주이거나 위에 언급한 대중문화 관련 종사자들과 가출청소년들이 일을 하기 위해 만나는 업소의 업주 들이다. 이 때문에 1388 긴급구조 지원단에 이들 업소협회를 소속시켰으며 1388 지원단에 가입한 업주들의 도움으로 긴급구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업종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출 청소년들의 노동력을 악용하여 임금 지급 불이행 등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출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가출 청소년 발견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신고를 했을 경우에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 신변을 보호하며 비밀을 지키도록 경찰청이나 신고관련기관 종사자의 교육도 필요하다.

나. 청소년 보호법 관련 처벌 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안전 모니터링 방안

청소년 선도위원회나, 교화위원들, 청소년지도 협의회 등이 각각 지역 검찰청,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의 공유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채 각각 활동하고 있다. CYS-Net이 생기기 이전에 자원 봉사 활동을 하던 시도 검찰청의 청소년 선도위원, 지역 경찰 지구대의 청소년 지도위원 등은 각종 범죄나 비행에 연루되어 고발되거나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 활동을 하고 있다. 각각

의 기관과 연계되어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청소년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중복된 지원 또는 정작 필요한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누가 보살피며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 좋은 서비스와 가출 방지 및 자활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들이 법의 처벌을 받으면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들을 도와주는 선도위원과 연결이 된다. 이런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것은 자원봉사의 차원에서 개인적인 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공 부조의 성격을 띠는 CYS-Net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선도 위원들은 직접적인 면대면의 지원에 의한 사례관리 보다는 물품 지급과 같은 1회성 봉사 활동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려고 한다. 개별 사례를 관리하며 꾸준히 비행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아이들을 대하기 힘들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해서 개중에는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보람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으나 ‘대부분 봉사에 참여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CYS-Net의 연계망으로 거점화 하여 의료, 법률, 교육 지원과 같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CYS-Net을 활용하도록 연결시키는 한편, 비행 재발 방지와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사례관리 협력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무부 소속 선도위원회, 청소년지도 협의회, 보호관찰과 교화 위원 등 단체의 장과 1388 지원단체장이 서로 협의하여 공동 세미나 개최 또는 CYS-Net 활용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부서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 성문제에 노출 된 청소년의 긴급구호 개편안

- ① 성매매 청소년의 습관 근절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확보 및 예산 지원

지난 2006년 일시보호소를 개소한 이후 대구 센터를 다녀간 청소년 중
 에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서 일시보호소의 도움과 쉼터의 도움을 받았던
 성매매 청소년(여, 현재 22세)이 있었다. 이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의 이혼
 과 아버지의 방임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문제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에게 학대와 구타를 당하고 심지어 다른 친구들의 꺾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 임신과 중절을 반복하며 대구 청소년지원센터의 일시보호소에 도움을
 요청했었다. 처음에는 일시보호소에서 쉼터로 연계되어 갔으나 한 달을 넘
 기지 못하고 다시 퇴소하여 예전에 살던 동네로 찾아가 문제 청소년들과
 어울리다가 그 아이들에게 미움을 받아 몰매를 맞고 일시보호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들어오는 등 수차례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던 중에 일반 청소년
 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건강하고 밝은 일반 청소년과의 대화 속에
 서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도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고
 행복해 지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일시보호소의 입소와 퇴소를 반복
 하다가 만난 그 청소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주어진 이후 그 청
 소년은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이후 부산에 있는 중장기 쉼터로 가서 생활하
 게 되어 우리는 무척 기뻐하였다. 그런데 잘 지내는 줄 알았던 그 청소년
 이 무단 퇴소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실망스러웠으며 그 이유를
 되새겨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청소년은 새로운 곳
 에 적응하는 데에 무척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며 자기를 지지하고 지켜봐
 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초창기의 가슴 아픈 실수를 생각하며 그
 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매번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
 분이 바로 연계 이후 지속적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일단 연계
 되어 쉼터나 생활관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일시보호소에서 알게 된 선생님들이나 봉사자와는 멀어지게 되는데 새로운
 곳에서 적응 하는 동안 매우 외롭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먼
 저 와 있는 또래들로 부터 심하면 구타를 당하거나 견제를 받는 경우도 있
 다. 자존감이 낮고 애착에 문제가 있는 성매매 경험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
 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망이 구성되지 못하면 스스로 낮은 환경에 적응

하는 것이 어렵다. 청소년의 성매매는 생계를 위하여 성을 이용하는 경우, 애착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와 단순 금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경우도 있다. 처음엔 잘못된 관계욕구로 성에 의존하여 시작되며 일종의 놀이나 게임으로 여겼던 행동들이 습관이 되면서 점차 성격으로 변하거나 생계 수단이 된다. 습관이 형성 되면 이들을 바로 잡기가 매우 어려워서 오랜 기간의 관심과 지속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진로 개척과 자활연계가 필수여서 CYS-Net에 연계된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보호 청소년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자활지원 및 취업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와 인건비 등을 정부가 확보 해 주어야 하며 매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②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구축과 부모 및 가족 지원 연계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은 지역 해바라기 아동 센터에 연계되어 치료와 고발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12세 미만의 아동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와 부모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 센터에서 CYS-Net에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청소년 동반자와 법률적, 의료적인 지원과 함께 특별지원과 같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하고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피해 아동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게 되면 또다시 아이를 위험에 노출 시킨 채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한번 성폭력에 희생 된 아동들이 재차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지원을 위한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아동의 신분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외부에 노출 되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무엇 보다 중요

하다. 따라서 처음 피해아동과 연계된 기관이 치료를 종료 한 후 완전히 상처를 극복할 때 까지 가능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할 때마다 협조를 하여 아동을 돕는 형태의 유기적 공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자 가족의 요청과 승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끼리 지속적인 관리와 협력을 위한 정기적 사례 회의가 있어야 한다.

피해 아동의 가정이 환경이 열악하거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구청에 의뢰하여 특별지원 시스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의 담당자를 만나 보면 성폭력 피해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빈곤계층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하며 일률적인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 된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긴급구호 및 가족지원 시스템은 관계 기관 중에 다른 어떤 것 보다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위치의 공무원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CYS-Net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책임 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지원함이 요구된다.

라.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구호 개편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연계실태 분석을 한 김현주·이종화(2007. pp 67-89)⁹⁰⁾에 의하면, 전국 44개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8,000건 (2006.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이르며, 피해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 및 치료 27.7%, 교육관련 서비스 8.8% 일시보호서비스 36.7%이고 가정 지원이나 타 기관 의뢰 등에 의한 가족지원관련 연계지원은 2.3%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는 부모나 양육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빈곤, 실직, 정신건강, 약물남용,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원의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

90) 김현주 · 이종화 (200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연계실태 분석, 청소년학 연구 제 15권 제2호 67-89.

면 관련기관간의 서비스 연계가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및 재원의 부족, 관련기관 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협조의 어려움 등으로 연계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박명숙, 2002; 윤혜미 2000; 정운수, 이정희, 2004).

김현주·이종화(2007) 등에 의하면 연계 과정의 어려움은 피해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타 기관 연계에 필요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연계기관의 필요성의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타 기관과 관련 사업을 위한 교육 참여로 나타났으며 필요시 업무 지원 정도와 업무자율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긴급구호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언을 보면, 첫째, 전문 인력의 확충 둘째,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연계 시스템 확보 셋째, 응급의료 기관과 교육청의 적극적 참여와 개방적 자세 넷째, 기관간의 연계 중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자원교환의 빈도수가 가장 낮음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하였으며, 다섯째, 외부기관과 함께 하는 워크숍 참여와 슈퍼비전을 받는 기회 등 지속적으로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긍정적 태도가 형성된다고 뒷받침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의 연구에서 제언 된 바를 살펴 볼 때, 지역사회에서 학대 받는 아동 청소년의 긴급구호를 위한 공조 체계개편을 위해서는 각자의 기관 내에서만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필요할 때에 문의하여 비정규적으로 연계되는 지원 형식보다, 문제 청소년 사례나 사건이 없어도 일정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 업무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주고받아야 한다. 또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는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비교적 많은 협조가 필요하나 지속적인 연계가 어려운 교육청과 응급의료 기관 종사자들과의 접촉을 위해서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이나 의사회 와 같은 상급기관의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관련 기관의 슈퍼바이저가 종사자 직무교육에 참여하여 지역 아동 청소년의 학대 예방

과 긴급 구호 체계 참여의식을 높이는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마. 학교 폭력 피해 사전 예방 및 긴급 구호

청소년을 위한 CYS-Net과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구호 체계가 구축되고 연계하고 있으나 지역의 공공기관의 참여와 홍보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때, 보가부가 2010년에 1388학교지원단을 구성하도록 CYS-Net 지침을 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1388지원단에 참여하는 지역 대표 학교 교장의 역할은 긴급 구조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 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의 협조를 담당 하는 것이므로 각 급 학교 교사들에게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교사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위급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아동 또는 학생 당사자가 1388을 찾거나 CYS-Net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으려면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담임교사에 의해 학생들에게 고지되거나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가 되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위기대책과 긴급 구조의 체계적인 관리망이 형성되어 실제적인 사례 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학급 담임과 부모 간에 학생과 자녀들을 위한 의견 교환이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럴 때 부모들이 많은 거부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참여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자녀교육을 위해 참여코자 하는 의욕을 갖도록 하려면, 그 자리에서 자녀의 성적을 비교하거나 학교의 운영에 관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담임 교사들도 반의 아동 청소년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지 않도록 하려면 각 반의 성적으로 담임의 근무 태도를 평가 하는 것 같은 관례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3.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1) 개관

오늘날 부모의 맞벌이나 기타 경제적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들이 전국적으로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방임 아동 및 청소년은 여러 다양한 범죄들의 대상이나 표적이 되거나 심지어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⁹¹⁾. 아동과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하는 환경들을 애초에 제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초기경험은 개인의 일생에 미치므로 위기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긴급구호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들의 안전을 모니터링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위기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그 동안 지역 경찰인 지구대의 활동이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므로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은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경찰에서는 청소년이나 아동의 구호를 위한 여러 시스템들을 발전시켜왔으나 독자적인 체계를 수립해왔다가 보다는 관련 유관단체들이나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에 보다 치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은 긴급구호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먼저 기존에 운영해온 경찰체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특히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CYS-Net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Wee-project와의 협력문제를 다룰 것이다. 아울러 위기 아동 및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

91)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2010년 기준으로 방임아동이 18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계하였다. http://www.jckh.org/wizhome/menu_1.html

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현행 경찰체계의 문제점

(1) 2010년 아동성범죄 종합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2010년 7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아동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는 예방에 근거한 성폭력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와 민경 협력 성범죄자 감시체계 구축 등 예방을 전제로 한 대책들이 대거 보완되었다. 경찰청의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경찰청의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도와 관련된 각론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지만, 크게 성폭력 피해아동보호 내실화, 성폭력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그리고 민경협력 성범죄자 감시체계 구축 등 세 개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보호 내실화 정책으로는 윈스톱 지원센터 확대설치, 윈스톱 기동수사대 전문성 향상, 지방청 여성청소년과 신설이 포함되었다. 무엇보다도 긴급구호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으나 지방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능을 강화한 것 외에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한 정도로 보인다. 성폭력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대책으로는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DB 구축과 법적근거 확보, 경찰서 방문 신상정보 열람권자 확대,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 대상자 소급적용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아동성폭력의 높은 재범률을 감안하면 전과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으나 서구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전과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도 경찰서에 방문해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정책은 아쉬운 점이 많다. 또한, 민경협력 성범죄 감시체계구축은 금번 경찰청 대책 중 안전모니터링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국 초등학교 일제 방범진단, 학교내외 CCTV 설치를 통한 모니터링, 재개발지역 순찰함 설치, 국민 공동감시망 체계구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익히 설명한 바와 같이 방범진단과 CCTV 설치와 관리는

교권침해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보다는 교권상의 프라이버시가 최대한 보장되는 선에서 학교와 경찰이 협력하며 운용되었을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될 것이다. 재개발지역 순찰함 설치의 과거 경찰의 순찰함이 철거된 계기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선경찰관들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기 쉬우며, 국민 공동감시망 체계구축은 경찰이 각 정부기관, 학교관계자, 일반시민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경찰청에서 내세운 것과 같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자율방범대 등을 아동안전 보호협의회로 발족시켜 캠페인을 벌이는 정도의 정책으로는 전시행정으로 끝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안전지킴이 체도를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확대하며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화 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 있는 공동감시망 체계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VI-2> 2010년 아동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경찰청)

과제명	담당 부서	추진 일정
<3개 분야, 9개 과제>		
I.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내실화		
1. 윈스톱 지원센터 확대 설치	여청과(여성계)	'11년예산 확보
2. 윈스톱 기동수사대 전문성 향상	여청과(여성계)	'10. 6. 30까지
3. 지방청 여성청소년과 신설	기획조정담당관실	'11년
II. 성폭력 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1. 성범죄 우범자 관리시스템구축	형사과/수사과 /정보통신	7. 15 까지
2. 신상정보 등록·열람대상자 확대 등 관련 법률개정	여청과 여성계	지속 추진
III. 민·경 협력 성범죄자 감시체계 구축		
1. 전국 초등학교 일제 방범진단	여청과(청소년계)	6. 30 까지
2. CCTV 등 모니터링 체계구축	생활안전과	지속 추진
3. 재개발 지역 순찰함 설치 등	생활안전과	7. 15 까지
4. 국민 공동 감시망 체계 구축	형사과/여청과	7. 15 까지

무엇보다도 금번 경찰청의 대책에서 아쉬운 점은 요청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범죄는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환경이 연계되어 발생한다. 서구에서처럼 범죄에 취약한 주거지역과 가난한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으로 찾아가는 보호정책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청소년을 돌보며 안전모니터링하는 것을 경찰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한국일보, 한국시론-가난한 아동 지키기, 2010.6.30일자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의 CYS-Net 등이 그러한 소프트 대책이라 할 수 있으며 서구 경찰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일환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그러한 찾아가는 예방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찰대책도 이러한 근원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전 예방적 대비책의 지속적인 보완 필요

지금까지 경찰이 운영해온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 대책들은 긴급구호 체계들을 기본으로 문제 발생 후 신고가 선행된 후에야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후약방적인 소극적인 사후대처에 머물러왔다. 대표적인 경찰의 구호대책인 117 학교·여성폭력지원센터나 One-Stop센터 모두 일정부분 범죄발생에 대한 사전예방보다는 발생한 후 피해자지원을 위한 상담, 수사협조, 치료 등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아동안전지킴이’ 제도 등을 통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174개 이상의 경찰서에서 1,740명이상의 인력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4개 경찰서와 773개 지구대가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도의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규모로는 실질적으로 범죄의 사전예방을 통하여 위기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는 역부족이다(경찰청, 2009).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조직 및 인력의 확대를 통해서 폭력과 범죄가 발생하기이전 다양한 사전 예방적 대비책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경우 제도의 명칭에서도 시사 하는 바대로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학교폭력, 음주, 절도 등의 각종 청소년범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한 경찰의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

(3) 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조직의 비효율성

현재 경찰청 본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기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긴급구호체계는 ‘117 학교·여성폭력지원센터’와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이다. 이들 두 시스템은 모두 경찰청의 생활안전국 산하 여성청소년과의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계라는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들 센터의 인력구성은 대부분 신고전화를 지키며 상담을 받는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실종 등의 범죄들을 미연에 사전예방을 하고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들 센터들의 기능이 단순한 신고접수에 머물러서는 많은 한계에 직면 할 수밖에 없다. 물론 기존의 해당 경찰조직들이 센터들에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 정보관리, 단속 등에 주력하겠지만 보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긴급구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시 센터들을 재조직하여 이들 기관들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훨씬 짜임새가 있고 통합적인 긴급구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력 및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4) 주요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가. One-Stop지원센터

대표적인 경찰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구호체계인 One-Stop지원센터

터는 정식명칭인 여성·학교폭력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절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경찰의 긴급구호체계로서 역할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센터가 도움을 주었던 전체 사례들 중에서 오직 2.1%만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었다는 점에서 제도가 애초에 지향했던 방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운영상의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이미정(2008)의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One-Stop 지원센터의 평가에 있어서 초기대응, 응급사태에 대한 대처, 초기상담 후 서비스 연계 등이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데 비해서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지원센터의 기능이 응급상황 시 초기대응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연계된 지원들을 한 번에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개선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피난처 기능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임시적으로 센터에서 쉼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보호시설이나 긴급피난처 등과 연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원센터가 서울과 경기도에만 두 개소에 설치되어있고 그 외에 지방경찰청이 소재한 각 광역시도에 하나씩만 설치되다보니 담당해야 하는 지역이 넓어서 원거리에 있는 폭력 피해자의 센터 이용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미정, 2008).

나.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홍보부족이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위에 알림판도 세우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홍보 부족문제는 2008년 본 제도의 시행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지만 경찰청은 올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예산을 작

년보다 오히려 2억 원을 깎은 4억5천만으로 편성해버렸다⁹²⁾. 이러한 예산 감소는 실제 지킴이집 프로그램의 운영 자체는 물론 그간 문제로 지적된 지속적인 홍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보의 문제와 함께 학교 주변에 지정된 안전지킴이집들이 주로 약국, 편의점, 문구점 등 고정된 장소에 국한되어서 실제 서비스의 대상인 위기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곧바로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긴급구호를 위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피해자들에게 구호의 손길이 곧바로 미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지킴이집으로 지정된 장소들의 업주들이 실제 문제가 발생할 때 효과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성을 지녔는가도 의문이다. 바쁘게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상점 주변의 문제 상황을 재빠르게 접수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지킴이집 운영을 감시 및 감독하는 경찰공무원의 인식과 수준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지킴이집임을 알리는 홍보물이나 표지판 등의 설치를 꼼꼼히 살피고 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간 소홀히 관리되어왔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⁹³⁾.

다. 아동안전 보호관: 아동안전지킴이와의 제도의 중첩문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주요 문제점들 중 하나인 공간상의 공백을 보완해주었다는 평가는 받는 아동안전지킴이제도는 그간 그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꾸준히 확대되어갔다. 하지만 최근 아동 범죄예방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아동안전 보호관’ 위촉 제도가 실시되면서 기능의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⁹⁴⁾. 이제도는 경찰이 각 지자체 주민대표들인 이장과 통장들을 아동안전보호관으로 위촉하고 협조체

92) 시사IN 2010년 143호, “반복되는 땀질 처방, 방치되는 아동 성폭행”

93) 오마이뉴스 2009년 4월 22일자, “이대로 예산만 낭비할 것인가? 아동지킴이집 제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16415

94) 충청일보 2010년 8월 22일자, “허울뿐인 아동 보호관 위촉”

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에서 아동보호활동을 전개시킨다는 취지로 지난해 말 전국의 이장 3만6천명과 통장 5만5천여 명의 동의를 받고 이들을 보호관으로 임명하여 활동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보호관제도는 학교 주변 상점들을 이용한 기존의 아동지킴이집은 물론 이동성이 높은 지역 순찰중심의 아동지킴이제도와 그 대상만 다를 뿐 기능과 역할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송수진·이은주, 2009). 특히, 보호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제도가 형식에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구대의 일선 경찰들이 아동 보호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양적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실적주의라는 비판도 아울러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안전지킴이제도에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보호관제도를 추가시킴으로써 위기아동 및 청소년 긴급구호를 위한 경찰과 지역주민들 간의 협력체계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중앙부처 안전망과 경찰의 협력방안

(1) 긴급구호를 위한 네트워크의 외연 확대

현재 여성가족부의 안정망인 CYS-Net과 교육부의 안전망과의 협력에 머무르고 있는 경찰의 긴급구호 협력체계를 보다 기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4년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각 시도에 설치된 이후 특히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교육기관, 경찰, 의료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대한간호협회, 2006). 하지만, 이러한 협조체계는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어도 신고를 받고 나서 문제가 붙어질 이후에야 제대로 구호기능을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동학대나 방임의 경우 치명적인 아동 및 청소년범죄로 발전하기 용이한 부정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위험요소를 지닌 가정들을 직

집 방문하여 통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운영 중인 Nurse Family Partnership은 미국의 지역사회 중심의 간호사 방문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기까지 주 1-2회 간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스크리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대한간호협회, 2006). 이러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조기발견과 예방 및 현행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방문간호프로그램을 경찰도 최대한 협조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직접 문제의 위기아동과 청소년들의 문제 요소들을 직접 발견하기 보다는 보건 서비스에 종사하는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위기 신호들을 조기에 감지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폭력행위나 범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아동·청소년 문제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협력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활용 가능한 치안·보건·복지 자원을 연계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성하고, 경찰의 순찰서비스 및 보건소 방문간호서비스와 지역의 복지서비스 자원들을 연계한 아동보호·치안·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방임이나 학대의 근본적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2) CY5-Net 및 Wee Project와의 협력 방안

CY5-Net는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과 탈학교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청소년의 위기정도를 판정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중심의 ONE-STOP 서비스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를 연계하여 긴급구조, 전문상담, 심리치료, 숙식 피복 제공, 학습 자립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다. 2009년에는 16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고 2010년에는 16개 시도 150개 시·군·구, 2013년까지는 전국 232개 시군구 전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안전망은 지역사회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연계시켜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그러나 CYS-Net이 외형적으로는 통합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필요한 연계기관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중앙과 지방 혹은 공공과 민간 사이의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않고 운영 총괄 구심점의 부재로 인하여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지 외, 2006; 원혜옥, 2009). 하지만 비록 운영상의 미비점은 지적되어 왔지만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하여 CYS-Net 네트워크의 필수적인 구성 기관들은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서는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 지방노동관서,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지원시설 등과 함께 그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 경찰관서의 세 가지 주요 역할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 첫째, 관내 순찰 시 심야시간 등에 가출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가정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둘째, 가정 복귀를 거부하고 거주가 불분명한 청소년은 지역별로 구성된 가출청소년 긴급구조단 비상연락망을 참조하여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일시보호소 또는 청소년쉼터로 대상자를 인계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긴급구조를 실시하다가 긴급구조요원이 폭력 등 위기상황 노출이 우려되어 관내 경찰관서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출동에 협조한다. 이처럼 경찰이 CYS-Net의 협력체계의 한 축으로 책임지는 역할은 위기 청소년의 발견에서부터 지원센터로의 인계 및 긴급 상황에서의 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다. 하지만 협력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 수동적으로 지원을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극복해서 앞으로는 현재의 안전망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역의 청소년범죄발생을 낮추고 지역안전의 이니셔티브를 획득할 수 있는 협력방

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ee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를 중단하거나 범죄의 길로 빠지기 쉬운 위기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운영하는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대안교육으로 상담 활동, 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심리적 어려움과 고민을 경험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상담사, 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진단에서부터 상담, 치료 서비스까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부적응학생을 잘 선도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현재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첫째, 단위학교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 예방과 조기발견, 지도를 담당하는 교내 대안교실, Wee Class가 있다. 둘째, 학교에서 선도하거나 치유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전문가가 진단,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청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학생생활지원단, Wee Center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상황이 심각한 학생에게 장기간의 치유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장기위탁교육기관인 Wee School을 들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30% 수준인 3,530개 학교에 Wee Class를 설치하고 Wee Center는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 전체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Wee Project의 핵심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위기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서 정상적인 제도권 교육을 마치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망 구축은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데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특히 경찰은 관심을 갖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Wee Projec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 공유의 문제이다. 학교 단위에서 실시하는 Wee Class에서 이미 상담전문가와 심리치료사 등이 투입되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과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수집되고 정리된 정보는 지역의 청소년범죄를 예측하고 통제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 자료들을 얻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또한 경찰들이 직접 범죄예방 교육에 참여하여 우발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생님들, 상담사들, 그리고 심리치료사들에게서 심리적 안정감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자신감등을 얻는다면 경찰들과의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범죄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일선 학교들과 안전망에 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위기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종합적인 안전모니터링 구축방안

(1) 위기아동 및 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사이버 모니터링

현재 상당수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또래 집단들과의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소년기 집단의 라이프스타일을 적극 활용하여 위기아동 및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감시체계가 요망된다. 이를 위하여 위기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로 접속하여 활동하는 채팅사이트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의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접속하여 그들의 활동과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청 사이버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 884명 상당의 누리잡스를 대상으로 음란물신고 대회를 추진하는 것 등은 일시적인 전시행정에 그치기 쉬우며 경찰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이버수사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만약 예산상의 문제로 인력이나 재원투입이 쉽지 않다면 그 필요성을 지역사회안전망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유관단체들에게 설명하여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역 청소년센터들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사이버 리치아웃사업들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년 3월 사이버상담센터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데, 상담인력 35명 정도의 규모로 예산 1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이버상담센터가 위기 아동 및 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모니터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긴급구호 행정기관들의 비효율적 운영과 재정적 지원의 한계

2007년 보건복지부 백서 제4절에서 “청소년 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의 이원화된 정책과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 종합적 정책수행 곤란,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비,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역할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자인할 정도로 위기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은 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특히, 위기아동 및 청소년들의 긴급구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총괄체제와 협조공조체제가 부족하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조직 역시 총괄적인 운영에 있어서 다른 협력기관들과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수립하거나 주도적인 통합적 운영체제를 확립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기 청소년들의 구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상담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끔 돕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 더군다나 지원센터가 양적으로 너무나 부족하여 위기아동 및 청소년들 중 소수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증설하여 수혜청소년들의 숫자를 점차 늘려 2012년까지 14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약 93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건복지부, 2010).

사회와 정부가 위기 아동·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여 제도 개선, 지원센터의 증설,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획기적인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위기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해결은커녕 점점 확산될 것이다.

(3) 정기적인 아웃리치 구호활동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은 지난 5월초에 3일간에 걸쳐 전국 7개 대도시와 수도권의 18개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가출청소년 아웃리치 구호활동을 실시하였다⁹⁵⁾. 또한 아웃리치의 강화를 위해 2011년도에는 10개소의 일시쉼터 1개소 당 2명씩 총 20명의 아웃리치업무 담당자를 증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가출청소년 구호활동’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오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가정 복귀를 돕거나 유해환경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상담과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문가와 지역 청소년 단체가 민관합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가출청소년이나 거리를 무작정 배회하는 청소년의 비행과 이탈가능성이 높은 심야시간대에 아웃리치활동 방식으로 직접 현장으로 청소년을 찾아 나서는 방식을 통해서 위기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긴급구호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이는 상기 구호활동의 사례가 이미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지역의 안전망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정보와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도움을 현장에서 제공하고 가정 복귀를 돕거나 청소년이 일정기간 거주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쉼터 등 복지적 지원으로 곧바로 연계시키는 협력체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95) 여성가족부 2010년 5월 3일 보도자료, <http://www.moge.go.kr>

(4) 지역주민의 안전모니터링 및 신고 활성화

각 동의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통반장 회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통한 아동 청소년 관리와 신고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지역 경찰지구대의 순찰 담당은 길거리에서 배회하거나 남의 주거시설에 들어가는 청소년들을 발견하는 즉시 일시보호소에 연계 하도록 사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주민 자치 센터의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 주거환경과 상태에 대해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이를 반드시 관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통보해서 동반자나 아웃리치 전문요원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 동 단위 별로 위기 가정 아동 청소년 돌봄을 위한 실비 아동 보호 전문자원봉사인력을 활성화 하고 이를 CYS-Net에 연계해서 한 아동을 3,4명이 함께 돌보는 위기 안전 지원망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한 사례를 들면, 지난 2009년에 상담센터 1388 전화로 긴급 구조를 요청했던 중학교 1학년 여자 아이가 있었다. 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본인은 중1인 연년생의 여자 아이였는데, 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 자세히 상담을 하면서 상황을 알아보니, 어머니는 6살 때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갔고, 일 년에 한두 번 한국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못 만나게 하는 상태였다. 아버지는 대구에서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우편으로 보내오거나 돈을 보내준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까지는 외할머니가 보살펴 주었는데 할머니가 병이 나서 요양원에 가신 이후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버지의 내연관계에 있는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는데 근래 두어 달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아이가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은 학교에 자주 결석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집에서 놀며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동생과 바퀴 벌레 라고 하였다. 그대로 두면 아이들이 위험 할 것 같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면 차라리 쉼터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면 입주 가정교사를 통해 아이들의

관리를 도움 받도록 부탁했으나 아버지의 반응은 욕설과 참견 하지 말라는 협박뿐이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의 남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를 설득해 달라고 하자 담임도 자기 반 아이가 그런 환경인 줄 모르고 있었으며 그냥 부모와 떨어져 지낸다는 정도로 무감각한 상태였으며 상담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방문을 한 뒤 미안하다는 전화를 하고는 그 뒤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아이들을 찾아가서 1388에 전화를 한 것을 야단치며 다시는 전화 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기를 약 3,4개월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친 할머니가 나서서 애들 아버지인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든 상태이고 빗더미에 있으며 손녀들이 불쌍하다면서 1388에 데리고 오셨다. 1388에 와서 일주일 쯤 지내다가 쉼터로 가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 간 후, 다행히 외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아이들을 맡아 주셔서 현재 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동반자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으나 친권자인 아버지의 거부와 협박으로 주변인들이 두려움에 떨어 아동에게 도움 되는 조치를 할 수 없었고 동생이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아 보호하기 힘들었다. 이 사례를 겪으며 본 상담자도 무력감에 한동안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교사나 일반인이나 다를 바 없으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 고발이 없으면 사례를 접수 할 수 없으므로 신고만으로는 직접적인 참여를 할 없다는 한계가 있어 아버지가 아이를 심하게 때려서 다친 상처가 없는 한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경우에 속했다. 이 아이가 사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아이들끼리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아무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저 그냥 두고 볼 뿐이었다. 그러므로 아동 보호에 관한 한 정부가 나서서 보다 구체적인 대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CYS-Net의 연계기관 뿐만 아니라 공무원, 경찰 등 종교단체 등이 모두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공무원들은 관할 지역에서 위기 아동사례가 발견 될

경우, 그 처리 여하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

(5) 고위험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정지원

보호관찰 중인 부모가 있거나, 구속 수감되어있는 부모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해당 보호관찰기관의 담당자는 이 청소년 가정의 지원을 위해 CYS-Net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보호관찰소와 협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은 하였으나, 성인 보호관찰 전담 요원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과 자녀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은 있으나 심정적으로 만 느낄 뿐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연결하는 것에는 덜 민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CYS-Net을 관리하는 담당팀장은 실행위원회와 같은 회의 중에 보호관찰 대상자 가족 지원에 대한 언급과 청소년지원에 대한 정책을 자주 홍보해야 한다.

5) 소결

지난 6월 교육과학기술부는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다⁹⁶⁾.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등교에서 귀가까지 24시간 학생 신변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규 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 방과 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봉사자가, 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이 24시간 순시 및 순찰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이 제도의 핵심은 안전한 학교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에 있다.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과 범죄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하여 적극지원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학교 안전망

96) 연합뉴스 6월 10일 보도자료

서비스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일련의 흉악한 성범죄들의 대응책으로 급작스럽게 내놓은 것이었다. 벌써 그간 복수의 행정기관들에서 다양한 안전망들을 내놓았으며 안전지킴이와 같은 세부적인 학교주변 순찰제들도 만들어서 시행해오고 있다. 대외적으로 비슷하고 유사한 제도와 서비스들을 명칭만 바꿔서 반복해서 만들기보다는 폭력과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위기에 확연히 노출되어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스크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시스템의 수립이 요망된다. 특히, 경찰은 이러한 시스템 수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안전모니터링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의 정책을 벗어나 보다 복지·행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가난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까지 찾아가는 보호정책에 있어서의 경찰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Ⅶ. 요약 및 결론

1. 주요결과
2. 정책제언

VII. 요약 및 결론

1. 주요결과

이 연구에서는 위기 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전문가와 위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먼저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의 정확한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면과 면접의 방법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긴급구호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활용해 가출청소년을 신속하게 구조하고 일시보호소 운용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원에게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 위센터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등교거부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기관이 부족하고, 낙인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 상담을 통해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쉼터를 몰라서 찾아오지 못하는 가출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 특화기관으로 신체적 및 심리적 응급으로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종합병원 응급실로 연계해 365일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의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 채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친족 성폭력인 경우 개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친권박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험성 뿐 아니라 증명 가능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하는 시스템이 문제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특화기관으로 긴급현장조사와 일시보호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대가정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대아동에 대한 면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 법적 권한이 일부 보장되어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인 부모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위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가해학생들에 대한 선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의 공감대와 인식이 부족하여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모니터링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조기발견에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1388 청소년 전화와 1388청소년지원단이다. 그러나 1388전화는 현재 무료전화가 아니고 회선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위센터의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의 경우 위기상담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에 용이하고 친구에게 위센터를 소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가 요망된다.

- 청소년쉼터의 아웃리치는 2-3명이 팀을 구성해 걸어 다니거나 소형차를 이용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아웃리치는 원래 청소년쉼터의 고유사업으로 고위기군을 만날 수 있는 최일선의 방법이므로 적

극적인 지원과 확대가 필요하다.

- 해바라기아동센터의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이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보건교사, 보호자 등이 아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의무자 교육은 위기아동 조기발견에 매우 효과적이고, 24시간 신고전화 운영으로 야간에 긴급 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는 아동권리 놀이터사업을 통해 교육 중에 방임, 학대 아동을 발견하기도 하므로 신고 의무자 교육과 아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 경찰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명예소년경찰단이 안전모니터링 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의 연계협력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필수연계기관과 1388청소년지원단의 연계협력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연계기관과 상호간에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협력에 수동적이고, 연계기관도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 위센터는 심리치료기관 및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위센터 역시 연계기관에 대기자가 많아 서비스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 청소년쉼터는 병원진료 및 대안학교 연계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출 청소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쉼터에서 보호하던 아동·청소년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그룹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절차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호 아동을 의뢰하고 있고,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지역이 넓기 때문에 연계협력을 위한 교류를 가지기가 어렵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의 실무자 네트워크 및 병원과의 협력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다른 기관에서 약간이라도 학대문제가 발견되면 무조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의뢰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 경찰은 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쉼터 등과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학교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교권침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넷째, 현행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이 산하에 상담기관을 설치하여 상담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운영내용이 대동소이하다.

- 현재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기관은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CYS-Net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담지원센터는 찾아오는 청소년과 부모 중심의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으로 인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현장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활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어 효과성이 떨어진다.

- 집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입소 시 무조건 부모와의 연락을 강제하고 있어 무단퇴소 또는 귀가 후 재가출이 발생하고 있다.

-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들의 부모는 생계형맞벌이이거나 조부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대부분은 방과 후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2) 위기 아동·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다음으로 위기아동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행하였다. 체계적인 면접을 위해 채용한 이론적 분석틀은 청소년비행원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의 관점이다. 이 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을 위기로 몰아가는(극단적으로 비행과 범죄청소년이 되는) 위기의 근원과 그 위기로 인한 부정적 감정의 생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의 관리와 대처가 미흡하게 되면 위기결과단계, 즉 자살이나 폭행, 가출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1) 위기의 근원, 2) 부정적 정서 상태, 3) 반사회적 행동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과 경험을 가진 위기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서비스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로로 제공되고 있는 지도 알아보았다.

첫째,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위기의 근원을 살펴보면 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존재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긍정적 자극의 소멸이라 함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별거 등을 포함하는 데, 다수의 면접대상 청소년들이 이러한 긍정적 자극의 소멸로 인한 긴장을 가지고 있었다.

- 부정적 자극은 학대, 방임, 폭행, 부모와의 갈등, 교사, 친구와의 갈등 등 부정적이고 피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부정적 자극 중에서 특히 대상청소년들에게 현저하게 많이 나타난 것이 아버지의 폭행과 아버지와의 갈등이다. 심지어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공부부담이나 교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경제적 궁핍함, 유기와 방임의 경험 등 긴장을 발생시키는 위기로 인한 경험들을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둘째, 긴장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상태가 만들어지며 분노와 우울, 두려움 등의 감정은 내적으로 자살충동을 외적으로는 폭력과 가출, 절도 등의 비행과 범죄를 불러온다.

-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은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많이 보이고 있었으며 다양한 반사회적 행동-예를 들면 가출, 폭력, 절도, 자살시도, 성매매, 성폭력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이들이 경험한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및 기관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았다.

- 시설 및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1388,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 대한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이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도움을 받은 것으로 꼽는 부분은 자신들의 얘기를 털어놓고 할 수 있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 학업지원, 상담지원 등을 언급하고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자고 먹을 곳이 있어서 비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을 도움 받은 점으로 언급한 아동·청소년도 있었다.

- 청소년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알아본 결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와 상담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었다.

넷째, 위기 아동·청소년들의 서비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시설이나 기관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할 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 일시쉼터의 운영시간 연장이나 규칙완화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다.
- 외출외박에 대한 규제, 음주흡연에 대한 규제, 그리고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쉼터 등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었다.

2. 정책제언

1)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체계 개선방안

- 위기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에 효과가 높은 1388전화가 무료전화가 아니고 회선부족으로 인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료전화⁹⁷⁾로 전환하고 전국규모의 콜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CYS-Net을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담지원센터는 찾아오는 청소년과 부모 중심의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경험으로 인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현장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활동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웃리치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쉼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아웃리치 사업을 실시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단체들이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함께 아웃리치 사업에 대한 공통된 목적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상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위기 아동·청소년을 긴급구호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구호인증제’를 실시하여 긴급구호 기관에서 친권에 우선하는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심각한 학대가정의 부모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친권상실제도의 법원선고 청구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요망된다.

97)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년 상반기 중에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통신사와 협의 중에 있다.

- 실제적인 안전모니터링시스템이 되려면 많은 청소년을 다루고 있는 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을 안전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위기아동·청소년을 조기 발견,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귀가 및 쉼터연계를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야 한다. 현행 24시간 보호로는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상담하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집으로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입소 시 무조건 부모와의 연락을 강제하고 있어 무단퇴소 또는 귀가 후 재가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에 대한 연락 기준이 마련되고, 가족 또는 학교에 대한 중재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⁹⁸⁾.

- 가출청소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에서는 보호하던 아동·청소년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그룹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절차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쉼터에서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 관련기관간의 정보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기관은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 청소년을 발굴하러 다니는 것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contact point 역할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 보통 위기아동·청소년은 한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가정 내 학대부터 가출, 폭력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경

98) 2011년 청소년쉼터 지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수정하였다.

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 기관에서 전문화된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에 대한 통합은 어려워도 지자체에서 관련 기관을 한 건물 또는 근거리에 상주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전문화된 시스템 이용 및 홍보도 용이하고, 즉각적인 원스톱서비스도 가능해 질 수 있다. 또한 한 기관의 원스톱보다는 우리 지역 원스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원스톱서비스와 전문화된 서비스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

-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의 경우 취약계층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동반자의 경우는 3개월간 위기개입 후 종료가 되는 체제이지만 한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과정에서 주변의 위기아동·청소년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모니터링체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이 지역사회의 컨소시엄이 있고 이들의 사명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컨소시엄을 안전모니터링체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상에서의 모니터링에 관해서는 성매수 유인행위, 청소년의 조건 만남 광고, 동반자살 등의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IP추적을 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보다는 사업자의 자율정화를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위기유형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방안

- 가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가출청소년의 불안한 심리상태에 대해 치료 상담을 실시한 뒤 안정을 찾은 후에 보호자와 연락을 취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쉼터에서 보호하던 아동·청소년을 장기 보호하기 위해 그룹홈에 의뢰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운영되고 있어 절차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쉼터에서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신고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신고자의 실명이 밝혀져 신고를 꺼리고 있으므로 익명성을 용인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 가정 내 친족 성폭력 및 지적장애 등으로 보호자가 보호능력이 떨어져서 차후의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가해 가족과 강제 분리해야 한다⁹⁹⁾.

-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대 부모의 치료 및 상담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고, 친권상실제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아동학대는 이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 보건교사, 보호자 등이 아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교만의 특성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스크리닝하고, 모니터링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내에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담임교사가 미처 관리 하지 못하는 학교 뒤 건물, 옥상, 체육관 뒤, 담벼락 등 외진 곳을 수시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위기 아동·청소년의 위기원인 개선방안

- 부모의 폭력과 알코올 남용문제는 청소년들의 위기상황을 야기하는 중요요인이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한 자녀들의 피해는 육체적, 심리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유기와 방임의 경험도 간과할 수 없다. 범죄 피해와 방임 등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99) 이를 위해 현재 친족 성폭력피해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할 것이다. 위기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시설 특성화에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¹⁰⁰⁾.

- 부모의 폭력,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곤란, 학교부적응 등의 긴장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감정-분노와 우울, 자포자기-을 초래한다. 분노와 같은 심리적 긴장은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고, 우울과 같은 심리상태는 자살충동과 자살시도와 같은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면접대상자들을 통해 그들의 분노와 짜증, 우울 등을 확인 한 바 부정적 감정을 이성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 면접대상자가 “만일 내가 화를 정당하게 푸는 방법을 알았다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걸...” 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정적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러한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따라 파괴적인 행동으로 분출될 수도 있고, 승화를 통해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반사회적 행동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도 부정적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위기 아동·청소년들이 위기를 탈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자립지원에는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 취업을 위한 지원, 당장 생계를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 숙식을 해결하거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생계곤란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예를 들어 다양한 바우처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은 장차 사회의 최하위계층으로 편입되고 범죄세계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100) 부모에 의한 위기원인 해소를 위해서는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의 추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청소년 부모교육 및 자녀와의 의사소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근거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4)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안

- 서비스 이용경로를 파악해 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 학교나 교사,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등에 의해, 아니면 자기 스스로 청소년보호시설 및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설 및 기관 간 연계에 의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2건). (과잉일반화의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학교를 제외한 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간에 정보공유와 연계활용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학교나 개인에게는 어느 정도 접근, 활용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 간 정보공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유사시설간 정보공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 시설이나 기관에서 도움 받은 것의 내용을 알아 본 결과 속마음을 보여주고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소년들의 이 같은 의견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인식을 이해받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적인 신뢰의 획득은 위기 아동·청소년을 도와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보호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울분이나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수용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은 여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이 청소년들의 심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들 간에 편이 나뉘거나, 위계체계가 생기게 되면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진다. 시설운영자나 봉사자들은 이러한 무리(clique)가 발생하여 갈등관계에 놓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일상화된 갈등은 위기 아동·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더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더 위축되도록 부추기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애정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감정적 의존을 하게 되고, 그 의존이 지나쳐 갈등으로 표

면화되기도 한다. 일상이 편안하지 않으면 자립에 대한 생각, 진학에 대한 생각 등을 긍정적으로 해 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위기 아동·청소년이 갈등관계에 놓였을 때 그것을 헤쳐 나올 수 있도록 갈등의 조정과 관리(conflict management program)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드롭인센터나 일시쉼터 등의 운영시간과 이용 장소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 증대와 운영시간 연장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밤이나 새벽시간에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요구도가 높은 장소부터 점차 그 시간과 시설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밤이나 새벽시간에 숙식해결 할 곳을 찾지 못하면 노숙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면 범죄피해나 건강상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24시간 문을 연 시설의 증설이 필요 하다.

- 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집단생활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따라서 물리적으로 사생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신상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며, 사생활과 비밀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쉼터 등을 이용하는 위기 아동·청소년은 내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매우 이질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가출을 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친구들과끼리 어울려 놀러 다니기 위해 집을 나오는 경우도 있다. “집이 힘들어서” 나온 경우와 “밖이 재밌어서” 나온 경우는 그 접근이 달라야 한다. 따라서 쉼터의 성격을 보다 다양화하여 서로 어울리기 힘든 청소년들끼리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의 욕구다양화에 따라 규율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청소년과 규율이 완화된 상태에서 숙식을 해결하고픈 청소년들이 각자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쉼터의 수도 증가되어야 하고 그 쉼터의 특성도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총체적인 접근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을 위기의 상태로 몰고 가는 원천요인 중 중요한 것은 가정의 기능적 문제이다. 가정의 문제는 배제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한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위기의 원천을 차단하고 위기요인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솔루션위원회의 가동 등 청소년이 속한 가정 전체에 대한 진단과 서비스가 필요하다¹⁰¹⁾. 위기 아동·청소년의 발견시점에서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위기 청소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상담서비스 등의 욕구를 파악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CYS-Net과 Wee Project, 경찰의 협력방안

- 현행 위센터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청소년 복지지원 시스템인 CYS-Net의 업무수행 정도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CYS-Net의 상설 두드림 존, 교육적 회복적 선도 사업,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인터넷 중독치료와 금연 교실운영, 해밀 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연계 해주면서 이와 병행하여 전문적인 심리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할 청소년들을 적절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함께 병행함이 필요하다.

- CYS-Net과 Wee Center는 학생 청소년 내담자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연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 인적 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 세미나 또는 워크숍 형식의 정기적인 만남을 주선하고, 예

101)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CYS-Net 연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가족 관련기관을 포함할 예정이다.

산 확보를 도와주어야 한다.

- Wee프로젝트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 밖 혹은 공교육 밖에서 개입하는 시스템의 대안으로 만들어졌다. 학교는 부적응 학생을 학교 밖에서 개입함에 따라 체계적 피드백 시스템이 없어 책임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었다. 한편 CYS-Net은 지역사회 연계망과 지원망을 확보한 상태이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로의 주 내담자를 대상으로 개입한다. 다만 학교에 적을 둔 학생이 가출이나 학업중단 하였을 때 서로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논의, 협력한다. 논의, 협력은 한 청소년에 대해 학교 개입 및 전문적 심리상담은 Wee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 개입은 CYS-Net에서 담당함을 의미한다. 가정 개입은 CYS-Net의 YC를 활용할 수 있다. Wee센터에서 전문적 혹은 진단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임상심리사가 있으므로 CYS-Net에서는 이를 활용한다. 이러한 연계를 통하여 두 시스템은 시너지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 경찰이 CYS-Net과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역할은 첫째, 관내 순찰 시 심야시간 등에 가출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가정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둘째, 가정 복귀를 거부하고 거주가 불분명한 청소년은 지역별로 구성된 가출청소년 긴급구조단 비상연락망을 참조하여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일시보호소 또는 청소년쉼터로 대상자를 인계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긴급구조를 실시하다가 긴급구조요원이 폭력 등 위기상황 노출이 우려되어 관내 경찰관 서로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출동에 협조한다. 이처럼 경찰이 CYS-Net의 협력체계의 한 축으로 책임지는 역할은 위기 청소년의 발견에서부터 지원센터로의 인계 및 긴급 상황에서의 출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다. 하지만 협력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 수동적으로 지원을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극복해서 앞으로는 현재의 안전망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지역의 청소년범죄발생을 낮추고 지역안전의 이니셔티브를 획득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Wee Project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데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특히 경찰은 관심을 갖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Wee Projec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 공유의 문제이다. 학교 단위에서 실시하는 Wee Class에서 이미 상담전문가와 심리치료사 등이 투입되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과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상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수집되고 정리된 정보는 지역의 청소년범죄를 예측하고 통제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들 자료들을 얻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또한 경찰들이 직접 범죄예방 교육에 참여하여 우발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생님들, 상담사들, 그리고 심리치료사들에게서 심리적 안정감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자신감등을 얻는다면 경찰들과의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범죄나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일선 학교들과 안전망에 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 위기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영·김동민·하창순(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경찰청(2008). 아동안전 지킴이 집·지킴이 활동사례집. 서울: 경찰청.
- 경찰청(2009).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구본용 외 7인(2005). 위기(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8). 2008년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침.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권희경, 박경(2003). 성폭력 장기후유증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8권 제3호.
- 권희경, 장재홍(2003). 청소년 성피해자들의 성폭력 인식과 자기손해적 성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8권 제1호.
- 금명자, 이종한 (2009). Wee센터 종사자들의 상담효능감 및 직무 만족, Wee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보고서. 대구: 대구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 기광도(2005).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 범죄간의 관계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 김경호(2006). 비행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과 폭력행동에 관한 사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제14권 제1호.
- 김영지·방은령·박정선(2006).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문제행동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지·성운숙·김명선(2009).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준호·박정선·김은경(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혜 외 4인(2006). 일시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개발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남미애·홍봉선(2007).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 노성덕 외 3인(2008). 위기개입매뉴얼 제3판.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원.
- 노성덕(2008). 청소년상담기관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현행법 고찰. 청소년상담연구, 제16권 제1호.
- 대한간호협회(2006). 아동보호 보건복지통합서비스 모형개발. 보건복지부 용역연구

- 사업. 서울: 보건복지부.
- 맹영임 외 11인(2007).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 외 3인(2009).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순진(2009). 청소년 폭력에 있어서 피해·가해 경험의 발전.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 보건복지부(2008).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청소년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0). 2010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지침. 서울: 보건복지부.
- 원혜옥(2009). 소년비행예방센터의 현황과 과제. 소년보호연구, 제12호.
- 위프로젝트중앙자문단(2009). 2009년도 Wee프로젝트 자문보고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 윤철경 외 4인(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외 7인(2005). 위기청소년 지원시설과 지원정책 현황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외 7인(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보호자립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이순래(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Ⅶ: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명진·조주연·최문경(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통권14호.
- 이미정(2008). 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성식(2008). 인터넷게시판 악성댓글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6권 제1호.
- 이용교·홍봉선·윤현영(2005). 청소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종한, 금명자, 최윤경, 장홍재(2008).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돌봄학생 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이창호 외 4인(2007). CYS-Net효과성 평가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창호 외 7인(2005).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 이춘화·조아미(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 외 3인(2007).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춘화(2009). 청소년의 사이버범죄 피해요인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 이춘화(201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위헌성 유무. 형사판례연구, 18.
- 조성호·최해연·박성현(2008). 위기청소년 자립지원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지승희 외 3인(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2009). 충청북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청주: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홍봉선(2006). 시·도 단위의 위기 청소년종합지원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제8권 제2호.
- 홍영오(2008). 2008년 청소년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순길·박재연(2006).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제8권 제2호.
- 加藤曜子(2008). 要保護児童対策地域協議会への移行期における課題. 流通科学大学論集, 第20巻第2号.
- 加藤曜子(2010). 市町村ネットワーク;調整機関の役割-要保護児童対策地域協議会調整機関と個別ケース検討会参加機関調査から, 流通科学大学論集, 第22巻第2号.
- 岡本洋子(2007). 自殺対策基本法の施行と社会全体で取り組む自殺対策について. 社会関係研究, 第13巻第1号.
- 岡本洋子(2007). 自殺対策基本法の施行と社会全体で取り組む自殺対策について. 社会関係研究, 第13巻第1号.
- 東京都 若者の自殺防止対策に関する検討会(2008). 若者の自殺対策に関する緊急提言. 東京都 若者の自殺防止対策に関する検討会.
- 藤木昇(1998). 児童相談所. 講座少年保護 3. 大成出版社.
-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2009). 犯罪白書.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

- 法曹會(1989). 家庭裁判所調査官研修所編- ぐ犯保護事件の調査方法について. 法曹會.
- 本橋豊(2005). 自殺予防運動の実践とその評価. 公衆衛生, 第69巻第5号
- 邪須宗一(1996). 家庭の病理」大橋薫編. 社会病理学有斐閣双書.
- 森望(2002). 児童自立支援施設のあり方をめぐって. 少年法の新たな展開. 有斐閣.
- 矢作由実子(2003). 少年サポーターチームの現状と課題- 非行少年の心のサインが聞けるチーム作りへ. 有斐閣.
- 阿部洋子(2005). もうひとつの子どもの家- 教護院から自動自立支援施設へ. ドメス出版.
- 内閣府(2009). 青少年白書. 内閣府.
- 阪中順子(2004). 学校における自殺予防教育. こころの科学, 第118巻第11号.
- 坪井裕子(2005). 被虐待児の支援に関する現状と課題, 名古屋大学大学院教育発達科学研究科紀要, 第52巻.
- 下泉英雄(2007). 虐待の発見と早期予防, 母子保健情報, 第55号.
- 関力編(1998). 少年はこう扱われる- 発見・調査・審判・処遇の実態. 有信堂.

- Agnew, R(1992). Foundations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 Ashcraft, R.F(2003). *Collaborations and coalition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In D. Wertlieb, F. Jacobs, & R.M. Lerner (Eds.), *Promoting positive youth and family development: Community systems, citizenship, and civil society*. Volume 3 of Handbook of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Promoting positive child, adolescent, and family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policies, and programs, (pp.27-51).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Barnes, J., Katz, I., Korbin, J. E., & O'Brien, M(2006). *Children and families in communities: Theory,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Benson, P.L(2003).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building communities: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s*. In R.M. Lerner & P.L. Benson (Eds.), *Developmental assets and asset building communities: Implications for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pp. 19-43). Norwell, MA: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ooth, A. & Crouter, A.C. (Eds.)(2001). *Does it take a village? Community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Burt, M.R., Resnick, G., & Novick, E.R.(1998). *Building supportive communities for At-risk adolescents: It takes more than services*. W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nnell, J. & Kubisch, A(2001). *Community approaches to improving outcomes for urba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A. Booth & A.C. Crouter (Eds.) *Does it take a village? Community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pp.177-20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Daro, D. & Dodge, K. A(2009). Creating community p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on: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The Future of Children*. 19(2), 67-93.
- Finkelhor, D(2009). The prevention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Future of Children*. 19(2), 169-194.
- France, A(2001). Involving communities in the evaluation of programmes with "at-risk" children and young people. *Children & Society*, 15, 39-45.
- France, A. & Crow, L(2001). *CTC - the story so far: An interim evaluation of communities that care*.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Greenwald, H. P., Pearson, D., Beery, W. L., & Cheadle, A(2006). Youth development, community engagement, and reducing risk behavior.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7(1), 3-25.
- Hawkins, J.D. & Catalano, R.F(1992). *Communities that care: Action for drug abuse preven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Kubisch, A.C(2005). Comprehensive community building initiatives - ten years later: What we have learned about the principles guiding the work. *New Directions for Youth Development*. 106. 17-26.
- Kubisch, A.C., Auspos, P., Brown, P., Chaskin, R., Fulbright-Anderson, K., & Hamilton, R(2002). *Voices from the field II: Reflections on comprehensive community change*.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 Markward, M(1994). Compliance with the McKinney Act: Providing homeless children with educational opportunity. *Social Work in Education*, 16(1), 31-38.
- Moon, Byongook & Merry Morash, John D. McCluskey(2010). *General Strain Theory and School Bullying : An Empirical Test in South Korea*. Crime and Delinquency Online First, published on April 23, 2010. <http://www.sagepub.com>.
- No Child Left Behind (NCLB)(2001). *Education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

- program*. Title VII-B for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as amended by the No Child Left Behind Act of 2001.
- Nunez, R(2000). Homeless in America: A children's story. *Journal of Children & Poverty*, 6(1), 51-72.
- Phillips, M., Wodatch, J., & Kelliher, C(2002). *The education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 program: Learning to succeed*. Volume 1: Reducing barriers for homeless children and youth for access and achievement. Washington, D.C.
- Pittman, K., Irby, M., & Ferber, T(2001). *Youth Policy in the U.S.: Some observations and options*. Takoma Park, Maryland: Forum for Youth Investment.
- Slesnick, N., Glassman, M., Garren, R., Toviessi, P., Bantchevska, D., & Dashora, P(2008). How to open and sustain a drop-in center for homeless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30(7), 727-734.
- Stagner, M. & Duran, M.A(1997).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Principles, practice, and lessons learned. *The Future of Children*, 7(2), 132-140.
- Texas Homeless Education Office(2002). *Education rights of homeless children*.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harles A. Dana Center.



부록



1. 전문가 의견조사지
2. 아동·청소년 면접조사지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정책연구와 프로그램개발·보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1989년 설립 이후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관련 정책연구와 학술지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원에서는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위기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계신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 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위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고 회신은 이메일을 이용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0.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아래의 개념정의를 먼저 숙지하신 후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에 대해 현황부분은 간단하게 작성해주시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분은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개념정의

- 긴급구호 : 위기 아동·청소년을 빠르게 도와서 보호하는 것
- 안전모니터링 : 아동·청소년에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긴 기간을 두고 추적 관찰하는 것

1. 귀하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 ① 소속기관 : _____
- ② 재직기간 : _____
- ③ 담당업무/직책 : _____
- ④ 성별 : _____
- ⑤ 연령 : _____

2. 위기 아동·청소년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을 위한 귀 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의 전체업무 중에서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관련 업무가 구분될 수 있다면 전체업무에 관한 현황과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업무의 현황을 나누어서 적어주시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업무의 현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조직 및 인력
 - 현황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② 시설
 - 현황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③ 예산
 - 현황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위기 아동·청소년의 위기유형(가출,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에 따른 긴급구호 서비스의 내용과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귀 기관에서 담당하고 계신 위기유형 :
- ② 위기유형별 서비스내용 :
- ③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 :
- ④ 서비스 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현황과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연계협력 현황 :
- ②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어떻게/무엇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
- ③ 연계협력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중장기적인 지원의 현황과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사후관리 및 중장기적 지원 현황 :
- ②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어떻게/무엇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
- ③ 사후관리 및 중장기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 위기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안전모니터링 및 정보관리, 아웃리치, 사이버상담, 긴급전화 등의 현황과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것(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현황 :
- ②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어떻게/무엇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
- ③ 조기발견을 위한 활동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7. 귀하의 소속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의 긴급구호나 안전모니터링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추천할 만한 사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나라의 현행 긴급구호체계나 안전모니터링시스템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체계개편이 필요한 부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부분 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9. 위기유형에 따른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가출 :
- ② 성폭력 :
- ③ 아동학대 :
- ④ 학교폭력 :
- ⑤ 기타 :

10. 그 밖에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예: 위기유형별 전문화된 서비스와 원스톱서비스 중 어느 쪽이 이들의 지원을 위해 더 유용한가?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1:1 서비스 제공방안, 취약지역 아동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



위기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에 관한 조사

면접지침

- 이 조사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구참여자(아동·청소년) 본인이 평소 경험하고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4번, 5번, 6번 질문의 경우 참여자에게 과거의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므로 참여자의 감정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의 순서는 아래 문항을 참고하되 참여자의 기분이나 대화의 흐름에 따라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구참여자(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질문

1) 성별 : _____ 연령 : _____세

2) 성격에 관한 질문 : 나는 당신을 잘 모르니까 나에게 당신을 소개한다면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3) 장래희망에 관한 질문 :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간다고 가정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전혀없다 1이고 완벽하다 10이라고 한다면 목표달성의 가능

성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의 수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곳에서의 경험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2. 이곳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고 도움이 안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현재 본인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뭔가 도움을 받은 일(서비스)이 있었나요? 그런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의지가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만약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을 힘들게 한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잘 하지 못할 경우 조금씩 키워드를 주면서 아래의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1)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 : 당신이 생각하기에 부모님이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와 가장 갈등이 심할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이 매를 드신 적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였나요?

2)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 : 당신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다닐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요?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었나요? 공부에 대한 부담은 혹시 없었는지요?

3) 친구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4)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 : 자신이 느끼기에 외모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궁금한데 말해 줄 수 있나요?

5)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묻는 질문 : 용돈이 부족하거나 학비를 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난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6) 방임·유기된 경험에 관한 질문 : 평소에 당신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거나 오랜 시간 혼자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5. 당신을 힘들게 한 그 일을 겪은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예를 들면, 자주 화가 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등의 경험여부)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어떤 행동을 볼 때 당신의 그런 기분을 알 수 있을까요?

6. 당신은 일탈적인 행동(예를 들면, 음주, 흡연, 가출, 성경험, 원조교제, 성폭행, 무단결석, 폭행, 따돌림 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 힘들었던 일(4번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 것 같은지)?

7. 이곳에 오기 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전화,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위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당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도움을 준 부분은 무엇입니까? 좀더 도와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8. 당신은 경찰서에 간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갔었나요? (가출이나 비행, 학대 등 본인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가게 된 경우) 경찰서가 어떻게 도움(상담기관, 쉼터 등의 연계)이 되었나요?

9. 당신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본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경찰이나 선생님, 쉼터에서 나오신 분의 권유를 받아 따라가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나요? 그 때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었나요? 어떤 면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만약,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긴급구호 및 안전모니터링에 대한 욕구를 묻는 질문 : 당신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엇이 필요했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또 다른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변을 잘 하지 못할 경우 조금씩 키워드를 주면서 아래의 질문으로 이어갑니다)

1) 필요한 도움의 유형 : 경제적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학업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2) 도움의 주체 :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 어느 곳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11. 이 조사는 당신과 같은 친구들이 좀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존의 체계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인데,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 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교수
강지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연구원
금명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소장
윤선영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 교수
천정웅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 자 문 진 ◆

- 김은녕 성남시새날청소년쉼터 · 소장
노성덕 한국청소년상담원 통합지원관리팀 · 팀장
박석정 강남대학교 법학과 · 교수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과장
이정애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사무관
전재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문위원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 교수
-

201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0-R0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 / 김지경·백해정·임희진·이계오
- 10-R02 지역사회중심 아동·가족 맞춤형 지원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 서정아·조흥식
- 10-R02-1 아동·가족 공공지원서비스 편람 / 서정아·조흥식
- 10-R03 위기가동·청소년 긴급구조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이춘화·윤옥경·진혜전·황의갑
- 10-R04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 / 임지연·송병국·이교봉·김영석
- 10-R05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 변동 전망III / 이종원·오승근·김은정
- 10-R06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중심 대응방안 연구 / 성은숙·유홍식
- 10-R07 청소년시설 지도인력의 역량 강화 및 복지 개선 방안 연구 / 맹영미·길은배·전명기
- 10-R08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 10-R09 청소년의 글로벌 시티즌십 강화 방안 연구 : 관련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윤철경·송민경·박선영
- 10-R10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 -총괄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현주·이명선·이은경·박경옥
- 10-R10-1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조사 자료집 / 최인재·이기봉
- 10-R10-2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 최인재·이기봉·김형송·김진호
- 10-R10-3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 : 청소년 건강실태 국제비교 조사 -한·미·일·중 4개국 비교- / 최인재·이기봉
- 10-R11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 10-R11-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집·발달권·참여권 / 모상현·김영지
- 10-R11-2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V : 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 모상현·김영지·김윤나·이중섭
- 10-R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 양계민·김승경
- 10-R13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귀국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경숙·이현숙
- 10-R13-1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II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 임재훈·최윤정·안소연·윤소운
- 10-R14 취약가정·시설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단연구 I / 이해연·황진구·유성렬·이상균·정윤경
- 10-R15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I : 청소년 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 김경준·오해섭·김지연·정익중·정소연
- 10-R15-1 청소년 멘토링활동 운영 매뉴얼 / 김지연
- 10-R15-2 청소년 멘토링활동 효과 측정 / 김지연·정소연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 박영균·이상훈·양숙미 (자체번호 10-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연구 / 전영실·이승현·권수진·이현혜 (자체번호 10-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2-0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은령·유영준·이명희·최복천 (자체번호 10-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1**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장근영·조광수·박현준 (자체번호 10-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2**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지적도구활용 영역 / 최동선·최수정·이건남 (자체번호 10-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3**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이영민 (자체번호 10-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4**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장근영·조광수 (자체번호 10-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5**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학교연계 프로그램 시범사업 / 권해수·김민성·강영신 (자체번호 10-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6**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고력 / 임영식·조아미·정경은·정재천 (자체번호 10-R17-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3-07**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III : 수련시설기반 프로그램 시범사업-사회적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 / 권일남·김태균·김정윤·김지수·김영희 (자체번호 10-R17-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 안선영·Hernan Cuervo·Johanna Wyn(자체번호 10-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0-31-02**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우리나라의 성인기 이행 실태 / 이병희·장지연·윤자영·성재민·안선영 (자체번호 10-R18-1)

■ 수시과제

- 10-R19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 총괄보고서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19-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김남수·이기봉·박일혁
- 10-R20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지도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옥·이은경·최순중·김영지
- 10-R21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체계 연구 / 황진구·김성경·남미애·정경은
- 10-R22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교사용) / 구분용·박제일·이은경·문경숙
- 10-R23 취약계층 청소년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학교중단 청소년의 취업 자립을 중심으로 / 서정아·권해수

■ 용역과제

- 10-R24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 이춘화·김정환·조운오
- 10-R25 201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양계민·김승경·조영희
- 10-R26 7~13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성취포상제 운영모형 개발 / 백혜정·장근영
- 10-R26-1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효과성 연구 : 패널조사계획 / 장근영·백혜정
- 10-R27 소년원생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교육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 안선영
- 10-R28 방과후 돌봄 서비스 실태조사 / 양계민·김지경·김승경
- 10-R29 비행청소년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시범사업 / 김지연(2011년 발간)
- 10-R30 졸업식 유형별 사례집 : 졸업식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 맹영임
- 10-R31 보편적·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연구 / 김현철·최창욱·김지연·이춘화·오해섭
- 10-R32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참여확대 방안 연구 / 최창욱·김승경
- 10-R33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 윤철경·류방란·김신아
- 10-R34 2010년 청소년 백서 발간 / 김기현·김형주
- 10-R35 졸업식 및 입학식 개선을 위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위탁운영사업 / 성윤숙·이창호
- 10-R36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최인재·김지경·임희진(2011년 발간)
- 10-R37 2010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조사 연구 / 문경숙·장근영
- 10-R38-1 외국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8-2 우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례집 / 김경준·모상현·서정아(2011년 발간)
- 10-R38-3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컨설팅 및 평가사업 :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김경준·모상현·서정아
- 10-R39-1 청소년 권리찾기로 청소년에게 행복을(청소년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39-2 청소년이 함께 행복한 세상(청소년용 핸드북) / 김영지·이혜연
- 10-R39-3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청소년지도자용 권리교재) / 김영지·이혜연
- 10-R40 2010 서울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평가 / 이기봉·김형주(2011년 발간)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0-s01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 I 자료집 (1/26)
- 10-s02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3/9)
- 10-s03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 I 자료집 (3/19)
- 10-s04 제2차 연구성과 발표회 (4/15)
- 10-s05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와 지원방안 (5/6)

- 10-s06 제1차 청소년미래포럼 (6/21)
- 10-s07 청소년수련원 평가모형의 시범적용을 위한 전문가워크숍 (6/29)
- 10-s0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현황과 개선과제·발달권·참여권 정량지표- (6/29)
- 10-s09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Ⅱ 자료집 (7/2)
- 10-s10 글로벌 시티즌십 함양 활동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과제 (7/9)
- 10-s11 청소년멘토링 봉사활동의 세계적 동향과 전망 (7/8)
- 10-s12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Ⅲ 자료집 (7/27)
- 10-s13 한국의 다문화주의: 현황과 쟁점 (8/18)
- 10-s14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방법론 세미나Ⅱ 자료집 (8/19)
- 10-s15 학교문화선도 운영학교 워크숍 (8/24, 25)
- 10-s16 국제결혼가정의 생활 실태 및 정책 방안 (8/25)
- 10-s17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8/26)
- 10-s18 청소년 또래멘토링 시범사업 평가 (8/27)
- 10-s19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자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 (9/10)
- 10-s21 소년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9/29)
- 10-s22 청소년 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9/30)
- 10-s23 청소년의 멘토링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 (9/28)
- 10-s24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가족지원 서비스 (10/13)
- 10-s25 청소년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의 성과와 발전방안 (10/8)
- 10-s26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10/8)
- 10-s27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콜로키움Ⅳ 자료집 (10/14)
- 10-s28 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토론회 (10/16)
- 10-s29 학업중단 청소년 유형별 현황 및 맞춤형 정책 개발 (10/19)
- 10-s30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의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10/26)
- 10-s31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청소년수용자 중심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8)
- 10-s3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발달권·참여권- (11/5)
- 10-s33 정부부처 디지털 유해매체환경관련 청소년보호정책 현황과 대응방안 모색 워크숍 (11/5)
- 10-s34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안) 공청회 (11/8)
- 10-s35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워크숍 (11/22, 23)

■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5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통권 제5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4호(통권 제59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사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한상철·길은배·김민·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선영·설인자·오승근·윤은종·이명
옥·이은경·최순종·김영지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체험활동 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김기현·
장근영·권해수·김민성·강영신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김기현·
장근영·임영식·정경은·조아미·정재천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울·김지수·김영희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행동 / 김기현·
장근영·권일남·김태균·김정울·김지수·김영희

■ 기타 발간물

NYPI YOUTH REPORT 7호 : 청소년들의 핵심역량(4월)

NYPI YOUTH REPORT 8호 :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6월)

NYPI YOUTH REPORT 9호 :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8월)

NYPI YOUTH REPORT 10호 : 다문화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10월)

NYPI YOUTH REPORT 11호 : 멘토링과 청소년사회참여(11월호)

연구보고 10-R03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개편 및
안전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인 쇄 2010년 12월 22일

발 행 2010년 12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청송문화인쇄사 전화 02)2676-4573 대표 한상환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 (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869-4(93330)

